

스리랑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 1
-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 4
- 주요인사 / 8
- 외교관계 / 10
- 주한주재 국기관 / 15
- 한국과의 주요이슈 / 15

II. 경제

- 경제정책 / 18
- 최신 경제 동향 및 전망 / 25
- 주요 산업 동향 / 31
- 정보조사 자료원 / 39

III. 경제무역통계

- 거시경제 통계 / 42
- 무역통계 / 42
- 투자통계 / 45

IV. 출장가이드

- 기후 / 49
- 시차.근무시간 / 50
- 도량형 / 50
- 출입국.비자 / 51
- 환율.환전 / 53
- 물가정보 / 54
- 교통.통신 / 56
- 호텔.식당 / 59
- 관공서 관행 / 62
- 공휴일 / 63
- 여행시 유의사항 / 64
- 유용한 연락처 / 67
- 관광명소 / 70

V. 무역

1. 무역시스템의 이해
 - 교역관련 주요법규 / 73
 - 수입규제제도 / 79
 - 관세제도 / 82
 - 주요인증제도 / 85
 - 지적재산권 / 89
 - 소비자보호제도 / 92
 - 교역관련 국가기관 / 93
2. 바이어 발굴
 - 시장 특성 / 95
 -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102
 -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106
3. 협상과 계약
 -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 107
 -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 110
4. 통관 및 운송
 - 통관절차 / 111
 - 운송 / 113
5. 무역분쟁
 - 분쟁해결 절차 / 116
 - 유형별 분쟁사례 / 118

VI. 투자

1. 투자 동향

외국기업 투자동향 / 121

우리기업 투자동향 / 124

2. 법인설립

투자환경 / 133

투자인센티브 / 139

타당성조사 / 147

투자 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 150

입지선정 / 163

공장 설립 / 171

투자관련 정부기관 / 178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181

3. 사업관리

노무관리 / 183

조세제도 / 187

외환관리 / 197

4. 현지정착

이주정착 가이드 / 199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스리랑카 민주 사회주의 공화국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위치	인도남동부 인도양 (북위 5.5 ~ 9.5도에 위치한 섬나라)
면적	65.6천 km ² (한반도의 1/3정도-남북간 거리 435km, 동서간거리 225km)
기후	열대 몬순기후
수도	Sri Jayawardenapura이나 Colombo가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수도역할을 하고 있음.
인구	1,967만 (2005년, 연평균 인구증가율 1.1%)
주요도시	Colombo (2,266천명), Gampaha(2,077천명), Kurunegala(1,461천명), Kandy(1,288천명), Kalutara (1,069천명)
민족(인종,%)	Sinhalese(74.0), Sri Lankan Tamils(12.6), Moors(Muslim 5.5), Indian Tamils (7.1), 기타(0.2)
언어	싱할라 및 타밀어(국어), 영어(상용어)
종교 (%)	불교(63.9), 힌두(15.5), 회교(7.5), 기독교(7.6), 기타(0.1)
건국(독립)일	1948.2.4 (영국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이원집정부제
국가원수 (실권자)	대통령 Mahinda Rajapaksa 수상 Ratnasiri Wickremanayake
입법부	단원제(의석 225석)
정당	- 여당: 통일국민자유동맹(UPFA: United People's Freedom Alliance)* PA(the People's Alliance Party), JVP 등이 연합 - 야당 통일국민당(UNP: United National Party)
정부성향	과거 사회주의 정권 경험으로 사회주의적 요소가 남아 있으나 현재는 자본주의, 친서방 정책을 취하고 있음

나. 경제지표: 2005년 기준

GDP (US\$)	235억(잠정치)(2004년: 201억, 2003년: 183억, 2002년 166억)
실질경제 성장률	6.0%, (2006년: 7.3% 전망, 2004년: 5.4%, 2003년: 6.0%)
1인당 GDP	US\$ 1,197, (2004년:US\$ 1,030, 2003년: US\$ 948)
실업률	8.4%, (연평균), (2006년: 7.6%전망, 2004년: 8.5%, 2003년: 8.4%)
소매물가 상승률	11.6%(연평균), (2006년 12.1% 전망, 2004년: 7.6%, 2003년: 6.3%)
화폐단위	Sri Lanka Rupee (RS), 1 Rupee = 100 Cents
환율	US\$ 1 = RS 108.07(Central Bank, 매매기준율, 2006.11.14기준) 연평균(US\$대비): 103.0(2006년 전망), 100.5(2005년), 101.2 (2004년), 96.52(2003년)

외 채	US\$108억(추정치), US\$ 122억(2006년 전망), US\$ 109억(2004년), US\$ 102억(2003년)
경상수지	US\$ 6.5억 적자, US\$ 6.5억 적자(2004년), US\$ 71백만(2003년)
외환보유고(금 제외)	US\$ 27.4억(3.7개월 분 수입액, 2005년)
산업구조(%)	농업(17.9), 제조업(16.3), 건설업(7.0), 광업(1.7), 서비스업(55.7)
교역규모	US\$ 63.5억(수출), US\$ 88.6억(수입)
교역품	수출 : 봉제 의류, 코코넛 제품, 홍차, 보석 수입 : 직물 및 봉제 원부자재, 기계, 철강, 종이제품, 전자, 자동차

자료원: 중앙은행, 영국 EIU 2006.10 최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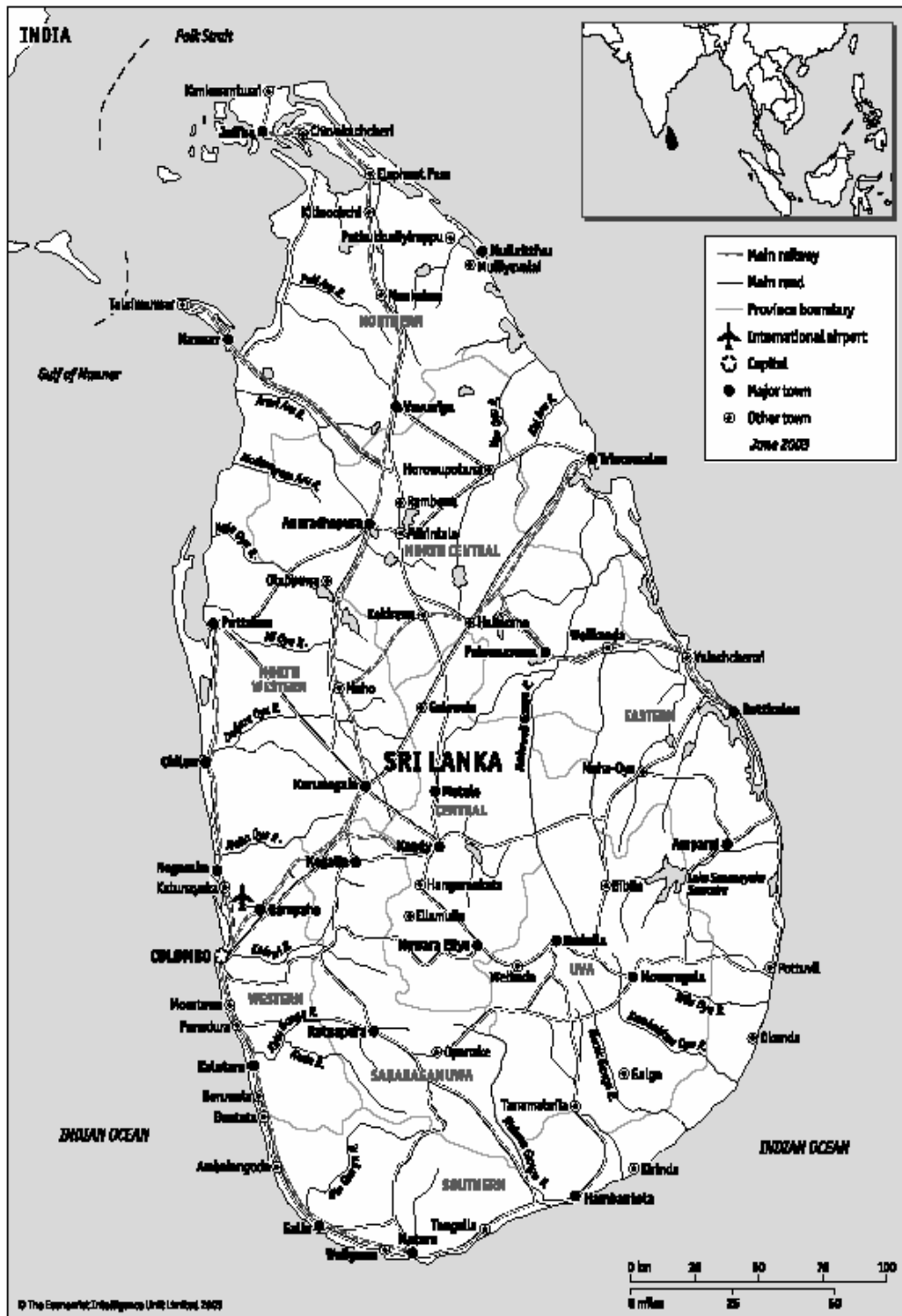
다. 한-스리랑카 관계

체결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1986년), 투자보장협정(1980년), 무역협정(1984년)
교역규모(2005년)	US\$ 243백만(우리나라 수출: US\$ 205백만, 수입: US\$ 38백만(수입))
교역품	직물 및 섬유류, 기계류, 플라스틱 제품(수출) 코코넛 코이어 등 농산물(수입)
투자교류	144건RS 12,505백만(우리나라진출), 국내유치 전무
교 민	체류자 약 500명

라. 스리랑카 시장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하위 소득수준(lower- middle income)의 개발 도상국이며 주변국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회지표가 강점임 ○ 1978년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경제로 전환하였지만 개혁속도가 일정치 않음 ○ 내수 시장과 자원 및 국토가 협소하여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으며 수입(식품 및 소비재, 원자재 및 기계), 수출(의류, 차 및 고무 등 1 차 상품), 서비스(관광포함), 농업, 해외 근로자 국내송금, 외국의 원조자금에 주로 의존 ○ 타밀타이거 반군인 LTTE 와 20 여 년간의 내전 상태에도 불구하고 대치 지역은 주로 LTTE 장악 접경지역인 북동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연평균 실질 경제 성장률은 과거 10년간 4.5%를 넘는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최근 4 년간(2003-6)은 연평균 6% 실질성장이 예상되며, 민간부분, 서비스, 건설 부분, 해외 근로자 국내 송금증가가 성장을 주도함 ○ 2004 년 말 쓰나미(인도양 해저대해일) 피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손실이 있었으나 국제 원조자금 유입과 원리금 1년 상환 유예조치 등으로 경제에 전화위복이 됨 ○ 만성적인 재정 및 무역적자, 정부의 취약한 재정관리, 에너지의 100% 수입(최대 수입 항목) 및 국제 고유가로 에너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보가 주요 관심사임
--

마. 스리랑카 지도





2.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가. 행정부

스리랑카의 행정부는 대통령 중심제에 내각 책임제가 가미된 의원집정부제 형태이다(1978년 8월 16일 헌법개정). 대통령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스리랑카의 대통령 선거는 임기 중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조기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수상은 현역의원 중 국회 다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장관(Minister), 부장관 (Deputy Minister)은 현역의원 중에서 대통령이 수상과 합의하여 임명하며 정치인이 아닌 최고 관료인 차관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나. 사법부

사법부의 구성은 대법원, 고등 법원, 지방 법원, 치안 재판소, 소년 재판소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법원은 대법원장 및 6-10명의 판사로 구성, 헌법문제, 선거소송, 최고입법 관계 사항 등 정치관련 사항을 관장하고, 하급법원으로부터 상고된 민 형사소송의 최종심 역할을 수행하는 사법부 최종심판 기관이다. 대법원장 및 동 판사는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며 3권 분립의 원칙에 의하여 모든 국민의 사법권은 재판소를 통하여 행사되고 있다.

다. 의회

단원제인 국민회의(National State Assembly)가 운영되고 있으며 의원정수는 225석, 임기 6년제로서 현재는 UPFA(자유인민연합)이 집권당이다. 22개 지역별 인구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196명과 정당 별 전국득표 비례대표제에 의해 임명되는 전국구 의원 2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선거는 대통령의 의회해산에 따라 2001년 12월 5일 및 2004년 4월 2일에 실시되었으며 다음선거는 2010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불안정한 연정상태 및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2010년 이전에 국회가 해산되어 임시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 정당별 의석현황

- 총 의석수 225 석
- UPFA 105 석, UNP 82 석, TNA 22 석, NHF 9 석, SLMC 5 석 등
- 연정 파트너인 JVP 가 2005.6 월 연정에서 탈피로 여당 의석 수는 79 석으로 축소됨

라. 선거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지며 주요 선거로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선거 등이 있다. 현지의 선거는 아직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높은 정치 관심도로 인해 지지정당의 높은 득표 및 당선을 위해 과욕을 부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부진 시에는 여러 후유증도 나타나고 있다.

1) 대통령 선거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 임기 6년, 1차 연임 가능, 피선거권자는 30세 이상의 스리랑카 국민으로서 정당의 추천을 요한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선거는 2005년 11월 11일에 실시되었다.

○ 1999년 12월 선거결과(득표율)

- Chandrica Bandaranaike KUMARATUNGA (People's Alliance) 62%
- Ranil Wicramashinge (United National Party) 37%
- 기타 1%,

○ 2005년 11월 선거결과(득표율)

- Mahinda Rajapakse(SLFP) 50.3%
- Ranil Wicramashinge (United National Party) 48.4%

2) 국회의원 선거

국민 직선 및 비례 대표제에 의하여 선출, 임기 6년, 단원제 의원정수는 225명 (지역구 198명, 비례대표 27명)이다. 최근에 실시된 선거는 2004년 4월에 실시되었고 다음 선거는 2010년에 실시된다.

그러나 2004년 4월 총선에서 새로 등장한 집권여당도 과반수 의석확보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2010년 이전에 국회가 해산되어 임시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 2004년 선거결과(정당 별 의석수)

- FA 105, UNP 82, TNA 22, NHF 9, SLMC 5, EPDP 1, UCPF 1, 기타 2

3) 지방의회 선거

스리랑카는 총 8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선거가 실시된다.

4) 정당현황

스리랑카는 128개 정당이 등록되어 있어 다기화된 정치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주요 정당은 다음과 같다.

5) 자유연합(UPFA: United People' s Freedom Alliance)

전 대통령인 Chandrika Kumaratunga의 중도 좌파 성격의 스리랑카 자유당(SLFP)와 내셔널 리스트이자 사회주의 계열인 Janath Vimukthi Peramuna (JVP)가 2004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급조 제휴하여 만든 연합 정당이다. 양 정당간 지향노선과 속셈이 다르기 때문에 원만한 공조가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각료인선, 정책방향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6) 스리랑카 자유당(SLFP: Sri Lanka Freedom Party)

1951년 Solomon Bandaranaike가 결성, 진보적 보수정당으로 출범하였으나, 빈번한 좌익 정당과의 제휴 과정에서 점차 좌경혁신정당의 색채를 띠게 되었다. 사회민주주의의 실천을 정치 목표이다. 정당 연합인 PA(People's Alliance)의 주도세력이었으며 2001년 12월 실시된 선거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하였다.

현재의 집권당인 PA는 전신인 USA(the United Socialist Alliance)로서 1987년에 결성되었으며 여기에는 NSSP, LSSP, SLMP, CP/M, and CP/B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93년에 PA(the People's alliance Party)를 결성하였다.

이밖에 타밀족의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정당의 연합체인 타밀 통일해방 전선, 인민 해방전선 등과 스리랑카 공산당, 실론 노동자회의 등이 있다.

7) 통일국민당(UNP: United National Party)

1946년9 월에 서구화된 스리랑카 상류층이 모여 결성, 온건 싱할리 불교도, 우파 온건 회교도 등을 지지기반으로 한다. 자유주의, 비동맹 중립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70년 총 선거에서 패배하였으나, 77년 총선에서 대승한 후 88년12.19 대통령 선거와 2.15총선에서 재승하여 집권한 바 있다. 그러나 2001년 총선에서 다수당 지위를 재 확보 하였지만 2004년 총선에서 패배하여 야당으로 전락하였다. 친 기업적 친 외국인 투자 성향의 정책 성향으로 중산층이상, 콜롬보 등 웨스턴 지방의 주요 도시가 지지기반이다.

8) 타밀국가연합(TNA: Tamil National Alliance)

타밀족의 주도 정치 군사 지배세력인LTTE가 2004년4월 총선에서 자체후보 대신에 TNA후보를 지지기로 함에 따라 급격히 부상되어 22개 의석을 확보하여 3대 정당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스리랑카 정국운영에 주요 변수의 하나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스리랑카의 정당현황은 다음과 같음.

- ACTC(All Ceylon Tamil Congress)
- CLDC(Ceylon Workers Congress)
- CP/B(Communist Party/Beijing)
- DPLF(Democratic People's Liberation Front)
- DUNF(Democratic United National Front)
- EPDP(Eelam People's Democratic Party)
- EPRL(Eelam People's Revolutionary Liberation Front)
- EROS(Eelam Revolutionary Organization of Students)
- FA(Freedom Alliance)
- LSSP(Lanka Socialist Party/Trotskyite, or Lanka Sama Samaja Party)
- LP(Liberal Party (LP))
- NSSP(New Socialist Party, or Nava Sama Samaja Party)
- PA(People's Alliance)
- PLOTE(People's Liberation Organization of Tamil Eelam)
- MEP(People's United Front, or Mahajana Eksath Peramuna)
- NHF(National Heritage Foundation)
- SLFP(Sri Lanka Freedom Party)
- SLMC(Sri Lanka Muslim Congress)
- SLMP(Sri Lanka People's Party, or Sri Lanka Mahajana Party)
- SLPF(Sri Lanka Progressive Front)
- TELO(Tamil Eelam Liberation Organization)
- TNA(Tamil National Alliance)
- TULF(Tamil United Liberation Front)
- UNP(United National Party)
- UPF(Upcountry People's Front)
- 기타 타밀 및 무슬림계 정당 존재

○ 기타 압력단체 및 정치적 영향력 행사단체

- LTTE(Liberation Tigers of Tamil Ealam), 그 밖에 여러 인종분리주의 단체 및 과격 쇼비니스트 싱할리족 단체, 불교승려들의 단체, 노동조합 등이 있다.
- 인구 다수인 싱할리 족의 대수가 신봉하는 불교 승려들의 영향력이 강하며 이들은 불교 보호를 위해 별도 정당(NHF: National Heritage Foundation)을 구성하여 2004 년 선거에서 의회에 진출하였다.

3. 주요 인사

가. 대통령: Maninda Rajapaksa

- 생년월일 : 1945. 11.18
- 주요경력
 - 1970년: 24 세로 스리랑카 최연소 국회의원 노동부, 수산부 장관
 - 2002년: 3월 여당대표
 - 2004년: 4월 스리랑카 수상
- 기 타
 - 가난한 지역인 남부 함반도타 항구 인근의 정치명문가 출신으로 아버지 선거구를 이어 받아 1970년에 24 세로 스리랑카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회주의 입김이 강한 남부에서 JVP(인민해방전선) 후보를 물리치고 계속 당선된 거물 정치인임.
 - 카리스마가 있으며, 서민적인 이미지가 있는 대중정치에 능한 정치 스타일이며 서민풍이 풍기는 덩수룩한 모습과 일반사람들이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함. 다수 인종인 싱할리스 중 가난한 자나 서민층, 싱할리스 민족주의자, 농민 및 노동자, 콜롬보 지배 엘리트에 식상한 민족주의자들로 세계화와 시장개방, 외국 자본이 스리랑카 경제지배권 확대에 반감을 갖고 있는 좌파계열 성향의 일반대중이 주요 지지기반임.
 - 노동부 장관시절 노동자 계층과 협력해 노동현장을 만들어 대형 사업장이나 비즈니스 계의 반발은 물론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를 요구해온 IMF, 세계은행의 거센 반발로 어업부 장관으로 좌천됐으며 어업부 장관시절 어부들의 불량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규 주택 건설프로젝트를 시행해 어부들의 인기를 산 적도 있음.
 - 타밀 LTTE 반군과의 평화측면에서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싱할리스 민족주의자들의 표를 고려해 2002년에 주요 무력전투를 중단시킨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단지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평화대가로 타밀이 지배하고 있는 북부와 동부지역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부여하는데 회의적이며 타밀 타이거와 평화협상을 다시 하기 전에 수개월이 걸리더라도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남부 싱할리스 불교 다수인종으로부터 협상포지션에 대한 컨센서스를 형성해야 한다는 입장임.
 - 경제적으로 보다 포퓰리스트 적인데 국유재산 및 기업의 추가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으며 고학력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공무원수를 보다 늘린다는 것이 일례이며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야당후보보다 보다 선별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기업인들 특히 대기업인들, 그리고 외국인투자자들은 이러한 라자팍서 후보의 특성과 특히 공산주의 계열인 JVP와 연합한데 대해 경계감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
 - 2005년 11.25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제시된 Rajapaksa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평화협상 추진방향

단일국가체제(unitary state)내 권력 분권 방식을 지향하고 종래 정부와 LTTE 간의 양자 회담 방식에서 탈피하여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다자적 접근방식(multi-party approach) 으로 협상을 추진하되 광범위한 컨센서스에 기초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할 것임. 특히, LTTE 와의 정전협정을 재검토하고 북동부지역 쓰나미 피해 복구, 재건 지원을 위한 전정부의 P-TOMS(북동부 지역 쓰나미 지원을 위한 정부와 LTTE 간의 공동조정기구)를 대체할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함.

헌법개정

대통령이 국회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헌법회의 (Constitutional Assembly)를 설치할 것임.

대외정책

스리랑카의 국익과 관계가 큰 아시아 중시정책을 추진하고 스리랑카 외교전통에 입각하여 국제무대에서의 consensus builder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임.

경제정책 기초

경제개발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되 신속한 경제성장에 필요한 국내외 신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을 흡수할 것임.

정부요인

지역구 의원이 장관을 겸임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상당히 가미된 정부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2005년 11월 총선 후 Mr. Mahinda Rajapak 대통령이 이끄는 UPFA 정당이 재집권하였고 Mr. Ratnasiri Wickramanayake가 총리에 임명되었음.

나. 수 상: Mr. Ratnasiri Wickramanayake

- 생년월일: 1933. 5. 5
- 학 교: Dharmapala Vidyalaya & Ananda College
- 주요경력
 - 1960 -1977: 국회 멤버
 - 1970: 법무부 장관
 - 1976: 플란테이션 산업부 장관
 - 1979 -1983: Sri Lanka Freedom 정당 General Secretary
 - 1994 -2000: Public administration, Home affairs and Plantation Industries 장관
 - 2005.11: 수상 및 자연재해 관리 장관

내각 장관 Cabinet Ministers

1	Defense and Finance	His Excellency President Mahinda Rajapaksa -
2	Disaster Management	Hon.Prime Minister Ratnasiri Wickramanayake
3	Foreign Affairs, Ports and Aviation	Hon. Mangala Samaraweera -
4	Tourism	Hon. Anura Bandaranaike
5	Post, Telecommunications and Rural Economy Development	Hon. DM Jayarathne
6	Health and Nutrition	Hon. Nimal Siripala de Silva
7	Justice and Judicial Reform	Hon. Amarasiri Dodangoda
8	Transport, Railway, Petroleum Resources	Hon. AHM Fowzie
9	Trade, Commerce, Consumer Affairs, Highways	Hon. Jeyaraj Fernandopulle
10	Agriculture, Irrigation, Mahaweli	Hon. Maithripala Sirisena
11	Power and Energy	Hon. W D J Senevirathne
12	Child Affairs and Women	Hon. Sumeda Jayasena
13	Information and Media	Hon. Anura Priyadharsana Yapa
14	Urban Development and Water Supply	Hon. Dinesh Gunawardena
15	Social Services	Hon. Douglas Devananda
16	Home Affairs and Public Administration	Hon. Sarath Amunugama
17	Housing and Construction	Hon. Ferial Ashroff
18	Education	Hon. Susil Premajyantha
19	Labor Relations and Foreign Employment	Hon. Athauda Seneviratne
20	Rural Industry and Self Employment	Hon. SB Navinna
21	Vocational Training and Technical Skills	Hon. Piyasena Gamage
22	Provincial Council	Hon. Janaka Bandara
23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Hon. Milory Fernando
24	Enterprise Development and Investment Promotion	Hon. Rohitha Bogollagama
25	Science and Technology	Hon. Tissa Witharana
26	Constitutional Affairs and National Integration.	Hon. DEW Gunasekara

4. 외교관계**가. 국제기구 가입현황**

ADB, CCC, CP, ESCAP, FAO, G-24, G-77, GATT, IAEA, IBRD, ICAO, ICC, ICFTU, ICRM, IDA, IFAD, IFC, IFRC, ILO, IMF, IMO, INMARSAT, INTELSTAT, INTERPOL, IOC, IOM, ISO, ITU, NAM, PCA, SAARC, UN, UNCTAD, UNESCO, UNIDO, UNU, UPU, WCL, WFTU, WHO, WIPO, WMO, WTO, 콜롬보플랜

나. 외교노선

1) 기본노선

비동맹 중립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고, 집권당의 성향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다. 전통적으로 UNP당은 친서방 경향, PA당은 비동맹을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미-러 간 냉전구도 종식으로 비동맹 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중과 관심이 저하됨에 따라 최근에는 친서방, 친인도 실리외교를 추구하는 모습이 역력하며 중국의 영향력 및 원조 확대, 양국간 무역 급증과 투자유치를 위한 대중국외교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강대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으로 인해 그다지 편향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지는 않으며 실리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FTA대조류 하에서 스리랑카도 미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 주변국인 서남아, 동남아국가들과 FTA체결에 적극 나서는 등 경제외교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2004년 4월 총선에서 집권한 PA계열의 현정부의 외교정책은 스리랑카 주권과 독립을 보장하고 세계 모든 국가 및 UN등 국제기관들과 선린우호관계를 증진하는데 있다고 선거강령에 천명되어 있다. 이를 위해 테러리즘, 범죄 및 형법 집행, 돈세탁 방지, 마약 거래 금지, 빈곤 퇴치, 남녀평등, 아동 및 장애인 보호, 환경보호 등의 국제협약과 조약의 체결국이 되어 스리랑카의 정치 경제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평화협상(peace process)과 2004년 말 스리랑카를 강타한 쓰나미 피해지역 재건복구과정에 미국, 영국, 일본, 노르웨이 등 여러 외국 정부들이 긴밀하게 개입하고 있는 결과, 이들 국가들이 스리랑카 내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스리랑카는 이들 외국정부들의 호의에 의존하고 있다. 라자팍서 대통령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에게 LTTE가 정전협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조치를 감수하는 위협을 부담하도록 압력을 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에 이어 2006년4월에는 캐나다도 LTTE를 테러집단으로 지정하였고 E.U. 도 테러집단으로 지정하였다. 이들 국가들 내에는 전쟁과 차별을 피해 이주한 스리랑카 타밀 족들의 공동체가 크게 형성되어 있어 LTTE자금 줄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구나 LTTE협상 수석인 Anton Balasingham이 영국에 거주하고 있다.

2) 주요국가와의 관계

□ 인도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남아시아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사는 해양접경 확정, 타밀 문제, 영국통치 기간 중 이주한 인도인 처리 문제, 1980년 대 인도의 타밀 반군에 대한 무기공급과 훈련, 타밀 반군과 내전에서 평화정착을 위한 인도군 파병주둔과 1990년대 이의 실패로 인한 인도군 철수 등으로 양국간 외교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였다. 스리랑카와 가장 인접한 인도의 주는 Tamil Nadu주이며 주로 힌두교도 타밀계로서 인구는 6,000만 명이 넘어 스리랑카 싱할리스 내셔널리스트들은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하여 인도의 영향력 강화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인도수상 Rajiv Gandhi수상이 LTTE로부터 암살당한 후 인도가 1991년에 LTTE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LTTE에 대한 지원을 금지한 후 인도-스리랑카 관계에 협력기반이 마련되었다.

1998년 12월29일 인도-스리랑카간 자유무역협정 체결(2000년 3월 발효)로 양국간 교역 투자 등 경제분야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며, 양국은 투자, 인력이동, 표준분야까지 포함한 포괄경제제휴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이전 UNP정권, 현 UPFA정권도 인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도는 경제, 안보(LTTE반군 제어)측면에서 스리랑카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인도는 스리랑카에 가장 중요한 교역파트너, 인도 관광객 입국, 안보, 원유수입 및 식량수입자금 지원, 식량무상지원 및 낙후지역 개발 및 기술 원조, 투자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우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쓰나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인도도 쓰나미 피해국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해군과 의료진의 신속한 지원으로 많은 스리랑카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인도는 스리랑카에 대한 무상 크레디트라인 한도를 높이고 스리랑카와 경제, 군사, 문화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파키스탄, 버마, 스리랑카 등 인도 인근국에 대한 진출 및 원조 확대에 인도는 매우 민감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

□ 파키스탄

인도와는 달리 파키스탄과는 군사협력을 도모하는 등 양국관계는 그다지 커다란 마찰이 없이 유대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양국 교류관계는 상호 보완관계가 약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인도-파키스탄간 최근 긴장 완화를 활용하여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상호 전시회교환 개최 등 상거래가 보다 활발해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5년 초 스리랑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양국간 경제 통상교류 확대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대 인도 견제를 위해 스리랑카와 군사적인 교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 미 · 영 · 일 등 서방제국

과거 한때 사회주의 노선을 걷고 비동맹 세력의 중추로 활약할 당시에는 서방과의 관계가 그다지 매끄럽지 못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한 지난 77년부터는 경제 발전을 위한 원조 유치 등을 위하여 미국, 일본, EU 국가 등 서방제국과 우호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타밀 반군에 대한 주요 지원통로가 되고 있는 서방거주 타밀계 들의 지원루트 차단을 위해 서방국들과 긴밀한 유대관계 구축 필요성이 크며 미국 등이 타밀 반군을 국제적인 테러 단체로 규정, 간접적인 대 타밀반군 지원차단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경제적인 원조 및 주요 생산 제품의 수출 대상국으로서 서방의 존재는 매우 큰 상황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방 원조국들은 스리랑카 평화 협상과정에 대한 지지 입장을 견지 하면서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 미국

일본과 함께 주요 원조국으로 미국은 국무부산하USAID를 통해 1948년 스리랑카 독립 이후 총 13억불을 원조하여 경제사회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타밀 문제 해결 방식을 놓고 양국간 관계가 복잡하였으며 스리랑카 정부의 인권침해 기록이 이슈로 작용하였으며 LTTE 활동에 대한 미국의 용인이 스리랑카 정부의 불만 요인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1997년 LTTE 를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불법화한 후 양국간 불편한 요인이 해소되었다.

□ 일본

스리랑카 최대 원조국으로 1950년대 초에 양국간 외교관계가 수립되었으며 1970년대 JR Jayewardene 수상 시 양국간 외교 경제 협력관계가 크게 진전되었다. 일본은 많은 경제 원조를 지속하고 있고, 스리랑카 3대 교역국인 위치를 활용 스리랑카 평화 협상에 보다 점차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총 45억불의 대 스리랑카 원조가 약속된 동경원 조국 회의를 일본이 주관한 바 있다. 일본은 스리랑카에 대한 최대 원조국으로 일본의 원조 금액은 지불 기준으로 2004년 291백만 불, 2005년 235백만 불로서 이 기간 중 스리랑카가 수령한 외국 원조 총액(양자간, 국제금융기관, 다자간, 상업차관, 수출신용 등 포함)중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36%, 2005년 22%에 달했다.

□ 중국

중국공산당의 본토 장악 이후 양국간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오랫동안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스리랑카가 중국으로부터 다른 국가에서는 구할 수 없는 값싼 가격으로 군수물자를 공급 받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최근 10년 동안에는 양국간 경제관계도 점차 긴밀화 되어 양국간 교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스리랑카에서 중국의 교역비중이 증가추세에 있다.

2003년 중국과 스리랑카는 경제·투자관계 기초를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양국간 협정을 체결하는데, 경제기술 협력 협정, 양허성 차관 제공을 위한 기본 협정, 이중과세 방지 협정, 사증협정 등 4개 협정이 그것이며 중국은 스리랑카 통신 관광 분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 한 바 있다.

중국은 또한 스리랑카 경제개발 지원을 위해 Rs.4억 규모의 무상 경제원조를 제공했으며 향후 Rs.2400백만 규모의 저리차관을 제공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지역주의 참여정도

□ 서남아 지역 협력연합(SAARC)

스리랑카는 역내 빈곤추방, 경제 민주화(참여와 분배의 공평), 경제 개방 및 자유화, 역내 교역, 투자, 기술교류 증진, EU, ASEAN 등과 경험모색, 보호주의 경계 등을 위해 SAARC 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서남아시아 빈곤추방과 경제개방화 정책추진을 강력히 주장하고 지역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내 쌍방간 정치, 인종, 종교 등 비경제적 문제 등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등 지역주의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EU, ASEAN수준의 서남아 자유시장을 목표로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몰디브, 부탄 등 7개국으로 서남아 지역 협력연합을 1985년에 구성하였다.

그 동안 이 지역 강대국인 인도와 파키스탄과의 긴장관계가 SAARC 진전을 방해하는 최대 요인이었으나 2003년부터 양국간 긴장관계가 완화되면서 SAARC경제협력 및 자유무역 지대 결성 추진일정이 점차 실현가능성 있는 방향으로 탄력을 받고 진행되고 있다.

- SAPTA (South Asian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서남아 특혜관세협정)
 - 95년부터 SAARC 정상회담에서 제의 추진되고 있으며 가맹국 양자간 특혜관세를 부여하여 최종적으로는 가맹국 전체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부여를 목표로 하는 서남아 특혜 관세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96년 3월 31일부터 1차로 인도가 106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등 총 983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 SAFTA (South Asian Free Trade Area; 서남아 자유무역지대) 창설
 - SAARC의 최종단계로 2008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남아 정상들은 97년 5월 몰디브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서남아 단일시장 완성을 앞당기기로 하는 동시에 후속조치로 97년 8월에도 인도 뉴델리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등 시장단일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스리랑카도 주도적인 위치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리랑카는 서남아 국가 중 가장 앞선 금융시스템, 인프라 여건 등을 내세워 서남아 지역의 금융, 교통, 통신, 교역 허브국가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남아 강대국 사이에서 세력 균형 역할을 담당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인도-스리랑카 자유무역협정

SAARC 역내 교역활성화의 일환으로 98년 12월 스리랑카와 인도는 점진적인 관세철폐를 통해 양국간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예외품목 리스트 및 관세 양허 계획에 대한 협상이 2000년 2월 종료되어 4월 1일부로 발효에 들어갔다.

1) 관세철폐

□ 인도 측

- 협정발효즉시 1,35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
- 네가티브 리스트 품목을 제외한 잔여 품목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와 동시에 50%의 관세 양허를 제공하고 3년 내에 관세를 철폐
- 섬유에 대한 양허 관세율은 25%이고, 4개 섬유부문(HS50, 57, 61, 62)은 네가티브 리스트 품목임
- 차는 쿼타 범위 내에서 50% 양허 관세율을 적용함

□ 스리랑카 측

- 협정발효즉시 31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
- 889개 품목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동시에 50%의 관세 양허를 제공하고 3년 내에 관세를 철폐
- 네가티브 리스트 품목을 제외한 잔여 2,724개 품목에 대해서는 8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

2) 네가티브 리스트

- 인도 측의 네가티브 리스트 품목은 주로 봉제 제품, 석유화학, 정유, 코코넛, 코코넛 오일 등 429개 품목이며, 그 중 의료부문은 233개 품목은 쿼터를 적용하고 쿼터 범위 내에서의 양허 관세율은 50%임
- 인도 측의 네가티브 리스트 품목 수는 1,180개 품목임

3) 원산지기준 규정

- 우대수출이 가능한 원산지 충족기준은 다음과 같음
 - 스리랑카 내 35%의 국내 부가가치를 지닌 상품
 - 스리랑카 내 25%의 국내 부가가치를 지닌 상품으로서 인도산을 최소한 10% 추가한 상품

인도와는 원산지규정 완화통한 물적 교류 확대, 인력이동, 서비스 및 투자이동 확대, 상호인증 등을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보다 범위가 넓고 경제협력에서 심도 있는 포괄 경제제휴협정(CEFA)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2007년 중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스리랑카-파키스탄자유무역협정

스리랑카-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PSLFTA)는 2005년 6월부터 발효 중에 있다. 스리랑카의 파키스탄에 대한 네가티브 리스트 품목은 697개 품목이고 파키스탄의 스리랑카에 대한 네가티브 리스트 품목은 540개 품목이다. PSLFTA 발효 즉시 파키스탄은 206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스리랑카는 102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였다. 네가티브 품목을 제외한 잔여 품목에 대해서는 스리랑카는 5년 내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파키스탄은 3년 내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되어 있다.

5. 주한주재국기관

□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가 교보빌딩 2002호
- 전화: 735-2966/7
- 팩스: 737-9577
- 이메일: lankaemb@kornet.net
- 홈페이지: 구 <http://www.srilankaembassy.or.kr> 이었으나 현재 운영계획 없음.
- 근무시간: 09:00-12:30 & 14:00-17:00, 토요일 휴무
- 자국 근로자들의 한국 내 취업 증가로 노무관이 별도 파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영사 업무, 불교 등 문화 교류 등이 주 업무이며 최근에는 통상증진에도 점차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공관원은 외교관은 대사, 3 등서 기관, 노무관을 포함 총 3명이며, 행정 및 기술 요원이 5명 파견되어 있음

6. 한국과의 주요이슈

스리랑카와는 1972년 주스리랑카 통상대표부 개설, 1977년 외교관계 수립이후 공식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양국관계는 04.12.26 스리랑카의 지진해일(쓰나미) 피해 이후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양국 고위인사의 상호방문 증대, 지진해일 피해 시 복구재건 사업 적극 참여 및 NGO활동 강화 등으로 한 단계 격상되고 강화되고 있으며 문화종교 등으로 협력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 스리랑카 현 Rajapakse 대통령은 한국을 과거 3번 방문한 친한 인사로서 2004.12월 쓰나미 발생 후 2005.1월 우리나라 이해찬총리의 스리랑카 지원방문 시 수도 콜롬보에서 400 km 떨어진 함반토타 쓰나미 피해 지역 시찰에 헬기에 동승, 동반한 바 있으며, 2005.5월 서울개최 제 6차 정부혁신포럼에 스리랑카 수상으로서 참석한 바 있다.

경제협력현황을 보면, 06.8월 기준 13개 사업 192백만 불 규모의 EDCF자금을 지원하여 스리랑카는 지원액기준으로 우리정부의 EDCF지원대상국 37개국 중 중국에 이어 2번째 수혜국가이다. 스리랑카는 아국 무상원조사업의 중점 협력대상 국가의 하나로 지난 14년간(1991-2004) 총 1,536만불 규모의 KOICA무상원조를 제공하였으며 2005년에는 약 475만불 규모의 무상원조를 제공하였다. 그간 한-스 직업 훈련원 및 개방대 자동차 실습실 건립, 원양어선 항법장치 지원 등 프로젝트 사업과 주요 도로 타당성 조사사업을 지원하였다.

특히, 해외봉사단 최초 파견국의 하나로서 지속적인 파견인력 확대, 연수생 초청인원 증대 및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인적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협력분야에서 2004년 우리의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스리랑카 근로자들에 대한 한국취업 기회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스리랑카정부는 우리정부에 대해 감사해 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하에서 스리랑카에 대한 신규인력 도입배정규모(쿼터)가 7,060여명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2005년에는 14,650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투자분야에서는 그 동안 우리의 대스리랑카 투자가 노동집약적인 저임 인건비와 국제 섬유쿼터를 활용하기 위한 봉제의류, 모자, 가방, 텐트 등 스포츠용품 생산에 집중되어 있어 국제 쿼터페지 및 경공업 생산기지로서의 중국 등 타 개도국 부상,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중화학 전자 IT 등 첨단산업으로 전환 등에 따라 현지투자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스리랑카 봉제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 중국에 대한 미국, 유럽의 쿼터페지 등으로 가방, 의류봉제업체를 중심으로 중국, 베트남 등지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철수하는 추세가 2000년대 들어와서 늘어나다가 2005년을 정점으로 2006년도에는 이러한 추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급격한 인건비 인상과 중국정부의 선별적인 외국인 투자우대 조치로 정책 변화, 2005년 세계 섬유교역자유화 이후 미국과 EU의 중국산 섬유류 일부에 대한 새로운 물량규제 도입, 스리랑카산 봉제제품이 2005.7월부터 EU GSP 플러스제도하에서 원산지 충족 시 무관세로 EU로 들어갈 수 있는 등 여건이 변화되고 있지만 1인당 GDP가 연간 1,000 불을 넘어선 스리랑카는 봉제노동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어 봉제공장의 많은 곳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

상기 철수과정에서 스리랑카의 경직된 노동법(해고 어려움과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정리해고 보상금 등)과 청산관련 법으로 인해 책임이행을 소홀히 하고 무단 철수하여 국가 이미지 훼손 및 잔여 투자기업의 입지를 곤란케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산절차를 완료하고 철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스리랑카에서 철수나 구조조정이 어려운 것은 해고나 철수 시 현지근로자들은 외국기업들에게는 무작정 많은 보상을 일단 요구해 본다는 식이며, 현지 정부, 노동심판소, 변호사들은 부유한 외국기업대비 가난한 자국민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이다.

따라서, 공장철수나 고용인원감량 조정할 경우 현지기업에 비해 외국계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많은 보상 요구로 인력감축이나 철수가 쉽지 않아 애를 먹고,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무단 철수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비교적 장기적인 인력계획을 세워 결원인원 미충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생산계획을 수립 시행하면 공장근로자들은 기본급 수준이 낮아 고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찾아 자진 퇴사자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철수시 보상금액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현지 대표적인 기업들이 경직된 노동법하에서 어떻게 사전 대처하고 노무관리를 하는 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으며 공장 구조조정 시 자연 퇴직자가 많이 발생할수록 철수하기가 쉽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조용히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

주요 현지기업들의 근로유형 별 고용계약서 양식, 고용 종료, 징계 해고, 감원 등 노무관리 기법을 잘 숙지하고 사전에 노무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함으로써 사후에 예기치 않은 노무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우리기업들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주택사업, 발전소 건설, 도로 및 상수도 등 인프라 구축, IT산업 등 분야에의 투자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는 현대, 삼성, LG, 포스코 등 한국 주요 기업들의 인접국 인도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주목하여, 인도-스리랑카 자유무역협정, 인도와 지리적 인접성, 인도보다 우수한 생활환경 등을 강조하면서 한국기업들이 인도진출 배후기로서 스리랑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2006년부터 스리랑카 투자청(BOI)이 BOI법 16조에 의거한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최소 투자자본금을 50,000불에서 250,000불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거류 비자신청이나 갱신 시 선별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기존 투자가들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B01 16조 투자가들은 비 전략 부분이나 고도 수출 창출분야가 아닌 소액 투자분야로 스리랑카 정부는 이들 분야의 투자 최소 한도액을 그 동안 물가상승률, 스리랑카 경제규모 확대, 이들 분야 기업들의 내부 유보이익 등을 감안 시 올리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외국 투자기업들은 스리랑카 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 내부적으로 중국이나 인도 소기업들의 진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투자허가 당시 다른 불법 변태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투자 하한선을 크게 늘렸다고 한다.

한편, B01 16조에 해당하는 한국 투자기업들은 포함한 소액 투자기업들은 기존 투자가에 대해서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며, 이러한 중요 원칙을 사전에 충분한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 자체가 스리랑카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스리랑카 정부가 소탐대실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스리랑카 정부는 한국정부의 우려와 현지 투자기업의 적극적인 호소를 수용하여 2006년 이전 기존 투자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은 방침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는 앞으로 B01 17조의 경우도 투자 하한선을 증액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II. 경제

7. 경제정책

가. 정책기조

지난 78년 시장 경제체제로의 이행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매년 6%대의 성장을 이어나온 점을 감안, 외국인 투자에 대해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확대하고 이를 통한 고용증대 및 수출확대 그리고 성장을 도모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운용의 중점을 경기부양 및 고용창출에 두고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적자 감축을 통해 인플레이 및 이자율 상승을 막으면서 이를 경제활성화로 유도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11월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여 출범한 마힌다 라자팍서 대통령의 신 정부는 대체로 개방 경제정책을 지속적으 추진하고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평화 정착, 경제개발 촉진, 인프라 구축,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국제 금융 기관과 원조국 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제약 때문에 파라팍서 대통령이 강경정책노선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대통령 선거전 당시 연합세력이었던 공산주의 계열의 국수주의자 세력인 JVP가 지지하는 좌파 정책 어젠다를 고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 다수를 점하는 빈곤계층의 생활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해 농업개혁(농지개혁과 농촌 인프라 개선 등)과 산업의 지역 분산정책이 핵심 우선 과제이지만 실천에 옮기기가 현실적으로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파간 이해 상충과 JVP의 파괴적인 행동들이 경제개혁을 실천하는데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 하고, 단기적으로 경제정책 실행의 가장 큰 제약요인은 안보상황이 악화돼 정부의 관심이 경제보다 정치문제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 주요 개발정책

주요 개발계획은 마하웰리 개발사업, 도시개발 및 주택사업, 수출가공지대 개발사업 등 3대 선도 프로젝트를 주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소요재원은 주로 국제기관의 원조 및 차관을 통해 조달되고 있다. 2000-2005 공공투자 계획 프로그램(The Public Investment Program)에 의거, 각종 개발계획이 추진되었다. 동 계획은 악화된 경상수지 및 재정적자 등으로 추진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며, UNP정권 집권 이후 의욕적인 경제정책을 추진 하고 있으나 재정적자 심화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06년 초부터 LTTE와의 실질적인 전쟁돌입으로 정치 및 안보환경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스리랑카 정부는 국제 자본시장에서 10억불을 기채하려는 계획을 5억불로 축소하였는데 이는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영국의 Fitch와 미국의 Standard & Poor' s가 스리랑카 전반적인 등급을 2006년 5월에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하에 따라 순조로운 기채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국제원조자금 유입은 국채발행액을 능가하고 있는데 2006년 상반기중에 신규 원조 약속액이 673백만 불(차관 540 백만 불, 무상원조 97백만 불)인데 이중 일본 국제 협력 은행(JBIC)의 스리랑카 남부 항구도시 Galle 항만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125백만 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밖에 대부분의 다른 국제차관은 도로, 교육, 상수도, 주택건설분야에 제공되고 있다.

- 주요 개발목표
 - 농업부문의 생산증대 및 생산성 향상 (수출작물의 경작재배치 사업 등)
 - 고도성장, 효율성 제고를 통한 실질임금상승, 고용확대
 - 관광산업개발 확대를 통한 관광객 유치 증대
 -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상품의 다양화 및 수출증대
 - 발전설비 및 통신시설, 항만개발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B00, B0T 조건의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UPFA정부의 정책 방향 : 2004년 집권

1) 비전: 안정적인 새정부, 활기찬 강한 경제, 발전된 스리랑카 건설

- 종족, 종교, 정치신조와 관계없이 모든 스리랑카 인들이 존엄성과 동등 기회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번영된 국가를 건설-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게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 당면과제인 지역사회 내 평화와 조화를 회복하며, 협상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내전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
- 경제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동시에 모든 부류의 국민들이 경제개발의 혜택을 향유하게 하여 빈곤을 퇴치함.
- 지역 사회 내 어린이, 부자, 가난한 자들 모두 최고의 교육과 지식 및 기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양질의 의료 및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범죄, 폭력을 퇴치하고 마약 및 알코올 중독을 방지 함으로서 신뢰 있는 시민사회 건
- 정책 기본틀과 정책은 세계화의 혜택을 최대화하고 세계화의 악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함
- 이러한 비전 제시와 실천을 통해 새롭고 현대화된 번영된 나라로 만들고 인간미와 품위 있는 가치가 또다시 창달되도록 함
-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신 정부를 구성하고, 신 정부는 모든 이 해당사자 부문들이 완전 참여하여 현대화되고 효율성 있고 정직하고 품위 있는 통치 시스템을 구축함- 개화되고 보살피는 정부로 변모

2) 주요 경제·외교·사회정책

□ 경제

- 총론
 - 위기 상태로 일반서민들은 극심한 물가고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생산 수단의 와해로 많은 소득창출수단이 붕괴상태에 직면함.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심해질 것임- 위기타개를 위해 강력하고 활기찬 경제를 건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신경제질서(a New Economic Order) 확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함

- 경쟁력 있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경쟁적인 참여로 국민들에 대한 책무를 다함
- 외국인 투자자에 제공하는 투자인센티브가 제대로 관리되어야 하고, 국내산업과 토착기업을 육성
- 국가자원 및 공공 공기간의 민영화를 중단하여 국가경제 재 발전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토록 함
- 식량 자급자족과 농산물 수출 극대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조치를 강구하며, 신토불이 국내 농수산물의 소비증진과 건강과 영양기준을 제고-농업연구소(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기능과 활동과정을 전면 개편, 고품질 종묘를 배양/보급, 농기계 및 장비 생산을 정부지원으로 장려- 필수적인 비료 및 농약의 대량 생산에 정부가 완전 관여- 농산물 구매, 유통 및 마케팅에 정부가 광범위하게 관여
- 중소기업의 지원책을 강화하고 수입대체산업육성에 우선을 둔 생산원가 절감 대책을 수립, 시행
- 강한 국가 경제건설을 목표로 한 투자자와 스리랑카간 상호 윈윈 전략에 부합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
- 생산공정에서 자원 효율적인 사용을 장려하고 하고 환경, 토지 및 천연자원의 난개발, 남획을 막고 환경친화적인 개발 및 생산정책 추진
- 토지사용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장기 토지개혁 계획을 수립, 시행함 - 환경 천연 자원부를 신설
- 다국적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대규모 토지판매를 허용한 법규 폐지 - 모든 주 및 디스트릭트에 환경위원회를 설치, 환경문제 처리권한을 부여
- 국민들의 일상 및 장기적인 양호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나 서비스는 국가가 담당
-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국가경제대책반을 구성, 실행력을 제고
- 기술자문 및 진행상황 점검, 일반국민과 지식인층의 의견을 수집하여 고위정책 결정자에게 제공

□ 주요 실천 계획

- 2 개년 인프라 신속개발 계획- 부동산 교환 프로그램(REEL: Real Estate Exchange Programme) 을 통해 도시 불량주택거주자용 10 만호의 주택을 건설
 - 20 만호 주택을 건설, 공무원, 플랜테이션 근로자, 교사, 개별 서비스 종사자, 어촌, 북동부 지역 전쟁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
 - 상업은행, 근로자 신탁기금(ETF: Employee's Trust Fund), 국립저축은행(NSB), 국가 모기지 저축은행(SMIB), 민간기업, 부동산 개발업체 참여 하에 진행

- 산업단지(Industrial Park)를 Wariyapola, Horana 에 설치하고 Kurunegala, Matara, Pugoda, Jaffna 에 Arthu C Clark Technology Town 과 같은 새로운 특별 IT 단지를 설치- 콜롬보 남항(Colombo South Port)개발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BIA 터미널 및 항공 화물 빌리지 프로젝트를 조속 시행
- 북동부 지역을 포함한 다수 지역에 새우양식지구, 관광지구, 섬유진흥지구, 과일 및 채소 생산가공지구 등을 촌락레벨에서 설치- 25 개 현대 농촌 촌락에 고부가가치 수출 농산물 재배를 위한 유기농업단지를 구성, 민간부문이 창립 파트너로 참여토록 유도 하며, 정부가 사업창업자금(seed money)을 제공
- 홍수통제 및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Ratnapura, Sinharaja 구릉지의 Kalu Ganga 다목적 개발 프로젝트를 착수, Hambantota 화력발전소, Kerawalapitiya 발전소 건설계획, Kothmale 북부 수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조속 시행, Beira 호수 수계 정면 공지를 레크레이션과 레저지구로 개발하고 콜롬보 운하시설을 조기 정비

3) 행정,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 헌법상 권한이 부여된 정책입안 집행 국가 위원회를 설치,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 입안 과 집행 과정을 공식화하고 체계화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각 정부부처에 운영 위원회를 설치
- 행정부를 개혁, 행정을 더욱 효율적이고 대민 봉사적으로 하며, 보다 과학적이고 광범 위한 정책개발 및 집행능력을 개발
- 외교정책은 스리랑카 주권과 독립을 보장토록 고안되고 세계 모든 국가 및 UN 등 국제 기관들과 선린 우호관계를 증진토록 함- 테러리즘, 범죄 및 형법 집행, 돈세탁 방지, 마약거래 금지, 빈곤퇴치, 남녀평등, 아동 및 장애인 보호, 환경 보호 등의 국제협약 과 조약의 체결국이 되어 스리랑카의 정치 경제사회적 목적을 증진
- 스리랑카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 사기, 부패의 물결이 확산되는 것 을 포함한 불법 활동을 억제하고 단속하기 위해 사법분야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함

□ 노동자 권리

- 노동조합 결성권을 보장하고 노동 쟁의 중 노동자들의 협상요구를 조정
- 노동자들의 정치적 희생물화를 즉시 금지하며, 정치적 희생을 당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전권 위원회를 설치
-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들의 복지와 생활수준을 향상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 현재의 연금제도 개선하여 생활비 상승과 비례하여 연금을 지급받도록 보장
- 사고 및 재난을 당한 경우 보상산식을 새롭게 바꾸고, 새로운 고용보험제도를 도입 하고 직업훈련과 교육기회를 확대

- 중재제도를 통한 모든 노사분규를 해결하는 제도를 도입, 이런 중재위원회(Boards of Arbitration)는 조정위원회의 기본형태를 취함
- 스리랑카 노동법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공장법령(Factory Ordinance), 해고법(Termination of Employment Act), 산업 분규법(Industrial Disputes Act)들을 개정해 노동자들을 위한 구제명령을 하여 임금 위원회(Wages Board) 폐지를 중단하고, 이제까지 임금 위원회가 미 설치된 모든 작업장(공장)에 임금 위원회를 설치

2005년 예산 및 중기정책방향: 2005-7년

1) 예산골자

- 공무원 급여 2년에 걸쳐 40% 인상, 공무원 주택건설 확대
- 단 2004.12월부 20% 인상: 1인당 월평균 RS 2500(약 24불)
- 공무원 복무시간 1시간 연장, 미 사용 연가는 이월 퇴직 시 현금보상 등
- 기초연금을 15% 인상(매월 최소연금 RS 750-최대 RS 1000): 2004년 12월부
- 카지노 세금을 RS 1200 만에서 RS 5000 만으로 인상
- 국내 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가공도 기준 별 관세차별화
- 전기전자제품(TV, 냉장고, 세탁기 등) 및 자동차, 보석류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인상
- 항만 공항세 인상: 1% -> 1.5%(단 수출품은 0.25%로 인하)
- 부가가치세율을 단일 15%에서 5, 15, 18%로 3개 밴드로 구분 적용
- 기초식료 15%에서 5%로 인하, 주류 및 내구사치성 소비재는 15%에서 18%로 인상
- 주류소비세 인상, 호텔 부가가치세 인상(결혼식 피로연, 홀 임대료 등)
- 법인세 공제기준이 까다로워짐
- 의제배당,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25%공제 불허, 차량수반 지출 및 유류대 공제
- 지출의 75%한도로 제한, 광고비지출 공제한도 50%로 제한 등
- 개인소득세율이 3개 종류에서 6개 종류로 세분화
- 저소득자는 부담이 낮아지고 고율소득세(30%) 납부대상을 확대함
- 준조세 신설
- 교육 0.25%(소득세, 관세, 소비세, 특별 소비세에 가산), 건설 산업세(도급 규모액 별로 업체당 0.25%, 0.25%, 0.5%, 1% 차등부과), 어린이 안전 교육환경 개선세 0.25%(소득세, 관세, 소비세, 특별소비세에 가산)
- 법정 출산휴가 기간을 늘려 1년 부여
- 기존 법정휴가에다 추가 84일 50% 고용주부담, 추가 84일 무급 휴가 가능
- 디젤 보조금 폐지

2) 2005년 예산 핵심 추진방향

- 공공재정관리의 효과성과 대국민 서비스 전달시스템의 효과성을 제고함
- 스리랑카 경제를 지식 및 기술기반경제로 전환시키며 이와 함께 국내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생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성장의 활력을 제공함

- 교육부문 예산 확대로 Rs544 억 2800 만 배정(2004 년 예산보다 Rs.124 억 7700 만 증액)
- 공공 및 민간투자를 유치할 뿐만 아니라 지방차원 및 국가전체차원에서 인프라개발을 확충하여 국민들의 인프라에 대한 접근도를 제고함.
- 도로, 전력, 교통, 통신, 항만 및 공항, 수도, 관개 시설 등 인프라에 총 Rs.554 억 7900 만 배정
- 민간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이 생산과정에서 중추역할을 담당하도록 육성 지원함
- 농업, 플랜테이션, 어업, 중소기업산업, 관광산업 분야 Rs 265 억 6100 만 배정
- 전략적인 국영기업과 공공부문이 시장의 불안정한 기능을 보완하고 때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 국가발전이 일반국민들에게 보다 의미 있게 받아지도록 함
- 보건분야 예산확대로 Rs 404 억 800 만 배정(2004 년 예산보다 Rs 101 억 1300 만 증액)
- 농어촌 지역 개발과 고용창출을 통해 빈곤인구를 줄임
 - Samurthi, 여성 직업능력향상, 분쟁지역 유민, 상이군경, 사회서비스 및 지역공동체 개발분야에 Rs 325 억 2200 만 배정
- 복지사회를 증진하며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가치를 존중하여 안정적인 민주사회를 유도함
- 은퇴연금 생활자 지원 Rs 322 억 8700 만, 과부 및 고아지원 예산 Rs 23 억 600 만 배정

3) 2005-7년 중기 경제정책 추진방향

- 정부 세입비중을 GDP 의 19%까지 올리며 재정수지흑자를 GDP 의 3%선까지 창출함
- 공공부문투자를 GDP 의 8%까지 올려 북동부지역 복구, 인적 자원개발, 기간 인프라, 지방 및 농촌지역 인프라를 확대하고 개보수 함
- 국내 채무 파이낸싱을 GDP 의 2%로 낮춰 중소기업의 자본형성 및 수익 창출을 유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개발에 필요한 금융자원 접근성을 제고함
- 중기재정전략은 환율안정과 스리랑카와 주요 교역 대상국간 이자율 차이를 축소함으로써 이자율 제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거시정책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토록 함
- 이러한 전략의 기반은 빈곤인구 감소와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국가발전에 둠
- 스리랑카는 석유 및 천연가스를 100%수 입에 의존하고 있고, 전력, 수도, 도로 등 기간 인프라를 정부에서 운영하여 저효율 고비용에 따른 서민생활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어 서민생계 안정, 지역간 계층간 빈부격차 완화가 고도 경제성장을 통한 파이확대와 함께 주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2006년 예산방향

1) 예산골자

- 빈민층 및 저소득층 보호에 중점을 둠으로써 빈부격차 및 사회불균형 완화 도모
- 세율 인상 및 은닉 세원발굴 확대, 징세행정 효율화를 통해 조세징수액의 GDP 대비 비중을 2004년 15.3%에서 2006년 15.5%로 끌어 올림
- 도로, 전력, 관개시설, 수도, 통신, 산업단지, 도시 인프라, 수송, 정보기술 등 인프라 건설 투자 확대
- 어민 및 농민 생활수준 향상 위한 세제감면 및 보조금 지원확대
- 지적 재산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낙후 지역 개발 등

2) 주요 세제 변경

- 법인세
 - 과세대상소득 Rs 5 백만 중소기업 세율을 15%로 인하
 - 과세대상소득 Rs 5 백만 이상 상장회사(주주 300 명 이상)는 법인세율을 33%에서 33 1/3%로 인상
 - 과세대상소득 Rs 5 백만 이상 기타회사(non quoted company)는 법인세율을 32.5%에서 35%로 인상
 - 스리랑카 내에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지분이 외화로 하는 기업은 15%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 핸드 룬(handloom) 산업용 기계 및 기술, 안 및 염색 재료 수입 · 대형건설기계 및 장비수입(향후 2 년 동안) · 콜롬보 및 감파하 이외 지역에서 2006.4 월부터 2 년간 Rs 30 백만 이상의 자본금으로 새로운 업종을 설립하기 위해 신규 플랜트 및 기계 수입 · 컴퓨터, 컴퓨터 및 액세서리 · 스리랑카에서 재배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고단백, 고 에너지 식품
 - 금융서비스: 15% → 20%
 - 현실적인 수입업자 마진을 반영하여, 세관은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CIF 가격에서 7%를 더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 사회책임세(Social Responsibility Levy): 0.25%→ 1%
- 인지세(Stamp Tax) 재도입: 항만 공항 개발세, debit tax(은행대면 지급거래 시 부과), 주식시장 거래를 제외한 증서 및 문서 발급 시 부과
- 경제 서비스세(Economic Service Charge)개정으로 디스트리뷰터와 중소 차(Tea) 가공 업체 부담 경감하되 징세원을 확대
 - 개별 사업체의 ESC 납부총액상한선을 Rs.50 백만에서 Rs.60 백만으로 인상, 납세의무 매출액 하한선을 Rs 40 백만으로 하향조정
 - 차 가공 공장에 대한 ESC 를 1%에서 0.25%로 인하
- 항만 도로 개발세 (PAL: Port and Airport Development Levy)
 - 가공 및 재수출용 수입품: 0.25% → 0%(면제)
 - 기타 수입품: 1.5% → 2.5%-

8.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개요

지난 2004.11.17 일 대통령 선거 이후 LTTE 의 스리랑카정부군 및 주요 인사에 대한 테러 공격 빈도 강화와 스리랑카 정부측의 보복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계에는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연합(PA: People's Alliance)의 마힌다 라자팍서 신임 대통령이 그의 장악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면 향후 12 개월 이내에 의회를 해산해 국회의원 선거를 조기에 치를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의 세계적인 경제 전문 기관인 EIU 는 최근 전망했다. 그러나 어느 당도 조기 선거에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없으며 이러한 요인 때문에 타밀 타이거 반군(LTTE)를 다루는 접근방법(전쟁과 평화, 권력 이양 양보수준 등)을 놓고 집권세력 내에 불화가 계속될 수 밖에 없어 스리랑카 정치상황은 2006-7 년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 최근 주요 정치경제 변화 요소

지난 2006 년 2 월 말에 정부와 LTTE 간 공식협상이 2003 년 4 월 이후 최초로 개최 되었는데, 평화협상 재개자체가 최근 수개월 동안 점증된 양측간 폭력 보복전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주는 요소로 한 때 작용하였다. 그러나, LTTE 의 군 고위장성 및 고위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자살 폭탄공격으로 고위장성이 암살되고, 군 초소 및 해군함정에 대한 기습 공격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맞선 정부군의 제한적 보복공격으로 평화협상에 대한 기대가 어두워지고 있으며 안보상태가 점차 악화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스리랑카정부는 폭탄 테러 공격이 콜롬보에 까지 확산됨에 따라 주요 포스트에 군경을 배치, 수시검문 등을 통해 테러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06 년 7-8 월에는 스리랑카 정부군과 LTTE 반군과의 직접 교전이 확산되어 전쟁상태에 돌입하였는데 스리랑카 동부지역 Muttur 지역의 수문을 LTTE 가 폐쇄하자 인근지역 용수 공급을 위해 스리랑카 정부군이 무력공격을 가해 수문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양측간 많은 희생이 있었으며, 8 월에는 북 Jaffna 정부군 장악지역을 탈환하려는 반군의 대 공세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양측간 치열한 교전이 있었고 동부 군항인 Trincomalee 지역 양측 진지 탈환을 위한 교전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총 통화공급이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이에 대해 염려를 하고 있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재정 적자 수준(GDP 에 점하는 비중)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인플레이 압력이 완화되고 있어 2006 년 하반기와 2007 년에는 이자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공개 시장조작을 통해 과도한 유동성을 제거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IU 는 2006 년 세계유가 전망을 배럴당 55 불에서 70 불로 현재 상황 조정함에 따라, 원유 수입국인 스리랑카의 무역수지 적자가 2006-07 년 중에 당초 전망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리랑카 경제는 2006~07 년에 연평균 6.5%의 실질성장을 기록해 지난 2004 년 5.4%, 2005 년 6.0%보다 성장이 보다 가속화 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2006 년 7.3%, 2007 년에는 5.6% 실질성장을 EIU의 2006 년 10 월 보고서는 내다보고 있다.

다. 최근 스리랑카 경제동향 및 전망(EIU 2006.10 월, 스리랑카중앙은행 최근 자료 종합)

1. 2006년 상반기 경제실적

가. 요약

- 실질 경제 성장률은 04년 5.4%, 05년, 6.0%, 금년 상반기 8.0% 성장 등 성장 모멘텀 지속
- 대외부문은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해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해외 근로자 송금 및 정부이전 수지 증가 등으로 국제수지는 흑자를 나타냄.
 - 외환 보유고는 작년12월 말 대비 크게 감소, 금년 12월에는 24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 전망
 - 최근 들어 미 달러화 대비 루피화 환율이 큰 폭으로 절하 추세에 있음.
- 소비자 물가는 작년 2월 이후 상승률이 대폭 완화돼 오다가 올 4월 이후 국내유가, 전기료 및 버스요금 등의 상향조정 등으로 상승세로 반전된 후 상승세가 가속화

나. 부문별 실적

□ 실물부문

- 작년 이후 고성장의 모멘텀이 지속돼 이번 상반기증 8.0%의 경제성장을 시현함.
 - 실질 GDP 성장률: (04) 5.4%, (05) 6.0%, (06 상반기) 8.0% (06.1/4 8.3%, 2/4 7.6%)
- 농업, 제조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 공히 성장세를 시현함.
 - 논농사, 고무 및 코코넛 작황의 호조, 수산업 회복으로 농업부문의 성장이 지속됨.
 - 제조업 부문은 수출 및 내수산업이 호조를 보임.
 - 건설업은 쓰나미 재건활동 및 신규 주택건설이 증가됨.
 - 서비스 부문은 무역·통신·운송·금융부분은 중심으로 역동적인 성장세를 나타냄.

2006년 상반기 실질 GDP 성장률(%)

분야	2006년 상반기성장률	GDP성장기여도	GDP 구성비
농림수산	7.1	15.3	16.9
광업	2.0	0.5	2.0
제조업	4.8	9.5	15.3
전력 및 용수	16.9	3.6	1.9
건설	7.5	7.3	7.7
서비스	9.1	63.8	56.3
- 도소매·호텔·식장	8.1	21.5	21.2
- 운송·저장·창고	13.0	26.3	16.8
- 금융·부동산·비즈니스 서비스	9.6	14.0	11.8
- 공공행정서비스	2.3	2.0	6.5
GDP	8.0	100.0	100.0

자료원: 스리랑카 중앙은행

□ 대외부문

- 올해 1~8월 중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24억 달러에 달함.
 - 수출 증가율을 주로 섬유 및 의류, 고무관련 제품 등 공산품 수출과 차 및 고무 등 농산품 수출의 증가에 기인함.
 - 수입은 소비재, 중간재 및 자본재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증가세를 시현함.
- 수입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소비재에 있어서는 설탕·밀·우유제품·개인용 모터장비 및 기타 내구 소비재이고, 중간재는 석유관련 제품·비료·직물·귀금속, 자본재는 수송장비·기계류·건축자재 등 임.
 - 수출 증가율(1~8월): (05년)40억5000 달러, (06년)44억1000 달러, 8.9%증
 - 수입 증가율(1~8월): (05년)56억3000 달러, (06년)68억1000 달러, 21.1%증
 - 무역 수지(1~8월): (05년)▲15억8000 달러, (06년) ▲24억 달러, 52.4%증
- 해외 근로자 송금, 정부 이전수지 증가로 국제수지는 올 8월말 현재 2억 달러 흑자 기록
 - 해외 근로자 송금(1~8): (05)12억4000 달러, (06)15억4000 달러, 24.4%증
 - 정부 이전수지(1~8): (05)5억1000 달러, (06)6억 달러, 16.6%증
- 이에 따라 총 외환 보유고를 올 8월 말 현재 25억6000 달러(3.1개월 수입 분)에 달함.
 - 작년 12월 말 현재 총 외환 보유고는 5.7개월 수입 분인 42억 달러 기록
- 미 달러화 대비 루피화 환율은 약세가 최근 들어 두들어짐.
 - 04.12월 미화 1 달러당 104.8루피에서 05.12.14일 1 달러당 101.99루피로 강세를 시현했으나 올 들어 약세로 반전, 10.27일 현재 1 달러당 106.66루피를 기록함.
 - 특히 최근 들어 미 달러화 대비 루피화의 절하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음.
 - 원유구매 및 부채상환을 위해 향후 3개월 내 8억 달러 지불될 예정이어서 정부의 개입이 없을 경우 올 말까지 미화 1 달러당 108루피까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물가부문

- 공급측면의 개선 및 통화정책 효과로 물가는 전체적으로 작년 2월 이후 상승률이 완화돼 오다가 올 4월 이후 국내유가, 전기료 및 버스요금 등의 상황조정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짐.
 - 콜롬보 소비자 가격지수(C CPI)는 올 3월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에서 9월 15.4% 증가

2. 경제전망

가. 요약

- 스리랑카 정부군과 LTTE 반군과의 무력 충돌이 2005년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 간 10월 말 제네바 평화협상 결과가 주요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극적인 타결은 기대난임.
 - 여당인 국민연합(PA)의 영향력 확대와 대통령의 정국 지배력 강화를 위해 향후 12개월 이내에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으나, 조기선거에도 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많지 않음.
 - 이 문제와 집권세력간 LTTE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통일 도출이 어렵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2007~08년의 정치안정을 지속적으로 저해할 것임.

- 2006년 스리랑카 경제는 7.3% 고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 부문 별로 대체로 견실하게 성장하고 특히 농업 부문이 2004년 말 쓰나미 영향에서 벗어나 성장 세로 반전됨.
 - 스리랑카 정부의 2006년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7%이며 성장률은 지난 30년 동안에 가장 높은 수준임.
 - 스리랑카 경제(경제규모 240억 달러)는 상반기에 8% 성장을 했으며 하반기는 고유가로 성장이 둔화됨.
- 2007~08년 경제전망은 스리랑카 내부 안보상황에 크게 좌우될 것임.
 - 내전 상태로 돌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양측간 무력 충돌이 증가할 경우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임.
 - 2005년 말부터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 정부군과 LTTE반군 간 충돌 심화로 이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
- 2007~08년 스리랑카 실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5.8%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이는 주로 통신·항만·무역·도소매·금융서비스 분야가 성장을 주도할 것임.
 - 서비스 분야 성장은 쓰나미 악 영향으로부터 관광분야 회복이 지속되고, 전력·도로·항만 등 인프라 프로젝트 착공이 쓰나미 재건 복구 사업과 함께 투자를 촉진 시키고 농촌지역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노력으로 농촌지역의 고용 및 소득창출과 민간 소비를 촉진시킬 것임.
 - 수출은 최대 수출품목인 의류분야의 완만하나마 지속적인 수출증가를 기록할 것임.
- * 의류 분야는 비록 EU 원산지 규정 충족요건이 까다로워 이용이 제한돼 있지만 EU GSP 플러스 무관세혜택을 받은 것이 도움을 주고 있음.
- 경상수지 적자는 같은 기간 동안 GDP 대비 연평균 3.6%가 전망됨.

나. 정책기조

- 개방경제정책 기조를 지속 추진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임.
 - 이는 평화협상 진전(Peace Process)과 경제개발, 인프라 건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국제 금융기관 및 외국 원조국 들의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임.
- 따라서, 라자팍서 대통령이 JVP가 주창하는 좌파논리에 강하게 경도된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 라자팍서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상업은행에게 소외계층 및 분야에 대한 대출을 강제하는 등 포퓰리스트 적인 정책을 과시하고 있지만 고유가 경제현실을 반영한 유가인상 조치 등과 같은 인기 없는 정책들도 취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호 모순된 정책 조합들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가까운 장래에 경제정책집행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악화되는 안보상태(내전 및 치안 불안)일 가능성이 있음.
-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06.9.27일 기준금리를 50 베이스 포인트 인상하여 재할인율은 9.625%, 역재 할인율(reverse repo rate)은 11.25% 기록함.
 - 과도한 인플레이 및 여신을 제한하기 위함. 향후 수개월간 인플레이 압력이 완화되면 중앙은행은 고금리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됨.

다. 부문별 정책 및 전망

○ 재정정책

- 경제진작을 위해 2006년 정부 지출액을 2005년 대비 23% 증가한 65억 달러로 책정
- 세수 증가율은 견실한 경제성장과 새로운 세제도입, 징세노력 강화로 호조를 시현
- 열악한 인프라 상태를 감안할 때 중기적으로 공공 투자확대가 필요하나 개발분야 지출 확대는 국제수지 방어 등을 위한 공적 파이낸싱 확대, 국방부문 지출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제약을 받을 것임.
- 2007년 예산안을 준비중에 있는데 국방비 지출(주로 무기 등 군수물자구입)을 45% 나 증액하고 있으며, 내년도 조기국회의원선거를 겨냥한 선심용 정부지출이 확대될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재정부문 제약을 타개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재정지출 관행을 억제하고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징세노력을 배가할 것으로 보임.
- 2006년 정부 재정적자(무상원조와 민영화 제외)는 GDP의 9%로 전망되며 2007년 및 2008년에도 유사수준을 유지

○ 통화정책

-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06.9.27일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여 재할인율은 9.625%, 역재 할인율(reverse repo rate)은 11.25% 에 달함.

* 이로써 스리랑카 기준금리는 아시아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최근 3년 반 동안에 가장 높은 수준임.

- 이는 과도한 인플레이,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대출, 루피화의 절하속도가 빨라지는 등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억제하기 위함인데 향후 수개월간 인플레이 압력이 완화되면 중앙은행은 고금리 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
- 금리가 인플레이율보다 낮아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기업들의 운전 자본 및 투자자금 확보를 위한 차입증가, 개인소비자 신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과도한 유동성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
- 이러한 우려사항들이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을 경우, 중앙은행은 2006년 말에 금리를 재인상할 가능성이 있는데 시중에 통화공급이 여전히 과도하게 높다고 보고 있음.
- 그러나, 과도한 금리인상은 인플레이억제 효과도 있지만 국가채무 상환비용이 올라가고, 경제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폭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 2006년 중 수 차례 금리인상 조치 효과가 2007년 중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가 어느 정도 잡히면 2007~08년 중에 금리를 인하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
- 과도하게 풀린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공개시장 조작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임.

○ 인플레이

- 인플레이 압력은 2006년 5월과 9월에 국제 고유가를 반영한 정부 고시 유가인상 조치로 소매분야 석유관련 제품 인상, 신용대출 급속한 확대, 공무원 급여 인상 등의 정부 지출 확대 등에 기인함.
- 콜롬보 소비자 물가지수가 9월에 전년 동월 대비 15.4%나 올라 금년도 물가전망을 어둡게 하는데 200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1%가 전망됨.

- 2007년 11~12월, 2007~08년에는 인플레이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농업 분야 회복, 농산물 및 식료품수입 관세율 인하, 루피화 절하속도가 완화되고, 국제 유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임.
- 2007~08년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7%로 전망됨

○ 환율

- 2006년 9월말부터 10월 최근까지 달러화의 주요 통화에 대한 강세 현상과 스리랑카 내 무력충돌 확산으로 인한 안보불안,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스리랑카 루피화 절하폭이 커짐.
- * 무역적자 확대를 줄이는 방안의 일환으로 중앙은행은 수입금융상의 제한조치를 올 10월에 단행(DA 거래 시 사전증거 예치금 송장가격의 50% 의무화, 은행통한 무역거래 등)
- 올 9월 말~10월 들어 루피화 가치가 사상 최저 기록을 갱신해나가고 외환시장이 투기 조짐을 보이자 중앙은행은 국제 수지 및 환율 방어에 충분한 외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환보유 전망도 낙관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 2001년 관리 변동 환율제로 전환된 이래 현재까지 계속 3개월 분 수입액을 넘는 외환 보유고를 유지해 왔으며, 올해에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증가, 해외근로자 본국 송금액 증가, 프로젝트관련 국제금융기관 및 외국 원조국 들의 차관 및 무상 원조액 유입, 민간분야로 외환 유입 등으로 이러한 목표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함(2006년 10월 중순 현재 외환보유고는 24억 달러로 3개월 치 수입액)
- * 또한 2006년 11월 1억5000만 달러 규모 신디케이트론, 비거주자에 재무부 채권 판매, 기타 프로젝트로 올 11월, 12월에 외환이 상당액 유입될 것으로 전망
- * 스리랑카 은행시스템도 14억불 규모의 순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
- 2007~08년 기간 동안 스리랑카 루피화는 달러화 대비 연평균 3.3% 절하전망인데 2006년에는 절하폭이 3% 대보다 높을 것임.
- * 루피화의 대 달러화 연평균 환율 추이: 100.5(2005년), 103.0(2006년 전망), 106.5(2007년 전망), 110.0(2008년 전망)
- 이처럼 루피화 환율이 안정적으로 절하되는 이유는 서비스 적자폭 감소, 원조 및 해외 근로자 본국송금액의 증가 등으로 외환보유고가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
- * 다만, 2006.10.28-29일 스리랑카 정부와 LTTE와 제네바 평화협상이 실패로 돌아가고 치안 및 내전 상태가 악화된다면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고 수출이 둔화되며 외국의 공적 원조자금 유입도 감소돼 루피화 절하속도가 가속화될 것임.

○ 대외부문

- 상품무역수지는 종전처럼 지속적인 적자를 시현할 것이며 2007~08년도 마찬가지임.
- 의류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지만 국내수요 호조로 특히 인프라 투자관련 및 군수물자 수입이 크게 늘어 날 것임.
- 강우량이 호조를 보여 수력발전 활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원유수입량이 감소할 것이지만 국제고유가로 원유수입액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임.

- 스리랑카 주요 교역 파트너이자 자유무역 협정 체결국으로 양국간 무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인접국 인도의 고도성장으로 스리랑카의 여러 산업에 있어 성장을 촉진할 것이며 그 중 관광분야가 가장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임.
- 2004년 말 쓰나미로 국제원고기관 및 원조국들의 원리금상환 잠정 유예조치 기간이 끝남에 따라 국제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날 것임.
- 그러나, 원조기관 및 원조국 들의 원조자금 유입지속, 해외 근로자들의 국내 송금 확대, 서비스 분야 수지의 소폭적인 개선으로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폭은 2006년 4%에서 2008년에는 3.6%로 소폭 하락할 것임.

스리랑카 주요 경제 부문별 성장추이 및 전망

연 도	2003	2004	2005	2006 전망	2007 전망	2008 전망
실질GDP 성장률	6.0	5.4	6.0	7.3	5.6	6.0
산업생산증가율	5.5	5.2	8.3	7.1	5.8	6.6
농업생산증가율	1.7	-0.8	1.5	3.8	1.2	2.7
실업률(평균)	8.4	8.5	7.7	7.6	7.6	7.7
소비자물가상승률(평균)	6.3	7.6	11.6	12.1	6.9	6.4
소비자물가상승률(연말)	5.0	13.8	8.0	11.4	6.2	5.6
은행간 단기금리	8.9	10.2	12.1	12.5	11.5	9.5
재정수지(GDP비중)	-7.1	-7.2	-7.2	-8.4	-8.6	-7.7
수출(십억 달러)	5.1	5.8	6.2	7.2	7.8	8.4
수입(십억 달러)	6.0	7.1	8.2	9.7	10.4	11.3
경상수지(십억 달러)	-0.2	-0.7	-0.7	-1.1	-1.1	-1.2
대외채무(십억 달러, 연말)	10.2	10.9	10.8	12.2	13.3	13.7
환율(미 달러화 대비, 평균)	96.52	101.19	100.5	103.0	106.5	111.0

자료원 : EIU(2006.10)

9. 주요 산업 동향

가. 농림수산업

농업은 홍차, 코코넛, 고무 등이며 수출용 홍차 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세계 최대의 홍차 생산국이다. 섬의 중앙부의 고원지대에 주로 위치한 홍차밭은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의 주요한 외화 가득원 중 하나이다. 차 수출(8억 불)은 섬유 봉제의류 수출(29억 불), 관광 수입(4억 불), 해외 취업자 국내송금(19억 불) 등과 함께 스리랑카의 4대 외화 가득원이다. (2005년 기준)

2005년 기록적인 풍작 이후, 2006년 과도한 강우량으로 2006년 1-2월 차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하였는데 이중 특히 중급 및 고급 차 생산이 각각 13.3%, 9.4% 감소하였다. 스리랑카 대표적인 수출농산물인 차는 러시아 및 CIS지역, 시리아, UAE, 이라크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일본에 대한 수출은 감소를 보이고 있다. 스리랑카산 차는 품질측면에서 경쟁국인 베트남, 인도산에 비해 우위에 있다.

2005년 차(tea) 생산량은 총 317 백만kg으로 2004년 대비 2.5% 증가했으며 국제 차시세는 2005년 중에 높은 시세를 유지하여 스리랑카 차 수출은 810백만 불로 2004년 대비 9.6% 증가

하였다. 차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309백만kg을 수출하였으며, 주력수출 시장은 러시아, UAE, 시리아 순이며 기타 주요 수출시장은 이란, 터키, 요르단, 사우디 아라비아 등이다. 이중 러시아 비중은 19%로 스리랑카산 차의 최대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2006년 1월부터 EU가 EU시장으로 반입되는 차에 대해 차생산 공장들이 EU 식품안전기준인 “HACCP: Harzard Analysis and Critical Cotrol Point)”을 전생산 과정에서 준수토록 함으로써 스리랑카 티보드(Sri Lanka Tea Board)는 스리랑카 차공장들이 식품안전표준을 획득하도록 여러가지 지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U는 2006.6월까지 경과 규정을 두어 차 수출국들이 이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어 스리랑카 차공장들은 EU 식품안전표준을 획득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2006년 정부 예산안에 의하면 농림수산업 장려를 위한 정책이 여러 개 있다. 쌀 및 차 재배 농부에게 쌀 비료 지원을 위해 약 8,500만 불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2,200만 불의 예산을 벼 구매 및 보관작업을 위해 책정하였다. 벼의 최소구매가도 US\$0.16/kg 에서 US\$ 0.17/kg 으로 인상이 되었으며 농작물 재배와 수출에 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어업개발을 위해서는 700만 불의 예산을 책정해 낚으며 새우재배를 위해 100만 불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국 벼 재배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쌀에 대해 부과하던 세금을US\$ 0.09/kg 에서 US\$ 0.19/kg으로 최근 인상하였다.

나. 제조업 일반

90년대 들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등 개방경제정책을 지향하는 스리랑카 정부정책에 힘입어 섬유봉제 등을 위주로 한 제조업 분야는 경제성장 주도 부문으로 부상하여 섬유 의류업 생산비중이 전체 산업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공산품 수출액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의 산업정책은 관세밴드(tariff band)수를 줄여 기존의 관세구조를 합리화하고 단순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의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자원부족으로 효과는 크지 않다.

스리랑카 2차 산업은 광업 및 채석, 제조, 건축, 전기 및 수도분야로 구분되며 2005년 전체로 전년 대비 8.3 %성장을 보였으며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27.0%에 달한다. 이중 제조업이 가장 큰 분야인데 제조업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16.3%에 달하였으며 제조업 부문은 6.0% 성장하였다. 스리랑카 주요 제조산업은 섬유, 의류, 혁제품, 식품, 음료, 담배, 석유, 고무 및 플라스틱, 비철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 전체 산업 생산 중 주요 부문별 생산액 비중을 보면 섬유 의류 혁제품 분야가 39%, 식품, 음료, 담배가 22%, 화학 석유 고무 및 플라스틱 21%, 비철 금속 8%, 조립금속 4%, 종이 및 제지 2% 순이다.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스리랑카의 노동시장 경직성 및 지역별 노동수급의 섬유 의류 수출산업에 치중하고 있는 산업구조상, 다자간 섬유협정(MFA) 변화에 대비한 생산성 증가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수출산업육성을 위한 도로, 항만, 통신 등의 인프라 구축도 스리랑카 산업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다. EU의 대스 수출쿼터 해제, 인도-스리랑카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거대시장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은 수출증가 및 산업생산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부문의 성장은 식품 및 음료, 담배, 섬유 및 의류, 화학, 석유,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비철금속 분야가 제조업 성장의 90%를 차지하고 2005년부터 세계 섬유쿼터가 폐지 됨에도 불구하고 섬유 및 의류분야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세계시장의 회복과 스리랑카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 주요 바이어들과의 전략적 제휴 등 긴밀한 소싱 관계 유지 등에 근거하고 있다.

포스트 MFA이후인 2005년 스리랑카 섬유산업은 당초 비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6-7%대 수출 증가가 전망되었으며, 이는 미국, EU의 중국산 섬유에 대한 새로운 세이프가드 조치 등 수입물량 규제, 스리랑카산 의류에 대한 EU의 GSP플러스 제도에 의한 무관세 혜택이 2005.7월부터 부여되고 있어 스리랑카 섬유수출산업에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바이어들도 중국일변도 소싱 전략에서 리스크 감소방안으로 소싱선을 여러 군데 두고자 하기 때문이다.

스리랑카 정부는 지방경제발전을 위해 300개 공장 계획을 2006년 예산안에 포함시켜 현재 서부지역에 중심으로 위치한 공장들을 원거리 지방에도 유치하기 위해 공장 위치에 따라 5년에서 10년 동안의 세금 감면 혜택 등의 투자지원정책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 제도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조건이 Rs 3000만불(약 US\$ 30만불)이상의 투자와 2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또한 추가 혜택으로 공장에 설치되는 수입기계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이 계획은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영어 학원, IT 기술 학원 등 서비스 분야에까지 확장되며 현재까지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다. 관광산업

관광 산업의 발달로 서비스 산업이 일찍부터 발달하였고 최근에는 통신부분의 확장으로 서비스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북위 5-10도에 위치한 스리랑카는 태풍, 지진 등의 자연 재해가 없고 좋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 연중 내내 해변 휴양지를 이용할 수 있고 섬 중앙부에 2,000미터 이상의 고원지대가 자리잡고 있어 고원 휴양지가 발달해 있으며 아울러 고대 유적지도 발달해 있는 편이어서 종합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하다.

이러한 풍부한 관광자원 덕분에 정점에 달했던 1982년 관광수입이 전체 GDP의 14.5% (7.8억 불)에 이르는 등 스리랑카의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1983년 내전 발생 이후 관광산업이 침체를 겪고 있었지만 2002년부터 평화가 내도 하고 스리랑카가 주요 국들과 좌석공유협정 체결을 확대하고, 경기호전에 따라 호텔 등 숙박시설 건축 촉진 등으로 관광 산업이 다시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스리랑카를 내방한 외국 관광객수는 2001년 33.7만 명, 2002년 39.4만 명, 2003년 50.1만 명, 2004년 56.6만 명, 2005년 54.9만 명을 기록 했으며, 관광산업의 총 수익도 2002년 248백만 불에서 2003년에는 324백만 불, 2004년 413백만 불, 2005년 329백만 불을 기록하였다. 2005년 관광산업 총 수익이 감소한 것은 2004년 말 쓰나미 대피해 여파로 관광객 수가 줄고 호텔룸 공실률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쓰나미 피해 이후 줄어든 관광객수가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1~5월 방문한 관광객수는 253,136명으로 전년동기 비교 21.5% 늘어났다. 국가별로 인도가 73,548명, 26.5%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영국이 38,420, 19% 증가 이어서 독일이 24,000명으로 46%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라. 통신 및 IT분야

통신분야는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외국인 투자유치, 1981년부터 정부 규제완화로 경쟁이 도입되고 인프라 여건이 개선되면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997년 통신 현대

화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프라 투자가 증가되어 통신 환경이 개선된 데 힘입어 통신 분야는 연평균 25%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구 100명당 전화보급률은 2005년 6.3명 이며 핸드폰 보급은 연간 50% 대 성장을 하여 핸드폰 사용인구는 2004년 221만 명에서 2005년에는 393만 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2006.1-3월 핸드폰가입자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9% 증가하였으며, 이제 스리랑카인 100명중 19명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2005년 3월에는 100명중 13명꼴로 핸드폰 보급되어 있었다.

최근 섬유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수출산업의 다양화를 위해 스리랑카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인터넷 및 이메일 사용자가 2001년 6.2만 명에서 2002년 7만 명, 2003년에는 8.6만 명, 2004년 9.3만 명, 2005년 11.5만 명으로 연간 20%대 내외의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인터넷 저변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확대, 인터넷 망 등의 인프라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라서 정부의 육성 의지에 비해 실제 성장 속도는 느린 편이다. 스리랑카 통신 부문은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고정전화 라인수가 2005년에 100만을 돌파한 120만을 기록하여 2004년 라인수 991,239보다 25.5%성장하였다.

스리랑카 주요 민간무선통신사업자인 Lanka Bell과 Suntel의CDMA기술도입과 정부의 고정 통신사업의 진출 허용으로 가입자수는 2004년 130,771명에서 2005년 289,933명으로 122% 증가하였다. 이러한 통신시장 개발추세 하에서 이동통신부문이 가장 눈부신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2005년 핸드폰 가입자수는 340만 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53.5% 증가하였다.

인터넷 가입자수는 국제 기준으로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만 괄목할 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2005년 가입자수는 전년 대비 23.3% 증가하여 총 115,072명을 기록하였다.

통신부문은 2006년에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는 주요 이동통신회사들이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투자액을 늘리고 있기 때문임. 스리랑카 최대 이동통신사인 Dialog Telekom(말레이시아 국영 통신사 자회사)는 통화가 터지는 지역을 늘리기 위해 기지국수를 600개에서 2006년 말까지 1000개로 늘리기 위해 추가로 150백만 불을 투자하겠다고 2006년 3월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핸드폰가입자수를 200만 명에서 2006년 말까지 30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이 이 회사의 내부 목표이며, 스리랑카 시장점유율은 2005년 말 기준 70%에 달한다. 고객들이 보다 개선된 성능의 브로드 밴드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광섬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3G네트워크를 도입하여 금년도에 3G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Dialog Telekom의 스리랑카 농촌지역의 적극적인 시장공략은 순이익의 급증으로 투자 여력이 많아졌기 때문인데 2005년 순이익은 70백만 불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였는데, 이 회사는 저소득층이 보다 편리하고 요금부담에 큰 우려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선납 전화 카드(prepaid call cards)를 스리랑카 시장에 최초로 도입한 바 있는데, 2005년에 선납 카드 방식의 핸드폰 가입자수는 170만 명으로 무려 63% 증가하여 선납카드 부문은 전체 매출액의 37%를 점하고 있다.

선납카드 방식이란 예컨대 RS 1000(10불 상당)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기본 통화료 필요 없이 사용한 만큼만 자동적으로 통화료가 나가고 통화료가 이 금액을 넘어서면 접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은 소액 사용자들은 전화비 관리가 쉽고 오히려 경제적이다.

Dialog Telekom은 2006년 1월 유럽 최대의 이동통신사인 Vodafone(영국 소재)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해외 여행객들과 국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는 보다 다양한 범위의 상품과 서비스를 양 회사들이 개발하고 상호 이용토록 함으로써 스리랑카 이동통신 시장 선도 위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스리랑카 다른 경쟁 이동통신사인 Celltel과 Tritel사도 네트워크 확대 투자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스리랑카 2대 이동통신 사업자인 Celltel사(룩셈부르크 소재 Millicom International Cellular 소유)는 중계탑 750개를 새로 설치하기 위해 US \$ 100만을 투자 하겠다고 2006년 3월 발표하였다. 특기할 사항은 반군인 LTTE가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스리랑카 북부 및 동부지역에 이중 500개 중계탑을 세워 이들 지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인데 LTTE와 정부군간 대치국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투자계획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이다.

스리랑카 유일의 민간 공중전화사업자인Tritel사는 최신 CDMA기술을 도입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는데, 향후 3년간 35백 만 불을 투자하여 20,000개 이상의 공중전화 (pay phones)를 설치하고, 서비스 지역을 중부 지역은 아누라다푸라, 남부 지역은 골, 항반토타, 칼루타라, 탕갈라, 동부지역은 바티칼로아까지 확대하고자 하고 있음. 현재 이 회사의 고객은 35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 IT 산업 개황

스리랑카는 기존의 농업중심 국가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인 ICT 산업을 적극 육성해 빈곤의 감소와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식과 부의 재분배를 꾀하고 있다.

- 전반적인 ITC 인프라 수준(정보 통신 인프라 개략적 수치)
 - 3 개의 고정, 무선 로컬 루프 회선 제공 회사(일반 전화 회선)
 - 4 개의 모바일 통신 회사
 - 5 개의 공중 전화 제공자
 - 7 개 등록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3 개의 미등록 ISP (SLT 회선이용)
 - 데이터 통신 가입자 수 10 만 명 돌파, 한 개의 계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사용자는 훨씬 증가
- 산업 전반적 현황(회사 수, 월급, 공용어)
 - ICT 기업 수 Software 회사만 60 개 정도로 추산, Hardware Dealer 까지 포함하는 경우 100 개 이상으로 추산됨
 - 소프트웨어 개발자 월급수준: 220~250 불(초보 개발자), 300~350 불(중급개발자), 550~650 불 (Project Manager 급)(비고: 일반 대졸사무직 초임월급수준 140 불)
 - ICT 부문의 필수인력으로 평가되면 급여 인상율이 매우 높아짐
 - 입찰관련 Official Language: 일반적으로 ITC 분야에서는 공용어인 영어사용, 싱할라와 타밀어의 사용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 IT 부문 전문인력 현황
 - 1999년에는 6000 명에 불과, 2004년 말 20,276 명으로 2003년 말 대비 무려 30% 증가
 - 향후 수년간 연간 30%에 가까운 증가세 시현전망
 - ICT(정보통신기술) 제품생산 및 서비스공급자가 IT 인력의 47%를 고용하고 있으며, ICT 유저는 43%를 고용하고 있음(이중 공공부문 유저는 9%만 고용)
 - IT 부문 전반적인 이직률은 1999년 19%에서 2004년에는 6.6%로 크게 안정됨(양호한 보상체제가 이직률을 낮추는 주요 요인)
 - 인도 IT 부문은 정반대방향: 이직률은 2002년 6%에서 2004년에는 17%로 높아짐(2004년 중 인도 상위 5위 IT 기업 8,000명 이상의 인력이 자발적으로 이직)
 - 새로운 IT 아웃소싱 기지로 떠오르고 있는 필리핀 이직률은 스리랑카와 거의 비슷한 8% 수준임

- IT 전문인력 수요 현황 및 전망
 - 2005년 5,724 명이 신규 수요 발생, 2006년에는 추가로 5,034 명 수요 발생전망
 - 2005년 약 4,300 명의 졸업자가 IT 산업에서 필요하나 공급은 약 3,600 명에 그침

□ 통신

데이터 통신(Internet, e-mail) 가입자 수도 아직 12만 명 수준으로 걸음마 수준이긴 하지만 그 증가 추세가 상당히 빠른 편이며, 2005년 4분기부터 스리랑카통신(SLT)에서 콜롬보 외곽지역과 캔디지역을 포함한 대도시지역에 광역 ADS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도 이외의 도시에는 Lease Line 형식으로 데이터 통신망임대를 하고 있어 앞으로 인터넷 사용자수는 더욱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 서비스 가입자수는 콜롬보의 64%에 비해서 타 지역은 10%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더 많은 설비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시장성과 발전가능성이 높다. 특히 Central Province의 Kandy 지역의 경우 인구는 콜롬보의 50% 정도인데 반해서 고정 회선수는 15%에 불과하여 성장 여력이 높다.

1) 유선 전화

1991년에 공기업인 Sri Lanka Telecom 설립되었고 1996년에 공개 유한 책임 회사가 되고 1997년 일본 NTT에서 2억 2500만 불을 투자하여 35%의 주식을 보유한 최대 지주가 되었다. 유선전화 시장은 2002년을 기점으로 무선전화에 비해 가입자가 떨어지는 선진국형 전화 가입자 구도로 탈바꿈하고 있다. 일본의 NTT와 합작 회사인 Sri Lanka Telecom을 필두로 ADSL, ISDN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년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여 Sri Lanka Telecom은 인프라 확대 및 현대화에 매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현재 유선전화는 Sri Lanka Telecom과 Lanka Bell, Suntel 3사가 경쟁하고 있으며, Sri Lanka Telecom이 가장 많은 가입자 수(전체 가입자의 87%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2) 무선 통신

4개의 무선통신 사업자가 있는데 Dialog Telekom, Celltel, Mobitel, Hutch이다. Dialog Telekom이 가입자수가 가장 많으며 Celltel은 Millicom의 스리랑카 현지 법인으로 1989년에 처음으로 무선 통신을 도입했다. 일본이 대주주인 SLT에서 경영하는 Mobitel이 1993년 2월 설립했으며, Dialog Telekom은 1993년 말레이시아의 TM(Telekom Malaysia)이

스리랑카에 설립한 현지 법인으로 출발은 Big 3 중 가장 늦었지만 공격경영과 차별화되고 현지화된 서비스로 많은 가입자를 선정했다.

무선전화 가입자수가 2002년을 기점으로 유선전화 가입자수를 넘어섰는데, 1996년 9만 명에 이르던 가입자수는 2002년에 10배인 90만 명으로 2005년 말 기준 340만 명으로 40배 가까이 늘어났다. 가입자도 전체 인구의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7%에 달했다.

스리랑카가 남아시아 7개국 대비 이동전화 보급율과 발전속도에서 앞선 이유는 문맹률이 10%를 넘지 않는데다가 영어를 주로 사용함으로써 최신 기술을 거부감 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인데, 영어가 공용어라는 점이 이동통신발전에 상당히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18세에서 35세까지의 인구가 매우 강한 테크노 세비(Techno Savvy: 최신 기술을 동경하는 마니아적 성향이 강한)적인 성격을 지녀 최신 IT 장비 구매 욕심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이 저렴한 가격으로 통신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 인도에서 넘어오는 모조품이나 유럽에서 수입한 리퍼비쉬드 제품, 이미 외국서 사용하고 버린 물건을 케이스만 바꾸어 파는 중고품, 밀수품들이 많아 트리휠(교통수단) 드라이버나 시장 일용 근로자들도 이동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도 사용할 수 있는 프리페이드 요금 지불시스템을 주 시스템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기본요금이 전혀 없고 자신이 쓰는 만큼만 돈을 내는 프리페이드 시스템을 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스리랑카의 이동전화는 저소득층에게는 받기만 하는 전화의 성격이 강하다. 우리나라만해도 대부분의 전화가 사용 후 지로용지를 받는 시스템인데 반해 유럽과 미국이 채택한 카드충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요금 조절을 편하게 할 수 있다.

마. 항만

콜롬보항의 화물처리물량 증가는 인상적인데, 총 컨테이너처리량은 2004년 220만 TEU에서 2005년 250만 TEU로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환적 서비스(주로 인도항 화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인데 환적 물동량은 2004년 150만 TEU에서 2005년 170만 TEU로 증가 하였다.

콜롬보 항 화물처리 물량은 2006년에도 견실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1분기 컨테이너 처리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9% 증가한 647,977 TEU, 환적 물량은 20% 증가한 47,417 TEU를 기록하였다. 스리랑카 국영 스리랑카 항만청(SLPA)의 새로운 사업개발과 공격적인 마케팅 캠페인이 지난2년간 콜롬보항의 화물 처리량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스리랑카 항만청은 방글라데시 치타공, 파키스탄 카라치 환적화물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feeder 서비스 시장개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는 콜롬보항이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주요 동서 해상 운송라인에 가까운 지리적인 전략적 위치를 활용하여 남아시아 국제 환적 화물 중심 허브화 전략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1차로 콜롬보항과 카라치항, 치타공을 오가는 컨테이너선 2척(각각 1,000TEU급)을 용선하여 주요 해운회사로부터 확정 오더를 받고 있어, 이들 컨테이너선은 매년 각각 90,000TEU 환적 수요를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스리랑카국영 해운공사(SCSL)은 이란과 1척의 유조선(원유적재용량 95,000-100,000톤)과 2척의 컨테이너선 구매협정을 최근 체결하였는데 이란 교통부가 정부 대 정부구매방식으로 장기 크레디트라인을 제공하였다. 2척 컨테이너선은 적재용량이 각각 500TEU와 1,000TEU이며 구입가격은 컨테이너선은 2척에 20백만불, 유조선은 40백만불로 알려져 있다. 구입한 컨테이너선은 남아시아 지역에 SCSL이 피더서비스 시장을 개척하는데 사용된다.

바. 석유 및 가스

2006년 3월 스리랑카 석유부는 노르웨이 지질데이터 회사인 TGS-NOPEC사를 지정하여 2개 해저지질조사를 수행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은 스리랑카 중서부 해안지역인 Mannar 타운 근해인 Cauvery 해분인데, 이 지역은 매장량이 많지는 않지만 원유 및 천연 가스가 일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조사를 기반으로 스리랑카 정부는 2006년 하반기에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여 8-9개 광구 탐사 입찰을 추진할 계획인데 추정매장량은 10백만-15백만 배럴로 추정된다.

국제입찰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스리랑카 정부는 대안으로 외국정부(인도, 또는 중국이 가능성이 높음)와 파트너십을 통해 채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 유일의 정유공장의 시설확장 및 현대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소프트 론 도입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 2005년 말 이전 계획안은 스리랑카 석유공사(CPC)가 미국계 기업인 Global Energy and Industrial Operation과 합작을 통해 상기 시설 확대 및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2005년 말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구조조정을 우려한 CPC노조의 반대압력과 선거정국으로 인해 이 합작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이 프로젝트는 정유생산능력을 일일 50,000배럴에서 100,000배럴로 2배 증가하는 것인데 사우디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고 있어 사우디 정부가 5억불 규모의 파이낸싱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 투자계획은 미국의 Global Energy and Industrial Operation 투자계획인 8억불을 투자하여 일일 생산능력 150,000배럴로 증가시키는데 계획안보다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사. 전력

그 동안 수년간 지연되어왔던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6년 3월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정부와 300MW용량의 화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발전소는 Puttalam 디스트릭트의 Norochcholai 인근에 소재하며 주 계약자는 중국 국영 China National Machinery Corporation으로 BOT(build own transfer)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프로젝트는 4억 55백만 불이 소요되는데 155Km 송전선, 화물 및 석탄처리 시설 등 지원 인프라 건설비를 포함되며 소요 자금은 중국정부가 제공하는 양허성 저리차관으로 조달되며 2006년 말 이전에 착공하여 발전소는 2010년 3월에 가동될 전망이다. 한편, 스리랑카 정부는 발전 용량 확대 조치 일환으로 국영 실론 전력공사(CEB)와 인도 국영 화력 공사(NTPC: India's National Thermal Power Corporation)간 제 2 화력발전소(동부지방 Trincomalee 소재) 건설 파이낸싱 계약초안을 2006년 3월에 승인하였다.

이 건설안은 양측간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250MW 용량의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2단계에 걸쳐 건설하는 것임. 합작사는 CEB 및 NTPC 양측이 지분을 50:50 균등하게 소유하며 총 투자액은 4.5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리랑카 전력산업 구조개선 필요성이 그 동안 오랫동안 제기되었고 실행이 지연되어 왔는데 스리랑카는 수력발전 의존도가 총 설비용량의 약 54%에 달할 정도로 과도하게 의존 하여 가뭄이 들면 전력수급에 큰 차질이 초래되고 부족분을 값비싼 디젤발전 및 개인 제너레이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콜롬보를 제외하고는 전력부족 및 단전이 일상적이다.

원유 및 천연가스 국내생산이 전무한 스리랑카로서는 발전단가가 높은 디젤발전에 의존이라 최근의 국제고유가 시대 하에서 원유수입에 막대한 외화를 지불하고 있어 무역수지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남아시아 중에서 스리랑카 전력요금이 가장 비싸 스리랑카제조상품의 국제경쟁력 약화원인이 되어 왔다. 그러나, 환경오염을 우려한 환경단체의 소송으로 과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추진이 크게 지연되어 왔는데, 환경보다 경제발전과 전체 민생이 우선이라는 대의가 대세로 다시 받아들여진 것이다.

아. 도로 및 철도

스리랑카정부는 도로와 철도망 개선을 위해 인도자본의 참여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질적인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콜롬보에 10억불 규모의 대중 급행 운송 시스템(mass rapid transport system)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인도소재 NEB Infrastructure Ltd 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움과 2005년 5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컨소시움은 독일 Siemens, 말레이시아 OPUS International, 인도 UTI 은행이다. 콜롬보의 좁은 도로망과 증가일로 차량, 열악한 대중교통시설로 출퇴근의 상습적인 정체는 물론 일반서민들의 출퇴근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인도 기술 경제 서비스(RITES)와 인도철도부의 해외영업부문인 인도 철도건설 공사(IRCON)와 공동으로 스리랑카 남부 Matara와 콜롬보구간의 철도개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 중에 있다.

그 동안 자원조달문제로 10여 년 간 지연되었던 Colombo-Katunayake 익스프레스 웨이 프로젝트는 콜롬보와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익스프레스 도로 신설프로젝트로 중국 국영 China Metallurgical Construction Corporation(MCC)와 2006년 5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계약의 자금조달방안에 대해 일부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 즉, MCC를 소유하고 있는 중국정부가 중국수출입은행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할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중국수출입 은행이 스리랑카정부의 이와 같은 요청에 답신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총US \$292백만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의 시급성 때문에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스리랑카 정부는 필요하다면 상업차관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10. 정보조사 자료원

스리랑카는 시장규모가 작은 개도국인 관계로 정보조사전문기관이 거의 부재중이며 정부기관 홈페이지에는 재정기획부, 중앙은행, 투자청(BOI), 관세청, 상무부 정도가 참고할 만한 자료를 인터넷에 올려놓고 있으며 나머지 정부기관은 홈페이지에 정책 및 통계정보를 거의 게재하지 않으며 게재하더라도 2-3년 전의 소수 낡은 데이터가 대부분이다.

이중 가장 믿을 만 하고 업데이트되는 정책 및 통계자료는 스리랑카 중앙은행이며, 특히 연차보고서, 경제사회통계, 월간통계, 주간통계 등에는 생산, 소비, 물가, 무역, 금리, 국제수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재무기획부의 예산안,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플랜, 연차보고서 등을 참고하면 스리랑카 재정 및 원조프로젝트 등을 개괄적으로 알 수 있다. 전문 정보조사 기관이나 잡지, 산업별 주요 기업별 시장점유율과 같은 상품 및 산업 조사에 활용할 만한 주요 참고자료가 거의 없어 조사에 애로가 많다.

따라서, 영자신문지인 Daily Mirror, Daily News등의 경제비즈니스섹션, 경제전문주간지인 Sri Lanka Business Standard, 월간지인 LMD, Business Today가 주요 정보원이나 월간지중 LMD를 제외하고는 배포부수가 많지 않아 폐간이 잦다.

스리랑카에 차관 및 프로젝트 원조를 공여하고 있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의 스리랑카 경제, 수행 프로젝트관련 산업보고서가 유용하게 활용되지만 포함범위가 좁고 자료 발표가 부정기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기업관련협회로는 실론 상공회의소, 스리랑카 의류수출협회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실론 상공회의소는 분기별 보고서, 의류월간지를 간행하고 있다.

< 주요정보조사 사이트 >

□ 정부기관

- 스리랑카 정부 공식 언론 사이트
 - <http://www.news.lk/>
- 스리랑카 정부 공식 사이트
 - <http://www.gov.lk>
- 스리랑카 재무기획부
 - <http://www.erd.gov.lk>
- 스리랑카 투자청
 - <http://www.boi.lk>
- 스리랑카 중앙은행
 - <http://www.centralbanklanka.org>
- 스리랑카 통계청
 - <http://www.statistics.gov.lk>
- 스리랑카 조달청
 - <http://www.npa.gov.lk>
- 스리랑카 관세청
 - <http://www.customs.gov.lk>

- 수출개발청(Export Development Board)
- <http://www.srilankabusiness.com/>

□ 민간협회 및 단체

- 스리랑카 상공회의소
- <http://www.chamber.lk/>
- 스리랑카 의류 수출 협회
- <http://www.garments.lk/>
- 지방상공회의소(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http://www.nccsl.lk/>
- 스리랑카 전화번호부
- <http://www.yellowpages.lk>
- 스리랑카 증권 거래소
- <http://www.cse.lk>

□ 민간정보조사기관(다국적기업, 시장조사기관 등)

- PriceWaterhouseCoopers(세계적인 미국계 회계 세무 경영컨설팅업체)
- 전화: 94-(0)11-4719838,
- 팩스: 94-(0)11-2342389
- 이메일: deva.rodrigo@lk.pwc.com
- Kompass 스리랑카지사(세계적인 미국계 비즈니스 디렉토리 업체)
- 전화: 94-(0)11-2597551
- 팩스: 94-(0)11-2586135
- 이메일: compass@sltnet.lk
- 홈페이지: www.kompass.lk
- Assignment Ltd(시장조사)
- 전화: 94-(0)11-2589705
- 팩스: 94-(0)11-2580616
- 이메일: jimgroup@sltnet.lk
- Key Research & Information Ltd(시장조사)
- 전화: 94-(0)11-2506530
- 팩스: 94-(0)11-2586220
- 이메일: key.research@lanka.com.lk

Ⅲ. 경제무역통계

11. 거시경제통계

연 도	2003	2004	2005	2006 전망	2007 전망	2008 전망
실질 GDP 성장률	6.0	5.4	6.0	7.3	5.6	5.9
산업생산증가율	5.5	5.2	8.3	5.3	5.8	6.6
농업생산증가율	1.7	-0.8	1.5	3.8	1.2	2.7
실업률(평균)	8.4	8.5	7.7	7.6	7.6	7.7
소비자물가상승률(평균)	6.3	7.6	11.6	12.7	7.1	6.4
소비자물가상승률(연말)	5.0	13.8	8.0	13.2	6.2	5.6
은행간 단기금리	8.9	10.2	10.8	12.5	11.5	10.5
재정수지(GDP 비중)	-7.1	-7.7	-7.2	-8.4	-8.5	-7.7
수출(십억 달러)	5.1	5.8	6.2	7.1	7.8	8.5
수입(십억 달러)	6.0	7.1	8.2	9.6	10.3	11.4
경상수지(십억 달러)	-0.2	-0.7	-0.7	-1.0	-0.7	-1.0
대외채무(십억 달러, 연말)	10.2	10.9	10.8	12.0	13.3	13.8
환율(미달러화대비, 평균)	96.52	101.19	100.5	103.8	107.4	110.9

자료원: 중앙은행 Annual Report 2005, Economic Indicators June 2006, EIU 2006. 11. 현재 최신자료

주1: 총 외채는 중장기 및 단기외채, 정부, 정부지급보증 국영기업과 민간부문, 정부 지급 보증 없는 국영기업과 민간부문, IMF 인출액을 포함

12. 무역통계

가. 국가별 교역 현황

수입

(단위: 백 만불)

수입대상국	2002	2003	2004	2005	2006(1~9)
총계	6,106	6,672	8,000	8,863	7,308
1. 인도	834	1,073	1,354	1,440	1,338
2. 싱가포르	433	522	729	738	688
3. 홍콩	491	559	618	648	476
4. 중국	258	329	452	631	558
5. 이란	184	250	458	498	624
6. 일본	355	448	412	380	339
7. 말레이시아	204	270	314	334	375
8. 대만	288	276	290	279	209
9. 영국	262	272	316	277	234
10. 벨지움	168	197	206	243	190
13. 한국	303	283	246	210	140

자료원 : 스리랑카 관세청 2006.11. 스리랑카 중앙은행 연차보고서 2006.5

주요 교역대상국은 인도, 미국, 영국, 홍콩, 중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 대만, 독일 등이다. 특히 인도와의 FTA 발효와 지리적 문화적 유사성으로 양국간 교역이 급증하고 있으며 대 중국 수입(홍콩 포함)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수출은 최대 수출 품목인 의류 등 섬유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 영국 등 서유럽이며 수입은 공산품, 의류 등 경공업 원부자재, 식품 등 농산물 주요 수입선인 인도, 싱가포르, 홍콩, 중국, 이란,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등이 주요 수입대상국이다.

수출

(단위: 백 만불)

수출대상국	2002	2003	2004	2005	2006(1~9)
총계	4,699	5,133	5,757	6,347	4,923
1. 미국	1,922	1,778	1,858	1,986	1,468
2. 영국	590	640	774	776	638
3. 인도	170	245	383	559	398
4. 독일	199	232	272	271	231
5. 벨지움	258	242	196	258	238
6. 이탈리아	71	116	153	199	169
7. 러시아	127	140	150	158	136
8. UAE	119	163	117	145	130
9. 일본	140	162	155	143	120
10. 프랑스	93	92	100	120	107

자료원 : 스리랑카 관세청 2006.11. 스리랑카 중앙은행 연차보고서 2006.5

대 스리랑카 연도별 수출 현황

(단위: 천불)

연도	금액	증가율	월별	2005년도		2006년도(1월-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1	334,646	-12	1	16,122	-1.4	16,720	3.7
2002	304,566	-9	2	15,566	-13.0	17,211	10.6
2003	286,788	-5.8	3	18,293	-13.0	18,259	-0.2
2004	243,042	-15.2	4	19,150	-19.3	18,708	-2.3
2005	204,871	-15.7	5	17,936	-18.5	12,702	-29.2
2006(1-10)	161,185	-6.9	6	18,424	-18.0	15,705	-14.8
			7	16,761	-14.5	15,661	-6.6
			8	13,303	-11.8	16,583	24.7
			9	20,380	-8.2	15,082	-26.0
			10	17,131	-24.3	14,630	-14.6

자료원 : KITA 무역통계, 2006. 11. 현재 최신자료

대 스리랑카 연도별 수입 현황

(단위: 천불)

연도	금액	증가율	월별	2005년도		2006년도(1월-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1	41,232	-28.9	1	2,538	-34.6	2,777	9.4
2002	38,762	-6	2	4,438	9.9	3,011	-32.2
2003	30,636	-21	3	3,700	6.1	4,840	30.8
2004	44,751	46.1	4	2,529	-12.1	2,764	9.3
2005	38,083	-14.9	5	3,135	-4.0	3,734	19.1
2006(1-8)	26,164	3.2	6	2,776	-39.2	2,702	-2.6
			7	4,031	36.9	3,757	-6.8
			8	2,210	-48.6	2,580	16.8
			9	4,194	-1.4	3,811	-9.1
			10	2,958	-16.8	2,442	-17.5

자료원 : KITA 무역통계, 2006. 9. 현재 최신자료

대 스리랑카 수출현황

(단위: 천불, MTI 2단위)

순위	품목명	2005년		2006년(1월~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204,871	-15.7	161,185	-6.9
1	직물	76,289	-35.5	52,668	-20.8
2	산업용전자제품	16,516	292.7	17,859	38.0
3	철강제품	9,263	-14.8	13,071	78.6
4	석유화학제품	18,042	-7.6	13,617	-16.2
5	제지원료 및 종이제품	11,767	17	9,132	-3.5
6	산업기계	9,018	182.7	6,752	1.1
7	정밀화학제품	6,900	56.6	7,049	28.0
8	수송기계	5,590	21.7	6,484	46.0
9	섬유사	7,168	3.8	5,502	-11.1
10	비철금속제품	5,573	-36.6	4,842	11.1
11	섬유제품	7,507	-31.8	3,784	-45.6
12	플라스틱제품	6,402	-14.7	3,709	-30.4
13	가정용전자제품	4,459	-40.8	2,695	-14.5
14	전자부품	2,558	41.4	1,967	-10.9
15	고무제품	1,886	16.9	2,070	37.6
16	기타생활용품	2,165	-54.9	1,456	-29.9
17	중전(heavy electric) 기기	895	46.7	1,069	129.0
18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951	-19	1,040	64.7
19	기타철강금속제품	1,373	3.3	956	-21.2
20	공예품	502	67.1	551	32.7

자료원 : KITA 무역통계, 2006. 11. 현재 최신정보

대 스리랑카 수입현황

(단위: 천불, MTI 2단위)

순위	품목명	2005		2006(1월~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8,083	-14.9	32,417	-0.3
1	농산물	21,376	-19.5	13,147	-27.3
2	섬유제품	9,572	-2.1	10,076	17.8
3	임산물	742	-37.6	2,178	305.1
4	고무제품	1,316	11.7	1,808	68.4
5	비금속광물	1,261	82.6	1,265	26.7
6	수산물	951	-9.1	890	18.6
7	섬유사	1,025	4.6	870	-6.3
8	산업용전자제품	27	-78.8	292	235.7
9	산업기계	21	-60	284	8,109.4
10	수송기계	98	12.9	292	235.7

자료원 : KITA 무역통계, 2006.11. 현재 최신정보

13. 투자통계

가.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

외국인 주요 직접 투자분야는 전력 및 에너지, 항만개발, 통신 및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스리랑카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스리랑카 내수시장이 비교적 협소하기 때문에 인프라, 통신 등 서비스, 대형 오피스 및 호텔 콘도미니엄 건설분야를 제외하고는 투자 규모가 소액이다. 내수시장을 겨냥하지 않은 외국인 직접투자유입은 스리랑카의 평화도래 여부, FTA를 활용한 인도 등 인접국 우회진출 거점으로 활용여부, 의류 등 노동집약적인 상품의 미국 및 EU시장 우회진출(무역상 특혜 활용) 여부 등이 주요 고려요인이다.

2005년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2억9천만 불이며 2006년에는 10억불 유치에 목표이지만 이중 상당 부분이 2006년 초 마힌다 라자팍서 대통령이 인도 방문 중에 인도 대기업들이 선심성으로 약속한 금액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현재 추세로 볼 때 금년 중 10억불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콜롬보인근의 대형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아파트 및 오피스상가 등 주상복합단지 중심), 대형 인프라 투자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 계획이며, 스리랑카 정부의 대규모 제조기업 투자유치노력 등을 감안할 때 금년 중 외국인 투자 유입액 증가가 전망된다. 2006년에는 경남기업을 비롯한 국내외 자본의 고급 아파트 건설이 콜롬보도심지역에 착공 붐을 이루고 있다.

□ 스리랑카 2005년 FDI 유입 특징

통신 등 서비스와 인프라분야가 1위로 69개 프로젝트에 US \$ 151백만이 유입되었고, 2위는 섬유 및 의류 분야로 36개 프로젝트에 47백만 불에 달하였다. 외국인 신규 직접투자 유입이 봉재의류 분야에 지속되어 2005년부터 세계성유쿼터 폐지(Post MFA)로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 수출용 봉재의류 산업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신인도가 지속되고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고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평가하고 있다.

□ 스리랑카 투자청(BOI)의 투자자격 사전 심사 및 모니터링 절차 강화에 따른 여파

투자승인 프로젝트 건수와 투자 약속액 기준으로, 스리랑카 정부의 외국인 투자의 엄격한 사전 심사 기준 강화로 2005년도는 2004년도에 비해 모두 감소를 기록하였다.

- 2004 년 중 BOI 법 제 16 조와 17 조에 의거한 투자승인 프로젝트 건은 총 524 건으로 이중 235 건이 외국인 단독투자, 170 건이 합작투자, 119 건이 내국인 투자프로젝트 임
- 2005 년에 BOI 법 17 조에 의거한 투자승인 프로젝트 수는 223 건, 투자 약속액은 276 백만 불을 기록
 - 2004 년 투자승인 프로젝트수 296 건과 투자 약속액 689 백만 불에 비해 크게 감소
- 투자 약속액 기준은 2004 년 228 건 361 백만 불에서 2005 년 167 건 322 백만 불로 감소

□ 2005 년 투자승인건수 감소원인(스리랑카 중앙은행분석)

외국인 투자가 환경오염, 미풍양속 훼손, 투자 약속액 부풀리기 등으로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사회 여론화 됨에 따라 투자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과 투자의 질을 감안한 엄격한 사전 심사 절차 적용한데 기인하지만 사전심사강화로 향후 투자계약 프로젝트 중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비율의 투자가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BOI법 17조(Section 17 of the BOI Act)

BOI는 스리랑카 정부의 경제 발전 정책 및 특별히 고시된 조건들을 이행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허가는 물론 투자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또한 국세청, 세관, 외환 관리법 및 수입 규제상의 면제 등 특혜가 부여됨. BOI투자우대조치는 (1)첨단 기술,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스리랑카 수출산업의 다변화 촉진과 (2) 대규모 개발사업 특히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데 있음. BOI 17조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인센티브 부여(Tax Holidays)외에도 주식매매차익(자본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수출입관리법의 적용 면제, 수익/배당의 본국송금가능, 수출용 상품에 투입되는 원부자재 수입 시 수입 관세 면제, 통관상 편의 등이 제공됨

스리랑카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규모 10 대국(BOI 17 조 투자)

(실행기준, 백만불)

순위	2005 년말 기준 누계액	
	투자국	투자누계액
1	싱가폴	401
2	미국	323
3	영국	305
4	말레이시아	261
5	홍콩	212
6	한국	212
7	인도	181
8	일본	120
9	호주	104
10	스위스	88

자료원: 스리랑카투자청

스리랑카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실행액 (B01 17 조 투자)을 2005년까지 누계기준으로 국별로 보면 싱가포르, 미국, 영국, 말레이시아, 홍콩, 한국 순이었다. 이중 싱가폴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 등 업무용 부동산 및 통신, 말레이시아 및 홍콩도 스리랑카 이동통신 분야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진다.

한편, 업종별로는 서비스업(통신, 호텔, 콘도미니엄, 은행 등) 투자금액이 가장 많으며, 스리랑카 최대 수출품목인 섬유의류분야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스리랑카 업종 별 대내직접투자(인가베이스)

(단위: 건, 100만 루피, %)

	2002	2003	2004				2005			
	금액	금액	건수	금액	구성비	증가율	건수	금액	구성비	증가율
식품·음료·담배·농업	3,390	9,752	33	2,090	3.0	△78.6	22	3,000	10.4	43.5
섬유·의류·피혁제품	2,107	2,722	24	5,876	8.4	115.8	36	4,751	16.5	19.1
목재, 목제품, 종이, 인쇄, 출판	509	20	4	211	0.3	981.3	5	912	3.2	332.2
화학·석유·고무·플라스틱	1,403	6,115	20	1,889	2.7	△69.1	22	2,024	7.0	6.6
비금속·광물제품	2,004	3,386	6	404	0.6	△88.1	15	593	2.1	46.8
금속가공·기계·수송기계	4,086	6,576	20	3,064	4.4	△53.4	19	1,541	5.3	△49.7
기타제조업	2,864	4,776	14	1,483	2.1	△68.9	11	826	2.9	△44.3
서비스업	15,296	43,859	173	54,689	78.5	24.7	69	15,216	52.7	△72.2
합계(기타포함)	31,658	77,699	296	69,707	100	△10.3	199	28,864	100.0	△58.6

자료원: 스리랑카 투자청(B01)

주: 미 달러 당 스리랑카 루피(RS)의 연간 평균환율 추이: 2003년 96.52, 2004년 101.19, 2005년 100.50

스리랑카 국 별·지역별 대내직접투자(인가베이스)

(단위: 건, 100만 루피, %)

	2003년	2004년				2005년			
	금액	건수	금액	구성비	증가율	건수	금액	구성비	증가율
싱가폴	3,673	17	21,294	30.5	479.8	12	3,078	10.7	△85.5
인도	10,668	25	13,427	19.3	25.9	19	1,794	6.2	△86.6
미국	423	11	10,628	15.2	2,385.1	16	1,273	4.4	△88.0
영국	5,190	28	7,803	11.2	50.3	33	2,647	9.2	△66.1
한국	644	4	2,072	3.0	222.0	8	264	0.9	18.9
말레이시아	9,138	5	1,796	2.6	△80.3	8	10,005	34.7	457.1
이태리	477	3	1,442	2.1	202.0	5	1,062	3.7	△26.4
네델란드	411	5	696	1.0	69.6	3	118	0.4	△83.0
중국	265	4	619	0.9	133.8	2	94	0.3	△83.0
영령버진제도	240	2	415	0.6	72.9	1	13	0.05	△84.8
몰디브	353	1	370	0.5	4.8	2	98	0.3	△73.5
일본	589	6	340	0.5	△42.3	14	412	1.4	21.2
호주	480	12	297	0.4	△38.1	6	333	1.2	12.1
복수국 합작	14,160	17	2,447	3.5	△82.7	NA	NA	NA	NA
합계(기타포함)	77,699	296	69,707	100.0	△10.3	199	28,864	100.0	△58.6

자료원: 스리랑카 투자청(B01)

주 1: 복수국 합계는 스리랑카를 제외한 외국에 한함

주 2: 일부 증자를 포함

주 3: 미 달러 당 스리랑카 루피(RS)의 연간 평균환율 추이: 2003년 96.52, 2004년 101.19, 2005년 100.50

참고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스리랑카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민영화 포함) 유입액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 259백만 불로 2003년 229백만 불 대비 13% 증가하였다. 참고로 2002년 외국인 직접투자액 197백만 불을 기록하였다. 2003년 증가원인은 주로 민영화로 30백만 불 상당의 외국인 투자액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2004년 중 B01법 제 16조와 17조에 의거 승인된 프로젝트 건은 총 524건으로 이중 235건이 외국인 단독투자, 170건이 합작투자, 119건이 내국인 투자프로젝트이다.

대 스리랑카 직접투자는 섬유중심의 한국이 주도하였으나 2000년대부터는 인도, 말레이시아, 일본, 싱가포르, 중국, 홍콩, 미국, EU, 파키스탄 등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주투자 국들이 이들 국가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스리랑카 투자청(B01)에 따르면 2004년 대내직접 투자(인가베이스)는 전년비 10.3% 감소한 697억 650만 루피(RS)로 감소하였다. 특정 투자유치분야(비전통적 농산품 수출, IT 및 연관 서비스, 전자부품)에의 투자가 부진했던 것이 주요인이었지만 2004년 4월 총선거에 의한 민수확대, 시장개방노선을 지향했던 여당후보가 노동자보호를 내건 야당으로 정권이 이양됨에 따른 정정불안, 경제구조 개혁, 규제완화 움직임이 둔화가 투자감소 요인이다.

반면, 내수호조에 서비스 산업과 MFA 폐지 후 생산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섬유의류산업의 투자가 확대되었다.

업종별로는 총 투자액의 약 80%를 점하는 최대투자업종인 서비스업투자가 전년비 24.7% 증가한 546억 8,940만 루피를 기록하였다. 또한 목재·목제품이 981.3% 증가한 2억 1,140만 루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 별로는 싱가포르가 전년의 5.8 배 증가한 212억 9,440만 루피(투자안건 17건)로 2년 연속 최대 투자국을 기록한 인도(전년비 25.95 증가한 134억 2,670만 루피)를 제쳤다.

이밖에 영국은 석유정제 플라스틱 대형투자안건(101억 루피) 때문에 24.9 배 증가한 106억 2,750만 루피(11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나. 주재국투자통계

스리랑카의 대외투자(직접투자)금액은 2004년 말 기준 49백만 불로 미미한데 대표적인 투자는 2003년 스리랑카 한 상업은행이 20백만 불을 투자하여 방글라데시 한 상업은행을 인수한 것이며, 기타는 Brandix 등 섬유업체들이 마다가스카르 등에 섬유봉제공장 투자 건이다.

2005년에 Brandix는 인도, Hayleys는 태국에 현지투자 공장 설립을 추진 하는 등 일부 스리랑카 대기업이 원료확보, 현지시장 확보목적으로 해외 직접투자를 시작하였으나 초기 국제화 단계이다.

IV. 출장가이드

14. 출장가이드

1. 기후

가. 기후특성

열대 몬순기후로서 건기와 우기로 구분되는데 시즌은 2개 몬순으로 약간 복잡한 편이다. 5-8월은 Yala 몬순으로 콜롬보를 포함한 스리랑카 남서부지역에 비를 뿌리며 건기는 12-3월 까지 지속되는데,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12월에도 비가 자주 내리고 있다. 남서부 일부 산간 지역은 연간 강우량이 최고 4,000mm에 이르는 곳도 있다.

한편, Maha몬순은 10월부터 1월에 부는데 북부 및 동부지역에 비를 뿌리며 이 지역의 건기는 5월부터 9월이다. 북부 및 동부지역은 비교적 건조하여 연간 강우량은 1,000mm 정도이다. 스리랑카는 양대 몬순기간 사이인 10-11월에는 많은 지역에 종종 폭우와 천둥 번개를 동반한다.

최근에는 쓰나미 피해 이후 기후 변동으로 인해 건기와 우기 기간이 정확히 지켜지고 있지 않다.

서남부에 해안에 위치한 최대상업도시이자 실질적 수도인 콜롬보와 저지대 해안가의 연평균 기온이 섭씨 27도 정도이며 12월부터 3월까지는 건기로서 강우량이 적은 편이며 특히 3-4월이 가장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며 5월초순경부터 우기로 접어들면서 6월까지는 더위가 한 풀 꺾인다. 우기에서도 한국과 같은 집중호우는 드물고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생활에 큰 불편은 없다. 해발 고도 500m에 위치한 내륙 주요 도시 캔디는 연평균 기온이 섭씨 20도이며, 고산지대인 누와라 엘리아는 해발 1889m에 위치하여 연평균 섭씨 16도이다.

다만 한국의 여름과 비교하여 습기가 그래도 적은 편이며 한국인 및 업체의 경우 외부 생활이 그리 많지 않아서 현지 적응이나 생활에는 큰 불편이 없는 편이다. 열대 지역이고 일년 내내 기온변화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강우량에 따른 약간의 기온변화가 있어 계절이 나누어지나 4계절이 확연히 구분되는 한국과 비교할 경우 큰 의미는 없다. 남서부 해안지역인 콜롬보 및 인근 수도권 인구밀집지대는 고온 다습하여 전자제품이나 가축제품은 손쉽게 상하며 특히 카메라의 경우 전지를 내장하여 보관할 경우 전지가 녹아내려 카메라 전체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강설은 없으며 서리는 내륙의 고산지대에서만 제한된 시기에 극히 제한적으로 경험가능하며 콜롬보를 비롯, 대다수 지역에서는 거의 경험의 불가능하다. 북서해안은 기온이 건기에 38도까지 올라가나, 산간고원 지방은 일년 내내 20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강원도 고랭지 기후와 유사한 지역이 있고 한국의 배추를 비롯한 기타 농산물을 재배하는 고랭지 농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나. 출장 시 추천복장

한국의 여름복장이 적합하다. 긴팔 또는 반팔 드레스 셔츠에 넥타이 차림이 정장이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양복상의를 입는 경우는 많지 않다. 4-5스타급 호텔은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수영복을 미리 가져와 짬을 내어 수영하면 건강관리에 좋다. 또한 콜롬보 시내 외곽에 골프장(Royal Colombo Golf Club)이 있으므로 골프장 옥외연습장에서 골프연습을 하면서

땀을 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Rs 700(7,000원)정도면 두 여 시간 연습할 수 있다. 비즈니스 미팅 시 한국의 하절기 사무실 복장인 반팔 와이셔츠 보다는 긴팔 와이셔츠 (드레스 셔츠)와 넥타이를 주로 착용한다.

2. 시차/근무시간

가. 시차

한국과의 시차는 KST -3:30시간으로 한국이 정오12:00일 때 스리랑카는 오전08:30 이며, 스리랑카는 인도와 표준시가 동일하다.

나. 근무시간

- 관 공 서: 월-금요일 09:00-17:00 근무/토, 일요일, 음력 보름날(Poya day)휴무
- 일반기업: 월-금요일 09:00-17:00 근무/토 09:00-13:00, 일요일, 음력 보름날(Poya day) 휴무. 기업에 따라서는 출근시간이 더 빠른 곳도 있음
- 은행: 월-금요일 09:00-15:00 근무/토, 일요일, 음력 보름날(Poya day)및 기타 Bank Holiday 휴무
- 상점: 월-금요일 09:00-18:00, 토요일은 09:00-13:00, 일요일, 음력 보름날(Poya day) 휴무
- 기 타
 - 우체국은 월-금요일 07:00-18:00 근무, 반다라나이케 국제 공항 내 환전소(출입국 홀 내 위치)는 24 시간 오픈. 출입국시 공항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호텔보다 환율이 좋으며, 은행 환전 영수증이 있어야 달러화로 재 환전이 됨
 - 출국 시 환전은 출국장 입구 바로 지나 2 차로 여권 및 항공권을 대조 하는 체크포인트 바로 앞에만 은행이 있고 이후에는 없기 때문에 항공사별 출국 체크인하기 전에 환전을 해야 하며 이후에는 은행이 없음
 - 호텔에서는 달러화를 숙박료로 받으며 대부분 신용카드도 받으나 달러화로 숙박료 지불 시 환율이 아주 불리함
- 참고사항: 사무직의 경우에만 상기 근무시간이 적용되며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아침을 빨리 시작하고, 연장 근무 휴일근무 등을 실시하고 있음

3. 도량형

가. 도량형

1980.1.1부터 미터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길이	mm, cm, km
무게	g, kg, ton
넓이	m ² , km ²
부피	m ³ , km ³

스리랑카 공식적인 단위는 미터제이지만 원단이나 땅, 토지인 경우에는 아래 단위도 많이 사용된다.

원단

단위	미터환산
1 Inch	2.54 cm
1 Foot	0.3048 m
1 Yard	0.9144 m

땅, 토지

단위	미터환산
1 Perch	25.3 m ²
1 Acre	4,046.8 m ²
1 Hectare	10,000 m ²

나. 전기규격

230-240V, 50Hz (정전과 전압의 불안정으로 TV, PC등 섬세한 전자제품에는 UPS를 장착하는 것이 고장 방지를 위해 바람직함)이며, 잦은 순간 정전이 수도인 콜롬보에서도 하루에 수차례 일어날 정도이나 최근 들어 전력사정과 정전상태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

다. 방송통신

한국과 달리 유럽방식을 채택TV 방송은 PAL, 이동통신은 GSM방식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 통신사업자들은 CDMA기술을 도입하여 스리랑카통신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케이블TV방송에는 CNN, BBC, 불룸버그는 물론 미국, 중국, 홍콩, 독일, 프랑스, 인도 등 외국방송 청취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콜롬보 및 인근지역에는 한국의 KBS, YTN, MBC, SBS를 수신 청취할 수 있는 시설을 장착해주는 사업체가 생겨나 식당, 일부 한인가정들이 이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4. 출입국/비자

스리랑카의 경우 비자발급에 특별한 제한요인이 없으며 입국 시 공항에서도 30일간 체류 가능한 관광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30일 이상 체류의 경우 2회에 한하여 매 1개월씩 연장 가능하다. 영주권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10년 이상 체류의 경우에도 매년 비자를 갱신하고 있다. 비자의 만료기한을 사전 확인하여 체류 도중에 만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 비자 발급처

-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
 -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교보빌딩 20층 2002호
 - 전화: 02-735-2966/7, 팩스: 02-737-9577
 - 휴일: 토, 일요일 및 한국공휴일, 스리랑카 공휴일 일부
 - 비자신청시간: 09:00-12:30, 14:00-17:00
 - 비자발급시간: 16:00-17:00
 - 소요기간: 1일(오전접수, 당일 오후 발급)

나. 입국절차

기내에서 배부되는 입국카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입국 Stamp를 찍어주며 특별한 절차는 없다. 입국 심사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다. 비자연장

스리랑카 체류 중 비자연장은 이민국(Department Immigration & Emigration, 전화 94-11-5329000 팩스 94-11-2674621; 41 Ananda Rajakaruna Mawatha Colombo 10 Sri Lanka, 업무시간 오전 9시- 오후 4시30분, 오후 3시 수수료 수납분까지 한함)에서 한다.

비자연장수수료는 연장기간, 출신국가에 따라 다르며 최초 90일 비자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인 Rs 2750, 호주인 Rs 2750, 프랑스 Rs 2380, 영국 Rs 4950, 미국 Rs 10000로 다양하다(상호 주의 원칙 적용). 비자 연장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이다.[관련 사이트: www.immigration.gov.lk/html/visa]

라. 출국 절차

공항빌딩에 들어설 때 항공권을 제시해야 하며 체크인이 끝나면 외화로만 물건을 살수 있으므로, 로비의 가게에서 남은 스리랑카 화폐로 쇼핑을 하든가, 아니면 입국 때의 환전 영수증을 제시하고 재 환전을 할 수 있다. 출국 통로를 나가면 세관검사대가 있는데 환전 범위 내의 보석류와 3Kg 이내의 휴대품은 면세구입이 가능하며 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

공항 테러 방지를 위해 공항 1km밖에서부터 군인들의 보안체크가 시작되며 공항건물 입구에 도착, 출구로 들어서면 항공권과 여권 소지자에 한해 출국가능하며 더 들어가 짐 체크를 한 후 항공사 카운터에서 티켓을 받고 그 다음 출국 심사대에서 출국신고카드와 탑승권, 여권을 제시하여 도장을 받으면 된다. 출국 라운지에는 면세점이 있다. 단 출국 시 보안 및 스리랑카산 식물, 동물, 기타 반출금지품목에 대한 검색을 위해 항공사 카운트 입구에 세관들이 모든 수하물품을 개장, 육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마. 예방접종 및 음료

황열병 감염지역(yellow fever-infected area)에서 입국 시 방역 확인증이 필요하며 여타 지역의 경우 별다른 요구사항 없다.

스리랑카는 열대 기후이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여행객이 아닌 장단기 체류자들은 한국에서 방에 걸 수 있는 모기장을 구입하여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기에 감염되는 뎅기열은 고온과 땀이 나고 온 몸에 힘이 빠지면서 온 뼈마디가 쑤시듯이 아픈 데 방치하면 생명에 위험하기 때문에 조속히 현지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좋다.

물도 브랜드 있는 생수 아니면 정수하여 끓여 먹는 것이 좋다. 스리랑카 수도관들은 대부분 낡고 내부 부식이 심하기 때문에 수도물에서 녹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반음식점에서 나오는 얼음물에 주의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다. 안전한 생수구입이 어려울 경우 코카콜라나 펩시와 같이 이름있는 회사들이 만든 소프트 드링크를 임시로 마시는 것도 방안이다.

무더운 오전 중에는 노변에 판매하는 짙은 노란색의 킹코코넛을 사서 윗부분을 잘라 빨대를 넣어 먹으면 자연음료로서 갈증해소에 좋으며 가격은 1개당 RS 20(한화 200원정도)면 살 수 있다. 킹코코넛은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비가 오거나 기온이 내려가는 오후 늦게는 마시지 않는다.

5. 환율/환전

가. 화폐단위

화폐단위는 스리랑카 루피(RUPEE)를 사용하며, 약칭은 RS이다. RS1은 100 CENTS이다. 지폐는 1000, 500, 200, 100, 50, 20, 10 RS등이며, 주화에는 10, 5, 2, 1RS, 50, 25, 10, 5, 1CENT등이 있다.

나. 환율

동남아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의 경우 급격한 환율변동이 없이 매년 10%정도씩 평가 절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0, 2001년 말에는 전년 대비 15% 이상 상승하였다. 2002년부터는 정부가 물가인상 억제를 위해 환율을 통제하고 있어 환율변동폭이 그다지 심하지 않다.

환율은 2001년 외환위기를 겪은 다음인 2002년부터는 비교적 안정화 되어 있으나 만성적인 무역수지적자와 재정적자로 스리랑카 루피화의 주요 통화에 대한 점진적인 가치절하가 2006년부터 다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례로, 미 달러화 당 스리랑카 루피화 환율은 연평균기준으로 2001년 93.16, 2002년 95.66, 2003년 96.72, 2004년 101.19, 2005년 100.5를 기록하였다.

(자료원: Annual Report of Central Bank 2005, 2006년 5월 자료)

참고로 2006년 루피화 환율은 달러대비 소폭 절하되고 있으며 연평균 환율은 미달러당 2006년 103.9, 2007년 107.4를 영국의 EIU는 전망하고 있다(06.8월 자료)

(US\$ 1 = RS 103.06 Commercial Bank, 매매기준율, 2006. 8. 29)

- 인터넷 환율체크: (<http://www.centralbanklanka.org/dailyexch.html>)
스리랑카 중앙은행(Central Bank of Sri Lanka)

다. 환전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다소 환전환율이 낮게 적용되기는 하지만 호텔 등에서 환전이 가능하다. 유명음식점 등에서는 달러가 통용되고 있다. 콜롬보공항에 은행 환전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입국 직후 얼마간의 필요한 현금을 환전하는 것이 좋다. 출국 시 현지화를 달러화로 재 환전할 경우 입국 시 달러화를 현지화로 환전한 은행 영수증이 필요하고 호텔 등지에서 환전한 영수증으로는 재 환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입국 시 은행에서 환전 후 영수증은 보관하는 것이 편리하다.

6. 물가정보

도시 : 콜롬보(스리랑카)			- 환율 : US\$1 = Rs103.20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 100%)	160	7.1	구두(1켤레, 소가죽)	34
1.2	넥타이(1개, 실크 100%)	20	7.2	치약(150g, 1개)	0.6
1.3	와이셔츠 (1벌, 면 100%, 긴팔, 흰색, 현지브랜드)	39	7.3	칫솔(1개)	0.9
1.4	양말(1켤레, 면 100%, 현지산)	3	7.4	면도기(1세트)	6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없음	7.5	건전지(1세트, 1.5V AA)	0.98
1.6	스타킹(1켤레, 밴드타입, 현지브랜드)	3.7	7.6	화장지(1통, 300매)	1.5
1.7	청바지(Levi's)	36	7.7	비누(1개)	1.25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3.19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2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5	8.2	볼펜(12개)	2.4
2.3	닭고기(1KG, 생닭)	2.12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1.9
2.4	쌀(1KG, Short Grain)	1.03	8.4	공CD(1통, 12개입, 700MB)	12.4
2.5	밀가루(1KG)	0.35	8.5	휴대폰(범용형)	120
2.6	설탕(1KG, 백설탕)	0.41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5
2.7	계란(10개)	0.9	8.7	인터넷가설비(1회최초, 1회설치)	24
2.8	감자(1KG, 현지산)	0.67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25
2.9	미네랄워터(1.5ℓ, Evian 1Pet)	1.6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45,000
3.1	고추장(1Kg)	9.9	9.2	엔진오일(1L)	7.9
3.2	된장(1Kg)	5.23	9.3	취발류(1L)	0.85
3.3	라면(1개)	1.2	9.4	자동차등록비(2,000cc)	89
3.4	설령탕류 (1인분, 설령탕, 곰탕등)	6.33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450
3.5	불고기(1인분, 200g)	6.88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6.25	10.1	지하철(1구간)	없음
3.7	김치찌개(1인분)	6.33	10.2	시내버스(1구간)	0.08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1.32
4.1	햄버거(1개)	2.2	10.4	택시(추가요금/Km)	0.44
4.2	피자(1판)	8.5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0.6	11.1	전화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250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2.2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30
4.5	담배(수입산, 1갑)	3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평상)	0.15
4.6	위스키(1병, 750ml)	37	11.4	공중전화(3분, 시내평상)	0.12
4.7	커피(1병, 175g)	7	11.5	국제전화(현지-서울, 3분, 평상)	0.75
	5. 주택(150㎡)		11.6	국내우편 (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05
5.1	[임차]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urnished)	850	11.7	국제우편 (일반편지, 1통, 10g 이하, 현자서울)	0.45
5.2	[임차]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750	11.8	특급우편 (DL, 1개, 1kg 이하, 현자서울)	15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10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22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10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0.3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9.25
6.1	TV(29인치, 칼라, 범용)	570			
6.2	VTR(6헤드, 범용)	310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롬보)	390			
6.4	전자레인지	180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1,100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450			

도시 : 콜롬보(스리랑카)		- 환율 : US\$1 = Rs103.20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70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급여)	40
12.2	외국인학교(등록금, American School)	2,875	18.2	상여금(월급여대비%, 연간)	10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없음	18.3	사회보장부담금(월급여대비%, 연간)	15%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10,223.5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21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11,327.5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90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13,558.5	18.6	연간국경일	20일
	13. 레저·오락	US\$	18.7	토요휴무(실시여부)	일부실시
13.1	골프장그린피(비회원, 18홀, 1라운드)	35	18.8	노동쟁의시 냉각기간일수	없음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4,000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공장 주 6일, 관공서 주 5일)	44시간
13.3	골프공(1타)	36		19. 사업여건	US\$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350	19.1	법정최저자금	250,000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13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1,100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2.5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주)참고
	14. 의료·약품	US\$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개인소득세)	10~30%
14.1	의료보험료(4인가족, Full Cover, 치과제외)	840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루피화	16%
14.2	병원진료비(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15			
14.3	병원진료비(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없음			
14.4	치과(스켈링, 1회)	6		※ 19.3 투자형태에 따라 3~12년 감세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0.15		※ 19.4 () ~ 1,000불: 10%	
	15. 신문·방송·잡지	US\$		1,000 ~ 2,000불: 20%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유력지)	7.5		2,000 ~ (): 30%	
15.2	한국신문(1개월)	46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8		
15.4	잡지(1부, Time 혹은 Newsweek)	1.25		
	16. 호텔	US\$		
16.1	특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20		
16.2	특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95		
16.3	중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36		
16.4	중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30		
16.5	조식(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5		
16.6	조식(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3.5		
	17. 임금	US\$		
17.1	사무실직원(월급여, 대졸초임)	150		
17.2	사무실비서(월급여, 학력불문)	100		

7. 교통/통신

가. 우리나라와의 교통

1) 항공편

양국간 직항노선은 현재 없으며, 동경, 싱가포르, 홍콩, 방콕, 쿠알라룸푸르 중 1개 도시를 경유해야 한다. 현재 콜롬보에 취항 중인 항공사는 자국의 Sri Lankan(UL)를 비롯하여 다수의 항공사가 있으며 이착륙시간은 대부분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에 집중되어 있다.

취항항공사는 국적기인 Sri Lanka Air(UK)외에도 Air Emirates(EK), Singapore Airlines(SQ), Thai Airways(TG), Cathay Pacific(CX), Malaysian Airline, India Air, Sahara Air-line 등이 있으며 성수기를 이용한 전 세기편이 유럽 및 호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평일 퇴근시간에는 콜롬보-공항까지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항공기 출발 시간 보다 3시간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인도향 이코노미클래스는 오버부킹 경향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저가 항공사들이 2006년도 중에 인도-콜롬보- 방콕, 싱가포르를 본격 운항할 전망이다.

2) 선편

콜롬보 항은 유럽과의 교통의 요충지로서 외국선박의 입항이 많으며 주로 미주나 구주에서 오는 수출입 물량의 T/S가 주다. 물동량이 적어 직항하는 한국선사는 없으며 대부분이 상해나 싱가포르 등지를 경유하여 들어오며 보통 14~16일이 소요된다.

- 주요 선사
 - 한국국적 선사: KMTC(고려해운), HMM(현대상선), Dongnama(동남아해운)
 - 기타: MISC, SIC, MSC, P&O Nedlloyd, PIL Korea, Wan Hai, China Shipping, Maersk Sealand K-Line 등
- 스리랑카 항만청 홈페이지(<http://www.slpa.lk>)에서 등록된 선사와 포워딩회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나. 국내교통

현지출장 비즈니스맨의 경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호텔 택시와 콜택시 등이다. 호텔에서 출발할 경우 호텔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나 요금이 일반 콜택시에 비해 조금 비싼 편이다. 콜택시를 부를 경우 (주요 콜택시 번호: 2688688, 2588588, 2818818) 약 10 - 15 분 정도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요금은 미터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흥정은 필요 없다. 모든 콜택시는 전화 요청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처럼 길가에서 택시를 잡아 타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지 사정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이동 거리가 가까운 경우 Bajaj (삼륜택시)을 이용하는 것도 편리하다. 그러나, 오픈카이기 때문에 에어컨이 없고 매연을 그대로 마시며, 교통 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에 단거리나 경험 삼아 한두번 타는 것이 바람직하다. Bajaj의 경우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는 통상 local 요금의 2배 이상 바가지를 씌우는 게 다반사이며 무작정 타면 오히려 택시요금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타기 전에 반드시 목적지까지의 가격을 정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장기출장자나 차가 현지에서 꼭 필요한 경우는 렌트카 이용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참고로 공항에서 콜롬보까지는 공항택시(약 10-15불 수준), 호텔택시(15-20불)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호텔택시가 조금 쾌적한 편이나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이외에 시외버스 및 철도도 있으나 철도는 배차간격이 길고 시설이 열악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며 버스는 도시간 직행인 인터시티 버스 외에는 냉방이 되어 있지 않은데다 극심한 혼잡, 치안 등의 문제로 외국인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다. 국제/국내통신

국영 통신업체인 Sri Lanka Telecom, Suncel, Lankabell이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스리랑카 텔레콤은 지역번호를, 썬텔 및 랑카벨은 고유번호(074, 075)를 사용했으나, 최근 전화번호 체계가 변경되어 썬텔, 랑카벨도 지역번호를 사용토록 변경되었다. 콜롬보 지역의 경우를 예로 들면, 94(국가번호)-11(콜롬보 지역번호)- XXXXXXX (전화번호, 7자리) 형태이며, 스리랑카 텔레콤 전화번호는 기존번호 앞자리에 2를 추가하고, 썬텔 전화번호는 기존번호 앞자리에 4를 추가, 랑카벨은 기존번호 앞자리에 5를 추가하면 된다.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의 경우 기존 전화번호가 6자리인 경우에는 전화번호 앞자리에 2가 추가되었고, 기존 번호가 5자리인 경우에는 전화번호 앞자리에 22가 추가되었다. 핸드폰 보급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어 공중전화 이용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공중전화는 공항, 병원, 호텔, 주요 쇼핑센터 및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 기종이 서로 다르고 대수가 아주 제한되어 있어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참고로 통화요금은 6루피 (한화로 약 60원정도)이다.

가정이나 사무실의 경우 국제전화 IDD사용을 위해 25,000루피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설치가 되며 과거에는 전화신청 후 상당기간 대기해야 했으나 최근에는 외국인 통신회사의 진출로 소요기간이 많이 단축되었으며 1주일 정도로 설치 가능하고 국제전화도 다양한 패키지 형태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외에 Collect Call을 통해 한국으로의 통화가 가능한데 데이콤의 이용번호는 2445404번이나 여러 번 전화를 시도해야 연결이 된다.

국제직통전화(IDD : International Direct Dial)서비스는 투숙호텔이나 콜롬보 시내나 외곽, 주요 지방도시의 노변 공중 전화 박스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페이폰 카드(Pay-Phone Card)를 공중전화 박스 인근 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최소가격은 Rs100(약 1불)짜리부터 있다.

라. 우편제도

보통 우편을 스리랑카 에서 보내면 보통 예상하는 것보다 오래 걸린다(예: 한국까지 3주). 그리고 중요한 우편인 경우에는 특사우편 회사를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요금

종류	행선지	무게	가격
엽서	스리랑카 내	30g	약 45원
편지	스리랑카 내	30g	약 50원
등기우편	스리랑카 내	30g	약 200원
국제우편(항공)	한국	10g	약 300원

마. 특사우편

한국까지 문서인 경우 약 29불(500g) 소포인 경우 약 56불(500g)이며 서비스 회사로는 하기의 회사가 있음.

□ IML(UPS 현지 에이전트)

- 140 Vauxhall St, Slave Island
- 94-11-233-7733

□ DHL

- Keels, 130 Glennie St. Slave Island
- 94-11-254-1285

□ Mountain Hawk Express (Fedex)

- 300 Galle Road, Kollupitiya
- 94-11-257-7055

□ TNT Express

- Vauxhall St, Slave Island
- 94-11-244-5331

8. 호텔/식당

호텔은 Five Star급이 5개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외국 유명호텔의 체인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밖에 값싼 호텔이 많으며 출장 시 숙박시설이용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비용은 특급호텔의 경우 double 1박에 80-120불 정도이며 인터넷 조회를 통한 예약도 가능하다. 무역관을 통하면 할인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대형 현지여행사를 통해서 하면 여행사의 연간구매물량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지인들의 연말행사, 결혼식, 외국 관광객이 몰리는 12월에는 유명 관광지 고급호텔이나 콜롬보 시내 고급호텔은 객실이나 회의실이 거의 동나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전예약을 하면 요금도 보다 저렴하다.

- Colombo Hilton (Five Star)
 - P O Box 1000, No. 2, Sir Chiththampalam A. Gardiner Mawatha, Colombo 1
 - T/F:2544644/2544657, E-mail: hilton@sri.lanka.net
 - 콜롬보 비즈니스 지구 중심가에 위치, 고층은 인도양이 내려보임. 콜롬보 5 스타 호텔 중 가장 최고급 호텔로 평가 받고 있어, 요금도 가장 높은 편임
- Cinnamon Grand (Five Star, 구 Colombo Plaza, Oberoi 호텔)
 - 77, Galle Road, Colombo 3
 - (T/F:2437437/2449280)
 - E-mail: grand@cinnamonhotels.com
 - Web: www.cinnamonhotel.com)
 - keels 슈퍼마켓, 크리켓 등 현대식 상가와 연접, 중고층은 인도양이 내려다 보이며 최근 내부 대수리를 하여 객실요금이 많이 올랐음
- Trans Asia(Five Star)
 - 115, Sir Chittampalam A. Gardiner Mawatha, Colombo 2
 - (T/F:2544200/2449184, tah_asia@transasihotel.com Web: <http://www.transasihotel.com>)
 - 인도양과 인접하지 않으나 뒷면에 호수와 인접
- Taj Samudra(Five Star)25, Galle Face Center Road,Colombo 3
 - (T/F:2446622/2446348, E-mail: taj@sri.lanka.net)
 - 인도양이 내려다 보이며, 인도의 타타 그룹에서 운영하는 체인호텔임
- GALADARI (Five Star)
 - 64, Lotus Road, Colombo 1(T/F: 2544544/2449875,
 - E-mail: info@galadarihotel.lk Web: www.galadarihotel.lk
 - 콜롬보 비즈니스 지구 중심가에 위치, 인도양이 내려 보임, 다소 낡아 부분 수선이 진행 중
- Ceylon Continental(Five Star 에서 Four Star 로 조정)
 - 48, Janadhipathi Mawatha, Colombo 1
 - T/F:2421221/2447326
 - E-mail: hotel@ceyloncontinental.com
 - 콜롬보 비즈니스지구 중심가에 위치, 인도양이 내려 보이는 전망이 가장 뛰어난 곳에 위치함. 최근 개보수 하였으며 상기 호텔 중에서 숙박료가 저렴함.

- Gall Face Hotel
 - 2, Kollupitiya, Colombo
 - T/F: 2541010-6/2541072, 74,
 - E-mail: reservation@gallefacehotel.net
 - Web site: www.gallefacehotel.com
 - 1864년 세워진 호텔로 영국지배 시절의 정취가 배어나는 호텔임, 인도양과 바로 인접, 호텔 야외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바로 파도를 볼 수 있음
 - 룸레이트는 정상가격이 이코노미 1박 55불 수준 (네트기준, 조식별도)
- Holiday Inn Colombo
 - 30, Sir Mohamed Macan Marker Mawatha, Colombo 3
 - T/F: 2422001/2447977, E-mail: holiday@sri.lanka.net

이밖에 보다 저가호텔이나 아파트 스타일의 숙박처로는 하기 호텔이 있다.

- Grand Oriental Hotel
 - 2 York Street, Colombo 1
 - T/F: 2320391-3, 2447640, E-mail : goh@sltnet.lk, Web:www.grandorientalhotel.com
 - 콜롬보 항구 옆에 포트지구에 있으며 식당은 항구가 보이는 아름다운 전망을 가지고 있다. 방 가격은 싱글이 35불, 더블이 45불 정도이다.
- Hotel Nippon
 - 123, Kumaran Ratnam Road, Colombo 2
 - T/F: 2431887-8/2332603)
 - 룸레이트는 정상가격이 싱글 28불, 트윈 32불(네트기준, 별도) 수준
- Sea View Hotel 또는 아파트
 - 21 Sellamuttu Avenue, Colombo 3
 - T/F: 2573533, 2574782, E-mail: sella@sltnet.lk)
 - 룸 레이트는 정상가격이 에어컨장착 룸이 Rs 2,000(21불 수준, 네트), 아파트 완비 형은 Rs 9,000(93불 수준, 15명까지 수용가능)이며 장기 투숙 시 가격할인

□ 한식

- 한국관(HANGOOKGWAN)
 - 주소: 25, Havelock Road, Colombo 5
 - 전화: 94-11-2587961
- 해송 (Hae Song)
 - 주소: 134, Havelock Road, Colombo 5
 - 전화: 94-11-2552754/5
- 한양가든 (Hanyang Garden)
 - 주소: No.1 B, Keppetipola Mawatha, Havelock Road, Colombo 5
 - 전화: 94-11-2552278
 - 상기 대표적인 한국식당 3개는 모두 무역관과 자동차로 5분 이내 거리인 Colombo 5의 Havelock Road에 밀집되어 있다.

□ 중식

- Peach Valley
 - 주소: No.27, Flower Road, Colombo 7
 - 전화: 94-11-2672888
- Kinjou Restaurant
 - 주소: 33,Amarasekera Mw, Colombo5
 - 전화: 94-11-2589477
- HongKong Seafood Restaurant
 - 주소: No.1A, Race Course Avenue, Colombo 7
 - 전화: 94-11-2695469/2699007
- 88 Chinese Restaurant
 - 주소: 98/1,Havelock Road, Colombo5
 - 전화: 94-11-2593017
- 168 Seafood Palace
 - 전화: 94-11-2573456
- Long Feng (* Trans Asia Hotel 내 위치)
 - 주소: 155,Sir Chittampalam GArdiner Mw, Colombo 2
 - 전화: 94-11-2544200
- Moon River(콜롬보 무역관에서 도보 5분거리)
 - 주소: No. 140 Timbirigasyaya Road, Colombo 5
 - 전화: 94-11-2596885

□ 일식

- Sakura
 - 주소: 14, Rheinlaud Place, Colombo 3
 - 전화: 94-11-2573877
- Ginza Hohsen
 - 주소: Colombo Hilton Hotel 내 위치
 - 전화: 94-11-2544644
- Nihonbashi(장기 투숙자 위주의 아파트형 고급호텔인 힐튼 레지던시내)
 - 주소: No11, Galle Face Terrace, Colombo 3
 - 전화: 94-11-2323847

□ 스리랑카 전통식당

- Raja Bojun (부페식)
 - 주소: Ceylinco Seylan Towers, 90, Galle Road, Colombo 3
 - 전화: 94-11-2452657
- The Curry Leaf
 - 주소: Hilton Colombo, Colombo 1
 - 전화: 94-11-2544644 (ext: 2376)
- Frangipani Kolu' s (현지식 + 양식)
 - 주소: 126, Havelock Road, Colombo 5
 - 전화: 94-11-2580678
- Thambapani (현지식 + 양식)
 - 주소: 496/1, R.A.De Mel Mawatha, Colombo 3
 - 전화: 94-11-2500615

* 스리랑카 전통 음식은 인도음식과 크게 유사하나 스리랑카 만의 전통 메뉴가 많으며 향료가 발달되어 있으며 맵고 짠 음식이 많다. 주식은 쌀과 카레이다.

□ 호텔 내 주요 식당

특급 호텔 내 비즈니스 접대에 적합한 양식당 및 부페 식당이 있다. 힐튼 호텔 내에는 이탈리아 레스토랑(IL PONTE), 스리랑카 레스토랑(Curry Leaf), 일식당(Ginza Hohsen), 중식당(Emperor' s Wok) 등이 있고, 트랜스 아시아 호텔에는 중국식당(Long Feng)과 태국 식당이 있고, 갈라다리 호텔 내에는 Arabic 식당(Sheherazade Arabic Restaurant), 양식당(California Grill) 등이 있다.

9. 관공서 관행

오랜 식민주의 및 사회주의체제의 영향으로 문서위주로 일이 처리되며 업무 처리속도는 상당히 느리나 세밀한 편이다. 또 실무자의 의견이 업무 처리시 상당히 반영되고 있는 편이며 후진국이지만 영국의 오랜 식민지배 영향으로 일 처리가 합리적이며 정실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드문 편이다. 그러나 국세청, 세관 등 일부 이권부서의 경우 부정부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해결이나 더딘 일처리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을 접촉 시 인간적으로 서로 거리감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며, 예컨대 가족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여 친밀감을 제고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이다.

행정의 전산화가 미비하여 업무처리 속도가 느리다. 세계은행과 한국정부 EDC 자금지원으로 전자정부구축사업 중 대민 서비스 분야인 주민등록, 고용, 연금관리, 자동차등록, 토지등록,

인력개발, 관세 및 세금징수와 같이 국가 기본정보분야에 대한 전산화와 대국민 전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향후 대민 서비스 분야의 업무 처리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민원 및 이권부서의 경우 급행료가 암묵리에 존재하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요구수준이 높은 경향이다. 세계은행은 e-스리랑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초 저리 장기차관 53백만불 제공을 2004.9월 하순에 승인하였고, 한국 정부도 스리랑카의 전자정부 개발사업을 위해 EDCF차관 15백만 불 제공을 2005년에 승인하였다.

관료주의 장벽이 남아시아 인접국인 인도나 파키스탄보다 약하며, 국회의원이거나 지방고위 선거직 행정관리들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구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상당히 호의적이다.

은행의 대출심사와 관행도 한국보다 오히려 선진화되어 있다는 것이 현지 투자기업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스리랑카 기본적인 법률구조가 아주 경직화되어 있는데 이중 하나가 파라트 (Parate)로 불리는 대출 회수법(Loan Recovery Act of 1990)이다. 이 법은 법원 결정 없이도 은행이 담보로 잡은 모든 동산 및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대출채권을 회수하는데 사용토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지급이 어려운 회사들이 계속 영업활동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기업이나 종업원들이 은행이나 대출기관에 대출을 받을 때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

10. 공휴일

가. 휴일 지정방식

스리랑카는 불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힌두교, 기독교가 공존하는 관계로 이들 종교의 각종 축제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어 일년에 약 26일의 공휴일(Public Holiday)이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 포함 연간휴일이 125-130일 정도이다.

많은 공휴일이 음력을 따르기 때문에 서양력 기준으로는 매년 다르다. 세계기준으로 볼 때 스리랑카의 지나치게 많은 공휴일로 노동 생산성이 저하되고 납기를 맞추는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밖에 특정 집단만 휴무일로 하는 공휴일도 있는데 공휴일은 Public Holiday (전 국민에게 유효)과 Bank Holiday(관공서 및 금융기관만 휴무), Merchantile Holiday(관공서, 금융기관 및 일반 상인들 휴무)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토요일은 관공서와 은행이 근무하지 않으며, 싱할라 신년의 경우 공식 휴일은 2일간이나 실제로는 열흘 정도 전국민대상 휴일이 지속되며 관공서도 휴무한다. 싱할라 신년이 속한 4월이 가장 명절이 많으며 신년이 속한 주는 대부분의 공장은 휴무를 하며, 이때는 정상적인 상담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 때는 비즈니스 방문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6년 휴일

1/11	Hadji Festival Day
1/13	Duruthu Full Moon Poya Day
1/14	Tamil Thai Pongal Day
2/4	National Day
2/12	Navam Full Moon Poya Day
2/26	Maha Sivarathri Day
3/14	Medin Full Moon Poya Day
4/11	Holy Prophet's Birth Day
4/13	Bak Full Moon Poya Day
4/13~14	Sinhala and Tamil New Year (2 days)/Good Friday
5/1	May Day
5/12~13	Wesak Full Moon Poya Day (2 days)
6/11	Poson Full Moon Poya Day
7/10	Esala Full Moon Poya Day
8/9	Nikini Full Moon Poya Day
9/7	Binara Full Moon Poya Day
10/6	Vap Full Moon Poya Day
10/21	Deepavali Festival Day
10/24	Ramazan Festival Day
11/5	Il Full Moon Poya Day
12/4	Uduvap Full Moon Poya Day
12/25	Chistmas Day
12/31	Hadji Festival Day

나. 출장지양기간

- 싱할라 및 타밀 신년 휴무기간: 4.13 ~ 4.14
- 베삭 풀문 포야 휴무 기간: 5. 12 ~ 13

11. 여행시 유의사항

가. 여행준비

1) 의복준비

열대기후고 대체로 습도가 높기 때문에 손쉽게 빨래할 수 있고 땀 흡수가 잘되는 가벼운 면 재질의 복장이 좋다(한국의 여름 의복을 준비). 내륙 고산지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가을 의복 준비가 필요하다(고지대는 기온이 섭씨 10도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음).비즈니스 미팅의 경우에도 긴 팔(드물게 반팔) 드레스 셔츠에 넥타이를 착용하면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정장 차림으로 간주된다.

자외선이 많고 햇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창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준비하면 해변 등 야외 관광 시 편리하며,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경우 반드시 선블록 로션을 바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습지나 강수량이 많은 산간지역에는 거머리가 많으며 순식간에 옷이나 양말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산기슭, 밀림이나 초지를 걸어 갈 경우 신발에 소금을 뿌려 주면 효과적이다. 거머리가 붙었을 경우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면 상처를 입으므로 소금이나 소금 물을 뿌려주던가 담배불로 지지면 떨어진다. 고온다습으로 슬리퍼나 샌달이 구두보다 훨씬 편안하며 현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슬리퍼나 샌달을 신는다.

2) 전기규격

230-240V, 50Hz (TV 방송도 한국과 다른 PAL 방식임을 참고 요망)이며 플러그가 한국과 다른 3발이며 둥근 형과 네모난 형 그리고 크기도 5A용과 15A용으로 2개로 나뉘져 있으니 여행시 멀티 플러그를 지참하면 편리하다.

나. 여행여건

1) 치안

콜롬보 중심지의 경우 치안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여 주간외출에 큰 문제는 없으며 최근 평화 협상 진행으로 치안이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내전이 있었던 관계로 내전동향에 대한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 지방 여행에도 큰 문제가 없으나 내전지역의 경우 지뢰 매설 총기류 소지 등의 문제가 있어 반드시 여행지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06년 8월 현재 북동쪽의 분쟁 지역에서 소규모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 분쟁 지역을 여행하는 것은 위험하며 콜롬보 시내에서 정치인과 고위군 관리를 목표로 한 폭탄 테러가 가끔 일어나고 있다.

2) 택시

콜롬보 시내에서는 여러 개의 콜택시 회사가 운영 중이다. 대표적인 전화번호는 281881 (요금 가장 저렴), 2688688(SIX DOUBLE EIGHT), 2502502(KANGROO YELLOW CAB), 콜 승합차 (2889889)이다. 최근에는 이 외에도 군소 콜택시 회사 및 콜밴 회사들이 영업하고 있다.

3) 응급

콜롬보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응급 시 개인 응급회사인 MEDI-CALL(011-2575475)을 호출하면 앰블런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비용은 1회당 RS300이나, 수도권과 원거리 지역은 현지 병원에 연락해야 한다. 한국처럼 119, 112 등 어느 지역에서나 호출 가능한 네트워크 응급 체계는 없다. 현지에서 필요의약품의 구입이 가능하나 출장자의 경우 감기약, 해열제, 진통제 등 필수상비약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한국인이 콜롬보에서 주로 이용하는 병원은 다음과 같다.

○ **Apollo Hospital**

- 주소: 578, Elvitigala Mawatha, Narahenpita, Colombo5,
- Tel: 4513054
- 아폴로는 시설은 가장 양호하나 분야별로 의사들의 편차가 많고 아폴로에서 오진, 진료 잘못으로 시설과 달리 의외로 고생하는 사람이 상당함. 치과 피부과 등은 타병원이나 전문 개인병원으로 현지인들 사이에 명성이 높은 곳을 수소문하는 것이 바람직함.

○ **Oasis Hospital**

- 주소: No.18A, MUH.E.D.Dabare Mawatha, Narahenpita, Colombo5,
- Tel: 2369113/4

○ **Nawaloka Hospital**

- 주소: 23,Saugathodaya Mawatha, Colombo 2
- Tel: 2544444/7

4) 팁관행

팁은 강제적이 아니며 고객이 서비스에 만족할 때만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부분의 호텔이나 음식점은 청구서에 10%의 서비스 요금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팁이 요금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 팁을 줄 필요가 없다. 이 밖의 경우에 팁을 주고 싶을 경우 요금의 10%정도를 적정수준으로 여기고 있다.

5) 식수

현지인들의 경우 아직도 80%정도가 우물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수도는 콜롬보 등 주요도시에 극히 한정 되어있다. 따라서 식수의 경우에도 현지인들은 그대로 마시기도 하지만,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은 여러 단계의 정수과정을 거쳐 식수로 사용하거나, 빨래 및 청소 용도에만 사용하고 생수를 구입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보리차나 옥수수 차 등과 생수를 같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6) 이발소

현지인 운영 일반 이발 요금은 남자기준 RS 120-150정도이며, 세발, 면도, 머리 마사지를 하면 요금이 추가되지만 한국인의 선호하는 두발형태를 유지하려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 마음에 드는 이발사를 지정하여 이용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은 콜롬보에 1-2개에 불과하며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지만 요금이 수배 이상 비싸다.

7) 구두닦이

현지에서 구두닦이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공공건물 등의 입구에 간혹 있는 구두수선 부스에서 구두를 닦을 수 있다.

다. 쇼핑

1) 물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스리랑카의 경우 물가수준이 높은 편이다. 한국 사람들이 사용할 수준의 물품은 수입산으로 공산품의 경우는 수입관세 등으로 가격이 한국 가격의 1.5 배 정도 수준이다.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서비스 요금은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2) 쇼핑장소

콜롬보 시내에는 LIBERTY PLAZA, UNITY PLAZA 등의 쇼핑 센터가 있으나 제품 구색이나 품질에 있어 한국의 3류 백화점 수준이며, 시나몬 가든 호텔에 미니 쇼핑몰이 있다. 주요 호텔에도 보석 및 기념품 중심의 상점들이 있다. 스리랑카의 경우 수공예품의 수준이 높지 않아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수준의 기념품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이외에 의류 및 생활 용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ODEL, French Corner 등의 쇼핑몰이 있고, 수공예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쇼핑몰로는 정부가 운영하는 상점인 Laksala 가 있다.

3) 특산품

최근 원석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으나 스리랑카는 루비, 사파이어 등의 보석이 유명한 편이며, 홍차 산지로 유명하다. 스리랑카는 세계 최대 차수출국으로 실론차는 세계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바, 차를 선물로 하는 것이 큰 부담이 없이 무난하다. 외국 관광객들을 위해 캔, 나무상자, 차세라믹용기, 세라믹 코끼리 형상 등, 다양하며 선물용품으로 적당한 차 판매처는 시내 주요 쇼핑센터, 실론 티보드, 국제공항 출국장내 면세점 등이다. 국제공항 출국장내 면세점 가격이 시내쇼핑센터 가격보다 비싼 편이므로 가급적 시내 쇼핑센터에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신용카드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통용되기 때문에 비즈니스급 호텔 투숙, 콜롬보 주요 쇼핑몰, 음식점에서는 신용카드를 받아준다. 그러나, 지방이나 영세상가, 음식점, 소액 구매시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거나 카드사기 우려가 있어 이에 대비한 달러화나 현지화를 지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1. 유용한 연락처

가. 경제단체

- Board of Investment (BOI), 원스톱 투자청으로 스리랑카에 직접 투자시 접촉창구
 - 20-24th Fl., World Trade Centre, East Tower Echelon Sq. Colombo 1
 - 전화 : 94-11-2434403/5
 - 팩스 : 94-11-2447995 / 2329795
- Ceylon Chamber of Commerce (CCC), 스리랑카 최대 상공인 단체
 - 50, Nawam Mawatha, Colombo-2
 - 전화 : 94-11-2421745/7,
 - 팩스 : 94-11-2449352, 2421747

-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of Sri Lanka
 - 450, D.R. Wijewardana MW, Colombo 10
 - 전화 : 94-11-2689600/2689596
 - 팩스 : 94-11-2689596

- Ceylon National Chamber of Industries
 - 1/F,20,Galle Face Court 2, Colombo 3
 - 전화 : 94-11-2423734
 - 팩스 : 94-11-2331443

- Sri Lanka Chamber of Small Industries
 - No 9,3rd Floor, Galle Face Courts 1, Colombo-3
 - 전화 : 94-11-2438715
 - 팩스 : 94-11-2336466

- Federation of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 53,Level3 Vauxhall Lane,Colombo-2.
 - 전화 : 94-11-2304253/4
 - 팩스 : 94-11-2304255

- Sri Lanka Ports Authority (SPLA)
 - Colombo Port, 19, Chaitya Road, Colombo-1
 - 전화 : 94-11-2421201/2421231
 - Fax : 2440651

- Export Development Board (EDB)
 - 42,Nawam Mawatha, Colombo-2
 - 전화 : 94-11-2300705-10 팩스 : 94-11-2300715

- Ceylon Shipping Corporation
 - 6, Sir Baron Jayatillaka Mawatha, Colombo-1
 - 전화 : 94-11-2423214
 - 팩스 : 94-11-2449486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Republic Building, Colombo-1
 - 전화 : 94-11-2325371
 - 팩스 : 94-11-2446091/2333450

- Department of Commerce
 - 4th Floor, Rakshana Mandiriya, Vauxhall Street, Colombo-2
 - 전화 : 94-11-2329733/2430068
 - 팩스 : 94-11-2430233

- Sri Lanka Customs Department
 - Customs House, Times Building, Bristol Street, Colombo-1
 - 전화 : 94-11-2445147
 - 팩스 : 94-11-2446364

- Department of Registrar of Companies
 - 400, D.R. Wijewardene Mw, Colombo-10
 - 전화 : 94-11-2689208/9
 - 팩스 : 94-11-2689211

-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ri Lanka
 - Samagam Medura 3rd Floor, 400, D.R. Wijewardana Mawatha Colombo 10
 - 전화 : 94-11-2689368
 - 팩스 : 2689367

-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of Ceylon (DFCC)
 - 73/5 Galle Road, Colombo-3
 - 전화 : 94-11-2440366
 - 팩스 : 94-11-2440376

- Ceylon Rubber Buyers' Association
 - 344, Grandpass Road, Colombo-14
 - 전화 : 94-11-2325997/2329566
 - 팩스 : 94-11-2533217

- Coconut Development Authority
 - 54, Nawala Road, Colombo-5
 - 전화 : 94-11-2502503, 2502501
 - 팩스 : 94-11-2508729

- Sri Lanka Tea Board
 - 574, Galle Road, Colombo-3
 - 전화 : 94-11-2585701
 - 팩스 : 94-11-2589132

- Mahaweli Authority
 - No. 500, TB, Jayah Mawatha, Colombo-10
 - 전화 : 94-11-2695988
 - 팩스 : 94-11-2687391

나. 한국기관

- 대사관 : 98, Dharamapala Mawatha, Colombo 7
 - 전화 : 94-11-2699036/8
 - 팩스 : 2696699, 2672358
 - 이메일 : kesl@koreanembassy.net

- KOTRA 콜롬보 무역관 : No1, Spathodea Avenue, Thimbirigasyaya Road, Colombo 5
 - 전화 : 94-11-2597494/5, 2505394
 - 팩스 : 2501818
 - 이메일 : colombo@kotra.lk

다. 은행

□ 은행명 / 주소 / 전화번호

- STANDARD CHARTERED BANK / 37, YORK STREET, COLOMBO-1 / 2480000
- AMERICAN EXPRESS BANK / 104, DHARMAPALA MAWATHA, COLOMBO-7 / 2682787-8
- BANK OF CEYLON / 4, BANK OF CEYLON MAWATHA, COLOMBO-1 / 2446790 - 9
- CITI BANK / 65C, DHARMAPALA MAWATHA, COLOMBO-7 / 2447316 - 8, 4794700
- COMMERCIAL BANK OF CEYLON / 21, BRISTOL STREET, COLOMBO-1 / 2430416, 2430425
- HATTON NATIONAL BANK / 10, R.A. DE MEL MAWATHA, COLOMBO-3 / 4793711/8
- HONG KONG BANK / 24, SIR BARON JAYATILLEKE MAWATHA, COLOMBO-1 / 2446591, 2325435
- NATIONAL SAVINGS BANK / 255, GALLE ROAD, COLOMBO-3 / 2573008-15
- PAN ASIA BANK / 450, GALLE ROAD, COLOMBO-3 / 2565564, 2301155
- SAMPATH BANK LTD / 110, sir James Pieris Mawatha, Colombo-1 / 2300260
- SEYLAN BANK / CEYLINCO SEYLAN TOWERS, 90, GALLE ROAD, COLOMBO-03/ 2456789
- UNION BANK / LEVEL28, WORLD TRADE CENTRE, COLOMBO-1 / 2346346
- NATIONAL DEVELOPMENT BANK / 40, NAWAM MAWATHA, COLOMBO-2 / 2448448, 2437350
- PEOPLES BANK / 75, SIR CHITTAMPALAM A, GARDINER MAWATHA, COLOMBO-2/2327841

13. 관광명소

스리랑카는 깨끗한 해변과 불교관련 고대문화 그리고 울창한 밀림(자연공원지역) 등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친절하고 온순한 편이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고 있다. 적도에 가까우나 섬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 여타 주변국 보다 날씨가 쾌적한 편이고, 불교유적 중심의 내륙지역, 수려한 남부해안 등을 갖추고 있어 휴양지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유럽에 인접하여 유럽인들의 휴양지로서 각광을 받아왔으며 저렴한 물가도 관광에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하여 한 때는 유럽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았다. 80년대 후반부터는 내전 격화로 관광객이 급감하여, 최근 연 50만 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으며 평화협상으로 내전이 중단된 2002년부터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 2005년에는 2004년 말 스리랑카를 강타한 지진 해일 피해(쓰나미) 여파로 당초 예상보다 외국 관광객 입국수가 2004년 대비 3% 떨어 진 549천 명을 기록하였다.

쓰나미 피해 이후 줄어든 관광객수가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06년 1~5월 방문한 관광객수는 253,136명으로 전년동기 비교 21.5% 늘어났다. 국가별로 인도가 73,548명, 26.5%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영국이 38,420, 19% 증가 이어서 독일이 24,000명으로 46%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스리랑카 관광부는 2006년 외국관광객 입국수가 6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전망치는 금년 1분기 내도 관광객수가 전년 동기 대비 27.5% 증가하였음을 감안하고 평화협상이 지속되어 치안이 악화되지 않는다고 상정한 것이다. 관광 대상은 지역별로 크게 콜롬보, 서부해안지대, 고산지대, 고대도시, 동부해안, 북부지역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동북부 지역은 현재 반군이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고, 테러공격이 빈발하여 방문 시 주의가 요망되며 여행자제지역이다.

한국인들이 많이 찾은 시외 관광지인 1박을 생각할 경우 Kandy, 2박 3일이면 Nuwara Eliya 나 문화상각지대인 Kandy, Anuradhapura, Pollunaruwa, Sigiriya중 취사선택을 하여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Kandy나 Nuwara Eliya내 골프장이나 방갈로 등은 기후가 콜롬보보다 선선하고 습도가 낮기 때문에 리프레쉬겸 가는 경우가 주이며 도로가 좁고 교통 체증이 콜롬보로 가까워질수록 심해져 도로에서 버리는 시간이 많아 현지에 사는 사람들은 콜롬보에서 주로 아침 일찍(새벽)에 출발하는 편이다. 또한 남쪽해안인 Bentota, Galle을 하루 빠듯한 일정으로 볼 수 있다.

가. 시내관광명소

□ Colombo 지역

식민지시대의 분위기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오랜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 여러 호텔도 인상적이다.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으로 이어진 식민지 유산이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그 당시의 풍물도 자연스레 맛볼 수 있다. Fort(Colombo 1)와 Pettah(Colombo 11)가 경제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이 곳에 남대문시장 같은 전통시장도 있다. 콜롬보항 바로 남쪽의 GALLE FACE GREEN은 인도양과 접하는 해안과 긴 잔디밭, 그리고 화란 식민지때 설치한 해안대포, 보행자도로로 되어 있어 특히 저녁무렵에는 많은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사랑을 받고 있다. 인근의 GALLE FACE HOTEL은 바로 인도양과 접하고 있어 저녁이나 밤에 호텔 노천카페에서 인도양 파도와 바다 바람을 만끽하면서 간단한 맥주나 소프트드링크를 마시는 것도 색다른 이국의 정취를 맛볼 수 있는 방법이다.

나. 시외관광명소

□ Kelaniya

콜롬보 동북쪽 11Km 지점에 위치한 불교의 성지로서 기원전 부처님이 방문한 자리에 세웠다는 대사원 (Maha Vihara)이 유명하며 많은 불교 신도들이 참배하는 곳이다. 매년 정월 보름(싱할라력으로 Duruthu Poya)에는 부처님의 이곳 방문을 기념하여 Perahera(일종의 거리행렬 축제, 가장 유명한 Kandy의 Esala Perahera에 못지 않은 장관)가 열리고 있다.

다. 서부해안지역

□ Mount Lavinia

콜롬보 남쪽 20분 주행거리에 스리랑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변 중의 하나로서 인도양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자리잡은 Mt. Lavinia 호텔이 있다. 19세기 초 실론 총독 Edward 경의 별장이었으며, 그 후 병원으로도 사용되어 영화 "콰이강의 다리"에 나오는 병원으로도 유명하다. 저녁 6시경에 이곳에 들러 음료나 주류를 곁들인 후 7시경의 일몰을 구경하는 것이 장관이며 수평선이 둥근 타원형을 하고 있는 데다 해가 바닷속으로 급속히 함몰되는 장면을 생생하게 구경할 수 있다.

□ Bentota, Beruwala

콜롬보 남쪽 60Km(자동차로 1시간반정도 소요)지점에 있는 조용하고 경치 좋은 해안으로 해안선을 따라 Beach Hotel이 많으며 휴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전통을 간직한 Bentota Beach Hotel을 비롯하여 최근에 들어선 Eden Hotel, Taj Exotica등 다양한 휴양호텔이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유럽인들이 많이 찾고 있다.

□ Hikkaduwa

콜롬보 남방 99Km지점으로 차량으로 2시간 반정도 소요된다. 포르투갈인 최초 상륙지점이며 휴양지로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 해안선을 따라 여러 호텔이 있으며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한때 산호초가 있는 아름다운 바다로 유명했으나 최근에는 산호초가 많이 줄어들었다. 스킨스쿠버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하다.

라. 중부 내륙 고산지대

□ Kandy

콜롬보 북동 115 Km 지점에 위치한 스리랑카 제2의 도시로서 실론 최후 왕조가 있던 도읍지이며 표고 600m로서 고궁, 사원 민속무용 등으로 유명하며 인근지 주민들의 왕조 후손으로서의 자긍심도 대단하다. 이곳의 유명 관광 대상으로서는 특히 4세기경 인도에서 가져온 부처님의 치아를 봉안하고 있는 Dalada Maligawa (일명 불치사)와 캔디 시 중심부에서 남쪽 (Colombo쪽) 6Km 지점에 있는 1816년에 설립된 Peradeniya Garden (열대 식물원으로서 자연 식물원이며 아시아 최대를 자랑함, Royal Botanic Garden)이 위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년 내내 서늘한 기후임을 감안, 일본 및 싱가포르인들이 주변 산 중턱에 한국의 콘도와 같은 훌륭한 휴양지를 개발,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고 한국인 들도 즐겨 찾고 있다. 밤에는 스리랑카 전통댄스를 공연하는 곳이 있어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다.

□ Nuwara Eliya

콜롬보 동방 165Km 지점, 해발 1,891m 의 고원지대로서 스리랑카 제1의 흥차 산지이며 나일 강 탐험으로 유명한 Samuel Baker 경이 개척한 도시로서 특히 스코틀랜드 기후와 비슷하다 하여 향수를 달래며 개발한 고원 피서지로서 골프 등을 즐길 수 있어 연휴기간 동안 한국인 들도 동 지역에서 휴일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아울러 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 들에 맞는 각종 채소류도 재배되고 있어 한국인에게 매우 친근한 도시이다.

마. 중북부 내륙 고대도시 지역

□ Anuradhapura

중부내륙지역에 위치한 고대도시로서 고대유물과 유적이 많이 남아있고 부처님의 3대 방문지 중의 하나이며 현재도 2,000여 년 된 보리수가 있는 SriMaha Bodi를 비롯, Brazen Palace, Museum Ruvanvelisaya Dagoba등이 볼만한 관광 대상이다.

□ Pol l unaruwa

12세기경 수도였던 고대도시로서 대부분 폐허가 된 유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정 지역에 많은 유물이 집중되어 있어 대부분을 돌아보는 데도 대략 3시간 정도면 충분하며 건조하고 더운 지역이라 오래 구경하는 것이 어렵다. 누워있는 부처상(와상) 등을 비롯, 고대 건축물의 잔영이 많이 남아 있다.

□ Sigiriya

Pollunaruwa에서 6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바위로 된 요새로 유명하며 5세기에 Kashyapa 왕이 이곳에서 요새화된 궁전을 세웠으며 바위벽에 새겨진 미녀도가 유명하다.

바. 동북부 해안지대

□ Trincomalee

콜롬보 동북쪽 256 Km 지점, 마하웰리강 하구에 있는 세계 제1의 천연항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아름다운 해안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까지 내전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호텔 등 관광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유럽관광객을 중심으로 트린코말리 방문이 늘어나고 있었으나 지난해 쓰나미 해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어 최근 호텔을 재건축 중이다. 현재 분쟁지역으로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 Jaffna

스리랑카 최북단으로 인도와 가까우며 건조지역으로 열대과일이 유명한 곳이나 반군 거점 지역으로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지역이어서 도시전체가 파괴되어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나 자연경관이 아름답지만 최근 반군과의 전쟁으로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V. 무역

15. 교역관련 주요법규

스리랑카와 교역할 경우 알아야 할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다.

- 연락사무소, 지사, 법인설립등록
 - Companies Act No.17 of 1982, the Companies Ordinance
- 직접 투자 시 투자인센티브 및 세제감면혜택
 - BOI Act OF 1992, Section 16 및 Section 17
 - 외국투자자는 상기 조항 하에 투자승인을 받기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지분투자가 적어도 250,000불 이상이어야 하며 스리랑카 회사법은 투자기업 지배주주 국적을 차별하지 않고 내외국인 동등하게 투자승인 및 인센티브부여시 동등대우를 규정함
- 기업활동 규제: Companies Act
 - Annual Return 보고의무 및 세부절차, Annual General Meeting의무 및 정족수(Section 122, 123, 127, 130등)
- 고용 및 종업원사회보장
 - 종업원 사회연금에 대한 회사의무 분담
 - Employees Provident Fund: Act No. 15 of 1958/amendments
 - Employees Trust Fund: Act No. 46 of 1980
 - 퇴직금: Act No.12 of 1983

- 근로자 채용, 고용 종료, 임금, 근무규정, 단체협약 등 근로관련 전반
 - 상점 및 사무직(shop and office employees): Act No. 19 of 1954/amendments
 - 공장근로자: Ordinance No. 45 of 1942/ amendments
- 산업 현장 내 노사분규: Act No. 43 of 1950/amendments
- 산업 디자인, 특허 및 등록상표: Intellectual Property Act No. 36 of 2003
- 환경보호: Environment Protection Act No. 47 of 1980
- 과세: Inland Revenue Act No 38 of 2000/ amendments Finance Act No. 11 of 1963/ amendments
- 소비자보호: Consumer Affairs Authority Act No.9 of 2003
- 산업표준: Sri Lanka Standards Institution Act No 6 of 1984
- 상사분쟁: 중재(Arbitration: Act No.11 of 1995), 조정(Mediation: Act No.44 of 2000)
- 관세 및 통관: Customs Act No. 24 of 1991, Gazette Extraordinary 1296/30, 205.6.12, Customs Notification, 매년 1회 발간, 수정본은 별책으로 관세율 변경시 모아 별도 관보로 게재(Revenue Protection Order 반영)

스리랑카에서 상품을 수출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등록을 해야한다.

- 수출개발청(Sri Lanka Export Development Board)-EDB 등록번호(Registration Number)
-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 납세등록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
- 스리랑카 관세청(Sri Lanka Customs)

수입요건 및 관련 증빙서류

- 상품 수입대금 결제방식: LC(신용장), DP(대금결제 후 서류인도), DA(어음인수 후 서류인도), AP(선불 지급), Consignment Account Basis(책, 잡지, 재수출용 관상어류 수입 시)
- LC는 365일 유효, AP(Advance Payment)조건 수입은 수입 총 가액이 US \$ 10,000이하일 때 허용되며 bank draft, 우편송금, 전신환 송금으로 가능하며, 송금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입물품을 수입 수취해야 함
- 수입 시 상업은행이 요구하는 기본서류는 상업송장, 보험증명서, 운송서류(선하 증권)이며, 수입상품과 대금결제 방식에 따라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s of origin), 검사 증명서, 포장 명세서 등을 요구하기도 함
- 수입상은 증명서 사본 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은행이 선적서류 원본을 수취 하도록 주선해야 함
- 세관통관을 위해 수입상은 상업은행이 증명한 적절한 선적서류와 세관신고양식을 갖춰 세관에 제출해야 함

아래 품목을 수출하는 수출업자는 관련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 차(Tea) - Sri Lanka Tea Board
- 코코넛 상품 - Coconut Development Authority
- 보석류(Gems & Jewelry) : Sri Lanka Gems & Jewelry Authority
- 섬유 및 의류: Textile Division of the Ministry of Industry

수입업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

-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 납세번호 Tax Identification Number 및 부가 가치세 등록번호 VAT Registration Number

스리랑카의 통상정책 기본방향은 대외지향적 무역제도, 스리랑카상품의 해외시장개척 강화,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가속화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수입규제장벽이 비교적 약한 편이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시장개방 및 경제개혁정책이 도입된 이래로 1990년 중반에 실질적인 무역자유화 조치가 대폭 취해졌다. 최근에는 20여년 간의 내전을 종식 시키기 위한 평화협상에 집중이 되어 무역자유화 노력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 WTO평가이다.

1995년 스리랑카는 WTO관세평가협정 회원국이 되었으나 이의 이행이 지연되다가 2003. 1.1 일부로 WTO관세평가협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스리랑카는 2005. 3.1일까지 중고 자동차 와 모터사이클에 대해서는 미니멈 벨류(minimum value) 개념을 관세평가에 계속 적용한 바 있다.

원산지규정은 MFN적용세율은 적용하지 않으며 양자간 및 지역통상협정에 의한 특혜관세에 대해서는 특별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된다. 즉 방콕협정, 남아시아 특혜 무역협정(SAPTA), 인도-스리랑카 FTA, 일반무역특혜제도(GSTP)의 경우가 해당된다.

스리랑카는 주요 남아시아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발효 중에 있는데 인도와는 2000 년에 파키스탄과의 FTA 는 2005 년 중에 각각 발효되어 이들 국가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스리랑카산 상품이 민감 품목을 제외하고는 특혜관세나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대부분 스리랑카 투자기업들은 통관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무엇보다 B01 기업에 대해서는 세관이 아닌 B01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통관절차, 검사, 서류작성 등에 있어 편리하다. 보통 항구에 화물이 도착한 통보를 선사로부터 받는 시점으로부터 약 2-3일 이면 원부자재 통관을 완료 생산에 투입할 수 있다.

수입업자나 수출업자는 납세번호(TIN: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받기 위해 국세청(IRD: Inland Revenue Department)에 등록해야 하며, 일단 TIN을 받으면 세관에서 자동으로 등재되며 스리랑카에서 수출입을 할 수 있다.

스리랑카 관세청의 수입담당부서는 콜롬보항의 해상화물과 카투나야케(반드라나이케) 국제공항의 항공화물 통관을 담당하는 부서로 나뉜다.

수입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관신고서(CUSDEC: a Completed Customs Declaration)를 콘사이너나 신고자의 서명을 하여 기타 수입관련서류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관련서류는 케이스 별로 다르나 대체로 delivery order, bill of lading,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중고 자동차는 영어로 번역된 자동차 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 수입 라이선스(제출 요구 시) 등이다.

스리랑카관세청은 특정 수입화물을 반출하기 전에(수입허가품목) 관련 정부기관(Import and Export Control Department, Sri Lanka Standard Institution, Health 등)으로부터 필요한 수입 승인을 획득하도록 하고 있다.

1994년에 수입서류 처리가 ASYCUDA시스템으로 전산화되어 수입통관의 지체, 오류나 부정확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스리랑카는 현재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Brandix를 비롯한 스리랑카 대형 기업 중심으로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

통과 화물(보세지역에서 세관의 통제 하에 수입되어 재수출되는 화물)에는 제반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아울러 선적 전 검사제도가 없다.

EAN(International Article Number System) Numbering System 은 일종의 국제 무역 용어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스템이며, 전세계적으로 101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다. 스리랑카에는 EAN Sri Lanka에서 EAN Bar Code번호를 할당 부여하고 있다.

한편, Uniform Product Code(UPC)는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특별 코드 시스템으로서 스리랑카 무역업체가 필요한 경우 EAN 스리랑카에 요청하면 된다.

가. 통관절차: B01기업의 경우

선사에서 화물도착 통지서 수령 -> 선사에서 B/L송부(포워딩 에이전트를 통해) -> Customs Declaration 작성제출 -> B/L과 C/D일치 여부 확인(세관 또는 B01) -> 화물 인스펙션(B01, 또는 세관)

B01기업에 대해서는 B01가 전 통관과정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므로 투자 기업들의 통관이 매우 신속하고 서류상의 경미한 오류 등에 대한 인정 등 전체적인 절차가 우호적이다. 특히 화물에 대한 최종 검사도 항만 세관 구역 내가 아닌 해당업체의 공장에서 이루어 진다. 단 LCL화물의 경우는 화물 검사가 항만 내 세관구역에서 이루어진다.

관세는 기본세율과 방콕 협정국 (한국 등 6개국)에 대한 특별세율로 분류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별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은 없다.

스리랑카는 2001년 2월 21일부로 재정적자 확대에 따라 주요 품목의 관세율에 surcharge 40%를 부과하였으며 2002년 4월 15일부로 surcharge를 20%로 인하하여 2003년 말까지 유지하였으며 2004년 1월부터 10%로 인하되었다.

또, Finance Act No.11 of 2002에 따라 스리랑카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Ports and Airports Development Levy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나. 외환관리 개황

외환관리는 1953년에 제정된 외환관리법(Exchange Control Act)에 근거하여 중앙은행 외환관리국이 관할하고 있다. 모든 수출에 의한 수입과 기타의 외화수입은 중앙은행에 매각, 집중토록 되어있으며 모든 외환거래는 공인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수출가공시대에 입주하거나 인가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B01법에 의해 외환관리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역외금융(Offshore banking)이나 외국은행 및 지점을 이용할 수 있다.

스리랑카 내외서는 은행 내 외환구좌 개설이 자유로우나 외환(달러화 등)출금이 되지 않으며 구좌이체, 해외송금은 자유로운 편이다. 예컨대 달러구좌에서 달러 현금인출은 되지 않으며 다만 해외여행 시 여권 및 항공티켓을 제시하면 여행기간 등 및 신용도 등에 따라 최고 5,000불 한도 내에서 달러를 인출할 수 있는데 현금인출 최대한도는 500불이고 나머지는 여행자수표 4500불이 최대 한도이다. 은행은 성명, 여권사본, 항공티켓사본 등 증빙서류를 별도 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지속적인 외환 제도의 자유화 정책 실시로 외환 관리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상황이며 특히 93년 3월에 무역 및 서비스의 경상거래에 대한 외환규제를 대부분 철폐함에 따라 94년 3월 15일부터 IMF8조국의 의무를 지게 되어있어 IMF의 승인 없이 국제수지의 경상지급에 대한 외환통제를 가할 수 없게 되었으며 동시에 차별적 통화조치도 할 수 없으며 외국이 보유하는 자국통화잔액에 대한 교환성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해외송금의 경우 전량 수출조건 외국인투자의 경우 대부분의 외환관리규정이 적용 면제 되도록 되어있어 이 업체 근무 외국인직원의 경우 월 급여액의 90%까지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다만, 일반 외국인의 부양가족을 위한 해외송금은 고용기간이 3년 이하의 경우 월간 총수입의 2/3까지, 고용기간이 3년 이상의 경우는 1/3까지 허용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중 비거주자의 이익배당금 송금은 전년도 이전의 미배당 이익금을 포함하지 않고 유보자산의 이전 및 고정자산 매각이익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며, 외환지급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도 필요서류의 은행 제출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관련 외환통제현황을 보면, 자금 대부업, 전당포, 자본금 1백만불 이하의 소매업, 연안어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허용되지 않으며, 통화법(the Monetary Law)이 수정되어 중앙은행이 회사기록을 심사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중앙은행의 규제기능을 강화하였다.

다. 환율결정

환율결정은 관리변동환율제(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에 의해 중앙은행의 환율변동 관리위원회 (Managed Floating Committee)가 주요국 통화와 SDR을 감안하여 매일 결정하여 발표한다. 즉, 주요 교역상대국 6개국(미국, 영국, 일본, 서독, 프랑스, 인도)의 물가동향 및 화폐가치 변동과 자국의 물가동향 등을 감안, 상한 및 하한선을 결정한 후, 이 범위 내에서 외환시장의 주요 공급 동향에 따라 매일 환율을 결정 발표하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00년 4월부터 중앙은행의 일일 환율변동폭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독립적인 관리변동환율제도로 외환의 투기적인 요소가 감소되어 환율의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 국제입찰기관 및 제약요소

스리랑카 입찰기관은 정부기관, 국립대학, 국영기업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조달 물량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력청, 스리랑카 통신, 도로청 등 프로젝트성 사업을 많이 발주하는 기관들이다. 입찰은 개별 부서나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 한국의 조달청과 같은 조달업무를 통할하는 기관은 없다.

스리랑카는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고 많은 부문을 정부조달을 통해 구매하고 있으나, WTO 정부조달협정 미 가입국으로서 로컬제조물품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 우대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정부발주계약에 참여하는 e-정부조달시스템구축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다.

- 국내제조물품에 대해서는 수입물품대비 가격기준에서 20% 우대 (공장도 가격기준으로 최소 30% 국내에서 부가가치 조건)하고 있으며 공사계약은 스리랑카 기업(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게 10% 가격우대를 부여

스리랑카는 현지 에이전트나 고위관리의 영향력에 의해 낙찰이 좌우되거나 특정 사유 없이 정부조달 계획 자체가 취소되는 등의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

- WORLD BANK, ADB 등에서는 스리랑카 입찰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을 스리랑카 정부에 계속 촉구중임.

스리랑카정부는 자국 ICT 산업육성을 위해 전자정부 프로젝트 국제입찰 시 입찰참여 외국 기업들의 단독 참가를 허용하지 않고 스리랑카업체와 제휴하여 참여토록 의무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사례에 보듯이 입찰 특성 별 세부 조건속지가 필요하다.

마. 한국기업 진출부진 사유

스리랑카는 재정부족으로 자체 자본으로 기간 산업을 건설할 능력이 부족하여 주로 재원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거나 BOO (Build, Own and Operate) 또는 BOT (Build, Own and Transfer) 등의 자본참여 형태로 SOC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참여 없이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아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이 부진할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 부문의 경우, 기술경쟁력이 요구되는 플랜트 부분에서는 기계 설비 제조 기술력이 취약하고, 자재 구매력도 경쟁국 보다 취약한 실정이다. 아울러 단순 토목 공사의 경우 인건비나 고정비용이 높아 중국, 인도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바. 입찰시장 진출 확대방안

국제기구나 선진국의 원조가 비교적 활발한 스리랑카의 인프라 건설 참여를 위해서는 자금 공여국 기업과의 공동 수주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Tied Loan의 경우 자금 공여국과 공동 참여가 아니면 원천적으로 사업참여가 불가능하며, United Loan의 경우도 자금 공여국 기업에 유리하게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일본 등 자금공여가 활발한 국가의 기업들과 제휴가 필요하다. 스리랑카가 받는 외국원조규모로 볼 때 일본이 가장 많은 규모의 원조를 하고 있어 일본정부의 공적 개발 원조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성공요건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입찰에이전트를 선정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입찰 발주 시 구성되는 기술심사위원회 등 심사기관 및 최종 결정권자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력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것이 입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16.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규제제도

- 스리랑카의 통상정책 기본방향은 대외지향적 무역제도, 스리랑카 상품의 해외시장 개척 강화,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가속화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수입규제 장벽이 비교적 약한 편이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시장개방 및 경제개혁 정책이 도입된 이래로 1990년 중반에 실질적인 무역 자유화 조치가 대폭 취해졌다. 최근에는 20여 년 간의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상에 집중이 되어 무역자유화 노력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 WTO 평가이다.
- 1995년 스리랑카는 WTO 관세평가협정 회원국이 되었으나 이의 이행이 지연되다가 2003. 1.1일부로 WTO 관세평가협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스리랑카는 2005.3.1일까지 중고 자동차와 모터사이클에 대해서는 미니멈 밸류(minimum value)개념을 관세평가에 계속 적용했다.
- 원산지규정은 MFN적용세율은 적용하지 않으며 양자간 및 지역 통상협정에 의한 특혜 관세에 대해서는 특별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된다. 즉 방콕 협정, 남아시아 특혜무역협정 (SAPTA), 인도-스리랑카 FTA, 일반무역특혜제도(GSTP)의 경우가 해당된다.
- 수입과징금은 2004. 1.1일부로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초 식량 및 식료품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 수입품목에 대해 10%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 Milk and cream of following headings and sub-headings
 - 0402.10, 0402.21, 0402.29, 0402.91, 0402.99, 0402.99.09
 - Potatoes, falling under heading: 0701.90
 - Onions and Shallots of following Headings and Sub-headings
 - 0703.10, 0703.10.01, 0703.10.02, 0703.10.09
 - Dried leguminous vegetables of following Headings and Sub-headings
 - 0713.40, 0713.40.01, 0713.40.02
 - Chillies of following Headings and Sub-headings: 0904.20, 0904.20.01
 - Rice, falling under Heading :10.06
 - Sugars of heading :1701
 - Infants' milk foods of sub-heading :1901.10.01
 - Infants' food of sub-heading :2106.90.05
 - Chapters 50 to 63 both inclusive

- 2005년 예산(2005.4.1-2006.3.31)은 기존의 자유방임적 통상정책에서 국내 산업 보호와 국내 산업의 수출산업화, 이를 위한 자원마련을 위한 큰 폭의 정책전환이 포함 된 바 있다.
 - 국내 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가공도 기준 별 관세차별화
 - 전기전자제품(TV, 냉장고, 세탁기 등) 및 자동차, 보석류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인상
 - 향만 공항세 인상: 1% -> 1.5%(단 수출품은 0.25%로 인하)
 - 부가가치세율을 단일 15%에서 5, 15, 18%로 3개 밴드로 구분 적용
 - 기초석료 15%에서 5%로 인하, 주류 및 내구사치성 소비재는 15%에서 18%로 인상
 - SRL(Social Responsible Levy): 0.25% (2005.1.1일부),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산정 공식에 5% 마크업을 한 다음 부과
 - 준조세 신설
 - 교육세 0.25%(소득세, 관세, 소비세, 특별소비세에 가산), 건설 산업세(도급 규모액 별로 업체당 0.25%, 0.25%, 0.5%, 1% 차등 부과), 어린이 안전교육 환경 개선세 0.25% (소득세, 관세, 소비세, 특별소비세에 가산)
- 스리랑카는 주요 남아시아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발효 중에 있는데 인도와는 2000년에 파키스탄과의 FTA는 2005년 중에 각각 발효되어 이들 국가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스리랑카산 상품이 민감 품목을 제외하고는 특혜관세나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 2006년 현재 스리랑카가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이외의 과징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비 필수품에 대한 수출개발청(EOB) 부과금(EOB Levy): CIF기준 10, 15%, 20%
 - 비 필수품: 과일, 채소류, 가공 및 비 가공식품, 신발, 가방,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섬유제품(원단제외), 욕실용품 및 향수류, 세라믹 및 유리제품, 펜,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
 - 모든 과세대상 수입품에 대해 10% 수입세 과징금(import duty surcharge)
 - 단, 유제품, 의약품, 석유류, 설탕류 제외
 - 부가가치세(VAT): 0%, 5%, 15%, 20%
 - 부가가치세 감면: 핸드룸 산업용 기계 및 기술, 안 및 염색원료, 대형건설기계 및 장비 수입(향후 2년간), 콜롬보 및 감파하 지역 이외에서 RS 30백만 이상의 자본금으로 새로운 업종을 설립하기 위해 신규 플랜트 및 기계수입(2006.4월부터 2년간), 컴퓨터 및 액세서리
 -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부과기준을 인상하여 종전의 CIF + 5% 수입업자 마진율에서 7%로 의제마진율을 올림
 - 일부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 생수, 주류, 맥주, 자동차, 담배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2004년, 주류 및 담배는 2005~6년에 대폭 인상됨.

- 항만사용료: 컨테이너 별로 다름
- 항만으로 개발세 (PAL: Port and Airport Development Levy)
 - 가공 및 재수출용 수입품: 0.25%→ 0%로 인하(면세)
 - 기타 수입품: 1.5% → 2.5%로 인상
- 사회책임부과금(Social Responsibility Levy: 어린이 안전교육 환경개선 기금용) 1%
 - 2006년 부로 0.25%에서 1%로 인상

나. 수입금지품목: 불법 마약

- 약품수입은 보건부(Ministry of Health)내 약품 및 화장 장치위원회(Drugs and Cosmetic Devices Committee)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와 유사하게 무기류 및 탄약은 군인 및 경찰, 또는 민간 보안용 모두 국방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입쿼터 및 수입라이선싱

- 스리랑카는 감자, 마른 칠리등과 같은 농식품에 계절쿼터를 운영하였으나 최근에 이를 폐지하였다. 식품수입상만 이들 농식품 수입을 허용하였으며 수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허가는 과거 수입실적에 따라 부여된바 있었다.
- 2003년 스리랑카는 WTO에 수입쿼터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통보한바 있다. 수입허가 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은 쌀 및 중고 가구, 자동차 부품, 담배용 종이, 캐쉬넛 (Cashew nuts)등인데 이는 국내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 한편, 스리랑카 는 HS 6단위 기준으로 300여 개 품목에 대해 수입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부분 건강, 환경, 국가 안보상을 이유로 하고 있다. 수입업자는 수입승인 (import licence)을 받기 위해 수입가격의 0.1%에 해당하는 수수료(fee)를 납부해야 한다.

라. 최근 수입규제 동향

□ 반 덤핑법 제정움직임

- 약탈적인 수입품 덤핑 가격 공세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 덤핑법 제정 요구가 국내산업계, 상무부등 통상관련 부처로부터 높아지고 있어, 반덤핑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다.

□ 중고차 수입 규정 강화

- 2006.11.1일부로 중고차 수입을 강화할 예정인데, 자동차 등록증을 위조하여 정크 수준의 중고차 수입을 방지하고 중고차 수입상들의 언더밸류 관행 시정, 수출국(주로 일본)의 차령이 1-2년 된 대형 사고차가 정상적인 차로 둔갑 수입되어 고가에 팔려 중고 수입상이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수출국내 공인 지정된 검사소의 검사증 첨부, 선적적 검사 의무화, 수출 전 일정 크기의 하자 수리 및 에어 필터 등 주요 소모부품을 새 것으로 교체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스리랑카 세관 의류 불법 원산지 위조활동에 대한 단속 강화

- 스리랑카 세관은 콜롬보 항을 경유한 의류 수출 활동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스리랑카 세관은 현재까지 실제로는 중국산 의류이면서 콜롬보 항에서 스리랑카산으로 둔갑 된 45,000피스 의류를 2006년 1분기중에 억류 조치한 바 있다.
- 스리랑카 본부세관의 정보과장인 LM Nelson에 따르면 원산지를 위조한 중국산 의류들은 유럽형 제품들로서 스리랑카 현지 파트너와 공동으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스리랑카 의류는 EU GSP 제도하에서 관세 없이 EU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반면 중국산 의류는 12.5%에 달하는 수입관세를 EU가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위조한 것이다.
- 콜롬보세관은 콜롬보항을 경유한 환적 물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스리랑카 상무부, 투자청과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17. 관세제도

기본적으로 대외무역과 관세정책은 시장지향적인 정책의 틀 내에서 관세를 인하하고 관세 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보호주의 장벽을 완화하고 보다 자유롭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세수확대를 위해 2002년 11월에 2000년 2월부터 시행중인 기존의 2개 밴드 시스템(무관세, 10%, 25% 관세율 구조)을 폐기하고 다수의 밴드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러한 정책기조가 약화되기도 하였다. 2002년 시행된 관세제도는 1,663개 품목에 달하는 무관세품목이 새로운 2% 관세밴드로 포함되었고 59개 품목은 20% 밴드, 일부 기계류와 장비등 820개 품목은 5% 밴드를 그대로 유지하며, 1260개 품목은 25% 밴드를 유지하였다.

스리랑카 관세율체계는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데, 현재는 HS 분류제도에 기초한 다수 밴드 수입 관세 스케줄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관세율 밴드는 0, 2.5, 6, 15, 28%이다.

대부분의 농산물 및 식품, 소비재, 화학, 국내에서도 제조 되는 중간재는 28%이며, 기초원자재는 2.5%, 반가공 원자재 6%, 중간재 15%, 대부분 완성제품은 28%이다.

관세는 기본세율과 방콕협정(한국 등 6개국)에 대한 특별세율로 분류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별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은 없다.

스리랑카는 2001년 2월 21일부로 재정적자 확대에 따라 주요 품목의 관세율에 surcharge 40%를 부과하였으며 2002년 4월 15일부로 surcharge를 20%로 인하하여 2003년 말까지 유지하였으며 2004년 1월부터 10%로 인하되었다.

VAT의 경우 2003년까지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10 -20% 수준으로 부과하였으나 2004년 1월부터 15%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단일 요율을 적용하였다.

또, Finance Act No.11 of 2002에 따라 스리랑카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Ports and Airports Development Levy(수입가격의 1%)를 추가로 부과하였는데 2005년부터는 수입가격의 1.5%로 0.5% 포인트 상향조정하였다. 2006년에는 다시 이를 세분하여 가공 및 재수출용

수입품은 종전의 0.25%에서 0%로 면제한 반면, 기타 수입품은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하였다.

200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VAT)세율을 15% 및 18%로 적용 아이템을 구분하고 있는데 불요불급한 사치성 소비재의 경우 18%를 적용하고 있고 일반적인 아이템의 경우 15%를 적용하고 있다. 2006년에는 사치품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15%에서 20%로 인상하였다.

그러므로 아이템마다 적용하는 VAT율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스리랑카 세관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 영세율: 수출품 또는 기타 면세품
- 기본세율(5%): 필수 Food item(감자, 양파, 다알, 설탕, 건어류, 우유파우더, 고추와 야채류) - 환급 없음
- 표준세율(15%): 일반품목
- 사치성제품, 자동차, 금융서비스(20%)
 - 사치소비성제품(주류,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안테나, 카메라, 보석류)은 환급 15%까지 가능

참고로 스리랑카는 수입자동차에 대한 아주 높은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수입관세는 28%, 특별소비세는 가솔린차는 배기량에 따라 30-60%, 디젤차는 115%를 적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20%를 적용하고 있다.

□ 스리랑카 수입시 주요 세금부과 내역, 2006년 1월부터

- 수입관세
 - 영세율: 고부가 필수 품목
 - 2.5%: 기본 원재료
 - 6.0%: 반제품 품목
 - 15.0%: 중간재, 스페어 파트, 기타
 - 20.0%: 자동차 또는 다른 완성품류
 - 특소세(10%, excise): 선정사치성품목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오븐, 쿠키, 헤어드라이어와 헤어드레싱 품목, Cellular phones, TV)
- 과징금(Surcharge): 10% on Custom Duty
- 항만공항개발세(Ports and Airports Development Levy): 2.5% on CIF value
- VAT: 5%, 15% 또는 18%로 아이템에 따라 차등 적용
 - CIF 가격의 7%를 수입업자마진으로 의제하여 이를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
- Excise(Special Duty: 특별소비세): 특정 사치성 소비제품에 대해 10% 부가
 -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진공청소기, VTR, 오븐, 쿠키, 헤어드라이어, 미용용품, TV
- 사회책임세(SRL): 1%
- 수출개발세(EDB CESS): 비필수품에 대해 3개 단계 10, 15, 20%세율중의 하나가 적용

주: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산정 기준

(관세평가액 * 107% + 관세 + 과징금 + EDB CESS + 특소세 + 항만개발세)

CUSTOMS DUTY
<p>Customs Duty (d) = (CIF value) * (Advalorem rate of Duty), or, Customs Duty (d) = (Quantity) * (Unit rate of customs Duty)</p>
SURCHARGE
<p>Surcharge (s) = (Customs Duty) * Surcharge rate</p> <p>Example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 CIF value = Rs. 1000/- and Duty Rate = 10% - Then the Customs Duty = Rs. 100/- - Surcharge = 100 * Surcharge rate
V.A.T (Value Add Tax) and EXCISE Duty
<p>v = CIF value in Rupees d = Customs Duty s = Surcharge c = Cess Levy under Sri Lanka Exports Development Act e = Excise (special provisions) Duty (ED) t = Value Added Tax (VAT) p = Port and Development Levy (PAL) / = Social Responsibility Levy (SRL) r_e = rate of Excise (special provisions) Duty (ED) r_t = rate of Value Added Tax (VAT)</p> <p>Value Added Tax (VAT) = $(v + 7\% \text{ of } v + d + s + c + p + e) * \text{VAT rate or}$ $[(v + 7\%v + d + s + c + p) * (1 + r_e)] * r_t / (1 - (r_e * r_t))$</p> <p>Excise (special provisions) Duty (e) = $(v + 7\% \text{ of } v + d + s + c + p + t) * (\text{ED) rate ,or}$ $[(v + 7\%v + d + s + c + p) * (1 + r_t)] * r_e / (1 - (r_e * r_t))$</p>
E.D.B CESS
<p>Cess Levy (c) = (CIF value) * (Cess levy rate), or Cess Levy (c) = (quantity) * (unit rate of Cess levy), or Cess Levy (c) = (Value of Customs duty) * 10%¹</p> <p><small>1 Applicable only to the items with Customs duty equal or more than 45% of the CIF</small></p>
Social Responsibility Levy (/)
Social Responsibility Levy (/) = (d + s + e) * SRL rate
PAL (Port and Airport Development Levy)
Port and Development Levy (p) = (CIF value) *PAL rate
OTHER CHARGES
<p>Seal Charges:- An amount of Rs. 100/- should be paid as seal charges per container. Container Examination Charges:- Container Examination Charges are collected as follows:- Rs. 400/- for the first container. Rs. 100/- per additional container Wharf Assistants' Examination Fees:- Course and Examination Fees are charged as follows:- Rs. 2350/- should be paid as Course Fees (Examination Fees included). Rs. 500/- should be paid to sit the Examination only.</p>

18. 주요인증제도

스리랑카 표준원(SLSI: Sri Lanka Standard Institute)은 스리랑카 국가표준기관으로 1965년에 설립되었으며 관련법은 Sri Lanka Standards Institution Act of 1984이다.

스리랑카 표준원의 주요 활동은 6개 기술부서가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표준제정, 상품 및 시스템 인증, 제품테스트 시설, 표준진흥, 훈련서비스, 정보서비스 수입품 및 수출품에 대한 검사, 소비자 서비스, 국가품질상 및 프로그램 운영, 산업측정 서비스 등이다. 스리랑카 표준원은 국제표준기관(ISO)회원으로 회원국 국가표준기관과 상호 표준, 기술규정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보교환 등을 하고 있다. 현재 스리랑카 표준원은 소비재 상품, 산업용 원자재, 농산품, 수산품, 실습코드, 용어해설, 테스트 방법 등에 대한 1600개 이상의 표준을 제공 공표하였다. 최근 시장의 세계화에 따라 다수 국가들이 채택한 국제표준을 채택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데 스리랑카표준의 47개만이 국제표준에 부합되고 있어 스리랑카 상품의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 국제표준 채택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스리랑카는 품질관리 및 보증에 관한 ISO 9000시리즈 표준, 환경관리시스템인 ISO 14000표준, 식품안전표준인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보증, GMP(Good Management Practices Certificates)를 채택하고 있다.

스리랑카 강제기술 규정은 87개가 시행되고 있다. 수입(표준 및 품질관리)관리규정 2001은 스리랑카 표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수입이 불허되는 85개 품목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들 제품 수입시에는 스리랑카 표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수입검사 스킴(IIS: Import Inspection Scheme)을 받아야 한다. 수입상은 수출국 실험기관(스리랑카 표준원이 인정한 기관, 또는 공인된 증명기관)이 발급한 규정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인증서는 스리랑카가 규정한 표준에 부합됨을 인증하는 것이다.

- 강제인증대상리스트 및 표준기술규정은 스리랑카관세청 사이트 참조
<http://www.customs.gov.lk/laws/SLSI/SLSI-Regulations.htm> [23 April 2003]
- 수입품에 대한 스리랑카 표준규정, 특별명령관보: Gazette Notification No.1203/29, 28 September 2001, 온라인정보 입수처: <http://www.customs.gov.lk/laws/customs/index.htm>[18 February 2003]

스리랑카 인증제도는 스리랑카 부합성 평가를 위한 스리랑카 인증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스리랑카 인증 위원회(Sri Lanka Accreditation Board)는 스리랑카 국가인증 기관으로 2005년에 설립되었는데 근거법은 Act 32 of 2005이며 주요 수행업무는 부합성 평가에 관계된 검사시험소, 의료실험실의 인증, 검사, 공인을 하는 것이다.

또한 수입품 검사 제도에 관한 기술규정은 관보(Gazette Extraordinary 1203/29, September 28, 2001)을 참고하면 된다.

가. 표준 시행

규제당국이 법률로 표준을 정했을 경우 이를 표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강제적이며 이들 강제 표준에 대한 내용은 소비자보호국, 식품국, 수입/수출 통제기관, 자동차 등록부, 살충제 등록소 등이 정하고 있다.

1) 표준마크 사용: SLS Mark

SLS Mark는 디자인, 상품 생산 및 품질관리에 사용가능하며 이들이 스리랑카 표준원이 정한 관련규정과 기준에 부합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스리랑카 표준원은 이들 표준마크 부착 상품의 제조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2) 인증: Certifications

- Product Certification
 - 제품이 관련 스리랑카 표준에 부합되는 여부를 인증
- Qual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 품질관리 시스템 실행에 관한 ISO 9001 기관 인증
-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 환경관리 시스템 실행에 관한 ISO 14001 기관 인증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Certification
 - 식품안전 및 위생관행 실행에 관한 SLS 1173 기관 인증
- Energy Efficiency Labelling
 - 에너지 절약 용품(전구 등)에 대한 인증
- Sri Lanka National Quality Award Symbol
 - 이 상을 수상한 회사는 로고를 수상 일시를 기준으로 5년간 부착사용가능
- Sri Lanka Standard Institution
 - 주소: 17 Victoria Place, Elvitigala Mawatha Colombo 8
 - 전화: 94-11- 267 1567, 1572, 4618; 268 7523; 269 7039;535 4319
 - 팩스: 94-11-267 1579,2617
 - e-mail: slsi@slsi.slt.lk
 - <http://www.nsf.ac.lk/slsi/>

나. 지적재산권 개황

스리랑카의 경우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가 있으나 아직 정보 및 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며,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도 거의 없다. 최근에 들어 점차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면서 "CYLON TEA"에 대한 상표권이 등록되고 동 상표 사용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수준이다. 소프트웨어의 경우도 현재 스리랑카 내에서 돈을 주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며 대부분 소프트웨어는 무료라는 인식이 아직도 널리 퍼져 있다. 아울러 법원의 의사결정에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소송을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

현지 재래식 시장이나 일반 상가에서 유통되는 음악, 영화, 드라마CD 등 대부분이 복제품이며 진품은 콜롬보 플라자 호텔 내 고급상가, 공항면세점 등 일부에서 판매되고 있다.

스리랑카는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등 기타 국제 지적재산권 보호 협약의 체약국이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국과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였다.

스리랑카 지적재산권은 the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1979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데 상표권, 특허, 저작권, 산업 디자인 등을 관할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포괄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도입한 법이다.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 집행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EU 등 요구를 수용하여 2003년에 새로운 지적재산권 보호법(the Intellectual Property Act No. 36 of 2003)을 제정하였다. 새로운 지적 재산권 보호법 제정으로 스리랑카는 WTO의 TRIPs 협정에 합치되는 제도를 갖추게 되었으며 새로운 법은 구법에 비해 지적재산권 소유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였다. 또한 신법에 따라 위조상품 수출입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세관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침해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피해 입은 기업이 법 집행관 의 지원으로 위법업체의 수색 및 압류활동과 같은 형사 상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스리랑카지적재산권 등록관련 문의처는 the Registry of Patents and Trade Marks of Sri Lanka이며 지적재산권문제는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Consumer Affairs에서 담당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는 “ATTN; Director General,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400, D.R. Wijewardena Mawatha, Colombo 10, Tel.011-266-9176” 으로 하면 된다.

다. 특허권

1906년 특허령, 1938년 개정령, 1979년 지적재산권 보호법에 근거해 등록, 보호받을 수 있으며 보호기간은 일반 상표권과는 달리 15년이며 유효 기간 만료 전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스리랑카 정부에 따르면 특허권 취득 소요기간이 신청 후 6~8개월이 소요되며 신청서류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 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1996년 이후 약 600여개 특허가 승인되었다.

- 특허 출원 시 구비서류
 - 특허 출원신청서
 - 신청인의 인적사항, 스리랑카 비거주자인 경우는 스리랑카에 법적 대리인의 인적사항
 - 발명의 타이틀
 - 특허의 설명
 - 도면, 필요 시
 - 요약서
 - 스리랑카 비거주자에 의한 신청일 경우 날짜 및 번호

라. 상표권

1) 등록대상

주재국법상 등록대상 상표(Mark)로는 Trade Mark와 Service Mark가 있으며 등록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의적 혹은 가공의 명칭, 이름, 익명, 지명, 슬로건, 도안, 문자, 숫자, 스탬프, 제품모양 등이 가능하다.

2) 관련법규

The code of intellectual property act No.52 of 1979(part V), the intellectual property regulations 1980 (Part II, Gazette extraordinary No.60/20 of 31.10.1979)

3) 등록 출원 시 구비서류

- 상표도면 4 장
- 출원서(Form M1): 성명, 주소, 신청인 관련사항
- 수수료: 529 루피 (5.2 불 상당)
- 제출처: Registry of Patents and Trade Marks, No.267, Union Place, Colombo 2
- 문의처: Mr.K.Anton Perera, Head of Trade Mark Section(전화: 94-1-689368)

4) 상표권의 존속기간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등록일을 상표출원일로 간주하고 있으며 상표권 유효기간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GUIDELINE ON OBTAINING ACCEPTABLE QUALITY CERTIFICATES by SRI LANKA STANDARDS INSTITUTION (COMPULSORY IMPORT INSPECTION SCHEME)

- CONDITIONS TO BE FULFILLED
 - For the quality certificates to be acceptable, following conditions shall be fulfilled:
 - The laboratory shall be acceptable to SLSI. For that purpose, the laboratory shall fulfill the following conditions: The laboratory shall have been accredited by the national accreditation body of the exporting country or any other agency acceptable to SLSI against ISO 17025 or similar standard.
 - Or
 - The laboratory shall have assessed by SLSI and found to have an acceptable quality management programme for the tests concerned.
 - Note: A list of acceptable laboratories is prepared by SLSI. However, any other laboratory which fulfills the above requirements would be considered. Until such laboratories are formerly included in the list, the laboratories shall provide the documentary evidence on accreditation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accreditation certified by the issuing organization as a true copy and supported documents to identify the agency who had granted accreditation, scope of accreditation and validity period)
 - To be listed in the document, the laboratory shall formerly apply for the purpose in the prescribed form together with the status assessment charges.
 - The samples shall be drawn by the technical staff of the laboratory.

- The samples shall be drawn from the lots intended to be exported to Sri Lanka.
- Unless otherwise specified, sampling shall be carried out batch-wise.
- Note: One batch shall include products manufactured under similar conditions and shall not exceed one day's production.
-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 scale of sampling, methods of tests and criteria for conformity shall be as defined in the relevant Sri Lanka Standard.
- Unless otherwise specified, testing shall be carried out for all the parameters specified in the relevant Sri Lanka Standard. (Importers are advised to contact the relevant personnel of the SLSI in this regard.)
- Test values shall be provided batch-wise.
- Description of the goods and details for uniquely identifying the particular consignment, which can be verified by other documents pertaining to the consignment, shall also be given.
- Adherence to conditions 2), 3), 4) and 5) above, shall be mentioned in the quality certificate. A statement similar to the following shall be given.
- We certify that the samples, of which the results are given below, were drawn by the technical staff of (name of the laboratory) on (date) at (address where the samples were drawn), from the batch numbers (batch numbers from which the samples were drawn), in accordance with the scale of sampling given in SLS (number and year of the Sri Lanka Standard) with no deviations/with deviations as follows (delete the inappropriate words and if done with deviations, mention them) and tested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s specified in the said standard, on the request of (name and address of the exporter.)
- The original quality certificates shall be submitted to SLSI. (Photocopies are not accepted. Faxed copies are also not accepted unless the quality certificates are directly faxed to the SLSI by the laboratory.)
- (The specification for imported Brown Sugar detailed by the Sri Lanka Standards Institution is attached with this report for reference.)

19. 지적재산권

가. 지적재산권 개황

스리랑카의 경우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가 있으나 아직 정보 및 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최근 들어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특히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의 수출용 고급의류가 일부 스리랑카 현대 유통상가에 불법 흘러 들어감에 따라 구미 바이어들의 고발로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점차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면서 "CYLON TEA"에 대한 상표권이 등록되고 동 상표 사용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수준이다. 소프트웨어의 경우도 현재 스리랑카 내에서 돈을 주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며 대부분 소프트웨어는 무료라는 인식이 아직도 널리 퍼져 있다.

아울러 법원의 의사결정에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소송을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

현지 재래식 시장이나 일반상가에서 유통되는 음악, 영화, 드라마CD 등 대부분이 복제품이며 진품은 콜롬보 플라자호텔 내 고급상가, 공항면세점 등 일부에서 판매되고 있다.

스리랑카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등 기타 국제지적재산권보호협약의 체약국이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국과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였다.

2003년 11월 12일에 시행된 2003년 법률 제 36호 9 the Intellectual Property Act No. 36 of 2003)는 지적 재산권법은 지적 재산 분야에 대한 일련의 상세규정을 구현화하였다. 동법은 특허, 저작권, 저작권에 관한 권리, 상표, 발명특허, 공업의장, 부정경쟁방지 (미 공표 정보 포함), 집적회로 배치설계, 지리적 표시에 관한 지적 재산의 체계에 신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WTO) 하에 스리랑카의 조약의무에 따라 시행된 이 신법은 국민의 창조성 증진, 통상확대, 지식지향의 글로벌경제로의 스리랑카 경제통합을 기도하고 있다. 이법은 특허·상표등록기관에 의해 관리된다. 특허·상표 등 등록신청은 특허·상표 등록 기관에 출원한다.

이 법은 1979년 법률 제 52호인 지적 재산권법 (구법: the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1979)을 새로 대체하는 것으로 상 기밀 (ex:생산방식) 보호강화, 컴퓨터·소프트웨어, 컴퓨터·데이터베이스, 정보기술 기타분야에서 재산을 강화하고 있다. 지적 재산 기밀침해에 대해서 예술가·배우·작가에 대해 구제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즉, 신 법은 미국과 지적재산권 양자협상결과와 WTO의 TRIPs의무조항을 반영한 것이 특징인데,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적재산권 소유자에 대한 구제조치로 강제금지명령, 침해 물품 및 플레이트, 침해물품 제조시설의 압류 및 폐기, 수출입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수출입에서 위조상품에 대한 세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이 법은 여러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저작권보호 : 보호기간은 작가의 생애기간 및 사후 70년
- 공업의장 : 보호기간은 5년간. 단, 연속 5년간의 기간갱신이 2번까지 가능
- 특허권 : 보호기간은 15년, 단 매년 갱신해야 함
- 상표 : 보호기간은 10년간, 연속 10년간 기간갱신이 무제한 가능

저작권, 공업의장, 상표에 관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는 2003년 법률 제 36호 규정에 따라 RS 500,000(5,000불 상당) 벌금 및 6개월 징역, 또는 이들 2개 벌칙을 부과한다.

스리랑카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보호(TRIPS)조약을 비준했다. WTO (세계무역기구)는 TRIPS 조약을 도입·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스리랑카 국내법안의 조사·심사를 종료하였다.

스리랑카 지적재산권 등록관련 문의처는 the Registry of Patents and Trade Marks of Sri Lanka이며 지적재산권문제는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Consumer Affairs에서 담당한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는 “ATTN: Director General,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400, D.R. Wijewardena Mawatha, Colombo 10, Tel.011-266-9176” 으로 하면 된다.

나. 특허권

1906년 특허령, 1938년 개정령, 1979년 지적재산권보호법, 2003년 개정 지적재산권 법에 근거해 등록, 보호받을 수 있으며 보호기간은 일반 상표권과는 달리 15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등록비는 Rs4,025(미화 40불상당)이며 특허 등록 후 매년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스리랑카 정부에 따르면 특허권 취득 소요기간이 신청 후 6~8개월 정도 소요되며 신청서류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 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 특허 출원 시 구비서류

- 특허 출원 신청서
- 신청인의 인적 사항, 스리랑카 비거주자인 경우는 스리랑카에 법적 대리인의 인적사항
- 발명의 타이틀
- 특허의 설명
- 도면, 필요 시
- 요약서
- 스리랑카 비거주자에 의한 신청일 경우 날짜 및 번호

다. 상표권

- 등록대상: 주재국법상 등록대상 상표(Mark)로는 Trade Mark 와 Service Mark 가 있으며 등록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의적 혹은 가공의 명칭, 이름, 익명, 지명, 슬로건, 도안, 문자, 숫자, 스탬프, 제품모양 등이 가능하다.
- 관련법규: the code of intellectual property act No.52 of 1979(part V), the intellectual property regulations 1980 (Part II, Gazette extraordinary No.60/20 of 31.10.1979)
- 등록 출원 시 구비서류
 - 상표도면 4장
 - 출원서(Form M1): 성명, 주소, 신청인 관련사항
 - 수수료: 529 루피 (5.2 불 상당)
 - 제출처: Registry of Patents and Trade Marks, No.267, Union Place, Colombo 2
 - 문의처: Mr.K.Anton Perera, Head of Trade Mark Section(전화: 94-1-689368)
- 상표권의 존속기간: 등록일로부터 10 년간 유효하며 등록일을 상표 출원일로 간주하고 있으며 상표권 유효기간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10 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20. 소비자보호제도

아직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지만 가전, PC, 프린터, 토너 등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분야는 정품 구입 시 하자가 소비자 잘못이 아닌 경우 보증기간 내에 유통업체가 무상수리 또는 교통비만을 받고 수리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03 년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 업무 권한법(Consumer Affairs Authority Act No. 9 of 2003)이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을 다음과 같다.

- 소비자 생명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상품 마케팅, 서비스 제공에 대한 소비자 보호
- 불공정 무역관행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이익보증이 당연한 고려사항임을 명시
- 어디에서나 소비자가 경쟁적인 가격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적절하게 접근토록 함
- 불공정 무역관행, 제한적 무역관행, 상인들에 의한 소비자 약탈관행에 대한 구제 도모

기본적으로 공산품 등의 원활한 공급에 애로를 겪고 있어 소비자 권리 및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 최근에는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규와 소비자 단체들이 구성되어 점차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어가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소비자권리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개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고객만족경영, 마케팅, 레이아웃과 같은 개념이 점차 도입되고 있으나 아직은 내수시장이 작고,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유통부문이 아직 낙후되어 있는 점들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가전 및 사무자동화기기 등은 워런티 카드와 구입영수증이 있으면 품질보증기간 내 제품의 본질적 하자로 고장 나는 경우 판매점이 무상으로 부품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나, 교통비조로 출장비를 받는 경우도 상당하다.

스리랑카 자동차 신규등록대수의 80-90%를 차지하는 수입 중고차나 현지매매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높은 제세금으로 고가인데다 수입상(주로 일본에서 수입)이나 중고차 매매상이 차량등록서류 및 검사서류를 조작하여 차령 및 마일리지를 속이고 주요 부품을 바꿔 치기 하는 것이 다반사이며 특히 일본 등 수출국에서 대형사고를 당해 폐차수준의 출고 연식이 1-2 년 된 차량이 수입되어 신차수준으로 둔갑되어 고가에 판매되는 경우가 적발되곤 한다.

물론 최근 10 년 동안 스리랑카에 소매업의 현대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고 주요 메가 비즈니스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매업태도 다양하여 슈퍼마켓체인, 의류전문매장 및 체인점, 식품체인점등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소매유통업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짐에 따라 매장을 현대화하고 쇼핑하기 편안하게 하며 POS방식이 도입되고, 종업원의 친절한 태도를 중시하는 고객만족 개념이 도입되고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의류 체인점 분야에서는 French Corner가 눈에 띄는데, 인구 230만 명의 스리랑카 최대 상업도시이자 정치경제의 중심지인 콜롬보, 그리고 교외지역에 매장을 배치하고 있다. French Corner는 프랑스 국기를 본 따 파란색, 붉은색으로 매장을 꾸미고, 남녀노소 전 가족이 고를 수 있는 다양한 의복과 함께 액세서리도 진열하고 있는데 가격이 아주 적당하고 점원

이 매우 친절하고 고객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객들이 높이 사고 있어 여기서 쇼핑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한편, Hameedia는 신사의류에 특화되어 있고 여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Hameedia옷을 사 입으면 고객이 무언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도록 브랜드를 차별화하고 있으며 매장도 고객이 찾기 편리한데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스리랑카 소매 업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업소들의 사례에 비춰 볼 때, 우리 기업들이 마케팅 하거나 에이전트를 찾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구전 마케팅을 통해 친구, 가족, 동료들을 고객으로 끌어 들이는데 특화된 업소는 매스컴 광고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다.
- 둘째, 가격이 중요한 구매요소이지만 반드시 영가로 책정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가격 결정은 점포의 이미지와 마켓 포지셔닝과 부합되어야 하는데 상품의 종류와 질, 점포 위치, 점포의 분위기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셋째, 양질의 서비스를 항상 규격화하고 종업원들이 상품에 대해 잘 알고 고객에 친절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서비스 기준은 일관성이 있고 경쟁업소 들에 비해 차별화되고 눈에 띄어야 한다. 서비스의 질은 물론 주차가 편하고 여러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아이템을 고르기가 쉽고, 계산이 빠르고 쇼핑이 편리해야 한다. 맞춤형 고객 서비스가 이루어 질 때마다 고객들이 감동할 것이며 고객들은 특별하게 취급 받기를 원하며 이러한 니즈가 충족될 때 만족을 느끼고 충성고객이 된다.
- 넷째, 매장의 위치가 아주 중요하며 특히 주차장이 충분하고 주차하기 편한 도로변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 마지막으로 점포 내 우수한 머천다이징, 적절한 조명 및 에어컨, 그리고 기본적으로 점포가 쇼핑에 편안하고 쇼핑 통로의 간격이 충분해야 한다.

점포 레이아웃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고객들에게 들어오고 싶은 유혹을 제공하고, 상품 진열, 가격이 보이게 하고 판촉용 디스플레이를 하고, 서로 다양한 범위의 상품을 갖추고 독특한 매장문화를 소비자와 교감하여 소비자를 리드해야 한다.

21. 교역관련 국가기관

가. 스리랑카 관세청

- Sri Lanka Customs
 - Customs House, Bristol Street, P.O. Box 518, Colombo 01
 - 전화: 94-11- 2470945-9
 - 팩스: 94-11- 2446364
 - <http://www.customs.gov.lk>
 - * 관세율표 조회: www.customs.gov.lk/tariff.htm

나. 스리랑카 항만청

- Sri Lanka Ports Authority
 - No.19, Chaitiya Road, P. O. Box 595, Colombo 01.
 - 전화: 94-11- 2421201, 2421231
 - 팩스: 94-11- 2440651
 - <http://www.slpa.lk>

다. 스리랑카 수입/수출 통제국

- Department of Imports and Export Control
 - 75 1/3, First Floor, Hemas Building York St. Colombo 01.
 - 전화: 94-11- 2326774
 - 팩스: 94-11- 2328486
 - e-mail: deptimpt@sltnet.lk
 - <http://www.imexport.gov.lk>

라. 스리랑카 투자청

- 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
 - World Trade Center, West Tower 26th Floor, Echelon Square, Colombo 01.
 - 전화: 94-11- 2427000
 - 팩스: 94-11- 24224074
 - <http://www.boi.lk>

마. 스리랑카 수출 개발청

- Sri Lanka Export Development Board
 - 42, Nawam Mawatha, Colombo 2
 - Tel: 94-11-230 0705-11
 - Fax: 94-11-230 0715
 - e-mail: edb@tradenetsl.lk
 - <http://www.tradenet.lk>

바. 스리랑카 중앙은행

- Central Bank of Sri Lanka
 - Information Department, Level 9, Central Bank of Sri Lanka, No: 30, Janadhipathi Mawatha, Colombo 01, Sri Lanka.
 - 전화: 94-11-2477000
 - 팩스: 94-11-2346304
 - Email: cbslgen@sri.lanka.net
 - <http://www.centralbanklanka.org>

사. 스리랑카 환경청

- Central Environment Authority
- No.104, Robert Gunawardana Mawatha “Parisara Piyasa” Battaramulla Sri Lanka
- 전화: General: 94-11- 2872263, 2872278, 2872415, 2872419, 2873447-9,2873451
- 팩스: 94-11-287 2347
- <http://www.cea.lk>

아. 스리랑카 통신 규제위원회

- 주소: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Commission 276 Elvitigala Mawatha, Colombo 8.
- 전화: 94-11-2689345 / 2684865
- 팩스: 94-11-2689341
- 이메일: dgtsl@trc.gov.lk
- <http://www.trc.gov.lk>

자. 실론 상공회의소

- Ceylon Chamber of Commerce
- Foreign Trade/Information Division
- Ceylon Chamber of Commerce
- 50, Nawam Mawaha Colombo 2
- 전화: 94-11-242 1745,232 9143, 238 0153
- 팩스: 94-11-244 9352, 243 7477, 238 1012
- e-mail: infoboi@chamber.lk
- <http://www.chamber.lk>

차. 기타

- 스리랑카 보건부(의약품): www.health.gov.lk
- 세계은행(스리랑카지원 프로젝트): www.worldbank.org/lk
- 스리랑카 공동 의류조합 포럼(의류 수출업체 이익대변단체): www.jaafsl.com
- Fitch Ratings Lanka Ltd: www.fitchratings.lk
- 스리랑카 정책 연구소: www.ips.lk
- Law Net: www.lawnet.lk

22. 시장 특성

가. 시장규모

- 스리랑카는 2005년 기준으로 인구 1,967만 명, GDP 235억불, 1인당 국민소득 1,197불, 연간 총수입 89억불, 총수출 63억불, 수입상품 사용가능 인구 비중이 약 20% 내외로 추정되는 중소규모 시장이다. 전형적인 소량 주문시장이며, 규모 면에서 여러 브랜드의 동시 진출이 어려워 과점 형태의 시장구조를 보이고 있다.
(자료원: 스리랑카 중앙은행 연차보고서 2006.5월 및 영국 EIU 2006.8월 자료)

- 수입 전망치는 FOB 기준으로 2006년 96억불, 2007년 103억불이 전망된다.

(자료원: 영국 EIU 2006.8월 자료)

- 1977년 경제자유화 조치 이후 수입구조가 소비재 중심에서 산업 확대, 인프라 개발 및 건설활동 증대, 수출확대로 원료 부자재 등 중간재와 기계설비 등 자본재 중심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2005년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간재 60%(석유 18.7%, 섬유 및 의류 17.3%, 기타 중간재 19.7%), 자본재 21.1%(기계 및 장비 9.7%, 수송장비 3.7%, 건축자재 5.7% 등), 소비재 18.5%(식품 및 음료 8.5%, 기타 소비재 10.1%), 군수품이 0.4%이다.

(자료원: 스리랑카 중앙은행 2006. 5월 자료)

나. 일반특성

- 1인당 국민소득이 1,250불을 넘어서(2006년 전망치) 서남아 지역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나 아직은 소득수준이 낮아 인구가 1,967만 명임을 감안해도 소비제품 시장 규모가 작으며 품질보다는 가격이 중시되고 소량소액 주문이 일반화되어 있다.
- 고가품 및 고품질의 일반 소비제품과 기호식품 및 사치품은 일부 고소득층 및 외국인을 상대로 특정 유통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높은 관세(소비재 제세 200% 이상)로 인해 가격수준이 매우 높다.
- 저가 선호시장인 관계로 거의 모든 제품에 걸쳐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나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내구성 소비재는 세계 유명 고급브랜드가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현지 인지도는 괜찮은 편이며, 특히 아시아 국가 중 한국산 제품을 고급품으로 인식하는 편이다. 공업생산수준이 취약하여 원자재 및 수출용 중간재, 고급소비재 등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시장특성 유지하고 있다.
- 전통적으로 홍차, 고무, 코코넛 등 1차 산업이 산업의 근간을 이루어 왔으나 최근 외국인 투자기업 진출확대에 따른 봉제 등 제조업의 비중 증가로 2005년 기준, 의류 원부자재, 원유, 비료, 화학 원료 등 중간재 수입이 53억불을 차지하여 수입비중의 60%에 이르고 있다(2006. 5월 스리랑카 중앙은행자료)
- 사회간접시설이 취약하고 수출지향적 경공업 위주의 공업화 추진으로 중고 기계류와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 수입을 선호하며, 기계 및 장비, 수송기기, 건축기자재 등 각종 자본재 수입이 확대 추세인데 2005년 기준 자본재 수입은 19억불로 수입비중의 21%를 점하고 있다(2005. 5월 스리랑카 중앙은행자료)
- 스리랑카에서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 및 국영기업은 대부분 입찰을 통해 소요 물품 및 기자재를 조달하고 있고 대부분 자체조달형태를 띠고 있어 입찰을 통한 진출이 유망하다.

- 일반수입 전문업체는 도매상 및 소매상을 통한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며 다량 소요되는 제품은 필요업체가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많으나 일반 소비제품은 에이전트 혹은 전문업체에 의한 수입이 일반적이다.
- 유통구조는 단순해 수입되는 여러 제품이 일단 도매상 혹은 수입업자를 거쳐 소매단계로 이전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대형 유통점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 이들에 의한 직수입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상권의 중심인 콜롬보에는 현대식 슈퍼마켓이 몇 개가 점차 입점하고 있고 도심외곽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센터가 입점 중이나 아직은 중산층이상 고소득층 혹은 체류외국인이 주요 고객이며 대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은 일반재래식 시장에서 식료품이나 일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 도시·농촌 간 소득 격차가 심하여 농촌지역 가구당 월 소득은 도시지역 가구당 월 소득의 절반 수준이다.
- 인구집중으로 60%가 20%면적에 집중되어 있는데, 인구밀도는 콜롬보 교외지역 1,500 명/km², 서남부/중부/최북부 지역 500 명 이상/km², 대부분 건조지역은 150 명 미만/km² 이다. 인구의 1/3 만이 도시지역에 거주, 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서남부 및 중부지역에 집중 되어 있다.
 - 주요 도시 별(디스트릭트) 인구(천명): Colombo 2,382, Gampaha 2,111, Kurunegala 1,498, Kandy 1,343, Kalutara 1,094, Ratnapura 1,060, Galle 1,030, Jaffna 603 순임.
- 수도권(the greater Colombo area)에 상권 소득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데 수도권은 스리랑카 전 산업 생산액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소득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25% 높으며, 인구는 5 백만 명이 넘어 전 인구의 거의 30%가 집중되어 있다.
 - 수도권인 콜롬보 메트로폴리탄 지구(greater Colombo area)는 콜롬보, 교외지역인 Gampaha, Kalutra 지구를 포함함
- 스리랑카 전체 수출입의 90% 이상이 콜롬보항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무역거래도 콜롬보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20 - 30 개 대기업들의 수출입 규모가 전체 수출입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중, 소형 수입상의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 신흥도시 중산층(NUMC: New Urban Middle Class)이 민간부문의 급속한 확대, 관료의 권위와 공공부문의 상대적인 축소에 따라 신흥도시중산층이 새롭게 급속 부상 중이다. 신흥도시 중산층은 주로 사기업의 관리자계층, 시장개방으로 돈을 버는 자영업자, 외국 원조 기관 근무직원들이 주축이다. 사기업 관리자계층은 높은 연봉 외에 회사제공 자동차 및 유류대 지원 등 부가급부혜택을 받고 있어 구매력이 높다. 미국 컨설팅사 Ernst & Young 의 2003 년 조사에 따르면, 1993-2002 의 10 년간 기업 계층별 총 보상 수준은 최고 관리자급 5.4 배, 고위 관리자 4.17 배, 중간 관리자는 3.67 배가 각각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신흥도시 중산층을 모방한 소비행태 확대되고 있는데, 소득수준은 이에 못 미치지만 스리랑카 주부들은 심정적으로 신흥중산층의 생활을 동경하고 중산층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의류, 신변장식품, 자동차, 주택 인테리어, 가전제품, 외식 등에서 모방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다. 특정지역 산업집중도 심해

스리랑카 제조산업 지역별 규모별 분포 현황(2004년)

지구	대기업, 중간기업 (종업원수 10명 이상)		소기업 (종업원수 10명 미만)	
	기업체수	종업원수	기업체수	종업원수
Colombo	1,996	169,366	12,089	34,146
Gampaha	1,818	213,754	15,516	40,339
Kalutara	611	52,593	6,454	15,732
Kandy	645	36,803	8,100	19,447
Matale	193	11,991	3,321	6,995
Nuwara-Eliya	234	19,252	1,746	3,752
Galle	444	35,052	5,682	13,504
Matara	273	18,416	5,033	10,455
Hambantota	84	12,674	3,893	7,318
Jaffna	113	2,224	2,684	6,933
Mannar	20	336	413	1,083
Vavuniya	37	1,177	567	1,417
Mallativu	36	630	492	1,456
Killinochi	25	732	441	1,188
Batticaloa	120	2,752	1,898	4,764
Ampara	174	5,297	3,682	8,627
Trincomalee	38	2,998	1,487	3,254
Kurunegala	877	48,384	16,943	37,868
Puttalam	737	25,491	5,930	16,451
Anuradhapura	205	12,656	4,581	9,653
Pollonaruwa	221	11,152	2,489	5,002
Badulla	201	10,607	3,142	6,639
Moneragala	60	5,506	2,261	4,352
Ratnapura	534	29,744	5,916	12,521
Kegalle	265	18,241	6,666	12,727
총 계	9,961	747,828	121,426	285,623

자료원: 스리랑카 통계청 산업센서스(2004)

주: 2006년 현재 입수 가능한 최신 자료임

- 스리랑카 전체로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기업의 수는 총 12만 1,426개로 전체 기업수의 92%를 차지하고 중소기업의 전체종업원수는 28만 5623명으로 총 종업원수의 28%를 차지했다. 따라서 종업원 10명 이상의 중간규모기업과 대기업수는 스리랑카 전체 기업수의 8%를 차지했고 중간기업과 대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수는 82%를 차지했다.
- 지역 별로는 콜롬보와 갬파[스리랑카 웨스턴프로빈스(서부주)]지역이 대기업 및 중간기업 기업수의 각각 20%, 18%를 각각 점하고 소기업수의 각각 10%, 13%를 점하고 있어 이들 두 지역이 스리랑카제조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 다음으로 스리랑카 서던프로빈스(남부주)의 골, 마타라에 제조산업이 밀집돼 있으며 3 위로는 센추럴프로빈스(중부주)의 캔디와 누와라엘리아에 제조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기 3개 주에 제조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것은 도로, 철도, 항만, 통신, 산업용수 및 수도, 전기등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잘 갖춰져 있으며 투자 자원마련을 위한 금융 자본에 접근이 보다 용이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배후 소비 시장은 물론 인력확보가 쉽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 한편, 스리랑카 제조산업 고용인력의 62%가 식음료 및 담배, 섬유봉제피혁 부문에 고용되어 있는데 이중 섬유봉제피혁 부문은 직접고용인원이 46 만 명으로 전체 제조부분 고용의 45%를 점하고 있으며 이 부문의 기업 수는 1만 9,916 개에 달하고 있다.
- 2005 년 기준, 스리랑카 도소매업 (무역업포함) 호텔 요식업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6%로 GDP 구성 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농림수산업 17.2%, 제조업 16.3%, 수송 창고 통신 15.5%, 금융 부동산 기업서비스 11.7%, 토건설 7.2%, 행정 기타 정부 서비스 국방 사회서비스 7.0%순으로 나타났다.
- 도소매업 성장률은 1996 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05 년에 전년 대비 2.6% 성장하였다. 도소매 분야에서 외국의 선진유통기법 도입, 브랜드 및 CI 중시, 고객편의 중시, 슈퍼마켓 체인, 햄버거, 피자 등 서구패스트푸드의 프랜차이즈 점 확대 등 변화가 점차 가시 화되고 있다.

라. 도매유통

- 스리랑카에서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 및 국영기업은 대부분 입찰을 통해 소요 물품 및 기자재를 조달하고 있고 대부분 자체 조달형태를 띠고 있다. 일반 수입 전문 업체는 도매상 및 소매상을 통한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며 다량 소요되는 제품은 필요 업체가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많으나 일반 소비제품은 에이전트 혹은 전문업체에 의한 수입된 뒤 도매상-소매상 순으로 유통되고 있다.
- 한가지 스리랑카의 특징적인 현상은 동일 제품을 여러 수입상이나 여러 매장에서 취급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절대적인 시장규모가 작고 여러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시장특성으로 특정제품은 특정 바이어-매장에서만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마. 소매유통

- 스리랑카 내에 최근 들어서는 백화점, 슈퍼마켓 등 중간 규모의 유통점이 들어서고 있으며 편리한 쇼핑시설, 현대식 매장 및 높은 위생수준, 고객중시接客태도, 바코드 시스템 도입, 가격정찰제 실시 등으로 외국인, 중산층 이상 고객들이 주로 찾고 있다. 아직은 의류, 식품 등 소수의 전문 상점을 제외하고는 재래 시장이나 마을마다 있는 소규모 상점에서 구매하고 있다.
- 월마트, 까르푸, 메트로 등 세계적인 대형 할인매장이 아직 입점하지 않아, 현대식 슈퍼마켓 매장규모가 영세한 편이다. 미국 카길사에서 투자한 Food City 가 식품, 생선 및 육류, 생필품을 취급하는 슈퍼체인 매장을 주요 도시에 설치하여 소매유통시장의 선두에 나서고 있다.

- 콜롬보에서는 Odel, House of Fashion, Arena 등이 별도 현대식 건물에 매장을 두어 의류, 신발, 가방, 잡화, 수영복 등 스포츠레저용품 등을 중상류층, 외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 스리랑카가 해외 근무자국 근로자들이 입국 시 가전제품 등에 대한 면세 구입자격을 주고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내도하는데 착안하여 인도, 영국자본이 콜롬보인근에 대규모 면세상가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 유망 상품

1) 국제전화 카드

□ 제품설명

이 카드로 가정에서 전화회사로 전화를 걸어 카드번호를 말하면 카드 금액만큼 국제전화를 할 수 있다.

□ 히트요인

스리랑카의 경우 통신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국제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RS 25,000 (미화 약 400불)을 전화 가입 시 예치해야 국제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제 전화료 (IDD)가 평균 한국의 3-4배에 달하고 있어 대부분의 가정이나 중소 사무실에서 국제전화를 개통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가정뿐만 아니라 콜롬보 시내에서도 국제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공중전화 설치 숫자는 매우 작아 일반 시민들이 국제전화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 CELL TELL 이라는 중소 전화사업자가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국제전화 카드를 일반 상점에서 판매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은 가정에서 국내전화선을 이용하여 쉽게 국제전화를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며, 동 카드의 판매액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통신환경이 개선되어 모든 전화가 예치금 없이 국내, 국제전화를 허용할 수 있을 때까지 동 카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시사점

동 국제전화 카드는 틈새시장을 공략한 전형적인 사례에 속한다. CELL TELL은 스리랑카 텔레콤(SLT)에 비하면 매우 작은 회사로서 현재 국제전화는 SLT망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비용부담으로 국제전화를 사용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을 겨냥하여 틈새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동사는 실지로 전화비가 오히려 SLT의 국제전화보다 비싸지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만들어 내어 마케팅에 성공하였다

2) 휴대폰

□ 히트요인

유선전화설치 시 많은 예치금이 소요되고, 이동통신분야의 시장개방과 외국인투자자유화로 이동통신 보급률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이동통신 접속료와 단말기 가격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리랑카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2005년 말 기준으로 339만 여명으로 2004년 대비 무려 54% 증가하였으며, 2004년에는 221만 명으로 2003년 대비 59% 증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과 유선전화와의 보급대수가 거의 3:1로 이동통신이 앞서고 있지만 인구 1,967만 명의 스리랑카는 아직도 핸드폰 보급률이 아시아 대다수 국가들보다 낮아 시장확대 여지가 많다.

현재의 가입자수 증가추세로 볼 때, 4개 이동통신 사업자(Celitel Lanka, Lanka Cellular, Mobitel, Dialog Telekom)중 주요 업체는 가입자수가 수개월 내 각각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시장리더인 Dialog Telekom (구 MTN Networks)는 가입자수는 200 만명 돌파
- 이동통신가입자의 급증 요인을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 스리랑카 정부가 이동통신시장 개방과 인프라 확충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대 고객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고 있음.
 - 그 동안 통신의 오지인 북부 및 동부지역에서도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유선전화보다 휴대폰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점들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총 4개사에 달하는 이동통신 사업자들간 치열한 경쟁으로 서비스 이용료가 낮아지고 있는데다 개통이 손쉽고 초기사용료가 큰 부담 없고,중개기지건설확대로 전국적으로 서비스 커버지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밀수품 증대로 서민들도 큰 가격부담 없이 다양한 가격대의 핸드폰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가입자가 급증 하고 있다.

핸드폰 단말기의 경우, Motorola, Nokia, Siemens, LG, Samsung등의 보급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 또한, 확충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Motorola, Nokia는 가격과 다양한 모델을 무기로 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스리랑카 통신규제위원회에서 도입을 약속한 발신자요금부담방식(CPP: Call Party Pays) 제도가 도입되면 보급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스리랑카관세청에 따르면 통신부문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휴대폰에 대한 부가가치세 15%를 폐지함에 따라 비록 수입관세는 3%이지만 밀수대신 정상통관이 늘고 있다고 한다.

□ 시사점

Dialog Telekom사(구MTN Networks)의 매니저인 Ramanan David는 스리랑카는 핸드폰 판매가격이 아시아전체 중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의 하나라면서 특히 저급품은 싱가포르보다 저렴하며 중고품을 재 손질하여 판매하는 단말기는 아주 저렴하다고 한다. 밀수품 GSM 단말기는 거리 밀수품 취급 시장에서 15달러부터 판매된다고 한다.

한국의 LG, 삼성브랜드는 현지 유력 에이전트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높은 브랜드 이미지로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시장에서 고급품으로 인식되고 있어 중고가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스리랑카 핸드폰 시장 급성장으로 한국의 대 스리랑카 무선전화기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2005년 실적은 1,298만 불로 전년동기대비 679%나 증가하였다.

23.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가. 각종 협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

- Ceylon Chamber of Commerce (CCC)
 - 주소: 50, Nawam Mawatha, Colombo-2
 - 전화: 94-11-2421745/7,
 - 팩스: 94-11-2449352, 2421747
-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of Sri Lanka
 - 주소: 450, D.R. Wijewardana MW, Colombo 10
 - 전화: 94-11-2689600/2689596
 - 팩스: 94-11-2689596
- Ceylon National Chamber of Industries
 - 주소: 1/F, 20, Galle Face Court 2, Colombo 3
 - 전화: 94-11-2423734
 - 팩스: 94-11-2331443
- Sri Lanka Chamber of Small Industries
 - 주소: No 9,3rd Floor, Galle Face Courts 1, Colombo-3
 - 전화: 94-11-2438715
 - 팩스: 94-11-2336466
- Federation of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 주소: 53,Level3 Vauxhall Lane, Colombo-2.
 - 전화: 94-11-2304253/4
 - 팩스: 94-11-2304255
- Ceylon Rubber Buyers' Association
 - 주소: 344, Grandpass Road, Colombo-14
 - 전화: 94-11-2325997/2329566
 - 팩스: 94-11-2533217

나. 현지기업 정보 및 시장 조사 서비스기관

- Kompass 스리랑카 지사
 - 전화: 94-(0)11-2597551
 - 팩스: 94-(0)11-2586135
 - 이메일: compass@sltnet.lk
 - 홈페이지: www.kompass.lk
- Assignment Ltd
 - 전화: 94-(0)11-2589705
 - 팩스: 94-(0)11-2580616
 - 이메일: jimgroup@sltnet.lk

- Key Research & Information Ltd
 - 전화: 94-(0)11-2506530
 - 팩스: 94-(0)11-2586220
 - 이메일: key.research@lanka.ccom.lk

다. 스리랑카 무역 해상운송관련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 기업등록기관

- Sri Lanka Ports Authority (SPLA)
 - 주소: Colombo Port, 19, Chaitiya Road, Colombo-1
 - 전화: 94-11-2421201/2421231
 - Fax: 2440651
- Export Development Board (EDB)
 - 주소: 42,Nawam Mawatha, Colombo-2
 - 전화: 94-11-2300705-10
 - 팩스: 94-11-2300715
- Ceylon Shipping Corporation
 - 주소: 6, Sir Baron Jayatillaka Mawatha, Colombo-1
 - 전화: 94-11-2423214
 - 팩스: 94-11-2449486
- Department of Commerce
 - 주소: 4th Floor, Rakshana Mandiriya, Vauxhall Street, Colombo-2
 - 전화: 94-11-2329733/2430068
 - 팩스: 94-11-2430233
- Department of Registrar of Companies
 - 주소: 400,D.R.Wijewardene Mw, Colombo-10
 - 전화: 94-11-2689208/9
 - 팩스: 94-11-2689211
- Coconut Development Authority
 - 주소: 54,Nawala Road, Colombo-5
 - 전화: 94-11-2502503,2502501
 - 팩스: 94-11-2508729
- Sri Lanka Tea Board
 - 주소: 574, Galle Road, Colombo-3
 - 전화: 94-11-2585701
 - 팩스: 94-11-2589132

라. 각종 매체에 의한 바이어 발굴

1) 신문

스리랑카는 언론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 있어 정부정책에 대한 찬반논평, 정경유착 등에 대한 폭로성 및 가십성 기사가 자주 게재됨

2) 일간지: 별도로 경제금융섹션을 매일 발간하고 있음

- Daily News: 영자 일간신문으로 여당지 성향 www.dailynews.lk
- The Island: 영자 일간신문으로 야당지 성향 www.island.lk
- Daily Mirror: 영자 일간신문으로 중립 성향 www.dailymirror.lk

가장 많이 보는 영자신문인 Daily News인 경우 21 cm X 16.2 cm 사이즈 광고비용은 아래와 같음.

	페이지 지정 안 했을 경우	페이지 지정할 경우
흑백	약 240불	약 300불
컬러	약 385불	약 447불

보통 매체광고는 직접하기보다는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며 무역관에서는 아래의 광고대행사를 이용함.

- Three' M' Agencies(Pvt.)Ltd.
 - Tel: 94-11-2682503 / 4618791 / 5360093 (3 개 라인)
 - Fax: 94-11-536 0094
 - Email: threem@msn.net
 - Web: www.threemgroup.com

Daily News가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가운데 Daily Mirror가 2대지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임. 경제분야는 Daily Mirror지 경제섹션 부분인 Financial Times가 가장 많은 부문을 할애하여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2005년 말부터는 다른 경쟁지도 경제 비즈니스 섹션을 별도로 발행하고 있음

3) 주간/월간

Sunday Times 및 Sunday Observer, Midweek Mirror등이 있으며 The Island도 일요일 판을 별도로 발행하고 있다. 주요 월간 경제비즈니스지로는 LMD가 있다.

마. 라디오 방송

- Sri Lanka Broadcasting Corp.가 영어, 싱할라, 타밀어로 방송하고 있음
- TNL 라디오 (101.7 및 90 FM Stereo): 음악방송 전용
- 영어방송 (FM 93.3): 오전 2 차례, 오후 3 차례 뉴스 방송
- 그 외에 BBC, VOA 등도 청취 가능함

바. 주요 TV 방송

- Rupavahini: 주로 내국인들을 위한 방송 위주로 싱할라어, 타밀어, 일부 영어방송을 중계하기도 함.
- ITN: 주로 내국인들을 위한 방송으로 싱할라어, 타밀어 방송이며 일부 영어방송도 하는 국영방송임
- MTV: 주로 영어방송이며 하루 3 차례 BBC 뉴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오락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며 홍콩의 STAR TV 중계 비중이 매우 높음
- ETV 1: 홍콩에서 중계되는 방송으로 BBC 뉴스 등을 제공함.
- ETV 2: 24 시간 스포츠프로 방송 (Star TV 수신)
- 그 외에 CNN, BBC World, DW 등 외국 방송도 시청가능

사. 각종전시회를 통한 바이어발굴

- 각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내용은 콜롬보무역관 전시정보 참조
- (http://www.kotra.or.kr/ktc/expo/TC150S.jsp?trade_cd=9102)

콜롬보 교육 박람회	2006/01/20 ~ 2006/01/22
콜롬보 섬유 박람회 2006	2006/02/17 ~ 2006/02/19
콜롬보 건축 박람회	2006/02/22 ~ 2006/02/26
콜롬보 혼수용품 박람회	2006/03/09 ~ 2006/03/12
콜롬보 소비재 박람회 2006	2006/04/02 ~ 2006/04/11
콜롬보 취업, 인력 박람회	2006/06/15 ~ 2006/06/16
콜롬보 가구, 인테리어 박람회	2006/06/22 ~ 2006/06/25
콜롬보 산업 박람회	2006/06/23 ~ 2006/06/25
콜롬보 교육 박람회	2006/07/06 ~ 2006/07/09
콜롬보 하계 박람회	2006/07/21 ~ 2006/07/30
콜롬보 건축 박람회 2006	2006/08/04 ~ 2006/08/06
콜롬보 식품 포장재 박람회	2006/08/25 ~ 2006/08/27
콜롬보 식품 박람회	2006/09/15 ~ 2006/09/18
콜롬보 소비재 박람회 2006	2006/09/22 ~ 2006/10/01
테크노 전시회	2006/10/20 ~ 2006/10/23
직물류 및 액세서리 공급자 박람회	2006/11/09 ~ 2006/11/11
요리사 협회 전시회	2006/11/26 ~ 2006/11/28
콜롬보 인도 상품 박람회	2006/12/02 ~ 2006/12/11

24.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스리랑카는 한국과 같이 인터넷이 발전되지 않아 전자 상거래가 활발치 않으며 아래의 대표적인 사이트에서 바이어를 검색할 수 있음.

가. 뉴스 및 비즈니스관련 주요 사이트

- 랑카 비즈니스 디렉토리
- <http://www.lanka.net/Directory>
- 스리랑카 무역포탈(Sri Lanka Trade Portal)
- <http://www.srilanka.com>
- 랑카 아카데미 네트워크(Lanka Academic Network)
- <http://www.theacademic.org>
- 랑카 페이지
- <http://www.lankapage.com>
- 랑카 비즈니스 리포트
- <http://www.lankabusinessonline.com>

나. 정부기관

- 정부 조달청(National Procurement Agency of the Sri Lanka)
- <http://www.npa.gov.lk/home.php>
- 스리랑카 홍차국
- <http://www.pureceylontea.com/>
- 스리랑카 투자청(BOI)
- <http://www.boi.lk>

다. 기타

- 스리랑카 전화번호부
- <http://www.yellowpages.lk/index.asp>

라. 각종협회

- 실론 상업회의소 Ceylon Chamber of Commerce
- <http://www.chamber.lk>
- 상공회의소 연합 Federation of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http://www.fccisi.org>

- 스리랑카 전국 공업회의소 Sri Lanka National Chamber of Industry
 - <http://www.ncni.lk>
- 스리랑카 여성 상공회의소
 - <http://www.fccisl.org/members/wcic.html>
- 스리랑카 봉제수출 협회
 - <http://www.srilanka-apparel.com>
- 스리랑카 보석협회
 - <http://www.lankajewels.com/>
- 세라믹 산업협회
 - <http://www.ceramics.lk/>
- 고무거래 협회
 - <http://www.crtasl.org/>
- 스리랑카 향신료협회
 - <http://www.srilankaspices.org/>

25.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가. 문화적 금기사항

스리랑카는 전국민의 70%이상이 불교도로 구성된 불교국가이며 힌두 및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도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종교와 관련된 금기사항이 많이 있어 종교관련 일반적인 금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찰 혹은 기타 신성한 장소에서 노출이 심한 복장을 피하고, 신발을 벗어야 하며, 회교사원에는 남자만 들어갈 수 있고, 왼손으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 등을 준수해야 한다.

힌두교도 및 불교도의 경우 소고기를 먹지 않으며 회교도의 경우 돼지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 점 등 일반적인 종교관련 금기사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타 금기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어서 특별히 주의할 만한 사항이 없으며 일반 상관행에 따르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현지 시장구조 이해

스리랑카 경제는 상업수도인 콜롬보와 인근 위성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제무역은 특히 콜롬보 시에 집중되어 있다. 스리랑카 수출입화물의 90% 이상을 콜롬보 항에서 처리하고 있다. 스리랑카에서도 많은 중소 수입상이 있지만 대부분의 수입물량은 20-30여 개의 비교적 대기업들이 취급하고 있다. 오직 소수 수입상만이 스리랑카 전역의 유통망을 커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수입유통구조는 단순하게 지방 디스트리뷰터나 소매상에게 도매 판매하는 구조이다. 무역 및 유통에서 정부의 심각한 재정 난과 시장개방, 경영 효율이 높은 사기업 발달로 정부의 역할이 크게 감소 중에 있다.

다. 수입관행, 판매 요인 및 기법

일반적으로 저가 선호 시장인 관계로 거의 모든 제품에 걸쳐 인도, 중국, 한국이나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의 제품이 주요 구매선이 되고 있으며 가격이 중요한 요소이다.

스리랑카에서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 구매결정요인이기 때문에 가격은 현지시장을 주도하는 경쟁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로컬 에이전트나 디스트리뷰터들을 통해 면 가격결정시에 필요한 이들의 제안이나 관련된 유용한 시장정보를 끌어낼 수 있다.

일부 기업들은 시장진입 초기에는 거점 확보를 위해 소비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낮은 저가 유도가격을 설정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인지도와 충성도를 발굴해나가는 경우도 있다.

점차 상품품질과 애프터 서비스(A/S)가 중요한 판매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로 이미지가 높은 한국산은 품질이 좋지만 경쟁국산에 비해 가격은 높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애프터 서비스와 소비자 지원이 점차 중요 요소로 되고 있는 가운데 가전, PC, 핸드폰 등 IT제품 등 경쟁이 치열한 분야는 스리랑카 주요 수입 에이전트(아반스, 싱하گیری, 싱거 등)은 스리랑카 주요 지역에 A/S망을 갖추고 비교적 신속하게 종합적인 소비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에이전트를 선정할 경우 이러한 능력도 중요 고려 요소이다.

소비자 교육 또한 핵심적인 판매요인이다. 광고, 판촉행사 및 전시회 등 무역이벤트에 참가하는 것이 소비자의 인지도를 올리고 시장점유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러한 마케팅 기법의 효과성은 상품에 따라 다르다. 마케팅 및 세일즈를 위한 에이전트나 디스트리뷰터 선정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정부구매는 정부지정 구매사양을 충족시키는 조건하에서 가격기준으로 결정된다.

전자상거래는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상업 및 무역커뮤니티의 주요 전자상거래(e-commerce)포털로 www.eserviceslanka.com이 설립되었다.

모든 상업은행은 온라인 은행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여행사, 호텔, 일부 대형 소매점들이 온라인 거래서비스를 하고 있다.

거래 관행이 초기에는 소량주문이 대부분이나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불교의 영향을 받은 듯 온순하고 순종적이며 거래관계도 비교적 깨끗한 편이다.

수입물량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조국에서 직수입하기가 쉽지 않고 많은 물량을 직수입할 경우 재고관리 및 금융비용 부담 때문에 싱가포르수입상을 통해 한국산 등 제 3국 제품을 간접 수입하는 형태가 선호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저가 중국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광동 국제전시회 등 중국의 대형국제전시회에 참가하는 스리랑카 바이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라. 거래 시 유의사항

주재국의 경우 시장이 작아 에이전트 지정 등에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2-3개 에이전트를 둔다거나 나중에 에이전트 수를 확대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는 스리랑카가 소규모 시장임을 고려할 경우 별로 바람직하지 못

한 현상이며 보다 믿음성 있고 발전 가능한 에이전트를 초기에 선별 지정한 후 동 에이전트와 지속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우리기업의 경우 제품 판매 후 지속적인 거래와 A/S면에서 경쟁국에 다소 뒤쳐지고 있는 바, 지속적인 제품수출과 다른 사업을 위해서는 이점에 세심한 신경을 써 현지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마. 비즈니스 관습 및 에티켓

스리랑카에서 비즈니스언어는 영어이며 비즈니스카드(9명함)이 필수적이다. 예의 바르고 정중한 말투가 스리랑카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며 거래관계를 맺는데 개인적인 정중함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약속시간과 기한을 지키는 것은 영미처럼 높게 사지 않지만 대부분의 약속이나 공약은 양심적으로 지키는 경우가 많다.

상대에 대한 호의, 신뢰 등 인간적인 예의 그리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것 같은 동양의 미덕을 간직하고 있어 일반적인 에티켓이면 현지 상거래에는 무방하다. 다만 불교 국가인데다 이와 관련된 종교적인 예절은 현지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므로 이런 점들은 유의해야 하며 불교관련 내용을 화제로 삼는 것이 상담이나 대화에 유용하다. 복장은 열대지역인 관계로 와이셔츠에 넥타이 정도가 정장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극히 예외적인 행사를 제외하고는 양복 상의를 입는 경우는 드물다.

바. 상담 시 유의사항

기본적으로 정서가 온순하며 다소 느린 감은 있으나 합리적인 일 처리가 관례화 되어 있어 이들과의 거래 시 조급성을 띠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의 성향은 대화 시 언성을 높인다든지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상담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며 자체 생활에서도 싸우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생각보다 순리적으로 생활해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또한 대부분 처음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웃음으로 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대하기 편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료적이거나 권위적이지 않다는 점도 참고 할만하다.

따라서 업무 혹은 일상생활에서 이들과 접할 경우 불교국가의 특성을 감안, 같은 불교도임을 설명하고 불교관련 사항으로 화제를 돌리거나 스리랑카에 대한 인상을 묻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답하면 매우 좋아한다. 그 외에 주요 화젯거리로는 국기로 인정받고 있는 운동경기인 크리켓을 화제로 삼는 것도 좋으며 여타 사항은 일반적인 대화시의 에티켓 정도면 무방하며 특별한 주의사항으로 적시할 만한 사항은 없다.

한가지 더 거론한다면 대화 시 긍정적인 대답을 하거나 반응을 보일 때 고개를 좌우로 가볍게 흔든다는 점이며 부정 시에는 좌우로 강하게 흔들고 있음도 참고할 만하다.

사. 기타

다인종 다종교사회로 불교 등 종교관련 휴일이 많은데 이들 휴일은 양력을 사용하지 않고 전통력 음력을 사용하므로 양력기준으로 매년 달라진다. 매월 한국의 보름날과 같은 Poya Day가 있어 휴무이며, 4월 스리랑카 전통신정 공휴일을 전후하여 대부분 공장들이 휴무하고, 관리직들도 휴가를 가기 때문에 이때는 방문상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관련업체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비록 초기 보급단계이나 이메일 보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를 병행하여 통신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6.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가. 현지기업, 바이어 접촉 시 유의사항

시장규모가 작아 단일 품목에 대한 전문적인 수입상이 상대적으로 적고 때로는 전혀 별개의 품목을 동시에 취급하는 바이어도 있으나 이런 경우 반드시 바이어의 거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바이어가 기존 취급 품목과는 별개의 제품에 관심을 보일 경우에도 성실히 응대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 확대가 제품에 대한 전문지식 보다는 정부관료에 대한 인맥, 사회적 영향력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대형 조달 등의 경우 이러한 사례가 많다.

스리랑카 조달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현지 유력인사와 선이 달는 에이전트와의 공동추진이 필수적이다. 프로젝트 추진단계에서 관계 있는 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술 사양 또는 입찰조건이 삽입되어 가장 경쟁력 있는 조건을 제출한 기업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유력 에이전트가 없을 경우 사전에 제시한 입찰정보가 경쟁기업에 누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나. 에이전트 선정 시 유의사항

대부분의 수출업자는 스리랑카 시장 진출의 첫 단계로 로컬 디스트리뷰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수출업체들은 재무건전성(financial stability)과 기술능력을 기준으로 로컬 에이전트를 선정한다. 대형 무역회사들은 많은 외국기업들을 대신하여 에이전트역할을 하고 있고 일부 품목은 내부적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에 시장개척을 위해 열심히 뛰려는 의지를 갖고 실제로 이를 실천하는 기업들이 점차 유력 에이전트 후보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제품이 재고가 많이 필요하고 서비스가 많이 필요하면 대기업을 에이전트로 선정하는 것이 보다 잘 된 선택이 된 경우가 보다 흔하다.

에이전트에게 지불하는 세일즈 커미션은 5-20%이며, 판매량과 판매가격에 따라 다르다. 에이전트 관계는 비효율(inefficiency), 부정 유용이나 횡령(misappropriation), 에이전트 계약서에 명시된 기타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경우 중단될 수 있으며, 스리랑카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잠재 유력 적절 에이전트나 디스트리뷰터를 사전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스리랑카에서 에이전트 선정 시 중복 에이전트를 선정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간혹 분쟁이 발생하여 콜롬보 무역관에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에이전트 선정에 따른 문제가 대부분이다. 스리랑카의 경우 시장이 협소하여 대부분 상권이 콜롬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상인들은 아직 대부분 '일물이가'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 결과 시장 내에서 동일한 제품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가격으로 거래된다면 소비자들은 해당 바이어와 제품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조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있어 동일 입찰에 동일 제품이 서로 다른 에이전트에 의해 서로 다른 조건으로 참여할 경우 수출상에 대한 신뢰도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물일가의 법칙이 최근에는 허물어지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례로 주유소의 경우 한국처럼 경쟁과 수익성 유지개념이 도입되어 운영 주체인 스리랑카 국영 정유사와 인도계인 인도정유(IOC)사 운영 주유소간에 리터당 기름 값 차이가 나기 시작하였으며 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시장이 좁은 스리랑카 내에서 에이전트를 선정할 경우 에이전트가 확정되기까지는 프로젝트 별로 거래선을 확보하여 바이어의 신용도 등을 테스트한 후 에이전트 결정 단계에서는 하나의 에이전트와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혹 이 원칙이 무시될 경우 바이어가 현지 시장에서 금전적, 비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이런 경우 바이어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혹은 채무불이행 등의 실력행사를 하기도 한다.

다. 기타 유의사항

1) 계약서 검토과정에서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라

스리랑카는 영미식 제도와 토착법의 혼합으로 법률과 판례, 관습법이 복잡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요 계약은 자격 있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현지투자 와 같이 많은 자금이 투자되는 경우 변호사 자문비용을 아끼려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다가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뒤 문제해결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2) 현지인과 합작 시 지분매각 및 경영권 분규 발생가능성에 사전 대처하라

합작 투자 시 정관상 주식이전 결의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통례이다. 막상 지분을 팔고 나오려고 할 경우 이 조항에 걸려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작 시는 이사회 결의 없이 주식이전이 허용되도록 특별조항을 두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합작 초기에는 외국투자자의 자본 기술 경험 등을 전수받기 위해 매우 협조적으로 나오다가 혼자서도 독립 경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현지 파트너가 태도를 바꿔 회사전체를 장악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경영권 분규가 발생하며, 이럴 경우 대부분 현지인 프리미엄으로 현지인이 이기게 되어 있다.

27. 통관절차

대부분 스리랑카 투자기업들은 통관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무엇보다 B01 기업에 대해서는 세관이 아닌 B01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통관절차, 검사, 서류작성 등에 있어 편리하다. 보통 항구에 화물이 도착한 통보를 선사로부터 받는 시점으로부터 약 2-3일 이면 원부자재 통관을 완료하고 생산에 투입할 수 있다.

수입업자나 수출업자는 납세번호(TIN: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받기 위해 국세청 (IRD: Inland Revenue Department)에 등록해야 하며, 일단 TIN을 받으면 세관에서 자동으로 등재되며 스리랑카에서 수출입을 할 수 있다.

스리랑카 관세청의 수입담당부서는 콜롬보항의 해상화물과 카투나야케(반드라나이케) 국제공항의 항공화물 통관을 담당하는 부서로 나뉜다.

수입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관신고서(CUSDEC: a Completed Customs Declaration)를 콘사이너나 신고자의 서명을 하여 기타 수입관련서류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관련서류는 케이스 별로 다르나 대체로 delivery order, bill of lading,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영어로 번역된 자동차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 수입라이선스(제출 요구 시) 등이다.

스리랑카관세청은 특정 수입화물을 반출하기 전에(수입허가품목) 관련 정부기관(Import and Export Control Department, Sri Lanka Standard Institution, Health 등)으로부터 필요한 수입 승인을 획득하도록 하고 있다.

1994년에 수입서류 처리가 ASYCUDA시스템으로 전산화되어 수입통관의 지체, 오류나 부정확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왔으며, 스리랑카는 현재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Brandix를 비롯한 스리랑카 대형기업 중심으로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

통과화물(보세지역에서 세관의 통제 하에 수입되어 재수출되는 화물)에는 제반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아울러 선적 전 검사제도가 없다.

EAN(International Article Number System) Numbering System 은 일종의 국제 무역 용어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스템이며, 전세계적으로 101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다. 스리랑카에는 EAN Sri Lanka에서 EAN Bar Code번호를 할당 부여하고 있다. 한편, Uniform Product Code (UPC)는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특별 코드 시스템으로서 스리랑카 무역업체가 필요한 경우 EAN 스리랑카에 요청하면 된다.

항만 및 공항 개발세(Port and Airport Development Levy)로 일반 수입화물은 2.5%, 수출 화물과 거공용과 재수출용은 면세된다.

□ 통관절차: B01 기업의 경우

선사에서 화물도착 통지서 수령 → 선사에 B/L송부(포워딩 에이전트를 통해) → Customs Declaration 작성제출 → B/L과 C/D일치 여부 확인(세관 또는 B01) → 화물 인스펙션(B01, 또는 세관)

B01기업에 대해서는 B01가 전 통관과정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므로 투자 기업들의 통관이 매우 신속하고 서류상의 경미한 오류 등에 대한 인정 등 전체적인 절차가 우호적이다.

특히 화물에 대한 최종 검사도 항만 세관 구역 내가 아닌 해당업체의 공장에서 이루어 진다. 단 LCL화물의 경우는 화물 검사가 항만 내 세관구역에서 이루어진다.

□ 수입관리제도

스리랑카의 통상정책 기본방향은 대외지향적 무역제도, 스리랑카상품의 해외시장개척 강화,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가속화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수입규제장벽이 비교적 약한 편이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시장개방 및 경제개혁정책이 도입된 이래로 1990년 중반에 실질적인 무역자유화 조치가 대폭 취해졌다. 최근에는 20여 년 간의 내전을 종식 시키기 위한 평화협상에 집중이 되어 무역자유화 노력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 WT 평가이다. 1995년 스리랑카는 WTO관세평가협정 회원국이 되었으나 이의 이행이 지연되다가 2003.1.1일부로 WTO관세평가협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스리랑카는 2005.3.1일까지 중고자동차와 모터사이클에 대해서는 미니멈 밸류(minimum value) 개념을 관세평가에 계속 적용했다.

원산지규정은 MFN적용세율은 적용하지 않으며 양자간 및 지역통상협정에 의한 특혜관세에 대해서는 특별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된다. 즉 방콕 협정, 남 아시아 특혜 무역협정(SAPTA), 인도-스리랑카 FTA, 파키스탄-스리랑카 FTA, 일반무역 특혜제도(GSTP)의 경우가 해당된다.

스리랑카는 주요 남 아시아국가와 자유 무역협정을 발효 중에 있는데 인도와는 2000 년에 파키스탄과의 FTA 는 2005 년 중에 각각 발효되어 이들 국가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스리랑카 산 상품이 민감 품목을 제외하고는 특혜관세나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28. 운송

가. 국제공항

Bandaranayake International Airport가 스리랑카의 유일한 국제공항으로서 Colombo 시내로부터 30 Km 떨어진 Katunayake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005년 일본정부 차관지원으로 시설확장 및 현대화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어 규모는 작지만 비교적 현대식 공항으로 면모를 가다듬었다. 공항에서 콜롬보 중심가 까지는 승용차로 약 40분 ~ 1시간 소요되며 국내선 공항의 경우 오랜 내전으로 대부분 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 휴전으로 자프나와 콜롬보 사이에 국내선이 운항되고 있다. 콜롬보에서 국제공항까지 도로는 기존도로를 약간 넓히는 선에 그쳐 편도 2차이지만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어서 인마, 바자지, 자전거, 오토바이 경운기 등이 다니고 도로변이 상가나 민가가 대부분 이어지고 있어 무단횡단자가 많아 주간이나 출퇴근시간에는 상습 정체되고 있다. 또한 콜롬보와 캔디, 누와라 엘리아, 암파라 등 지방 주요 도시간에 소형 경비행기인 에어 택시가 운항되고 있어 바쁜 일정의 사업가들이나 외국 관광객 일부가 이용하고 있다.

출입국 절차가 비교적 자유로우나 출국 시 비행기 테러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수화물에 대한 개장 검사를 실시한다.

나. 도로

고속도로라고 불릴 수 있는 도로가 없으며 콜롬보, 캔디 등 주요 도시는 좁은 도로에 차량이 늘어나 만성적인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도로가 구영국 식민지시대 도로를 개·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도로 양변에 주택, 상가들이 늘어서 있어 이들의 보상문제로 도로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콜롬보에서 캔디까지 110km이나 낮 시간이나 주말에는 편도에 3-4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러한 도로인프라 열악으로 수출상품의 딜리버리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하는데 일례로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인 의류봉제산업의 경우 봉제의류공장들의 다수가 시골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열악한 인프라가 기본상품의 리드타임을 3~4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리랑카 목표가 보다 양호한 소매업체와 브랜드와 제휴를 통한 틈새시장 공략인데 이들에게는 신속한 스피드와 신속적인 딜리버리 관리가 중요한 요소이다. 이 때문에 리드타임 증가는 스리랑카 업체로서는 매우 중요한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국제항구

주요 항구로는 콜롬보를 비롯, 남쪽의 GALLE, 동쪽의 TRINCOMALEE가 있다. 동부의 항구는 타밀 반군(LTTE)과의 내전 때문에 기능의 상당부분을 상실한 상태이며 남부의 항구는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주요 공단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실제로는 콜롬보항만이 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콜롬보 항구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콜롬보항은 인도양의 해상간선루트에 소재하고 있고 수심이 깊은 양항이어서 인도관련 국제 환적수요가 증가하여 연간 컨테이너처리 물동량이 2005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10.6% 증가한

246만 TEU를 기록하였다. 최근 인도항구들의 인프라확충으로 급증하고 있는 인도 수출입 화물의 콜롬보 항 환적 수요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트린코말리항은 인도양 내 소재 가장 수심이 깊은 항구로 군사적으로 이용가치가 높아 자국해군함대 기항을 위한 양항 확보를 위한 강대국들의 관심이 높았는데 2차세계 대전 당시 싱가포르에서 패퇴한 영국해군이 군항으로 사용하였으며 인도, 미국이 관심이 높다. 스리랑카 주요 해군기지로도 사용되고 있다.

참고로 한진해운이 물동량 감소로 스리랑카 직항항로가 폐지되고 대신 상해에서 스리랑카 콜롬보항 직항선박을 운행하고 있어 현지투자기업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중국 내 소식이 증가하고 있다.

- 콜롬보 항만청 홈페이지: <http://www.slpa.lk>

스리랑카 화물통관 및 포워딩 에이전트사

Company	Telephone (94)
A A Gem Combine	11-2422081
Ace Cargo (Pvt) Ltd	11-2330580-4
A F Cargo Service (Pvt) Ltd	11-2501487, 11-2503433
A M G Freight Lanka	11-2341933, 11-2421433
A M T Transport Service	11-2433391
Aero-Marine (Clearing & Forwarding)	11-2440624
Arab Lanka Agricultural Produce Co	11-2327716
Asian Exports	11-2330481
Bestair Services	11-2576235, 11-2565684
C Sivasamy & Co	11-2449371
Ceylon Operators	11-2329400, 11-2448415
Creasy & Co Ltd E B	11-2421311
Diddeniya Enterprises	11-2423070, 11-2436054
Famous Pacific Shipping Lanka Ltd	11-22575482 , 11-22577291
Freight Services (Pvt) Ltd	11-2447455, 11-2445592
Jayasinghe Tours & transport Co Ltd	11-2698615, 11-2692894
Islandwide Marketing Services (Pvt) Ltd	11-2686356, 11-2678886
Lanka Cargo Limited	
Master Freight Agencies Clearing & For.	11-2329372, 11-2438028
MIT Cargo (Pvt) Ltd	11-2685971
Star Trans Int'l Logistics (Pvt) Ltd	11-2577327, 11-2577328
Trans World Forwarding Services	11-4717854
Trans World Movers (Pte) Ltd	11-2575470
Wishwa Clearing Agency	11-2423344, 11-2343260
World Express (CMB) Ltd	11-2335833

스리랑카 내 주요 로지스틱스사는 다음과 같다.(링크 홈페이지 포함)

- 회사명
 - [Federation of Chamber of Commerce Industries of Sri Lanka](#)
 - [The Ceylon Chamber of Commerce](#)
 - [The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of Sri Lanka](#)
 - [Central Freight Bureau of Sri Lanka](#)
 - [Shipping & Cargo logistics \(Pvt\) Ltd](#)
 - [Network Cargo Services \(Pvt\) Ltd](#)
 - [Marine Logistics \(Pvt\) Ltd](#)

이밖에 해상화물취급 보험사는 다음과 같다(링크홈페이지 포함)

- 회사명
 - [Julius & Creasy](#)
 - [McLarens Shipping Ltd](#)
 - [Intermarc Services](#)
 - [GAC Shipping Ltd](#)
 - [Aitken Spence & Co Ltd - Lloyd's Agents](#)
 - [Lloyd's of London](#)

콜롬보항 지도



콜롬보항 해상운송루트



29. 분쟁해결 절차

스리랑카 법률제도는 문화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복잡다기하다. 형법은 기본적으로 영국법이며 기본 민법은 로마-화란법체계이다. 한편 결혼, 이혼, 상속은 종족의 다양성을 감안한 스리랑카 공동사회법 특성을 지니고 있다. 상법은 거의 전적으로 성문법이다.

스리랑카 사법부는 대부분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이지만 사법부가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 판결을 내린다고 가끔 소송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상사소송에서는 아직까지 정치적 영향을 받아 판결한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 소송을 통한 해결은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여러 중요한 법률집행이 상사문제를 규제하고 있는데 스리랑카 투자청법(the Board of Investment), 지적재산권법, 회사법, 증권거래소법, 은행법, 산업 진흥법, 소비자 권한법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 법의 대부분은 최근에 개정된 바 있다.

한국과 달리 법원의 온라인화가 되어 있지 않아 소송사건에 대한 온라인 검색이 불가하고, 지원시스템이 열악하여 소송당사자들이 특히 외국인은 사건진행과정과 증언 내용, 법원 속 기록 등에 대한 영어정보 확보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스리랑카 법률은 상사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소송, 중재,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중재 및 조정제도는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많은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가. 소송제도

지방법원(District Courts)은 모든 상사분쟁에 대한 법적 관할권이 있는데 소송가액이 300만 루피(약 3만불)이하의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으며 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불복 시에는 Appeal Court 에 항소할 수 있다.

상사고등법원(Commercial High Court)은 콜롬보에 2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서부지역(Western Province)에 발생하는 상사분쟁 건으로 소송가액이 300만 루피(약 3만불)를 초과하는 사건에 대한 법적 관할권이 있다. 상사고등법원 판결에 불복 시 바로 대법원(Supreme Court)에 상고할 수 있다.

나. 중재: Act No 11 of 1995

실론 상공회의소(Ceylon Chamber of Commerce)내 스리랑카 중재 센터(SLNAC: Sri Lanka National Arbitration Center)가 1983년에 설립되었으며 1990년에 일종의 보증회사로 되어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는 1995년에 중재법(Arbitration Act)을 시행하면서 ICLP(Institute of Commercial Law and Practice)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ICLP는 자체 법인으로 중재센터를 설립하여 상사중재를 하고 있다.

스리랑카 중재법은 외국중재인정과 집행에 관한 국제협약인 1958년 뉴욕협약을 준수하고 있어 스리랑카 내 중재결과가 대부분의 무역상대 국가 내에서도 집행될 수 있다.

1) Ceylon Chamber of Commerce Arbitration Center

- Legal Counsel
- Arbitration Center
- Ceylon Chamber of Commerce
- 50, Nawaran Mawatha, Colombo 2
- 전화: 011 238 0154, 242 1745-6
- 팩스: 011 244 9352, 243 7477

2) ICLP Arbitration Center

- Chief Executive Officer
- Arbitration Center
- Institute of Commercial Law & Practice
- 61, Carmel Rd, Colombo 3
- 전화: 011 234 6163, 234 6164
- 팩스: 011 234 6163
- E-mail: iclp@eureka.lk
- Web: www.iclparbitrationcenter.com

참고로 스리랑카 기본적인 법률구조가 아주 경직화되어 있는데 이중 하나가 파라트(Parate)로 불리는 대출 회수법(Loan Recovery Act of 1990)이다. 이 법은 법원 결정 없이도 은행이 담보로 잡은 모든 동산 및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대출채권을 회수하는데 사용토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지급이 어려운 회사들이 계속 영업활동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기업이나 종업원들이 은행이나 대출기관에 대출을 받을 때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노동 관련법이 아주 경직적이어서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화되어 있다.

대표적으로는 근로고용관계 종료법(TEWA: Termination of Employment of Workers Act of 1971)으로 고용주가 6 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자발적으로 해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즉, 일년 이상 일시 해고, 정리 해고나 징계의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들은 본인의 사전 서면 동의서나 근로 감독관의 사전 서면 동의서가 있어야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승인절차는 사유가 발생한 3 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해고의 경우 극단적으로 높은 보상을 지불하도록 노동 심판소나 근로감독관이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고승인 행정절차가 불투명하고 자의적이어서 고용주입장에서는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해고가 매우 어려워 기업환경에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있다.

노동심판소(LT)에서 해고건을 심리할 때 소요되는 기간 자체가 불확실하고 많은 경우 수년이 걸리고 있다. 스리랑카는 정리해고 보상수준이 세계에서 2 번째로 높아 많은 기업들이 폐업을 할 경우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청산하기 어렵고 기업이 어려울 경우 인력구조 조정이 어려워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조정(Mediation): Act No 44 of 2000

□ Commercial Mediation Center

스리랑카의 상사조정센터는 Ceylon Chamber of Commerce, Ceylon National Chamber of Industries, Federation of Commerce and Industry of Sri Lanka,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of Sri Lanka, 법무부의 공동으로 발의하여 설립하였다. 상사조정센터는 자체 조정 규칙을 만들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았다. 변호사들은 분쟁당사자의 스텝이 아닌 한 조정절차에 개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독립적인 제 3자가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정자가 되어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지원한다. 중재센터는 43명의 중재자로 된 패널이 있으며 조정 개념과 기법에 대해 특별히 교육훈련을 받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민간부문 출신들이다.

○ The Coordinator

- The Commercial Mediation Center of Sri Lanka Ceylon Chamber of Commerce Building 50, Nawam Mawatha, Colombo 2
- 전화: 011 2391405
- 팩스: 011 2449352
- e-mail: cmcsl@chamber.lk

30. 유형별 분쟁사례

분쟁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계약전이나 에이전트 선정 전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나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다.

상장기업들은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외부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과 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주식 브로커들도 또한 상장기업들에 대한 기업평가를 외부 발표하고 있으며 Fitch Ratings는 은행 및 금융기관 일부 대기업에 대한 평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대형 계약의 경우, 기업 컨설팅사나 로펌을 활용하는데, 이들은 기업실사(due diligence)로 업무를 수행한다. 소규모 거래 시 잠재고객에게 신용장을 요구하는 것이 표준화되어 있으며, 또한 에이전트 선정 전에 은행 신용증명서(bank reference)를 요구하고 아울러 과거 행적을 추적하여 트랙 레코드(track record)를 작성하여 사전 체크하는 방안이 있다.

기업의 신용 및 재무정보, 지분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Lanka Orix Factors Ltd (LOFAC)가 로컬 에이전트로 있는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정보회사인 Dun and Bradstreet(D&B)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상장기업에 대한 기업편람, 스리랑카 100대 기업리스트 등 발간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에 대한 정보획득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기업실사 서비스(due diligence service) 수준의 스리랑카 상대방 기업정보가 필요하면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요금은 1개 기업 정보당 통상 100불 정도이며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스리랑카 기업 중 D&B에 등록된 기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며 영세기업이나 신생기업들은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 D&B 스리랑카 에이전트: Lanka Orix Factors Ltd(LOFAC)
 - 주소: 2 A-1A CMB House, 1ST Floor, Lake Drive, Colombo 8
 - 전화: 94-11-5377510, 팩스: 94-11-5365611
 - 이메일: lofac@sri.lanka.net
- Dun and Bradstreet(D&B)미국 사무소: www.dnb.com/us

스리랑카 전문기업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다.

스리랑카 회계는 영국모델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스리랑카 회계법인이나 전문가중에는 비교적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자가 있다. 회계기준에 관한 정보는 스리랑카 공인회계사 협회(ICASL: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of Sri Lanka)에서 구할 수 있으며 회계기준은 국제 회계 및 감사기준에 맞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국제회계법인인 KPMG, PricewaterhouseCoopers, Deloitte Touch 등이 스리랑카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또한 스리랑카에는 상대적으로 유능한 법조인들이 있는데 스리랑카 상법은 거의 모두 성문법이며, 스리랑카 독립이전인 1948년에 성문화되었는데 당시 식민지배국인 영국법의 자구와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스리랑카 상법은 이후 영국의 법개정을 뒤쫓아 전반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로컬 파트너와 에이전트와 체결한 모든 계약이나 약정은 구두가 아닌 서류(문서, writing)로 되어 있어야 한다. 분쟁이나 문제발생시 이러한 문서상 기록이야말로 소송에서 필요 시 중요한 증거로 해결에 매우 도움이 된다. 스리랑카 주요 로펌은 영국에서 발간되는 International Law List에 등재되어 있다.

유형별 분쟁사례는 대부분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동일하다.

1) 스리랑카 수입업자

한국수출상의 샘플 오더 시 샘플과 본거래 오더 시 물품과의 차이점, 처음에는 거래관계자 잘 유지되다가 한국측이 T/T거래하면서 약속이행을 하지 않거나 회사가 부도, 도산되어 미수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한, 동물용 사료원료와 같은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 있는 물품의 경우, 한국이 조류독감지역에서 제외되었다는 한국정부의 확인 레터가 필요하나 이를 받지 못해 수입통관이 되지 않고 화물이 계류 중이어서 수입상과 수출상과의 손해분담문제를 놓고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 한국 수출업체

L/C거래의 경우도 종종 신용장조건과 다른 거래로 수입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나, 스리랑카 선적서류 위조 등으로 인한 대금회수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한국 내 취업 중이나 취업경험이 있는 스리랑카 근로자가 기존의 한국 내 인맥(근로한 회사)에 접근하여 스리랑카에서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투자유혹을 하는 경우, 스리랑카 내 고위정부인맥을 과시하면서 법규를 어거가면서도 특혜사업(아파트건설 등)을 할 수 있다면서 접근하는데 실패할 확률이 높으며, 커미션이나 활동비조 요구한 돈만을 잃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기본적으로 스리랑카는 작은 시장이므로 내수로는 단기간 내 일확천금을 벌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여 지혜롭게 대처해나가야 한다.

3) 투자기업

스리랑카 로컬파트너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이는 합작 투자 시 지분 분쟁, 스리랑카 법규상 내수판매의 외국인이 단독투자 할 수 없고 현지인이 사장으로 되어야 하는 경우 등 약점을 활용하는 경우이다.

합작투자 계약 시 여러 가지 약점, 스리랑카에서 상사 분쟁 시 수년간이 소요되고, 외국인에게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는 점, 현지 각종 세법 및 투자관련 법규상 완전한 법규준수가 어려운 점, 현지사업을 위해서는 세무, 경찰, 세관, 노무 등 여러 실질적인 분야에서 현지인 파트너가 얼굴마담 격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파트너가 욕심이 커질 경우 항상 파트너와 경영권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현지인들은 이런 상황을 활용하여 한국은 기술, 자본, 기계설비를 투자하고, 마케팅 및 경영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조건을 많이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설사 한국투자파트너가 초기에는 경영권을 행사하다가도 현지법규와 인맥상 현지인과는 비교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경영권을 빼앗기고, 투자한 기계 등 장비 등도 회수 못하면서 투자 손실을 보고 철수하는 경우가 있다.

4) 스리랑카 상사분쟁 해결제도

상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 조정으로 먼저 해결노력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국가는 상사분쟁발생시 사법제도를 통해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사전계약을 할 경우 중재조항을 넣어 중재지는 한국의 대한상사 중재원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적격 변호사선임이 중요하며 변호사들은 어느 나라와 동일하게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높은 변호사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선임할 때와 달리 일단 법원에서 변론이 시작되면 의뢰인에게 비협조적이 되어가면서 사건해결을 끌면서 수임료를 많이 타내는데 관심이 높은 경향이다.

소송(Litigation)을 할 경우, 다음과 같다.

- 분쟁가액이 300만 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방법원(District Courts)에서 관할
- 지방법원 판결이나 명령에 대한 항소 시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이 담당
 - 분쟁가액이 300만 루피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국의 수도권에 해당하는 웨스턴 프로빈스(Western Province)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사분쟁은 콜롬보에서 2군데가 설치되어 있는 Commercial High Court가 재판 관할권이 있음
- * Commercial High Court 판결이나 명령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Supreme Court)에 할 수 있음

한편, 스리랑카 상사분쟁 중 조정제도를 참고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조정(Meditation): Act No 44 of 2000 >

□ Commercial Meditation Center

스리랑카의 상사조정센터는 Ceylon Chamber of Commerce, Ceylon National Chamber of Industries, Federation of Commerce and Industry of Sri Lanka,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of Sri Lanka, 법무부의 공동으로 발의하여 설립하였다.

상사조정센터는 자체 조정규칙을 만들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았다, 변호사들은 분쟁당사자의 스텝이 아닌 한 조정절차에 개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독립적인 제 3자가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정자가 되어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지원한다.

중재센터는 43명의 중재자로 된 패널이 있으며 조정 개념과 기법에 대해 특별히 교육훈련을 받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민간부문 출신들이다.

- The Coordinator
 - The Commercial Meditation Center of Sri Lanka
 - Ceylon Chamber of Commerce Building
 - 50, Nawam Mawatha, Colombo 2
 - 전화: 94-(0)11 2391405 / 팩스: 94-(0)11 2449352
 - e-mail: cmcsl@chamber.lk

VI. 투자

31. 외국기업 투자동향

대 스리랑카 직접투자는 섬유중심의 한국이 주도하였으나 2000년대부터는 인도, 말레이시아, 일본, 싱가포르, 중국, 홍콩, 미국, 영국, 스위스, 프랑스, 아랍 에미레이트 등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주 투자국들이 이들 국가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최근의 외국인 주요 직접투자분야는 전력 및 에너지, 항만개발, 통신, 호텔 및 부동산(고급아파트), 병원에 집중되어 있다.

2005년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2억 9천만 불이며 2006년에는 10억불 유치가 목표이지만 이중 상당 부분이 2006년 초 마힌다 라자팍서 대통령이 인도방문 중에 인도 대기업들이 선심성으로 약속한 금액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현재 추세로 볼 때 2006년 중 10억불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스리랑카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실행액 (BOI 17조 투자)을 2005년까지 누계기준으로 국별로 보면 싱가포르, 미국, 영국, 말레이시아, 홍콩, 한국 순이었다. 이중 싱가폴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 등 업무용부동산 및 통신, 말레이시아 및 홍콩도 이동통신 분야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진다.

투자규모가 큰 주요 인프라 부문 별 외국기업들의 대표적인 투자동향과 전략을 보면 다음과 같다.

통신분야는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외국인 투자유치, 1981년부터 정부 규제완화로 경쟁이 도입되고 인프라 여건이 개선되면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스리랑카 주요 민간무선통신사업자인 Lanka Bell과 Suntel의 CDMA기술도입과 정부의 고정통신사업의 진출 허용으로 가입자수는 2004년 130,771명에서 2005년 289,933명으로 122% 증가하였다. 통신 부분은 2006년에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는 주요 이동통신회사들이 네트 워크 확장을 위해 투자액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스리랑카 최대 이동통신사인 Dialog Telekom (말레이시아 국영통신사 자회사)는 통화가 터지는 지역을 늘리기 위해 기지국수를 600개에서 2006년 말까지 1000개로 늘리기 위해 추가로 150백만 불을 투자하겠다고 2006년 3월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핸드폰가입자수를 200만 명에서 2006년 말까지 30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이 이 회사의 내부 목표이며, 스리랑카 시장점유율은 2005년 말 기준 70%에 달한다. 고객들이 보다 개선된 성능의 브로드 밴드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광섬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3G 네트워크를 도입하여 2006년 8월 16일 3G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스리랑카 다른 경쟁 이동통신사인 Celltel과 Tritel사도 네트워크 확대투자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스리랑카 2대 이동통신사업자인 Celltel사(룩셈부르크 소재 Millicom International Cellular 소유)는 중계탑 750개를 새로 설치하기 위해 US \$ 100만을 투자하겠다고 2006년 3월 발표한 바 있다. 특기할 사항은 반군인 LTTE가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스리랑카 북부 및 동부지역에 이중 500개 중계탑을 세워 이들 지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인데 LTTE와 정부군간 대치국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투자계획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이다.

스리랑카 유일의 민간 공중전화 사업자인 Tritel사는 최신 CDMA기술을 도입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는데, 향후 3년간 35백만 불을 투자하여 20,000개 이상의 공중전화(pay phones)를 설치하고, 서비스지역을 중부지역은 아누라다푸라, 남부지역은 골, 함반토타, 칼루타라, 탕갈라, 동부지역은 바티칼로아까지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 유일의 정유공장의 시설확장 및 현대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소프트 론 도입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 2005년 말 이전 계획안은 스리랑카석유공사(CPC)가 미국계 기업인 Global Energy and Industrial Operation과 합작을 통해 상기 시설확대 및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2005년 말 대통령선거기간 중 구조조정을 우려한 CPC노조의 반대압력과 선거정국으로 인해 이 합작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이 프로젝트는 정유생산능력을 일일 50,000배럴에서 100,000배럴로 2배 증가하는 것인데 사우디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고 있어 사우디 정부가 500백만 불 규모의 파이낸싱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 투자계획은 미국의 Global Energy and Industrial Operation투자계획인 800백만 불을 투자하여 일일 생산능력 150,000배럴로 증가시키는데 계획안보다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그 동안 수년간 지연되어왔던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6년 3월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정부와 300MW용량의 화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발전소는 Puttalam 디스트릭트의 Norochcholai인근에 소재하며 주 계약자는 중국 국영 China National Machinery Corporation으로 BOT(build own transfer)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프로젝트는 455백만 불이 소요되는데 155Km 송전선, 화물 및 석탄처리 시설 등 지원인프라 건설비를 포함되며 소요 자금은 중국정부가 제공하는 양허성 저리차관으로 조달되며 2006년 말 이전에 착공하여 발전소는 2010년 3월에 가동될 전망이다.

한편, 스리랑카 정부는 발전용량확대 조치 일환으로 국영 실론 전력공사(CEB)와 인도 국영 화력공사 (NTPC:India's National Thermal Power Corporation)간 제 2 화력발전소 (동부 지방 Trincomalee 소재) 건설 파이낸싱 계약초안을 2006년 3월에 승인하였다.

이 건설안은 양측간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250MW 용량의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2단계에 걸쳐 건설하는 것임. 합작사는 CEB 및 NTPC양측이 지분을 50:50 균등하게 소유하며 총 투자액은 US \$450백만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리랑카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규모 10 대국(B01 17 조 투자)

(실행기준, 백만 불)

순위	2005년 말 기준 누계액	
	투자국	투자 누계액
1	싱가폴	401
2	미국	323
3	영국	305
4	말레이시아	261
5	홍콩	212
6	한국	212
7	인도	181
8	일본	120
9	호주	104
10	스위스	88

자료원: 스리랑카 투자청

스리랑카 업종별 대내직접투자(인가베이스)

(단위: 건, 100만 루피, %)

	2002	2003	2004				2005			
	금액	금액	건수	금액	구성비	증가율	건수	금액	구성비	증가율
식품·음료·담배·농업	3,390	9,752	33	2,090	3.0	△78.6	22	3,000	10.4	43.5
섬유·의류·피혁제품	2,107	2,722	24	5,876	8.4	115.8	36	4,751	16.5	19.1
목재·목제품·종이·인쇄·출판	509	20	4	211	0.3	981.3	5	912	3.2	332.2
화학·석유·고무·플라스틱	1,403	6,115	20	1,889	2.7	△69.1	22	2,024	7.0	6.6
비금속·광물제품	2,004	3,386	6	404	0.6	△88.1	15	593	2.1	46.8
금속가공·기계·수송기계	4,086	6,576	20	3,064	4.4	△53.4	19	1,541	5.3	△49.7
기타제조업	2,864	4,776	14	1,483	2.1	△68.9	11	826	2.9	△44.3
서비스업	15,296	43,859	173	54,689	78.5	24.7	69	15,216	52.7	△72.2
합계(기타포함)	31,658	77,699	296	69,707	100	△10.3	199	28,864	100.0	△58.6

자료원: 스리랑카 투자청(B01)

주: 미 달러 당 스리랑카 루피(RS)의 연간 평균환율추이
2003년 96.52, 2004년 101.19, 2005년 100.50

스리랑카 국 별·지역 별 대내 직접투자(인가베이스)

(단위: 건, 100 만 루피, %)

	2003년	2004년				2005년			
	금액	건수	금액	구성비	증가율	건수	금액	구성비	증가율
싱가폴	3,673	17	21,294	30.5	479.8	12	3,078	10.7	△85.5
인도	10,668	25	13,427	19.3	25.9	19	1,794	6.2	△86.6
미국	423	11	10,628	15.2	2,385.1	16	1,273	4.4	△88.0
영국	5,190	28	7,803	11.2	50.3	33	2,647	9.2	△66.1
한국	644	4	2,072	3.0	222.0	8	264	0.9	18.9
말레이시아	9,138	5	1,796	2.6	△80.3	8	10,005	34.7	457.1
이태리	477	3	1,442	2.1	202.0	5	1,062	3.7	△26.4
네델란드	411	5	696	1.0	69.6	3	118	0.4	△83.0
중국	265	4	619	0.9	133.8	2	94	0.3	△83.0
영령버진제도	240	2	415	0.6	72.9	1	13	0.05	△84.8
몰디브	353	1	370	0.5	4.8	2	98	0.3	△73.5
일본	589	6	340	0.5	△42.3	14	412	1.4	21.2
호주	480	12	297	0.4	△38.1	6	333	1.2	12.1
복수국 합작	14,160	17	2,447	3.5	△82.7	NA	NA	NA	NA
합계(기타포함)	77,699	296	69,707	100.0	△10.3	199	28,864	100.0	△58.6

자료원 : 스리랑카 투자청(BOI)

주 1 : 복수국 합계는 스리랑카를 제외한 외국에 한함

주 2 : 일부 증자를 포함

주 3 : 미 달러 당 스리랑카 루피(RS)의 연간 평균환율추이: 2003년 96.52, 2004년 101.19, 2005년 100.50

32. 우리 기업 투자동향

가. 투자우대조치

스리랑카 정부는 국내외 투자자들에 대해서 매우 광범위한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내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상의 하등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며 우대조치는 제도적으로 2개 종류가 있으며 기업은 이들 중 어느 한쪽의 우대조치 수혜가 가능하다.

스리랑카 투자청 (BOI: the Board of Investment)은 외국인투자자들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BOI권한이 갈수록 약화되어 원스톱 서비스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면세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기간도 축소되고 있다. 경상수지거래에서 외환통제가 철폐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업은행을 통해 배당금, 로열티를 해외 송금할 수 있다. 스리랑카와 경쟁하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주요 국가들이 최근 수년 전부터 시장개방, 규제완화, 외국인투자유치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어 기존에 스리랑카가 갖은 강점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세부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상세내역은 http://www.boi.lk/pdf/incentives_feb2005.pdf 에 게재되어 있다.
- 세부 투자인센티브는 갈수록 기간이 단축되고 조건이 강화되고 있으며 상업 및 외화 유치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수시로 변동하고 있다. 따라서 세부내역은 B01 (www.boi.lk)를 참고 바란다.

1) B01법 17조에 따른 우대조치: Section 17 of the B01 Act

B01법 17조는 스리랑카 정부의 전략적인 경제목표달성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특별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위임 받았으며, B01에 의한 우대조치는 1995년 11월에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목적은 2가지로 대별될 수 있는데 (1) 첨단기술,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스리랑카 수출산업의 다변화 촉진과 (2) 대규모 개발사업 특히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새로운 우대조치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B01가 규정하고 있는 첨단기술(Advanced Technology)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바 첨단기술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 물품의 제조 혹은 서비스 제공 시 신규 디자인, 형식, 과정이 도입되는 기술로서 다음 사항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는 기술
 - 제조코스트의 저하를 가져오는 생산성 향상
 - 제품, 서비스의 품질 개선
 - 원재료의 보다 유효한 이용
 - 기능의 향상
 - 환경오염 혹은 폐기물 최소화 혹은 규제
- 지금까지 스리랑카에 도입된 적이 없는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단순가공기술 제외)
- 현재는 가공된 형태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서 원재료의 스리랑카 내 사용 가능한 가공 기술(단순가공 제외)
- 공공서비스, 인프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스리랑카 내 자원의 이용 기술로서 지금까지 스리랑카에서 사용되지 않은 기술

이하에 B01법 17조항에서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투자유형과 적용조건을 열거하였으며 우대조치가 적용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음의 혜택도 부여되고 있다

- 주식매매차익(자본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수출입관리법의 적용면제
- 국가치안부담금(방위세)의 경감(현재 수입자본재에 대해 2% 부과되고 있음)
- 수익/배당의 본국송금가능

비 전통품(앞 그대로 판매되는 홍차, rubber crepe, sheet, scrap, coconut oil, copra, fresh coconuts, coconut fibre, uncut gemstone 그밖에 재무부에 의해 규정되는 품목들)의 제조업자에게는 이러한 제품의 90%이상을 수출하거나 B01의 승인을 받은 수출업자에 판매하는 신규기업은 수출지향 제조기업으로 간주되며 총 사업비가 Rs1,250만 이상의 기업은 B01의 우대조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년간에 걸쳐 법인세 15%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며 외환관리법상의 적용을 면제받으며 사업 관련 물품의 수입 혹은 국내 조달품에 대해서는 수입세, 매출세, 물품세의 면제가 가능하다. 또 신규 수출지향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Rs 5천만 이상으로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게는 사업 개시 후 5년간의 면세기간이 부여된다(법인소득세 면제).

아울러 그 후 15년간은 15%의 법인소득세가 적용된다. 기존의 수출지향 B01기업이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Rs 250만 이상의 확대투자를 행하는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한 우대조치가 적용된다.

2) 전자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우대조치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자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B01는 특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B01가 운영하는 기술이전기금을 사용하여 행하는 직접적인 자금원조를 의미. 동 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는 기업은 통상 "clean room" 환경하에서 고도의 전자부품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기업으로 간주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지원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B01의 기준에 바탕 하여 사례별로 정해지고 있으며 수출증가액에 대응하여 자금보조, 훈련, 시험, 검사, 제조기기의 구입, 품질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에 연계된 비용의 보조 등이 지급 되고 있다.

3) 수출지향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매출액의 70%이상이 외화로 국외 거주자로부터 지불되는 서비스업종 기업에는 수출지향 서비스업으로서 B01의 우대조치가 적용된다(선박수리,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또한 매출액의 70% 이상을 B01로부터 승인받은 수출지향기업에 대해서 수출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서비스 대가로 얻고 있는 기업은 간접수출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봉제품의 세탁, 품질검사 서비스 등) 최저투자액이 Rs1천만 이상으로 규정된 선박수리, 해체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수출업에 대해서는 직접, 간접적으로 규정된 총 사업비 기준은 없다.

이들 사업에는 20년간에 달하는 법인소득세 15%의 우대세율적용, 외환관리법의 적용면제, 사업관련 물품의 수입 시 국내조달에 부과되는 수입세 면제, 물품세에 대한 면세혜택이 부여된다. 그러나 서비스 수출기업에는 모든 수입품(원료나 기계)과 국내조달물품에 매출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신규의 직접, 간접수출지향 서비스업 기업이면서 25인 이상을 고용하고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게는 사업시작 후 5년간은 면세(법인소득세 면제), 그 후 15년간은 15%의 법인소득세가 적용된다. 기존의 수출지향 B01서비스 기업이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Rs250만 이상의 확대투자를 행할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한 우대조치가 적용된다.

4) 대규모 사업

총 사업비가 Rs5억 이상의 신규사업은 대규모사업으로서 면세혜택이 부여되며 면세기간은 다음과 같이 투자규모에 따라 다르다.

총사업비 (RS)	면세기간
5억 -14억 9900만	10년
15억 -24억 9900만	12년
25억 -49억 9900만	15년
50억 이상	20년

면세 및 외환관리법의 적용배제조치는 수출의 유무에 상관없이 적용되나 제조업의 경우 이러한 우대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150인 이상의 고용이 필요하다. 수출 지향기업에 관해서는 기계, 원료의 수입에 대해서 수입세, 매출세, 물품세가, 사업의 존속기간 중에 한해 면제된다. 또한 면세기간 종료 후에도 법인소득세 15%의 우대세율은 적용된다(다만 면세기간은 총 20년간)

비 수출 지향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우대조치가 B01가 인정하는 사업기간에 한해 적용되며 만약 총 사업비가 5천만 불 이하의 경우에는 외국인 종업원은 최초의 3년간 개인 소득세가 15%로 경감된다.

총 사업비가 5천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국세법이 정한 "flagship company"로서 다음과 같은 우대조치의 적용을 받게 된다.

- 면세기간 중 내내 외국인 종업원의 개인소득세를 15%로 경감
- 비 거주 consultant 의 동 기업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는 본국에서 과세되는 세액을 초과하지 않음
- 비 거주 consultant 가 특정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fee, 수수료 그 밖의 수입에 과세되는 매출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사업관련 수입은 매출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5) 소규모 인프라 사업

소규모 인프라라 함은 창고건설, 환경관련사업, 데이터, 음성통신, 발전, 공업단지개발, 주택건설사업 등을 의미한다. 우대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과 발전의 경우는 Rs 5천만 이상,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Rs1억2500이상의 총 사업비가 소요되는 조건이라야 가능하다.

주택건설에 대해서는 100호 이상(4개 지구 이하에 건설가능)을 건설할 필요가 있으며 우대세율은 다음과 같다.

- Rs 1억 2500 만-Rs 2억 4900 만에 이르는 사업에 대해서는 7년간 15%의 법인소득세 적용
- Rs 2억 5000 만-Rs 4억 9900 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10년간 15%의 법인 소득세율 적용 (Rs5억 이상 사업은 대규모사업 우대조치 적용)
- 주택건설사업(Rs 5000 만 이상)에 대해서는 7년간 15%의 법인소득 세율 적용
- 컨테이너 기지

그밖에 기계, 설비, 건설자재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세, 물품세가, 사업수행 기간 동안 면제된다. 외국인종업원의 개인소득세는 사업 개시 후 3년간 15%로 경감된다. 총 사업비가 Rs5억 이상의 인프라개발사업은 대규모사업으로 분류되어 이러한 우대조치를 받을 수가 있다.

6) 관광·레크리에이션·레저사업

호텔, 레크리에이션시설, 골프코스, 기타 관광, 레저 관련산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Rs1천만 이상일 경우 15년간 우대법인소득세를 15%가 적용된다. 기계, 건설자재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세 물품세가 사업시행 기간 동안 면제되며 외국인 종업원의 개인소득세는 사업 시작 후 3년간 15%로 경감된다. 또한 미리 외환감독(Controllor of Exchange)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물품의 수입에 해당하는 외환의 차입을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다만, 사업비Rs 5억 이상의 관광, 레크리에이션, 레저사업은 대규모사업에 해당하는 우대조치를 받을 수가 있다.

7) 농업관련사업·어업·낙농·축산개발사업

축산, 낙농, 비 전통 작물, 해양 및 연안양식어업, 농산물가공, 농산물의 수확, 저장을 영위하는 사업에는 우대조치가 적용된다. 외국인투자자의 경우는 Rs750만 이상, 내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Rs250만 이상의 총 사업비가 투자 되어 한다는 조건이 있다. 낙농에 관해서는 Rs 1천만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가운데 제조업으로 구분되는 것은 50인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콜롬보 이외의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우대조치로서는 5년간 면세혜택이 부여되고 그 후 생산고의 90%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5%의 우대 법인소득세가 적용된다. 수출지향기업에는 수입에 대해 수입세, 매출세, 물품세가 면제된다.

8) 교육훈련시설

일정한 분야의 교육훈련시설에는 우대세제가 적용됨. 정보처리, 기술훈련, management, 섬유, 봉제업이 그 대상이며 그 밖의 분야로는 경제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B01가 승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시설은 10년간에 걸친 법인소득세 15%의 우대세율 적용, 사업시행 기간 동안의 수입기계, 재료에 대한 수입세, 물품세 면제가 부여됨. 또한 외국인 종업원의 개인소득세는 사업개시 후 3년간 15%로 경감된다.

9) 광업 및 광산물 가공

동 분야에 대한 투자는 공업개발부와의 협의 하에 B01법과 광산광물 법 및 관련법 하에서 결정되는 규칙을 적용하고 B01가 사례별로 우대조치를 결정, 1993년11월 이후에 B01법 제17조항에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1995년 11월8일 이후부터 100명 이상의 정규 종업원을 증원한 기업은 3만불 상당까지의 자동차 1대를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B01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B01는 개별사업의 필요에 부응해서 off-road vehicle의 면세수입을 승인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사업 관련의 특수차량 예를 들면 구급차(병원)이나 냉동차(식품가공)는 자동적으로 면세수입이 승인되고 있다.

10) 통상의 국내법상의 우대조치: Section 16 of the B01 Act)

동 제도의 우대조치는 국내외 어느 투자자에게도 적용됨. B01법 17조항에서의 우대조치를 받기 위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은 통상의 국내법 즉, 내국세법, 매출세법, 물품세법, 관세조례 등에 의한 우대조치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통상법 하에서의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투자자는 B01법 16조항에서 외국인 투자에 귀속하는 수익과 배당을 송금하는 것이 가능한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승인권은 B01가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B01법 16조 혹은 17조 하에서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최저 US\$5만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한다.

B01법 17조항에서의 우대조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국내외 투자자는 통상법에 기초한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일반우대조치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직간접수출 인센티브로 세금면제나 15%의 낮은 세율을 제공하고 있다.

-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제조업, 서비스업에 대한 우대조치
- 직접, 간접적인 수출업에 대한 우대조치
- 첨단기술투자에 대한 우대조치

B01법에서 우대조치를 받기 위한 수출비율기준 즉, 최저수출액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대해 산업개발부의 우대세제 위원회를 통하여 일반우대조치를 받을 수가 있으며 수출비율에 관한 기준은 없다.

신규로 설립된 기업이 이러한 우대조치를 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 50 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 Rs1 천만 이상을 기계에 투입하는 경우
- 재무부의 승인을 득하는 경우

이들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우대세제를 받을 수가 있다.

- 5 년간의 면세기간
- 6 년간에 비과세이익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에 대한 과세면제

우대조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시점부터 1년간 사업목적의 기계, 설비에 따른 수입세와 매출세 면제

- 기존기업에 상기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기업은 투자후의 이익증가분에 대해서 동일한 상기의 우대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 직접, 간접수출에 대한 우대조치

수출기업은 B01법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도 내국세법 하에서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가 있다. 비 전통품 수출로부터 얻은 이익에는 1995년4월1일부터 20년간에 달하는 최고 15%의 우대법인소득세율 적용하고 배당금에 대해서도 세율은15%이다.

- 수출기업에의 납품업자도 이러한 매출이익에는 15%의 우대법인 소득세율 적용. 배당금에 대해서도 세율 15% 적용. 수출기업에 납품되는 제조물품에는 국내 L/C, 국제 L/C 는 수출주문서에 의해 이러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매출세 면제
- 이러한 서비스업이 획득한 외화 이득에는 최고 15%의 우대법인 소득세율 적용; 선박 수리, 해체, 컨테이너 수리,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 보석, 장신구류 수출기업이 획득한 이득에 대해서는 무기한의 소득세 면제
- 재수출목적의 수입품의 저장, 상업선박국에 등록된 요트, 유람선의 운항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소득세 면제

- 스리랑카 국적의 선박을 해외에서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비 거주 회사의 이익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소득세 면제
- 농업, 어업을 영위하는 기업에는 5년간 법인소득세 면제

그 밖에도 감가상각기간의 단축, 수출매출액으로부터의 매출세 면제 등의 혜택이 가능하다

수출기업에는 수출품 제조를 위한 중간재 수입 및 현지조달 물품에 대한 면세혜택도 부여하고 있는데 이들 제도는 수출청(EDB)의 면세위원회(Committee on Exemption of Fiscal Levies)가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입자본재. 중간재에 대한 면세: 생산하는 제품의 9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는 100%, 50-90%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50%의 면세규정 적용
- 수입가공제도: 지불되는 세액의 25%를 은행보증 제시로 통관가능. 잔액은 개인보증
- 보세창고제도: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지불세액 25%를 은행보증에 의해 통관가능
- 관세환불제도: 봉제품 이외의 수출품 제조 시 조세 납부한 기업으로서 다른 면세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환불
- 스리랑카 수출업자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 EDB 는 스리랑카의 수출기업에 대해 B01 의 우대조치 적용의 유무에 상관없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음
- 직접자금보조: EDB 는 혁신적이고 pioneer 수출기업에 30%이하의 출자를 하고 있음. 또한 pioneer 기업이라고 인정되는 기업은 특정의 지출, 예를 들면 사업성 조사, 설계, 해외시장조사, 광고 등의 비용에 대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음. 또 "Pioneer Project" 의 인정은 신제품의 수출을 계획하는 기업에 부여되며 이러한 보조금은 Rs20 만까지 가능하며 제품개발까지는 시장조사비용의 80%까지의 보조가 가능. 제조, 가공하는 수출기업이 단기에 수출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Rs100 만까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소규모 수출지향기업은 기계도입, 훈련, 연구 개발비용에 대해 EDB 로부터 Rs25 만까지의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수출기업은 무역전시회에 앞서 Rs50 만까지의 보조가 받을 수 있음.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수출업자에게는 필요 시에 저리융자를 제공하는 제도도 있다.
- 품목별 특별자금보조

다음 제품은 EDB로부터 우대조치와 원조를 받을 수 있다.

- Diamond cutting
- 수직물(handloom textiles)
- 보석, 장신구류
- 전자
- 고무제품
- 원예
- 향신료, 精油(essential oils)
- 코코넛 섬유제품(Coair products)
- 시장개척 및 촉진 자금보조: EDB 는 수출업자의 무역전시회 박람회 참가, 해외 판매점의 설립에 대해서 원조하며 또한 ISO9000 에 준거한 품질관리시스템의 개선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300 기업 프로그램 (300 Enterprises Programme)

B01 는 지방균형발전과 낙후 지역 고용증진을 위해 낙후 지역에 투자 시 새로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Nipeyum Center Programme 하에 300 개 공장건설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가. 투자 승인 요건

1) 지원 가능 사업

- 기계류 및 건물에 대한 최소 투자액이 Rs. 3 천만 이상
- 2006 년 4 월 1 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2 년 내에 이루어져야 함.
- 직접 고용 인원: 200 명 이상

2) 법인 소득에 대한 면세 기간

- 창업 난이도 낮은 지역: 5 년
- 창업 난이도 높은 지역: 8 년
- 창업 난이도 매우 높은 지역: 10 년

나. 콜롬보, 감파 지역에서 성업 중인 기존의 사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면세 혜택

- 콜롬보, 감파 지역에 설립한 기존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 고용인 200 명 이상으로 고용인의 복지와 이익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노동 법규를 갖추고 있는 기업

다. 경영 부실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의 면세 혜택

- 경영 부실 기업 또는 부도 기업의 인수를 통하여 창업을 한 기업
- 투자액 Rs. 3 천만 이상, 현재 고용인원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거나 200 명 이상의 고용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면세 기간: 3 년, 5 년, 8 년

라.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면세 혜택 (의류 봉제업은 제외)

지역	최소 투자액	고용인원	면세기간
창업 난이도 낮은 지역	Rs. 3천만	200명 이상	5년
	Rs. 3천만	100명 ~ 199명	3년
	Rs. 3천만	50명 ~ 99명	2년
창업 난이도 높은 지역	Rs. 3천만	200명 이상	8년
	Rs. 3천만	100명 ~ 199명	5년
	Rs. 3천만	50명 ~ 99명	3년
창업 난이도 매우 높은 지역	Rs. 3천만	200명 이상	10년
	Rs. 3천만	100명 ~ 199명	8년
	Rs. 3천만	50명 ~ 99명	5년

주 : 공장 소재지는 콜롬보, 감파 지구 외부 지역일 것.

□ 해당 분야

1) 수출 및 내수 기업

- 음식, 음료
- 섬유, 가죽제품
- 목재, 목제품
- 종이, 종이제품, 인쇄·출판
- 화학·정유·석탄·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 비금속 광물 제품
- 조립·산업용 공구, 기계, 운송 기구
- 배·낚시용품 제조

* 홍차, 고무류(crepe, sheet, scrap rubber), 코코넛류(oil, desiccated coconut, copra, fresh, fiber) 는 제외

* 위 항목에 해당하는 내수 기업의 경우

- i) 해당 제품의 생산 기간 동안은 자본재의 수입에 대하여 세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되나
- ii) 원자재 수입에 있어서는 면세 혜택이 없고,
- iii) 외환관리규정 (Exchange Control Regulations)에 따라야 한다.

2) 서비스 산업 관련 기업

- IT 및 IT 관련 산업, BPO(Business Process Overseas) 산업
- 농산물 수거 센터
- 병원
- 수출 지원 관련 서비스 (의류업 관련한 간접 수출품)
 - 의류 Washing & Finishing
 - 자수업
 - 섬유 염색 및 완성 처리
 - 섬유 인쇄
 - 원단 검사
 - 의류 봉제업을 위한 컴퓨터 디자인 및 관련 지원 사업
 - 의류 진공 포장

마. 의류 봉제 제조업의 인센티브

- 새로 창업한 기업 : 콜롬보, 감파 지구 외부 지역에 한함.
- 경영 부실의 기존 사업체 인수를 통해 창업한 기업

33. 투자환경

가. 투자환경

1) 투자관련 법규

스리랑카는 외국인 투자활성화 및 투자기업 보호를 위해 헌법에 투자보호 조항(157조)을 명시하고 있으며, 1978년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모체가 되는 투자법 (Law No.4 of 1978, 일명 B0I Act라고도 함)을 제정, 시행 중이다. 이 투자법은 1980, 1983, 1992년에 수정되었으며, 이 모법을 근거로 세부 규정이 만들어졌다.

2) 투자환경

영국으로부터 1948년 독립한 스리랑카는 1977년 친 서방정책으로 전환하기 이전에는 수입대체 산업 육성 정책을 취하였고 일부 정권 하에서는 주요 외국기업의 국유화 등 극단적인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1950년대 싱가포르가 독립을 추진하던 당시 싱가포르의 모델이었던 스리랑카는 30년에 걸친 사회주의 정책추진에 따른 낙후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1977년부터 제조업분야의 육성, 수출증대, 기술개발, 고용증대 등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자본 및 기술을 도입하는 적극적인 개방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스리랑카 투자환경은 "100%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기업 과실에 대한 자유로운 송금,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수준의 인센티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차별이 없으며, 스리랑카 투자청(B0I:Board of Investment)이 다양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 스리랑카 투자인센티브 세부내역: http://www.boi.lk/pdf/incentives_feb2005.pdf

최근 정부 재정적자 확대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일부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에 대한 개방도가 매우 높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이 매우 자유로워 투자환경은 좋은 편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과실송금, 이익배당의 자유, 자유로운 주식양도 및 면세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사업을 위한 용지의 매입이나 임차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자가 스리랑카의 회사 법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및 개인 명의로 용지를 매입하는 경우 내국인과 차별이 없다. 또한 서남아 지역 중에서는 발달한 인프라 수준과 높은 교육수준 등으로 비교적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세관통관, 공장부지에의 접근성 확보 곤란, 경쟁국 대비 열악한 인프라(열악한 수송시설 및 도로 철도사정, 잦은 정전과 용수부족 등)가 외국인투자 확대에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는 1978년 대콜롬보 경제위원회(GCEC, 현 B0I)를 설치하여 투자자들의 진출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B0I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최초 접점이 되며, 투자협약, 승인, 자본재 반입, 원부자재 도입, 제품수출 통관, 세금 등 각종 경영활동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투자자들에게 원 루프(One Roof)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리랑카 헌법은 외국과 체결한 쌍무투자협정은 투자보호협정으로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157조에 명시하고 있다. 투자보호협정의 효력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며 이에 반하는 추가적인 별도의 입법이나 시행령 혹은 행정적 조치로 동 협정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정지 혹은 변경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스리랑카와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20여 개국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법은 투자청 (BOI)법이다.

동 법 제17조에 의해 BOI는 스리랑카 정부의 투자우대조치 여건에 합치하는 투자 건에 대해서는 각종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합치되지 않는 투자 프로젝트는 BOI법 제16조가 적용되며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다양한 우대 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투자분야, 고용, 투자지역 등 스리랑카 경제에 대한 효과를 고려해 최저 3년에서 15년까지 면세(Tax Holiday)기간을 부여하며, 수출용 설비 및 원부자재에 대한 면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2006. 8. 현재 최신자료)

1995년부터는 첨단 기술 및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인프라 건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IT(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에 제한이 없으며 내국인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투자가 제한되는 분야는 자금 대부업, 전당포업, 자본금 100만 불 미만의 소매업, 수출, 관광 이외의 개인서비스업, 연안어업 등이다. 금융산업 등에 대해서는 지분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자유로운 편이다.

1996년 이래로 스리랑카 투자 제도에 주요 변화는 없었지만 은행, 보험 등 특정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이 완화되었다. 1990년대부터 인도,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국가 들도 시장 개방으로 나가고 있어 스리랑카는 투자상의 이점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물류 및 FTA지역 허브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세계 섬유교역자유화로 인한 스리랑카의 섬유쿼터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일반봉제 의류분야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크게 열위에 처해 있다. 반면, 인접한 거대 잠재 시장인 인도시장의 부상에 따라 인도와의 지리적인 인접성, 인도양 해상 간선루트에 있는 스리랑카의 지리적 위치, 인도-스리랑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대인도 시장 우회 진출기지로써의 역할이 점차 부상되고 있다.

파키스탄과 FTA가 2005년 발효되고, 인도와 포괄 경제제휴 협정 체결을 2006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내부 목표 하에 양국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남아시아 진출 관문으로서 기회와 위험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인구가 2천만 명 이내의 개도국으로 내수시장 자체만을 보고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며 제조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인근 국인 인도의 급부상과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의 투자환경 개선으로 스리랑카보다는 이들 국가로 직접 진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스리랑카 기업개발 및 투자진흥부에 따르면 2005년 스리랑카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액은 110백만 불에 그쳐 매우 저조하였으며 271개 프로젝트가 투자승인까지 1년 이상이 걸린 것으로 파악되어 투자승인 절차상의 관료주의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외국인투자제한

현재 스리랑카의 경우 외국인 투자유치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투자제한은 비교적 적은 편으로 일부 투자 제한분야, B01이외의 정부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분야도 있다. 제한 내용은 분야에 따라 상이하하나 다른 아시아 제국과의 비교조사에 의하면 스리랑카의 제한대상은 소수의 분야에 한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대한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이러한 대상분야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스리랑카의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주요 법률은 1978년 B01법(the 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 Law No.4 of 1978)으로 1980, 1983, 1992, 2002년에 각각 수정되었다. 이밖에 B01법 시행규정, 외환관리법(the Exchange Control Act)로 여러 분야에 외국인 지분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이 있고 B01직접승인분야가 아닌 투자제한분야는 해당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전투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리랑카 투자환경은 " 수도, 대중교통, 기간통신, 전문서비스, 조선, 군수, 광산 등을 제외한 100%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기업 과실에 대한 자유로운 송금,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수준의 인센티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차별이 없으며, 스리랑카 투자청(B01: Board of Investment)이 다양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제한분야(예시)

B01가 직접 투자 승인하지 않은 분야	투자승인 담당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 별 외국인투자지분비율 결정 국제항공 운송 방산물품(하드웨어) - 위험 약품, 독극물, 주류, 위험물질 - 지폐, 주화, 증서 - 대형 기계화된 보석광산 - 복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 하이웨이, 민간항공부 - 생산제품에 따라 감독부서가 투자승인 - 생산제품에 따라 감독부서가 투자승인 - 생산제품에 따라 감독부서가 투자승인 - 과학기술부, 환경자원부등 - 재정기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까지 투자지분 허용 - 파이낸싱사(예금 미 취급) - 보험 -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기획부 - 재정기획부 - 재정기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01 직접승인 제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지분한도초과시 담당정부기관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01가 외국인지분 40%까지 허용가능분야 - 재배 및 가공산업(고무, 코코넛, 쌀, 코코아, 설탕, 향료) - 국내목재를 사용한 제재산업 - 광산 및 비재생 자원 활용한 주요 가공 산업 - 어업 - 상수도 - 대중교통 - 통신 - 전문서비스 - 화물운송주선업 - 여행업 - 해운에이전트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가축부 - 환경자원부 - 환경자원부 - 국방부, 어업해양자원부 - 관개 및 수자원관리부 - 운송, 하이웨이, 민간항공부 - 통신부 - 노동부, 행정관리부, 개혁부 - 항만개발해운부 - 관광부 - 항만개발해운부

4) 외국인투자 금지분야

- 자금대부업
- 전당포업
- 자본금 US\$ 1 백만 미만의 소매업
- 수출, 관광 이외의 개인서비스업
- 연안어업
- 14 세 미만 스리랑카 국적의 어린이 교육 분야
- 스리랑카내 학위부여 분야

5) 제한분야

□ B01 이외 정부기관의 승인 필요분야

다음 사업은 정부기관에 의해 규제되고 있어 투자신청 승인을 얻기 전에 이들 정부기관에 의한 심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외자비율이 제한되는 분야도 있다. 투자청(B01)은 투자자에게 투자 신청을 관련 정부기관에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완화하기 위해 2004년에는 외국인 토지 취득세를 새로 부활하여 외국인이 토지 매입 시 100% 세금을 거래세로 부과한다. 또한 천연자원 및 환경보호를 위한 외국인의 자원개발남발을 막기 위해 환경규제와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 항공운송
- 연안해운
- 군용물품, 의약품, 화폐 등의 제조 등과 같은 국가에 민감한 사업
- 복권업
- 보석에 대한 대규모의 상업적인 채굴

□ B01 의 조건부 승인 가능분야

다음 사업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자본금의 40%까지 가능하며 해당 요건 충족 시 B01에 의해 자동적으로 승인됨. 자본금의 40%를 초과하여 100%까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례별로 B01에 의해 승인되고 있음. 이들 분야들에 대해서는 투자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 국제 수입쿼터에 따른 수출용 제품의 생산 홍차, 고무, 코코넛, 코코아, 쌀 설탕, 향신료의 재배와 1차 가공
-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의 채굴 및 1차 가공
- 국산원목을 사용하는 목재산업
- 어업(심해)
- 주택건축
- 용수공급
- 대중통신
- 교육
- 화물운송, 통관
- 여행대리업
- 해운업

2005년 11월 대선에서 집권한 마힌다 라자팍서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환영하나 내외국인 기업간 우대상의 차별폐지, 선별적인 투자유치, 그리고 국가기간산업으로 공공성이 높은 전력, 철도, 정유부문의 민영화대신 국영체제를 계속 유지하되 경영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나. 투자방식

1) 사전조사 및 투자신청

스리랑카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이 아직은 발달되어 있지 않고 시장이 적어 부문별 산업별 전문정보 입수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전체적인 경제 및 산업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스리랑카 중앙은행(Central Bank of Sri Lanka)이 매년 발행하는 연차 보고서(Annual Report)가 대표적이다.

스리랑카에 투자를 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우선 B01의 투자촉진부(Promotion Department)를 접촉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동 부의 구별 담당관이 투자분야와 우대조치에 대해 설명을 해주며 또한 담당관은 투자자가 투자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며 B01내의 타 부문에 동 신청의 조회를 대행하기도 한다. 투자자는 반드시 정식의 투자신청서를 B01에 제출해야 하며 투자신청은 투자승인과 투자장소의 승인을 요청하는 2개로 되어 있으며 신청서는 투자촉진부에서 입수가 가능하며 B01웹사이트(www.boi.lk)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필요사항을 기재한 투자신청서는 심사부(Appraisal Department)에서 심사하며 수수료는 150불(부가가치세 15% 별도)인데 은행 드래프트나 체크를 받으며 국내신청 시에 이에 상당하는 스리랑카 루피화 체크나 현금을 받는다.

이후 심사부의 담당자가 각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향후의 제반 투자절차에 대한 도움을 주며 담당자는 관계관청으로부터 필요한 인허가도 취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B01 한국담당자 연락처

- 이름: A.W.M.Faizal-Manager (Promotion)
- 주소: World Trade Centre, West Tower, 26th Floor, Echelon Square, Colombo 01
- 전화: 94-11-2346344 /2427036
- 팩스: 94-11-2422407 /2447995
- 휴대폰: 0777 776779
- 이메일: faizalm@boi.lk

2) 투자승인(Approval)

심사부는 1) 투자신청을 승인하고 B01의 우대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2) 통상법의 우대조치 적용에 관해 조언을 하며, 3) 관계부처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외국인 투자는 거의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승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통상 신청서가 제출되면 3일 이내(휴일제외)에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별 우대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4주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또한 타 정부기관의 소관으로 외국인 투자가 제한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통상 30일 이내에 투자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B0I가 투자자를 대신해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행하고 있다.

이후 B0I는 서면으로 투자승인조건과 적용되는 우대조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고지 하며 이것이 투자승인서(Letter of Approval)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투자승인서를 받은 투자자는 서면으로 투자의 승인조건을 수용하는 요지의 회신을 제출해야 하며 만약 내용의 변경이나 특별한 조건 혹은 우대조치를 요망하는 경우에는 이때 자신의 요구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3) 계약

투자자는 이러한 절차를 마친 후 회사등기소(Registrar of Companies)에 법인설립신청을 해야 하며 동시에 계약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B0I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회사정관
- 총무담당 중역 이름(name of company secretary)
- 등기된 사무소의 소재지
- 사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의 목록

회사등기소 직원이 회사의 설립과 등록에 관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며 동 직원은 B0I가 발행한 투자승인서에 의거, 외국인투자가 정식으로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정식계약은 통상 투자승인서 발행 후 30일 이내에 체결되며 계약에 의해 B0I법 17조에 의한 우대조치가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확정된다.

4) 입지선정

B0I가 관리하는 수출가공공단(EPZ)에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투자자는 당해 수출가공공단의 director 혹은 manager와 상담을 통해서 가능한데 동 공단에는 WHO기준에 부합하는 식수공급, 공동 배수처리, 전력공급, 통신 등의 시설을 구비해 놓고 있다. 수출가공공단 이외의 지역에 공장설립을 희망하거나 공단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B0I의 사업 실시부(The Project Implementation Division)를 접촉하여 Land Bank Service를 통해 입지 가능한 토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할 수 있다.

5) 입지의 승인(Site Approval)

B0I의 기술서비스국(The Technical Service Department)은 사업의 입지를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승인신청서는 투자촉진부에서 입수할 수 있다. 인프라 관계와 환경기준에 관한 문제는 기술서비스국의 엔지니어링 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입지승인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권고가, 기술서비스국이 투자자에 대해서 발행한 정식의 허가증(letter of site approval)에 포함되어 있으며 투자자는 입지의 승인을 득하면 토지의 매매계약 혹은 임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6) 환경보호 라이선스

B0I의 환경부는 필요에 따라 국가환경법에 기초하여 환경보호 라이선스(EPL)를 발행 하며 이러한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는 산업은 조업 개시 전에 동 라이선스의 발행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검사와 환경보호 라이선스 발행에는 수수료가 붙으며 환경기준에 관한 가이드는 다른 정보와 같이 투자신청 전에 입수할 수 있다.

7) 건설계획(Building Plan Approval) 의 승인

스리랑카에서 건설되는 공장은 공장조례에 따라야 하며 특히 노동자의 건강, 위생, 복리, 안전에 관한 기준은 엄격히 준수하도록 되어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B01의 공장건설 가이드라인은 투자촉진부에서 입수할 수 있으며 건설을 인가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부이므로 필요에 따라 이들 부서를 접촉,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건설인가를 취득하려면 건축사, 기술사의 증명을 받아 공장의 건축, 배치, 서비스 계획의 설계도를 제출해야 한다. B01법 제17조항에서 승인을 받은 기업은 공장설비의 건설을 위한 건축자재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엔지니어링 부의 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이를 발급 받아야 한다.

8) 자본재, 원료의 수입

각 기업은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 부품, 원료의 상세한 리스트를 심사부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부는 엔지니어링 부에 자문한 후 상기 리스트를 심사하여 면세구입의 허가를 부여한다.

9) 기타 컨설팅

스리랑카에 세법, 회계 등의 전문컨설팅을 받으려면 미국의 Price Water House Copers, Ernst & Young등이 진출해 있다.

한국기업으로 투자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의 이름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코호 트레이딩 & 컨설팅사
 - 담당자: 홍명옥 사장
 - 주소: 25, Skelton Road, Colombo5
 - 전화: 94-11-2581866/7
 - 팩스: 94-11-2559589
 - 이메일: hongmo@eol.lk

34. 투자인센티브

가. 투자우대조치

스리랑카 정부는 국내외 투자자들에 대해서 매우 광범위한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내국인 투자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상의 하등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며 우대조치는 제도적으로 2개 종류가 있으며 기업은 이들 중 어느 한쪽의 우대조치 수혜가 가능하다.

스리랑카 투자청(B01: the Board of Investment)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B01권한이 갈수록 약화되어 원스톱 서비스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면세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기간도 축소되고 있다. 경상수지거래에서 외환통제가 철폐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업은행을 통해 배당금, 로알티를 해외 송금할 수 있다. 스리랑카와 경쟁하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주요 국가들이 최근 수년 전부터 시장개방, 규제완화, 외국인투자유치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어 기존에 스리랑카가 갖은 강점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세부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상세내역은 http://www.boi.lk/pdf/incentives_feb2005.pdf에 게재 되어 있다.
- 세부 투자인센티브는 갈수록 기간이 단축되고 조건이 강화되고 있으며 상업 및 외화 유치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수시로 변동하고 있다. 따라서 세부내역은 B01 (www.boi.lk)를 참고 바란다.

1) B01법 17조에 따른 우대조치; Section 17 of the B01 Act

B01법 17조는 스리랑카 정부의 전략적인 경제목표달성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특별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위임 받았으며, B01에 의한 우대조치는 1995년 11월에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목적은 2가지로 대별될 수 있는데 (1) 첨단기술,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스리랑카 수출산업의 다변화 촉진과 (2) 대규모 개발사업 특히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새로운 우대조치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B01가 규정하고 있는 첨단기술(Advanced Technology)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바 첨단기술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 물품의 제조 혹은 서비스 제공 시 신규 디자인, 형식, 과정이 도입되는 기술로서 다음 사항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는 기술
 - 제조코스트의 저하를 가져오는 생산성 향상
 - 제품, 서비스의 품질개선
 - 원재료의 보다 유효한 이용
 - 기능의 향상
 - 환경오염 혹은 폐기물 최소화 혹은 규제
- 지금까지 스리랑카에 도입된 적이 없는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단순가공기술 제외)
- 현재는 가공된 형태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서 원재료의 스리랑카 내 사용 가능한 가공 기술(단순가공 제외)
- 공공서비스, 인프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스리랑카 내 자원의 이용 기술로서 지금까지 스리랑카에서 사용되지 않은 기술

이하에 B01법 17조항에서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투자유형과 적용조건을 열거하였으며 우대조치가 적용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음의 혜택도 부여되고 있다

- 주식매매 차익(자본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수출입 관리법의 적용면제
- 국가 치안 부담금(방위세)의 경감(현재 수입 자본재에 대해 2% 부과되고 있음)
- 수익/배당의 본국송금가능

비 전통품(앞 그대로 판매되는 홍차, rubber crepe, sheet, scrap, coconut oil, copra, fresh coconuts, coconut fibre, uncut gemstone 그밖에 재무부에 의해 규정되는 품목들)의 제조업자에게는 이러한 제품의 90% 이상을 수출하거나 B01의 승인을 받은 수출업자에 판매하는 신규기업은 수출지향 제조기업으로 간주되며 총 사업비가 Rs1,250만 이상의 기업은 B01의 우대조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년간에 걸쳐 법인세 15%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며 외환관리법상의 적용을 면제받으며 사업 관련 물품의 수입 혹은 국내 조달품에 대해서는 수입세, 매출세, 물품세의 면제가 가능하다. 또 신규 수출지향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Rs5천만 이상으로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게는 사업 개시 후 5년간의 면세기간이 부여된다 (법인 소득세 면제).

아울러 그 후 15년간은 15%의 법인소득세가 적용된다. 기존의 수출지향 B01기업이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Rs250만 이상의 확대투자를 행하는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한 우대조치가 적용된다.

2) 전자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우대조치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자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B01는 특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B01가 운영하는 기술이전기금을 사용하여 행하는 직접적인 자금원조를 의미. 동 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는 기업은 통상 "clean room" 환경하에서 고도의 전자부품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기업으로 간주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지원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B01의 기준에 바탕하여 사례별로 정해지고 있으며 수출증가액에 대응하여 자금보조, 훈련, 시험, 검사, 제조기기의 구입, 품질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에 연계된 비용의 보조 등이 지급 되고 있다.

3) 수출지향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매출액의 70%이상이 외화로 국외거주자로부터 지불되는 서비스업종 기업에는 수출지향 서비스업으로서 B01의 우대조치가 적용된다(선박수리,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또한 매출액의 70% 이상을 B01로부터 승인 받은 수출지향기업에 대해서 수출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서비스 대가로 얻고 있는 기업은 간접수출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봉제품의 세탁, 품질검사 서비스 등) 최저투자액이 Rs1천만 이상으로 규정된 선박수리, 해체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수출업에 대해서는 직접, 간접적으로 규정된 총 사업비 기준은 없다.

이들 사업에는 20년간에 달하는 법인소득세 15%의 우대세율적용, 외환관리법의 적용면제, 사업관련 물품의 수입 시 국내조달에 부과되는 수입세 면제, 물품세에 대한 면세혜택이 부여된다. 그러나 서비스 수출기업에는 모든 수입품(원료나 기계)과 국내조달물품에 매출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신규의 직접, 간접 수출지향 서비스업 기업이면서 25인 이상을 고용하고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게는 사업시작 후 5년간은 면세(법인소득세 면제), 그 후 15년간은 15%의 법인소득세가 적용된다. 기존의 수출지향 B01서비스기업이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Rs250만 이상의 확대투자를 행할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한 우대조치가 적용된다.

4) 대규모 사업

총 사업비가 Rs5억 이상의 신규사업은 대규모사업으로서 면세혜택이 부여되며 면세기간은 다음과 같이 투자규모에 따라 다르다.

총사업비 (RS)	면세기간
5억 -14억 9900만	10년
15억 -24억 9900만	12년
25억 -49억 9900만	15년
50억 이상	20년

면세 및 외환관리법의 적용배제조치는 수출의 유무에 상관없이 적용되나 제조업의 경우 이러한 우대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150인 이상의 고용이 필요하다. 수출지향기업에 관해서는 기계, 원료의 수입에 대해서 수입세, 매출세, 물품세가, 사업의 존속기간 중에 한해 면제된다. 또한 면세기간 종료 후에도 법인소득세 15%의 우대세율은 적용된다(다만 면세기간은 총 20년간)

비수출지향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우대조치가 80%가 인정하는 사업기간에 한해 적용되며 만약 총 사업비가 5천만 불 이하의 경우에는 외국인 종업원은 최초의 3년간 개인 소득세가 15%로 경감된다.

총 사업비가 5천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국세법이 정한 "flagship company"로서 다음과 같은 우대조치의 적용을 받게 된다.

- 면세기간 중 내내 외국인 종업원의 개인소득세를 15%로 경감
- 비 거주 consultant 의 동 기업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는 본국에서 과세되는 세액을 초과하지 않음
- 비 거주 consultant 가 특정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fee, 수수료 그 밖의 수입에 과세되는 매출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사업관련 수입은 매출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5) 소규모 인프라사업

소규모 인프라라 함은 창고건설, 환경관련사업, 데이터, 음성통신, 발전, 공업단지개발, 주택건설사업 등을 의미한다. 우대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과 발전의 경우는 Rs5천만 이상,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Rs1억2500이상의 총 사업비가 소요되는 조건이라야 가능하다.

주택건설에 대해서는 100호 이상(4개 지구 이하에 건설가능)을 건설할 필요가 있으며 우대세율은 다음과 같다.

- Rs 1 억 2500 만-Rs 2 억 4900 만에 이르는 사업에 대해서는 7년간 15%의 법인소득세 적용
- Rs 2 억 5000 만-Rs 4 억 9900 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10년간 15%의 법인 소득세율 적용 (Rs5 억 이상 사업은 대규모사업 우대조치 적용)
- 주택건설사업(Rs 5000 만 이상)에 대해서는 7년간 15%의 법인소득 세율 적용
- 컨테이너 기지

그밖에 기계, 설비, 건설자재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세, 물품세가, 사업수행 기간 동안 면제된다. 외국인종업원의 개인소득세는 사업 개시 후 3년간 15%로 경감된다. 총 사업비가 Rs5억 이상의 인프라개발사업은 대규모사업으로 분류되어 이러한 우대조치를 받을 수가 있다.

6) 관광, 레크리에이션, 레저사업

호텔, 레크리에이션시설, 골프코스, 기타 관광, 레저 관련산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Rs 1천만 이상일 경우 15년간 우대법인소득세율 15%가 적용된다. 기계, 건설자재의 수입에 대해서

는 수입세 물품세가 사업시행 기간 동안 면제되며 외국인 종업원의 개인소득세는 사업 시작 후 3년간 15%로 경감된다. 또한 미리 외환감독(Controllor of Exchange)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물품의 수입에 해당하는 외환의 차입을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다만, 사업비Rs5억 이상의 관광, 레크리에이션, 레저사업은 대규모사업에 해당하는 우대 조치를 받을 수가 있다.

7) 농업관련사업, 어업, 낙농, 축산개발사업

축산, 낙농, 비전통작물, 해양 및 연안양식어업, 농산물가공, 농산물의 수확, 저장을 영위하는 사업에는 우대조치가 적용된다. 외국인투자자의 경우는 Rs750만 이상, 내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Rs250만 이상의 총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낙농에 관해서는 Rs1천만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가운데 제조업으로 구분되는 것은 50인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콜롬보 이외의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우대조치로서는 5년간 면세혜택이 부여되고 그 후 생산고의 90%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5%의 우대 법인소득세가 적용된다. 수출지향기업에는 수입에 대해 수입세, 매출세, 물품세가 면제된다.

8) 교육훈련시설

일정한 분야의 교육훈련시설에는 우대세제가 적용됨. 정보처리, 기술훈련, management, 섬유, 봉제업이 그 대상이며 그 밖의 분야로는 경제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B0I가 승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시설은 10년간에 걸친 법인소득세 15%의 우대세율 적용, 사업시행 기간 동안의 수입기계, 재료에 대한 수입세, 물품세 면제가 부여됨. 또한 외국인 종업원의 개인소득세는 사업개시 후 3년간 15%로 경감된다.

9) 광업 및 광산물 가공

동 분야에 대한 투자는 공업개발부와의 협의 하에 B0I법과 광산광물 법 및 관련법 하에서 결정되는 규칙을 적용하고 B0I가 사례별로 우대조치를 결정, 1993년11월 이후에 B0I법 제17조항에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1995년 11월8일 이후부터 100명 이상의 정규 종업원을 증원한 기업은 3만불 상당까지의 자동차 1대를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B0I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B0I는 개별사업의 필요에 부응해서 off-road vehicle의 면세수입을 승인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사업 관련의 특수차량, 예를 들면 구급차(병원)이나 냉동차(식품가공)는 자동적으로 면세수입이 승인되고 있다.

10) 통상의 국내법상의 우대조치: Section 16 of the B0I Act

동 제도하의 우대조치는 국내외 어느 투자자에게도 적용됨. B0I법 17조항에서의 우대조치를 받기 위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은 통상의 국내법 즉, 내국세법, 매출세법, 물품세법, 관세조례 등에 의한 우대조치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통상법 하에서의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투자자는 B0I법 16조항에서 외국인 투자에 귀속하는 수익과 배당을 송금하는 것이 가능한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승인권은 B0I가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B0I법 16조 혹은 17조 하에서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최저 US\$5만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한다.

B0I법 17조항에서의 우대조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국내외 투자자는 통상법에 기초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일반우대조치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직간접수출 인센티브로 세금면제나 15%의 낮은 세율을 제공하고 있다.

-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제조업, 서비스업에 대한 우대조치
- 직접, 간접적인 수출업에 대한 우대조치
- 첨단기술투자에 대한 우대조치

B01법에서 우대조치를 받기 위한 수출비율기준 즉, 최저수출액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대해 산업개발부의 우대 세제 위원회를 통하여 일반우대조치를 받을 수가 있으며 수출비율에 관한 기준은 없다.

신규로 설립된 기업이 이러한 우대조치를 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 Rs1천만 이상을 기계에 투입하는 경우
- 재무부의 승인을 득하는 경우

이들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우대세제를 받을 수가 있다.

- 5년간의 면세기간
- 6년간에 비과세 이익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에 대한 과세면제

우대조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시점부터 1년간 사업목적의 기계, 설비에 따른 수입세와 매출세 면제

- 기존기업에 상기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기업은 투자후의 이익증가분에 대해서 동일한 상기의 우대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 직접, 간접수출에 대한 우대조치

수출기업은 B01법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도 내국세법 하에서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가 있다. 비 전통품 수출로부터 얻은 이익에는 1995년4월1일부터 20년간에 달하는 최고 15%의 우대법인소득세율 적용하고 배당금에 대해서도 세율은15%이다.

- 수출기업에의 납품업자도 이러한 매출이익에는 15%의 우대법인 소득세율 적용. 배당금에 대해서도 세율 15% 적용. 수출기업에 납품되는 제조물품에는 국내 L/C, 국제 L/C는 수출 주문서에 의해 이러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매출세 면제
- 이러한 서비스업이 획득한 외화 이득 에는 최고 15%의 우대법인 소득세율 적용; 선박 수리, 해체, 컨테이너 수리,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 보석, 장신구류 수출기업이 획득한 이득에 대해서는 무기한의 소득세 면제
- 재 수출 목적의 수입품의 저장, 상업선박국에 등록된 요트, 유람선의 운항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소득세 면제
- 스리랑카 국적의 선박을 해외에서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비 거주 회사의 이익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소득세 면제
- 농업, 어업을 영위하는 기업에는 5년간 법인소득세 면제

그 밖에도 감가상각기간의 단축, 수출매출액으로부터의 매출세 면제 등의 혜택이 가능하다

수출기업에는 수출품 제조를 위한 중간재 수입 및 현지조달 물품에 대한 면세혜택도 부여하고 있는데 이들 제도는 수출청(EDB)의 면세 위원회(Committee on Exemption of Fiscal Levies)가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입자본재. 중간재에 대한 면세: 생산하는 제품의 9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는 100%, 50-90%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50%의 면세규정 적용
- 수입가공제도: 지불되는 세액의 25%를 은행보증 제시로 통관가능. 잔액은 개인보증
- 보세창고제도: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지불세액 25%를 은행보증에 의해 통관가능
- 관세환불제도: 봉제품 이외의 수출품 제조 시 조세 납부한 기업으로서 다른 면세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환불
- 스리랑카 수출업자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 EDB 는 스리랑카의 수출기업에 대해 B01 의 우대조치적용의 유무에 상관없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음
- 직접자금보조: EDB 는 혁신적이고 pioneer 수출기업에 30%이하의 출자를 하고 있음. 또한 pioneer 기업이라고 인정되는 기업은 특정의 지출, 예를 들면 사업성 조사, 설계, 해외시장조사, 광고 등의 비용에 대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음. 또 "Pioneer Project" 의 인정은 신제품의 수출을 계획하는 기업에 부여되며 이러한 보조금은 Rs20 만까지 가능하며 제품개발까지는 시장조사비용의 80%까지의 보조가 가능. 제조·가공하는 수출기업이 단기에 수출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Rs100 만까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소규모 수출지향기업은 기계도입, 훈련, 연구 개발비용에 대해 EDB 로부터 Rs25 만까지의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무역전시회에 앞서 Rs50 만까지의 보조가 받을 수 있음.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수출업자에게는 필요 시에 저리융자를 제공하는 제도도 있다.
- 품목별 특별자금보조

다음 제품은 EDB로부터 우대조치와 원조를 받을 수 있다.

- Diamond cutting
- 수직물(handloom textiles)
- 보석, 장신구류
- 전자
- 고무제품
- 원예
- 향신료, 精油(essential oils)
- 코코넛 섬유제품(Coira products)
- 시장개척 및 촉진 자금보조: EDB 는 수출업자의 무역전시회 박람회 참가, 해외 판매점의 설립에 대해서 원조하며 또한 ISO9000 에 준거한 품질관리시스템의 개선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300 기업 프로그램 (300 Enterprises Programme)

B0I 는 지방균형발전과 낙후 지역 고용증진을 위해 낙후 지역에 투자 시 새로운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Nipeyum Center Programm 하에 300 개 공장건설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가. 투자 승인 요건

1) 지원 가능 사업

- 기계류 및 건물에 대한 최소 투자액이 Rs 3 천만 이상
- 2006 년 4 월 1 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2 년 내에 이루어져야 함.
- 직접 고용 인원 : 200 명 이상

2) 법인 소득에 대한 면세 기간

- 창업 난이도 낮은 지역 : 5 년
- 창업 난이도 높은 지역 : 8 년
- 창업 난이도 매우 높은 지역 : 10 년

나. 콜롬보, 감파 지역에서 성업 중인 기존의 사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면세 혜택

- 콜롬보, 감파 지역에 설립한 기존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 고용인 200 명 이상으로 고용인의 복지와 이익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노동 법규를 갖추고 있는 기업

다. 경영 부실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의 면세 혜택

- 경영 부실 기업 또는 부도 기업의 인수를 통하여 창업을 한 기업
- 투자액 Rs. 3 천만 이상, 현재 고용인원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거나 200 명 이상의 고용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면세 기간: 3 년, 5 년, 8 년

라.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면세 혜택 (의류 봉제업은 제외)

지역	최소 투자액	고용인원	면세기간
창업 난이도 낮은 지역	Rs. 3천만	200명 이상	5년
	Rs. 3천만	100명 ~ 199명	3년
	Rs. 3천만	50명 ~ 99명	2년
창업 난이도 높은 지역	Rs. 3천만	200명 이상	8년
	Rs. 3천만	100명 ~ 199명	5년
	Rs. 3천만	50명 ~ 99명	3년
창업 난이도 매우 높은 지역	Rs. 3천만	200명 이상	10년
	Rs. 3천만	100명 ~ 199명	8년
	Rs. 3천만	50명 ~ 99명	5년

주 : 공장 소재지는 콜롬보, 감파 지구 외부 지역일 것.

□ 해당 분야

1) 수출 및 내수 기업

- 음식, 음료
- 섬유, 가죽제품
- 목재, 목제품
- 종이, 종이제품, 인쇄·출판
- 화학·정유·석탄·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 비금속 광물 제품
- 조립·산업용 공구, 기계, 운송 기구
- 배·낙시용품 제조

* 홍차, 고무류(crepe, sheet, scrap rubber), 코코넛류(oil, desiccated coconut, copra, fresh, fiber) 는 제외

* 위 항목에 해당하는 내수 기업의 경우

- i) 해당 제품의 생산 기간 동안은 자본재의 수입에 대하여 세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되나
- ii) 원자재 수입에 있어서는 면세 혜택이 없고,
- iii) 외환관리규정 (Exchange Control Regulations)에 따라야 한다.

2) 서비스 산업 관련 기업

- IT 및 IT 관련 산업, BPO(Business Process Overseas) 산업
- 농산물 수거 센터
- 병원
- 수출 지원 관련 서비스 (의류업 관련한 간접 수출품)
 - 의류 Washing & Finishing
 - 자수업
 - 섬유 염색 및 완성 처리
 - 섬유 인쇄
 - 원단 검사
 - 의류 봉제업을 위한 컴퓨터 디자인 및 관련 지원 사업
 - 의류 진공 포장

마. 의류 봉제 제조업의 인센티브

- 새로 창업한 기업 : 콜롬보, 감파 지구 외부 지역에 한함.
- 경영 부실의 기존 사업체 인수를 통해 창업한 기업

35. 타당성조사

스리랑카에 투자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스리랑카 투자청(BOI)이 투자제한분야인지, 투자 인센티브 세부조건, 투자이행조건, 사후 모니터링 사항 등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BOI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특혜세율(Preference tax rates)
- 투자계약에 대한 헌법상 투자보장
- 외환통제로부터 면제
- 투자이익의 100% 과실송금
- 여러분야에서 100% 외국인 소유권 허용
- 수출업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포함된다
- 여러 세금면제
- 원재료수입시 관세면제
- 관세 및 세금우대
- 수출상사에 대한 세금우대(Tax Holidays)

이밖에 스리랑카-인도 자유무역협정(FTA), 스리랑카-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발효에 따라 이들 시장진입을 위한 여러 가지 기회가 만들어 지고 있다.

투자 타당성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입수처(정부기관, 단체)는 다음과 같다

- BOI
 - Director of Promotions
 - 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
 - 26th Floor, West Tower
 - World Trade Center, Colombo, Sri Lanka
 - Tel: 94-11-243 4403-5, 243 5427, 244 7431
 - Fax: 94-11-242 2407
 - e-mail: infoboi@boi.lk, Web :www.boi.lk
- Ceylon Chamber of Commerce
 - 스리랑카 최대 상공회의소로 무역투자자문 서비스, 정보제공
 - Foreign Trade/Information Division
 - Ceylon Chamber of Commerce
 - 50, Nawam Mawatha Colombo 2
 - Tel: 94-11-242 1745,232 9143, 238 0153
 - Fax: 94-11-244 9352, 243 7477, 238 1012
 - e-mail: infoboi@chamber.lk, Web :www.chamber.lk
- Industrial Technology Institute
 - 산업기술분석, 컨설팅 서비스, 계약프로젝트
 - 363,Bauddhaloka Mawatha, Colombo 7
 - Tel: 94-11-269 3807-9, 269 8621-3
 - Fax: 94-11-268 6567
 - e-mail: info@iti.lk, Web :www.iti.lk
- Sri Lanka Export Development Board
 - 42,Nawam Mawatha, Colombo 2
 - Tel: 94-11-230 0705-11
 - Fax: 94-11-230 0715
 - e-mail: edb@tradenetsl.lk, Web :www.tradenet.lk

< 성공적인 투자진출을 위한 TIP >

1)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준비는 필수

투자 전에 스리랑카를 직접 방문해서 투자 타당성 조사하는 것은 기본이며, 투자 지역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2) 투자타당성 검토과정에서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라.

스리랑카는 규제가 많고 법률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격 있는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투자타당성 검토과정이라 하더라도, 현지 법이나 제도와 관련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변호사 자문비용을 아끼려고 전문간의 도움을 받지 않다가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뒤,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3) 투자청의 제조수출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숙지

스리랑카 정부는 제조수출업체가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 및 부품, 기계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를 감면,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생산량의 일정비율은 내수공급을 허용하기 때문에 동 제도의 수혜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혜 대상이 되는 경우 제출서류나 의무이행사항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4) 현지인 중간관리자가 중요하다.

한국인 경영진과 일선 근로자들의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현지인 중간관리자를 어떤 사람으로 임명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급여를 많이 주더라도 능력 있는 현지인 중간 관리자를 채용해서 경영진의 의도가 일선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한국문화 강요는 금물. 현지문화와 조화를 이뤄야

투자기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한국과는 매우 다른 스리랑카의 문화를 배우고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공장근로자들에게 한국식 근로 문화를 강요하다가 노동소송 제기와 높은 이직률로 회사 운영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

6) 예측 불가능한 문제발생과 시간지연에 대비하라.

스리랑카에서는 기업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7) 정치색이 짙은 신설제도를 이용한 진출에는 조심할 것

스리랑카의 정치와 노조는 스리랑카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않은 분야의 하나이다. 정권 창출을 위해 급하게 만들어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과 낙후지역 및 노조불만 완화를 위해 급조하여 추진하는 투자정책과 인센티브는 부작용이 점차 확대되기 때문에 중도변경되거나 용도 폐기될 수 있다.

8) 현지인의 고위층 인맥과시를 과신하지 말라.

스리랑카는 국가규모에 비해 정부부처수가 과도하게 많아 장관도 수십명이다. 현지인들은 수상, 장관 등 고위층과 면담 등을 주선하여 고위층과 밀착을 과시하고, 이들이 밀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스리랑카는 국회의원 중에서 장관을 맡으며, 정치인인 이들은 후원자나 선거구민의 민원성 요청을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장관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세부 정책입안과 시행규칙은 이 분야에 오래 근무하여 사안에 정통하고, 내부승진으로 비정무직 최고층에 오른 차관이나 국장급에서 거의 결정되고 있다. 스리랑카는 영국 등 오랜 서구 식민지 경험으로 사법제도에 영국법과 스리랑카 관습법이 접목되어 있어 상당히 복잡하다.

특히 아파트 등 현지건설사업에 진출할 경우, 토지소유관계 법적 확인이 복잡하여 외국인인 이를 체크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문제가 없다는 현지인 말만 믿고 실제로는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투자를 시작하여 실패하거나 실소유자에게 다시 토지를 비싼 값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9) 현지인과 합작시 지분 매각 및 경영권 분규 발생 가능성에 사전 대처하라.

합작 투자 시 정관상 주식이전 결의를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통례이다. 막상 지분을 팔고 나오려고 할 경우, 이 조항에 걸려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작 시는 이사회 결의 없이 주식이전이 허용되도록 특별조항을 두도록 유의한다. 또한, 합작초기에는 외국 투자자의 자본 기술 경험 등을 전수받기 위해 매우 협조적으로 나오다가 혼자서도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합작선이 태도를 바꿔 회사전체를 장악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경영권 분규가 발생하고, 이럴 경우 대부분 현지인이 이기게 되어 있다.

10) 경영권 분규, 세무, 노무소송 등으로 현지변호사를 사건 수임할 때 조심하라.

현지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기 전과 후의 태도가 많이 다르며, 외국인들은 보다 부유하고 어차피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수가를 더 많이 요구하고, 사건을 되도록 지연시켜 변호비를 더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상대방 변호사도 이에 대해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수임 전에 변호사 선정을 신중하게 하고, 변호사들이 꺼리지만 수가에 대해 사전 명시해 놓은 것이 바람직하다.

36. 투자 진출형태 및 진출절차

가. 투자진출형태

□ B0I 투자허가 방식 및 관련 업무

스리랑카의 경우 지사 개설 시에도 B0I승인절차를 통해 개설이 가능하며, 일반 투자 절차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B0I법이 제공하는 두 가지 투자승인 유형인 B0I법 16조와 B0I법 17조에 의거한 투자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 투자자는 최소한 미화250,000불(현지 거주비자 발급요건: 2006년부터 최소자본금 한도를 기존의 미화 5만 불에서 대폭 인상)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며 이것은 지사 폐쇄시점까지는 인출이나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스리랑카가 투자유치에 매우 적극적이어서 자격요건이나 의무조항의 미 충족 시에도 여러 가지 유예조치를 통하여 투자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주는 경우가 많다. 가령 지사설립 시 예치금은 타 용도로 사용 또는 인출이 불가능하지만 은행 구좌에서 인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으며 투자 청에서도 예치여부를 검사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 관련 사이트(스리랑카 투자청 B01): www.boi.lk/investorSite/

B01법 17조에 의거한 신규 회사설립이나 B01회사가 아닌 기존 회사를 B01법 17조항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허가신청자는 투자승인과 장소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B01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비는 해외에서 신청할 경우 미화 150불에 VAT를 합산한 금액으로 이에 해당하는 은행수표나 지불명령서를 제출해야 하며 스리랑카에서 신청할 경우 미화150불에 VAT를 합산한 금액의 은행수표나 지불명령서, 또는 이에 상응 하는 스리랑카 루피화 현금도 가능하다. 제출 증빙서류는 비즈니스배경 관련 정보로 회사 프로필, 현행 연차보고서, 은행신용증명서(Bank Reference)등이다.

B01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업체는 회사등기부와 함께 아래 서류를 B01에 제출해야 한다.

- Memorandum and Article of Association
- Name of Company Secretary
- Location of Registered Office
- Particulars of Directors
- List of machinery and equipment required for the project

B01은 기본적으로 아래 3가지 방식으로 외국자본투자를 허가하고 있다.

1) Section 17 of the Act

이 규정은 B01로 하여금 정부의 경제 발전 정책에 부합된 분야 및 특별히 고시된 조건들을 이행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허가는 물론 특혜를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권한에 의거 B01은 국세청, 세관, 외환법 및 수입 규제의 면제 등을 허가 한다. 최소투자액 (투자하한선)을 업종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2) Section 16 of the Act

이 규정은 외국인 투자희망 분야가 비록 정부의 경제발전 정책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외국인 투자가능 분야로 선정된 종목에 한하여, 일반법(normal laws)적용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투자를 허가하는 권한을 부여 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 투자는 국세청, 세관, 외환법 및 수입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최소 투자액을 5 만 불에서 2006년부터 25 만 불로 대폭 상향조정하였다.

3) 300 Enterprises Program

이 프로그램은 현 정부 정책 골격인 "Mahinda Chinthana Programme 에 의한 것으로 이 표제의 의미는 "마힌다(현 대통령 이름)의 희망(hope) 혹은 꿈(Dream)" 라는 뜻이다. 수도권 (Colombo+Gampaha Districts)로 집중되어 있는 산업 발달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지역 균형 발전

과 고용증진을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Section 17의 형태를 따르되, 정치성을 많이 띤 정책인 만큼 기존의 Section 17 특혜보다 더 많은 특혜를 부여하고 B01 수수료 또한 저렴하다.

B01의 주된 외국인투자 허가 및 관리 업무는

- 투자 절차 및 투자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 및 지침서를 제공하며 관계기관. 관청으로부터 필요한 인. 허가 취득을 도와 준다
- 투자신청서 검토, 타당한 특혜 적용, 투자를 허가 한다
- 부지의 선정 및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며, 건물 규정에 관한 조언, 용수공급, 전력공급, 하수처리, 전화 등 기본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이민국(Immigration Authorities)에 거주비자를 추천해 준다
- 고정자산 항목품 및 원자재의 수입 및 완성품 수출의 원활한 절차를 허용 한다
- 자연 환경에 관한 조언 및 관련 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제공 한다
- 원활한 고용주/고용인 관계 유지를 위해 조언과 협조를 제공한다

□ B01 부서별 주요 업무

1) Promotion Dept. (투자 촉진부)

B01의 투자촉진부(Promotion Department)를 접촉하면, 나라별 담당관이 투자분야와 우대 조치에 대해 설명을 해주며 또한 담당관은 투자자가 투자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며 B01 내의 타 부문에 조회를 대행하기도 한다. 투자 신청서는 투자촉진부에서 입수 가능하며 B01 웹사이트(www.boi.lk)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 Investment-Appraisal Dept. (투자 심사부)

심사부의 담당자가 각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향후의 제반 투자절차에 대한 도움을 주며 담당자는 관계관청으로부터 필요한 인허가도 취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심사부는 ①투자신청을 승인하고 B01의 우대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②통상법의 우대조치 적용에 관해 조언을 하며, ③관계부처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또한 타 정부기관의 소관으로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B01가 투자자를 대신 해서 투자와 관련된 승인(approval) 절차 업무를 행하고 있다.

심사부는 영업 중 발생하는 자본, 투자의 증액, 주식의 발행 및 명의 이전 등 B01의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제반 사항을 심사. 허가 하고 있다.

3) Technical Service Dept. (기술서비스부)

□ 입지 승인 (Site Approval)

B01의 기술서비스부(The Technical Service Department)은 사업체의 입지를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승인신청서는 투자촉진부에서 입수할 수 있다. 인프라 관계와 환경 기준에

관한 문제는 기술서비스국의 엔지니어링 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입지승인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권고, 입지 허가증(Site Approval)을 발행 한다. 투자자는 입지의 승인을 득하면 토지의 매매계약 혹은 임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환경보호 라이선스

B01 의 환경부는 필요에 따라 국가환경법에 기초하여 환경보호 라이선스(EPL)를 발행하며 이러한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는 산업은 조업 개시 전에 동 라이선스를 득 해야 한다. 검사와 환경보호 라이선스 발행에는 수수료가 붙으며 환경기준에 관한 가이드는 다른 정보와 같이 투자 신청 전에 입수할 수 있다.

□ 건물 도면의 승인 (Building Plan Approval)

스리랑카에서 건축되는 공장은 공장조례에 따라야 하며 특히 노동자의 건강, 위생, 복리, 안전에 관한 기준은 엄격히 준수하도록 되어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B01 의 공장건설 가이드라인은 투자촉진부에서 입수할 수 있으며 건설을 인가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부이므로 필요에 따라 이들 부서를 접촉,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건설인가를 취득하려면 건축사, 기술사의 증명을 받아 공장의 건축, 배치, 서비스 계획의 설계도를 제출해야 한다. B01 법 제 17 조항에서 승인을 받은 기업은 공장설비의 건설을 위한 건축자재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엔지니어링 부의 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이를 발급 받아야 한다.

□ 자본재, 원료의 수입

각 기업은 운영에 필요하여 면세 혜택으로 구입하여야 할 공장 건축 자재, 기계, 설비 등 자본재, 그리고 부품, 원료 상세한 리스트를 심사 부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부는 엔지니어링 부에 자문. 허가를 득한 후 동 면세품 리스트를 허가 한다.

4) Legal Dept. (법무담당실)

Legal Dept. 에서는 심사부의 Letter of Approval, 기술서비스국의 Site Approval, 면세품 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투자자와 협정서(Agreement)를 체결 하며 기업의 정관 (M&A)을 사전 확인하여 준다.

그 외, B01 는 분야별로 Project Implementation Dept, Monitoring Dept. 등 이 있다.

나. 투자방식

외국기업은 스리랑카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업형태를 채택하여 사업할 수 있다. 즉, 회사 설립, 지점·지사(Branch Office)설립, 주재원 사무소(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설립, 오프쇼어 회사설립이다.

현지 회사의 종류는 지분에 의한 유한 회사(a company limited by shares), Guarantee에 의한 유한회사(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무한 회사(Unlimited Company)로 구분 된다.

스리랑카 회사 형태는 다음과 같다.

- Private Company: 개인회사로서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며, 주식을 공매할 수 없으며, 멤버의 수가 최소 2 인이며 50 인을 넘지 못한다.
- Public Company: 구성원수가 최소 7 인으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다.
- Peoples' s Company: 구성원수가 50 인 이상이어야 하고, 주식은 장당 Rs 10 로 개인만 주식 보유가 가능하며 회사는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 Overseas Company: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지점 (Branch Office)
- 기타 Banking Company, Unit Trust, Cooperative Societies 가 있다.

□ 연락 사무소 (Liaison Office)

연락사무소 형태의 투자 진출은 마케팅 정보수집, 비즈니스 프로모션활동 계획 및 조정, 기술 지원 및 품질관리, 원자재 및 제조상품 소싱 등으로 영업 영역이 국한되어 있으며, 스리랑카 내에서 수·출입, 상업적 거래, 혹은 어떠한 형태의 투자(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투자 진출을 허락한다. 단순 연락/보조 사무소 역할만 가능하다.

연락사무소 형태의 투자진출은 매출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법인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등록 기관: Department of Registrar of Companies (법인 등기소)
- 적용 법률: Section3(2) of Companies (Special Provisions) Law No. 19 of 1974
-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 모회사의 정관 (Memorandum & Articles of Association)
 - 모회사의 회사 설립 허가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위임장: 연락사무소를 책임질 자에게 회사를 대표할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
 - 서면 약속서: 스리랑카 내에서 수·출입, 상업적 거래, 혹은 어떠한 형태의 투자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 위의 서류들이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되어 있으면, 영어 번역이 필수이며 이 서류들은 한국 내에서 원본대조확인(certified as true copies)공증을 받은 후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의 인증을 득해야 한다.
 - Form 56 (모회사와 스리랑카 연락사무소 소재지의 주소 신고서)
 - Form 57 (모회사의 이사 명단 보고서)
 - Form 58 (스리랑카 내 연락사무소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지 신고서)
 - 등록비: Rs. 13,575+ VAT 15%
 - 소요기간: 구비서류 및 기타 요건(스리랑카 정부가 인정하는 영업 형태와 부합된다는 판단)들이 모두 충족 되면, 근무일 기준 7-10 일 이내에 라이선스가 발급 된다.
- 거주비자 추천: 1 인 (1 가족)에 한하여 상무부(Dept. of Commerce)로부터 거주비자 (Residence Visa) 추천을 받을 수 있다.

□ 지점 (Branch Office) 형태 및 설립 절차

지점 형태의 진출은 외국 업체로서 스리랑카에 사업진출 혹은 무역 (영업 활동)을 목적으로 외국의 회사가 스리랑카에 지사를 설립 하고자 하는 경우, 스리랑카는 건 별로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의 사전 동의를 받아 상무부 (Ministry of Trade & Commerce)가 법인 설립 승인을 함으로 지사법인을 설립 할 수 있다. 지점 형태의 투자 진출은 영업활동이 허용 되며, 법인세 납부 대상 이다.

- 지사 승인기관: Ministry of Trade and Commerce(재무부의 사전 동의를 거쳐)
- 등록기관 기관: Dept. of Registrar of Companies (법인등기소)
- 적용 법률: 회사법 17 조(the Company Act No. 17 of 1982), 파트 XIII

-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 모회사의 정관 (Memorandum & Articles of Association)
 - 모회사의 회사 설립 허가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모회사의 과거 2-3 년간 회계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스리랑카 업체와 맺은 상업 거래(무역) 계약서
 - 위임장: 스리랑카 지점을 책임자(들)에게 회사를 대표할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

 - 모회사 회장/사장의 서면 약속서와 이사회 결의서(스리랑카 내 은행 내 특별구좌에 100,000 불 이상의 금액을 모회사 명의의 구좌로 예치하겠다는 내용)과 은행확인증 첨부
 - 특별구좌로 예치된 (100,000 불) 금액은 외환관리국의 통제를 받지만 스리랑카 내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인출은 허용됨

 - 선언서: 지사 법인의 영업 활동이 스리랑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스리랑카의 법률, 회계, Secretarial Service 을 따르겠다는 서약, 최소의 10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서약의 내용
 - 위의 서류들이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되어 있으면, 영어 번역이 필수이며 이 서류들은 한국 내에서 원본대조확인(certified as true copies)공증을 받은 후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의 인증을 득해야 한다.

 - Form 56 (모회사와 스리랑카 지점 소재지의 주소 신고서), Form 57 (모회사의 이사 명단 보고서), Form 58 (스리랑카 지점 책임자(1 인 혹은 다수)의 이름과 주소지 신고서)
 - 등록비: Rs. 13,575 + VAT 15%
 - 소요기간: 구비서류 및 기타 요건 (스리랑카 정부가 인정하는 영업 형태와 부합 된다는 판단) 들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하며, 보통 2-3 개월 소요
 - 거주비자 추천: 허가된 지사 직원들은 상무부 (Dept. of Commerce)로부터 거주비자 (Residence Visa) 추천을 받을 수 있다.

- 과세와 이익금 반출
 -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은 내국세법(Inland Revenue Act) 67 조에 의거, 비 거주 기업으로 간주되어 스리랑카에서 발생하고 파생된 소득에 한정함

- 세법상 허용되는 경비는 내국세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익 창출 과정에서 발생 한 모든 경비를 인정하지만, 접대비, 여행, 자본성 경비는 제한을 두고 있음
- 이익금, 기타 수수료 반출은 스리랑카중앙은행이 정한 특정 조건과 부합하면 허용됨
- 사업 목적상 스리랑카 내에 고정 자산이 필요할 경우 투자 허용(Section 58 of the Finance Act No.11 of 1963)
- 지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고용인들은 스리랑카 근무 시작 후 3 년간은 25%의 낮은 소득세를 적용을 받으며, 이 기간 중 스리랑카 밖에서 발생소득은 비과세대상임
- 글로벌 소득에 대한 과세는 상기 3 년 만료 후부터 과세 대상이 되며,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국의 국민(한국포함)은 원천소득 발생국에서 1 차 과세권한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제로 6 개월 기간 주재하면 납세 의무가 발생함

□ 회사 (Company)형태 및 설립 절차

1982년 법률 제 17호, 회사법 조건에 따라 스리랑카 국내에 회사(주식 공개회사, 주식 비공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주식비공개회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주식 양도권한에 제한이 있음
- 주주수를 50 명으로 제한
-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금지됨

주식공개회사는 최저 7명의 주주가 필요하다. 콜롬보 증권거래소에 상장 가능한 것은 주식공개회사에 한한다. 일반투자자는 주식공개회사의 재무제표를 입수할 수가 있다. 관계 재무제표를 회사등록기관에 제출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외국기업이 B01법 제 17조에 기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회사를 스리랑카에 설립하는 의도가 있는 경우, 정식 신청서를 B01에 제출한다. 신청 후 회사 설립각서 초안 및 정관을 B01에 제출한다. 회사의 멤버(주주)는 원칙적으로 스리랑카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주주가 외국인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B01 의 Project Approval Letter 가 필히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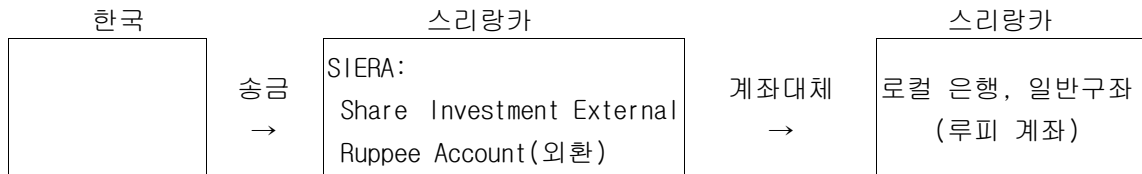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B01는 승인을 한다. B01승인서와 함께 회사설립 신청서를 회사등록기관에 제출한다.

외국기업이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의도가 있는 경우 회사설립 신청서를 회사등록기관에 직접 제출한다. 그러나, 외국자본참가 사업분야 및 출자비율 제한이 있는 경우, B01법 제 16조에 기초하여 B01에 대해서도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B01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자회사의 자본금은 스리랑카 상업은행에 개설된 「주식투자대외 루피계정」(SIERA: Share Investment External Rupee Account)를 통해, 스리랑카에 송금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외국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할 때, B01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투자액 산정은 은행의 SIERA 입금액 기준으로 평가한다.

< 투자방식 >



① B01 법 제 17 조에 의해 승인을 받는 자회사

- 수수료: US \$ 150
- 협정비용: US \$ 1,500
- 연간비용: US \$ 2,000(인프라프로젝트의 경우, 동 프로젝트가 실시될 때 까지 기간, 연간비용 US \$ 5,000)

② B01 법 제 16 조 장에 의해 승인을 받는 자회사

- 협정비용: US \$ 175
- 회사설립 각서, 정관 심사비용: US \$ 50
- 상기 비용에 대해서도 15% 부가가치세가 별도 부과됨

회사설립 시에 준수되어야 할 업무처리 순서는 적절한 회사명을 선택, 회사등록 기관 (Registrar of Companies)에서 회사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사명의 등록 예약을 회사등록기관에 신청 및 회사설립 각서, 정관 초안 작성, 제출이 따른다.

○ 회사설립 각서 정관은 특히 아래 규정을 따름

- 주주 성명, 주소, 직업
- 이사의 이름 및 직위, 직업, 주소
- 회사 등기상 사무소 소재지로 의도한 주소

○ 양식 5: 회사등록 신청에 대해 회사법(1982년 법률 제 17호) 요건 준수 선언서

○ 양식 36 및 36A: 회사등기상 사무소로 의도한 거소에 관한 공술서

○ 양식 46: 회사 이사직 수행에 관한 동의서

○ 양식 47: 이사, 비서, 복수 비서, 공동비서로 취임에 대한 동의한 자의 일람표

○ 양식 48: 이사 및 비서(company secretary) 확인서

회사등록까지 대략 2-3주가 소요되며, 회사 등록비는 대략 Rs .16,000 정도이다.

회사등록기관은 회사 설립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설립증명서를 발행한다.

○ 등록기관(회사등기소): Registrar of Companies, Department of Registrar of Companies

○ 주소 및 연락처:

- Samagam Madura, No.400 D. R Wijewardana Mawatha Colombo 10, Sri Lanka/Tel: 94-11-2689208-9, Fax 94-11-2689211, Website: www.drc.gov.lk

□ 과세와 이익금 반출

-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은 내국세법(Inland Revenue Act)67 조에 의거, 비 거주기업으로 간주되어 스리랑카에서 발생하고 파생된 소득에 한정함
- 세법상 허용되는 경비는 내국세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익 창출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경비를 인정하지만, 접대비, 여행, 자본성 경비는 제한을 두고 있음
- 이익금, 기타 수수료 반출은 스리랑카중앙은행이 정한 특정 조건과 부합하면 허용됨
- 사업 목적상 스리랑카 내에 고정 자산이 필요할 경우 투자 허용 (Section 58 of the Finance Act No.11 of 1963)
- 지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고용인들은 스리랑카 근무 시작 후 3 년간은 25%의 낮은 소득 세율 적용을 받으며, 이 기간 중 스리랑카 밖에서 발생소득은 비과세 대상 임. 글로벌 소득에 대한 과세는 상기 3년 만료 후부터 과세 대상이 되며,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국의 국민(한국포함)은 원천소득 발생국에서 1차 과세권한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제로 6개월 기간 주재하면 납세 의무가 발생함

□ 기타 참고사항

- 회사명 승인 (Name Approval)
 -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명이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혹은 유사한 이름이 존재하는가 여부 확인
 - "President, Municipal, Incorporated, Co-operative, Society, National, State, Sri Lanka" 라는 단어가 들어간 회사명은 선택할 수 없음
 - 회사명의 끝 단어는 회사의 형태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택해야 함.
Private Company - (Private) Limited, Public Company - Limited Guarantee Company, (Guarantee) Limited People' s Company - (People' s) Limited
 - 신청 회사명이 요건에 부합 되면 신청 후 2-3 일 이내에 확인하여 줌
 - 회사명 확인증은 3 개월간 유효하며 3 개월 내에 회사를 설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롭게 이름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함
 - 회사 설립 후 회사명을 변경코자 할 때, 서면 신청으로 ROC 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승인을 득한 후 임시주주총회(Extraordinary General Meeting)의 특별결의 사항으로 회사명 변경안을 통과시켜야 함.

- 정관 확인 (Memorandum & Articles of Association)
 - B01 Legal Dept.는 주로 회사의 영업 활동 영역 혹은 사업의 목적 등을 검토. 승인 하며, ROC 는 B01 Legal Dept. 에서 승인한 정관 초안을 토대로 회사의 운영 및 법인 등기소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부합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초안에 문제가 없는 한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확인하여 준다
- 증서 발급: 설립이 완료되면 ROC 는 다음의 증서를 투자자에게 발급한다.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회사 설립 증서)
 - Form 36 (소재지 확인서), Form 48 (이사진 및 company secretary 확인서)
 - 확인된 정관

□ Off Shore 회사

외국기업이 스리랑카 국외에서 사업활동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 오프쇼어 회사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스리랑카 국내에서 외국고객을 위해 수행하는 부가가치생산업무는 스리랑카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한 국외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인식된다.

오프쇼어 회사등록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외국기업의 회사설립 각서, 정관 인증등본
- 외국기업 회사 설립 허가서 인증등본
- 외국기업 이사 일람표. 이 일람표에는 이사의 성명, 주소, 직업, 이 기업의 담당 임무 등을 기재
- 외국기업의 스리랑카 국내의 대리인 성명·주소. 관계 대리인은 스리랑카 거주자이며 스리랑카 국민이어야 함. 다만, 관계대리인은 스리랑카에서 외국기업을 대리, 대표하는 권한을 부여 받는 위임장을 소지해야 함
- 다음내용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사무변호사의 서신문서
 - 외국기업을 스리랑카에 있는 오프쇼어 회사로 등록하는 것이 외국기업 설립에서 외국기업에 의해 제기된 재판, 기타 법적 절차, 또한 외국기업에 대해 제기된 재판, 기타 법적 절차에도 일체의 악영향을 미치지 않음
 - 외국기업의 폐쇄가 개시되지 않음
 - 외국기업이 스리랑카에서 오프쇼어 사업을 종사하는 것이 외국기업의 회사 설립국에서 법적인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

스리랑카 사무소 경비 와 오프쇼어 회사 비용을 유지하기 위해 초기 금액으로 52,375불을 스리랑카 은행에 입금하여야 한다. 오프쇼어 회사등록은 매년, 등록비를 지불 갱신해야 하며 오프쇼어 해운회사의 등록 갱신요금은 405불이며 기타 오프쇼어 등록 갱신요금은 25,340불이다. 회사등록기관은 오프쇼어 회사 등록증명서를 발행한다.

4) B0I (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 투자승인 절차

□ Section 17과 300 Enterprises Program

- B0I 고유의 Section 17 투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Director(Investment)로 제출한다. 이 신청서 양식은 2 Parts 로 ①투자허가 (Investment Approval), ②부지 허가 (Site Approval)로 구성되어 있다. 투자허가 (Investment Approval) 신청서는 주로 투자자의 신용 및 해당분야의 경력, 투자액, Marketing 계획, 고용 계획 등을 묻고 있다. 신청서 제출 시 Feasibility Report, 투자자의 주 거래은행으로부터 발행된 신용 및 예치액 확인서, 정관 초안(Draft of Memorandum & Articles of Association)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Site Approval 신청서는 부지의 주소 및 도면이 첨부 되어야 한다.
 - 수수료: US\$150.-- + 15% (VAT) (루피도 가능함)
 - 납부방식: 은행환어음, 수표, 신용카드, 현금
- B0I-Appraisal Dept. (심사부)가 Investment Approval 을 검토하는 동안에 투자자는 B0I-Engineering Dept. 를 통하여 Site Approval 을 득하여야 한다.
- B0I-Appraisal Dept.(심사부)의 Investment 검토가 완료되고, 부지의 적합성 여부가 확인되면 B0I 는 특혜 조건이 명시된 투자 허가서 (Project Approval Letter)를 발행한다. (신청일로부터 대략 3-4 주 소요)
- 위의 투자허가서에 근거, 투자자는 Department of the Registrar of Companies of Sri Lanka (ROC)에 회사 법인을 설립 한다.
- 회사 법인 설립 완료 후 투자자는 B0I Legal Dept.에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설립증, Form 65), M&A(정관), Form 36(소재지 확인서), Form 48(이사 및 company secretary 확인서) 를 첨부하여 회사 설립을 통보 한다.
- B0I 의 Legal Dept 는 회사 설립 통보를 받은 후, 투자자와 B0I 간에 체결할 협정 (계약)서 초안(Draft of Agreement)을 투자자에게 전달한다. 이 초안에는 심사부 (Appraisal Dept.)에서 발행한 Project Approval Letter 에 근거한 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 B0I 의 권리 및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협정서 초안의 내용이 Project Approval Letter와 상이한 경우, 투자자는 조정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초안 확인 후 투자자는 초안 확인서 (Confirmation of Draft) 와 회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하여 협정서에 첨부될 "면세로 구입 하여야 할 기계, 설비, 원부자재, 부품, 소모품 등의 상세 명세서"를 B0I-Legal Dept. 에 전달 한다.

- B0I-Legal Dept. 는 투자자의 초안 확인서와 면세품 명세서를 받은 후 협정서 (Agreement) 체결 일시를 투자자에게 통보한다. (대략 2-3 주 후)

협정서 체결시 투자자는 company seal 과 고무인을 가지고 가야 하며 이사 2명과 공증을 설 변호사 혹은 공인된 공증인을 대동 하여야 한다.

- Agreement Processing Fee
 - US\$1,500 + VAT 15% (Section 17), US\$1,000 + VAT 15% (300 EP[Enterprises Program]), US\$500 + VAT 15% (300 EP -농업 .농산물 관련)

- B01 첫해 연 회비
 - US\$2,000- + VAT 15%(Section 17), US\$1,000.+ VAT 15% (300EP-제조업)
 - US\$500 (코코넛섬유 제품), US\$500. + VAT 15% (농업. 농산물 관련)
 - 관광, 호텔, 병원업은 한번만 지불하는 B01 회비 US\$5,000 납부 필요

B01 는 Certificate of Registration(등록 증서)와 공증된 협정서(Agreement)를 발부한다.

□ Section 16

- B01 고유의 Section 16 투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Director(Investment)로 제출한다. 본 신청서는 주로 투자자의 신용 및 해당분야의 경력, 투자액(최저 투자액 25 만불), 마케팅 및 고용 계획 등에 대해 묻고 있다. 신청서 제출 시 Feasibility Report, 투자자의 주 거래은행으로부터 발행된 신용 및 예치액 확인서, 정관 초안 (Draft of Memorandum & Articles of Association), 이사진과 주주들의 협약서 등을 추가로 요구 하고 있다.
 - 수수료: US\$175+ 15% (VAT) (루피도 가능함)
 - 납부방식: 은행환어음, 수표, 신용카드, 현금
- B01-Appraisal(심사부)의 Investment 검토가 완료되고, 투자의 허가여부가 확인되면 B01 는 허가 조건이 명시된 투자 허가서 (Project Approval Letter)를 발행 한다. (신청일로부터 대략 3-4 주 소요)
- 위의 투자허가서에 근거, 투자자는 Department of the Registrar of Companies of Sri Lanka (ROC)에 회사 법인을 설립 한다(절차 및 필요 서식 - 위에 명기).
- 회사 법인설립 완료 후 투자자는 B01 Investment Dept.에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설립증, Form 65), M&A(정관), Form 36(소재지 확인서), Form 48(이사 및 company secretary 확인서) 을 첨부하여 회사 설립을 통보한다.

□ 투자진출절차 도해

투자준비(투자목적 정립, 투자방식 선정, 투자선 물색, 투자지역 선정 등)

투자 예비상담(투자 성사 가능성 타진) - B01 Promotion Dept.

- 신청서 제출 (B01: Investment(Appraisal) Dept.)
- 입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승인 (B01 : Engineering Dept.)

투자 허락서 발급 (Project Approval Letter) - B01 Investment Dept)

회사 설립 (ROC - Dept. of Registrar of Companies)

협정서 (BOI Agreement) 체결 (BOI - Legal Dept.): Section 17 기업에 한함

부지 구입 및 공장 건축

- 세무서 등 관계 부서에 사업자 등록 및 회사명의의 은행 계좌 개설

수출입 및 조업

스리랑카에서 현지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외국인은 주주로 등록할 수 없다.

- Sole Proprietorship
 - 소유자가 자신의 실명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다른 추가나 변경이 없을 경우 자신의 실명을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 이 밖의 다른 모든 경우는 비즈니스 개시 14 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 Provincial Council 의 Registra of Business Name 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Provincial Council 이 발급한 규정된 양식에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등록 신청함
 - 사업체 이름을 변경할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함
- Partnership
 - 파트너쉽을 구성하는 모든 개인은 사업장이 소재지 Provincial Council 의 Registra of Business Name 에 비즈니스이름을 등록해야 함
 - Provincial Council 이 발급한 규정된 양식에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등록 신청함
 - 모든 파트너는 신청서에 서명하여야 함. 파트너의 재정보증서가 있으면 한 파트너가 신청서에 대신 서명할 수 있음
- Company
 - 회사설립 전에 회사등록소(ROC: Registra of Companies)승인을 얻어 회사명을 받아야 함
 - 회사명을 선택할 때 다음의 사전주의 절차가 필요함
 - 기존회사와 유사한 이름을 선택할 수 없음
 - President, Municipal, Incorporated, Co-operative, Society, National, State, Sri Lanka 라는 단어를 선택할 수 없음
 - 회사명 다음의 끝 단어는 다음 중 하나를 택해야 함
 - Private Company - (Private) Limited
 - Public Company - Limited Guarantee Company -(Guarantee) Limited People' s Company -(People' s) Limited

회사이름 승인신청은 ROC(Registra of Companies)에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신청양식을 구입하여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함 - 만약 회사명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신청 후 1-2일 내에 받을 수 있음.

회사이름승인은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만약 3개월 내에 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새롭게 신청을 다시 시작해야 함.

회사 설립 후 회사이름변경이 필요할 경우, 서면신청을 하여 ROC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단승인을 받으면 사내 특별일반회의(Extraordinary general Meeting)에서 특별결의안 형식으로 이름 변경안이 통과되어야 함.

- The Registrar of Companies Department of the Registrar of Companies Samagam
Medura 400 D.R. Wijewardena Mawatha Colombo 10, Sri Lanka
- Tel: 94-11- 268 9208; 268 9209
- Fax. 94-11- 268 9211
- http://www.drc.gov.lk

37. 입지선정

가. 산업단지

스리랑카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 개인이나 기업의 토지 취득을 매우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산업공단을 조성하고 입주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청(B01)이 관리하는 수출가공공단(산업공단)은 총 9개가 있으며 이 가운데 콜롬보에서 비교적 가까운 3대 공단의 입지여건이 뛰어난 편이다.

콜롬보에서 북동쪽으로 29km, 공항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KATUNAYAKE (190헥타) Export Processing Zone을 비롯하여 콜롬보에서 북동쪽 24km인 내륙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BI-YAGAMA(180헥타) EPZ, 콜롬보에서 남쪽으로 13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KOGGALA (80헥타) EPZ등 3대 공단이 있다. 현재 운영중인 수출자유무역지대(EPZ)는 총 9개로,

- Katunayake EPZ,
- Biyagama EPZ,
- Koggala EPZ
- Malwatta EPP
- Mirigama EPZ
- Wathupitiwela EPZ
- Mawathagama EPZ
- Polgahawela EPZ
- Horana EPZ

이다. 한편 산업단지(Industrial Park)는 총 2개로 [Kandy \(Pallakele\) Industrial Park](#)와 [See-thawaka Industrial Park](#) 이다. 스리랑카는 최근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인도, 파키스탄 기업 전용공단 설치를 해당국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공단은 토지가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공단인근이나 향후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요충지를 감안하여, 공단 밖의 토지를 매입, 공장을 건설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현지 투자기업 중 공단밖에 소재하여 현지 토지가격의 급등으로 예상 밖의 토지평가 차익을 거두는 기업도 있다.

Katunayake 및 Biyagama 공단의 경우 안정된 전력공급, 폐수처리, 통신시스템, 포장 도로망, 경비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다. 특히 Katunayake 공단은 1978년에 조성되었으며 아시아에서 모델이 되는 수출 가공공단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Biyagama공단은 1985년에 조성되었다. 그러나 Katunayake 및 Biyagama 공단의 경우 남아있는 부지가 거의 없어 신규입주가 어려운 상황이다. 제 3 공단인 Koggla 수출가공공단은 1991년 조성되었으며 상공업집중지대인 콜롬보로부터 떨어져 남부지역에 마련된 전략적인 거점 지역이며 공항으로부터 16km정도 떨어져 있어 남부지역개발의 핵심으로 개발된 공단이다.

공항 및 콜롬보항까지의 수송비 과다 등으로 영안랑카 외에는 입주한 한국 기업이 없다. 가장 최근인 1999.3월 조성된 Seethagawa 산업공단은 168헥타로 콜롬보로부터 57km정도 떨어져 있는데 A4 하이웨이로 콜롬보와 연결되어 있다. 전력, 용수, 폐수처리 등의 시설이 우수한 편이나 콜롬보 공항 및 항만까지의 거리가 3대 공단에 비해 멀어 수출기업의 경우는 입주 시 운송에 제약요인이 있다.

이외에 콜롬보에서 동쪽으로 133km떨어진 중부 내륙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KANDY INDUSTRIAL PARK(83헥타), 콜롬보에서 북동쪽으로 38km떨어진 MALWATTA Export Processing Park, 콜롬보에서 북동쪽으로 57km 지역에 위치한 MIRIGAMA EPZ등이 있으며 이 밖에 Horana 수출가공공단과 Hiriyala Dedicated Economic Center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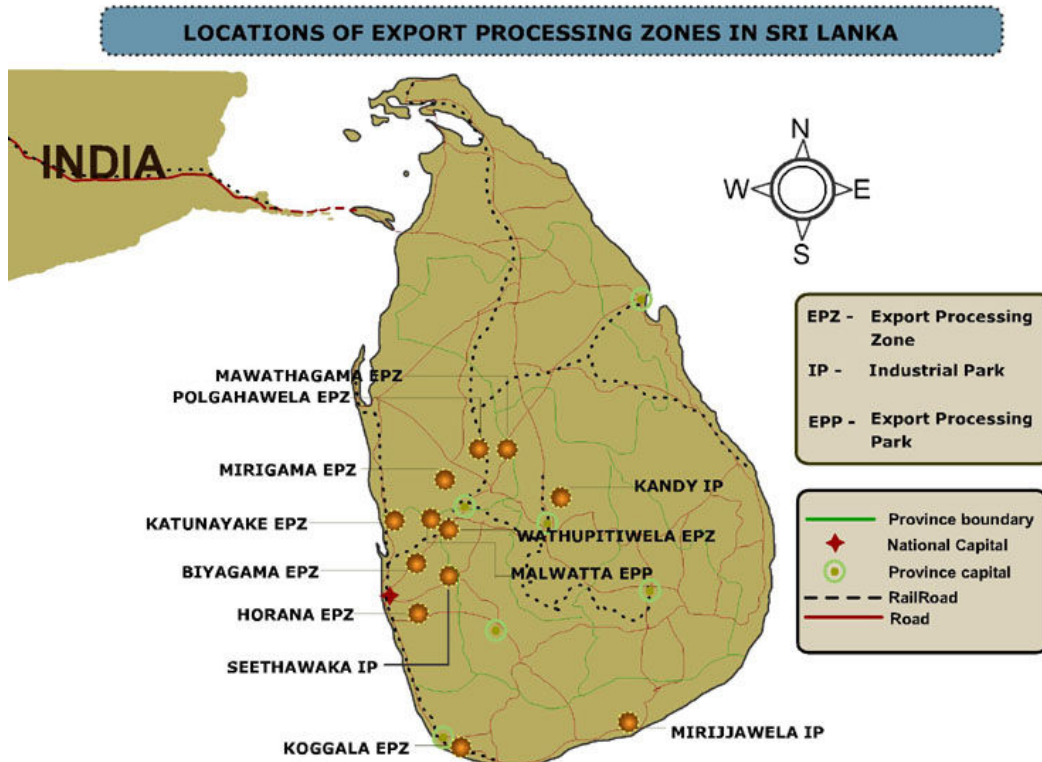
전임 대통령 프레마다사가 1992년에 스리랑카 전역을 수출가공지대로 선포하면서 수출지향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공장위치의 EPZ 내외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센티브도 차등을 두지 않고 있다. 공단 이외 지역에도 자유롭게 토지구입 혹은 임차가 가능하며 B01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국유지는 원칙적으로 30년 임대계약으로 리스되고 있으나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보다 장기 임대계약 승인도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은 인프라 여건이 좋지 않은 원거리의 공단이나 공단 외 지역에 입지를 선정할 경우 유틸리티, 교통, 인력, 특히 숙련공 확보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 공단지역의 경우 관련 당국에서 노조의 난립을 통제하고 있다는 장점도 있다. 현행 노동 관련 법규상 7인 이상이 모이면 노조의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단 외 지역에 입주해 있는 대규모 업체의 경우 노조의 난립, 강성노조의 활동에 의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수출가공 공단(EPZ: Export Process Zone)은 섬유직물, 봉제의류, 세라믹, 가죽 및 고무, 전기전자, 게임 및 보석 등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다. 이 중 전기전자 품목은 마그네틱헤드, 헤드스택어셈블리(HSAs), 비디오 헤드용 로터리 트랜스포머, 안전장비 및 광학 아이소레이터 등이다.

□ 수록공단(2006. 5 자료)

- THE KATUNAYAKE EXPORT PROCESSING ZONE
- THE BIYAGAMA EXPORT PROCESSING ZONE
- THE KOGGALA EXPORTING PROCESSING ZONE
- THE MALWATTA INDUSTRIAL ESTATE
- THE KANDY INDUSTRIAL PARK
- THE RATNAPURA INDUSTRIAL ESTATE
- THE MIHINTHALE ESTATE
- THE BELLATTA INDUSTRIAL ESTATE



1) 공단명: THE KATUNAYAKE EXPORT PROCESSING ZONE

- 소재지: THE KATUNAYAKE EXPORT PROCESSING ZONE, KATUNAYAKE, WESTERN PROVINCE
- 부지면적: 190ha
- 조성주체: B01 에서 직접 관리
- 공단성격: 콜롬보 인근지역 개발 및 수출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직접 조성
- 입주비용:
 - 토지 30년 임대 US\$ 50,000/acre, 연간 토지 임대료: US\$ 3,500/acre
 - 건물: 조립식 공장건축(에어컨 설치) - US\$ 207-256/m², 벽돌 및 모르타르 빌딩 - US\$ 134-158/m²
-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1978년 조성완료, 포화상태로 입주 곤란
- 교통: 항만(콜롬보 항으로부터 29km), 철도(COLOMBO-NEGOMBO 선과 인접),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도로이용이 일반적인 상황이며 철도이용은 거의 없음, 공항(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 인접,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음), 도로(COLOMBO-NEGOMBO 간 왕복 4 차선 포장도로 이용가능)
- 전력: 총공급량 40MVA
- 용수: 총저장량 1.25 백만 gallon
- 통신: 총 2,000 회선 (팩스 등 모든 회선 포함)
- 인력조달: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 비 숙련 노동자 임금수준(통상적 오버타임포함): 월 RS 7,000 - 8,000 (US\$ 1=RS 101)
 - * 공단 내 노동자구하기가 어려워 공단 밖 인근지에서 구하는 경향임

- 입주현황: 총 84 개 업체 입주
- 한국입주 기업명단: GOORYONG LANKA (PVT) LTD
 - * 일본, 미국, 홍콩기업들이 주로 입주
- 입주자격: 외국인 투자기업
- 규제현황: 환경규제
-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입주여건은 좋으나 여유 공장부지가 없어 매각대상 공장의 매입을 통한 이용만이 가능함
- 공단연락처
 - 업체명: 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
 - 주소: THE KATUNAYAKE EXPORT PRECESSING ZONE, KATUNAYAKE, SRI LANKA
 - 전화: 94-11-2453039
 - 팩스: 94-11-253207

2) 공단명: THE BIYAGAMA EXPORT PROCESSING ZONE

- 소재지 : BEPZ, BIYAGAMA, WESTERN PROVINCE, SRI LANKA
- 부지면적: 180ha
- 조성주체: 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
- 공단성격: 인근지역 개발 및 수출촉진을 위해 B0I 가 직접 조성, 관리
- 입주비용
 - 토지(임대): 30년 임대 US\$ 50,000/acre, 연간 토지 임대료: US\$ 3,500/acre
 - 건물: 조립식 빌딩 (에어컨 설치) - US\$ 207-256/m², 벽돌 및 모르타르 빌딩 - US\$ 134-158/m²
-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1985년 조성완료
- 교통: 항만 (콜롬보 항으로부터 24km, 북동부지역에 위치, 왕복 4 차선 도로이용가능, 항구까지 30-45분 소요), 철도(콜롬보-BIYAGAMA 간 왕복 4 차선 포장도로 이용가능하며 철도가 좀 떨어져 위치한 관계로 거의 이용하지 않음. 바로 인접 지역에는 철도가 없음), 공항(콜롬보 공항으로부터 약 3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 도로 사정이 좋아 공항까지 차로 40여분 소요), 도로(COLOMBO-BIYAGAMA 간 왕복 4 차선 포장도로 이용가능)
- 전력: 총 공급량 52MVA
- 용수: 총 저장량 300만 gallon
- 통신: 총 5000 회선
- 인력조달: 별 문제없음
- 비 숙련공 임금수준(통상적 오버타임포함): 월 RS 7,000-8,000 (US\$1 = RS 101)
- 입주현황: 총 56 개 업체 입주
- 한국입주 기업명단: CERAMIC WORLD (PVT) LTD., CDC LANK, JIN JIN LANKA (PVT) LTD., JUNG YOON TEXTILE (PVT) LTD., YOUNG AN LANKA (PVT) LTD. HANSUNG LANKA, DuIon International

-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입주자격에 별다른 제한은 없음
-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내륙지방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 배후도시의 부족으로 인해 인력이 다소 부족한 편이나 수도인 콜롬보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입주 여력이 없음
- 공단연락처
 - 업체명: 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
 - 주소: BEPZ, BIYAGAMA, WESTERN PROVINCE, SRI LANKA
 - 전화: 94-11-2571904
 - 팩스: 94-11-2571575

3) 공단명: THE KOGGALA EXPORTING PROCESSIGN ZONE

- 소재지: THE KOGGALA EXPORT PROCESSING ZONE, KOGGALA, SOUTHERN PROVINCE, SRI LANKA
- 부지면적: 91ha
- 조성주체: 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
- 공단성격: 수출촉진 및 남부지방 고용증대를 위해 B01 조성 및 관리하고 있는 제3의 공단
- 입주비용:
 - 토지: 30년 임대 US\$ 30,000/acre, 연간 토지 임대료: US\$ 3,500/acre
 - 건물: 조립식 건물 (에어컨 설치) - US\$ 207-256/m², 벽돌 및 모르타르 빌딩 - US\$ 134-158/m²
 - 조성현황, 입주 가능시기 : 1991년 조성완료
 - 교통: 항만 (GALLE 항으로부터 16km, GALLE 항 개발 중이어서 현재 콜롬보항 이용 중), 철도 (콜롬보-GALLE 간 철도 인접), 공항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으로부터 약 150km), 도로 (COLOMBO-GALLE 간 왕복 2차선 포장도로)
- 전력: 총 공급량 10MVA
- 용수: 총 저장량 1.35백만 l/일
- 통신: 400회선 (팩스 등 모든 회선 포함)
- 인력조달: 인력이 풍부하며 질 좋은 노동력 확보가능
- 비 숙련공 임금수준(통상적 오버타임포함): 월 RS 6,000-7,000(US\$1 = RS101)
- 입주현황: 21개 업체
- 한국입주 기업명단: 없음
-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별다른 제한 없음
-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GALLE 항구가 개발 중이어서 현재 콜롬보항까지 136km의 육로운송이 불가피하나 인력이 풍부하여 제품의 부피가 작은 제조업 유리
- 공단연락처
 - 업체명: 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
 - 주소: THE KOGGALA EXPORT PROCESSING ZONE, KOGGALA, SOUTHERN PROVINCE, SRI LANKA
 - 전화: 94-9-2253329
 - 팩스: 94-9-2253370

4) 공단명: THE MALWATTA INDUSTRIAL ESTATE

- 소재지: THE MALWATTA INDUSTRIAL ESTATE, MALWATTA, NITTABUWA, WESTERN PROVINCE, SRI LANKA
- 부지면적: 25acre
- 조성주체: 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
- 공단성격: 제조업 육성을 위해 B0I 가 조성중임

- 입주비용:
 - 토지: 30년 임대 US\$ 10,000/acre, 연간 토지 임대료: US\$ 3,500/acre
 - 건물: 조립식 공장건축 (에어컨 설치) - US\$ 207-256/m², 벽돌 및 모르타르 빌딩- US\$ 134-158/m²

- 교통: 항만 (콜롬보 항으로부터 40km), 철도 (인근 철도역에서 7km), 공항 (국제공항에서부터 약 24km), 도로 (왕복 4 차선 도로)
- 전력: 4MVA
- 용수: 지하수 이용가능하며 용수는 충분함
- 인력조달: 별 문제없음
- 임금수준(통상적 오버타임포함): 월 RS 6,000-7,000 (US\$ 1 = RS 101)
-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기존 공단이 포화상태에 이른데다 제조업 육성을 목적으로 B0I 가 조성중인 공단이며 공단입지 및 운송 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한국입주 기업명단: YOUNG AN LANKA (PVT) LTD 2 공장.
 - (전화: 94-33-2295774)

- 공단연락처
 - 업체명: 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
 - 주소: WORLD TRADE CENTRE, ECHELON SQUARE, COLOMBO 1, SRI LANKA
 - 전화: 94-11-2436191
 - 팩스: 94-11-2447995

5) 공단명: THE KANDY INDUSTRIAL PARK

- 소재지: THE KANDY INDUSTRIAL PARK, KANDY, SRI LANKA
- 조성주체: 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
- 공단성격: 중부내륙지방의 고용증대를 위해 B0I 가 설치 운영중인 공단

- 입주비용:
 - 토지(30년 임차조건): US\$ 3,000/acre
 - 건물: 조립식 공장건축 (에어컨 설치) - US\$ 207-256/m², 벽돌 및 모르타르 빌딩 - US\$ 134-158/m²

- 교통: 항만 (콜롬보 항으로부터 133km 동쪽에 위치, KANDY 시로부터 11km 에 위치), 철도(콜롬보-KANDY 철도와 18km 정도 떨어져 위치), 공항(반다라나이케 국제 공항으로부터 약 110km 에 위치), 도로(콜롬보-KANDY 간 128km 의 왕복 2 차선 산업포장도로 이용가능)

- 전력: 총 공급량 12MVA
- 용수: 총 저장량 1.5 백만 gallon/일, 업체별로 일일 100,000gallon 공급가능
- 통신: 총 250 회선 (팩스 등 모든 회선 포함)
- 인력조달: 별 문제없음
- 비숙련공 임금수준(통상적 오버타임포함): 월 RS 6,000-7,000 (US\$ 1 = RS 101)
- 외국기업 입주현황: 총 2 개 업체 입주

-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콜롬보로부터 133km 떨어진 산간 내륙에 위치해 있어 인력이 풍부하고 기후가 좋은 편이나 운송상의 문제가 있어 부피가 적은 전자제품 등의 생산공장 입지로 좋은 편 임

- 공단연락처
 - 업체명: 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
 - 주소: THE KANDY INDUSTRIAL PARK, KANDY, SRI LANKA
 - 전화: 94-8-2274019

6) 공단명: THE RATNAPURA INDUSTRIAL ESTATE

- 소재지: THE RATNAPURA INDUSTRIAL ESTATE, PUSSALA SABARAGAMURA, SRI LANKA
- 부지면적: 10ha
- 조성주체: INDUSTRIAL DEVELOPMENT BOARD
- 공단성격: 제조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 개발청이 조성 관리

- 입주비용:
 - 토지(임차조건: 지역에 따라 차등): US\$ 3,000/acre
 - 건물: 조립식 공장건축(에어컨 설치) - US\$ 207-256/m², 벽돌 및 모르타르 빌딩 - US\$ 134-158/m²

- 교통: 항만(콜롬보 항으로부터 60mile), 철도(콜롬보에서 40km), 공항(반다라나이케 국제 공항으로부터 80mile)

-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 전반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음

- 공단연락처
 - 업체명: INDUSTRIAL DEVELOPMENT BOARD OF CEYLON
 - 주소: 615, GALLE ROAD, KATYBEDDA, MORATUWA, SRI LANKA
 - 전화: 94-11-2632157
 - 팩스: 94-11-2607002

7) 공단명: THE MIHINTHALE ESTATE

- 소재지: THE MIHINTHALE INDUSTRIAL ESTATE, MIHINTHALE CENTRAL, SRI LANKA
- 부지면적: 15ha
- 조성주체: INDUSTRIAL DEVELOPMENT BOARD
- 공단성격: 제조업 육성을 위해 산업개발청이 직접 조성 관리

- 입주비용:
 - 토지 (임차조건: 지역에 따라 차등): US\$ 3,000/acre
 - 건물: 조립식 공장건축 (에어컨 설치) - US\$ 207-256/m², 벽돌 및 모르타르 빌딩 - US\$ 134-158/m²
- 교통: 항만(콜롬보 항으로부터 145mile), 철도(MIHINTHALE 역으로부터 약 1km), 공항(콜롬보소재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 이용해야 함),
-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콜롬보 항으로부터 많이 떨어진 지역으로 운송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기 및 수도 등의 설비가 아직 가설 중이어서 향후 1년 내 입주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공단연락처
 - 업체명: INDUSTRIAL DEVELOPMENT BOARD
 - 주소: 615, GALLE ROAD, KATUBEDDA, MORATUWA, SRI LANKA
 - 전화: 94-11-2632157
 - 팩스: 94-11-2607002

8) 공단명: THE BELLATTA INDUSTRIAL ESTATE

- 소재지: INDUSTRIAL ESTATE-BELLATTA SITINAMALUWA, SOUTHERN PROVINCE, SRI LANKA
- 부지면적: 50ha
- 조성주체: INDUSTRIAL DEVELOPMENT BOARD OF CEYLON
- 공단성격: 제조업 육성을 위해 산업개발청 주관으로 조성 관리
- 입주비용:
 - 토지 (임차조건: 지역에 따라 차등) : US\$ 3,000/acre
 - 건물: 조립식 공장건축 (에어컨 설치) - US\$ 207-256/m², 벽돌 및 모르타르 빌딩 - US\$ 134-158/m²
- 교통: 항만(콜롬보항으로부터 120mile), 공항(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으로부터 140mile), 도로 (도로여건 양호. 공단 입구 약 700m 에 대한 포장 공사 중)
-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신규 조성공단인데다가 항만, 공항 등 주요 시설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한 공단으로서 내국업체가 많이 입주할 것으로 보이며 운송에 그다지 문제가 없는 업종의 진출유망
- 공단연락처
 - 업체명: INDUSTRIAL DEVELOPMENT BOARD
 - 주소: 615, GALLE ROAD, KATUBEDDA, MORATUWA, SRI LANKA
 - 전화: 94-11-2632157
 - 팩스: 94-11-2607002

나. 자유무역지대

대개 수출산업 공단이 보세구역, 수출자유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수출자유지역은 다음과 같다.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등 중점 투자유치 국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 시 이와 별도의 지구를 전용공단으로 지정하겠다고 오퍼하고 있다.

- Katunayake Export Processing Zone
- Biyagama Export Processing Zone
- Koggala Export Processing Zone
- Malwatta Export Processing Zone
- Mawathagama Export Processing Zone
- Wathupitiwela Export Processing Zone
- Mirigama Export Processing Zone
- Polgahawela Export Processing Zone
- Horana Export Processing Zone

- 상세내용은 각 산업 공단 내용 참조:
 - <http://www.boi.lk/NewsPortal/content.asp?content=%20whyinvest7&SubMenuID=7>

38. 공장설립

B01의 공장건설에 있어서의 일반지침(General Guidelines for Factory Buildings)을 참조할 수 있다. 일반지침에 대한 문의사항은 B01 담당 디렉터(eng Approval: 전화 94-11-2346627)를 접촉하면 관련 세부 정보를 자문 받을 수 있다.

(관련 사이트 <http://www.boi.lk/pdf/gfb.pdf>)

또한 환경문제가 점차 민감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폐수나 폐기물, 분진 등이 발생하는 제조업 투자 시에는 스리랑카환경보호법관련 조항과 이에 따른 환경관련 지침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투자기업 중에서도 환경문제로 인근 주민들과 보상문제로 갈등을 겪어 경영상의 애로를 겪거나 공장을 이전 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 사이트 <http://www.boi.lk/pdf/env.pdf>)

가. 주의지침

동 "공장건설에 있어서의 일반지침"은 B01 투자기업의 공장건설 및 여타 부속물의 설계 및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가(Architect) 및 엔지니어들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스리랑카 내에 건설되는 모든 공장들은 공장령(Factories Ordinance)을 준수해야 하며 동 지침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기 공장령을 대체할 수 없다.

즉, 본 지침은 공장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가 및 엔지니어 등이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에 주목적 있다. 또한 지난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관련규정에 대한 인식부족과 홍보노력 부족으로 공장건설과정에서 간과하거나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항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지침은 공장령의 불충분하거나 오래된 규정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조명편(Lighting)"에서는 작업특성에 따른 조명의 강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본 지침에 나타난 요구사항들은 최소한의 것(Minimum Requirements)들로 본 지침에 나타난 사항과 관련, 의문이 있거나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할 경우 투자청 Engineering Service Department로 연락하면 된다.

나. 공장건설에 관한 일반지침

아래의 일반 지침은 공장건물의 계획(Planning), 설계(Designing), 건설(Construction) 분야에 있어서 모든 BOI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공장건설에 있어서 건축가나 엔지니어들은 BOI 허가에 필요한 건설계획서를 최종 마무리하기 전에 위치(Location), 부지조건(Site Condition), 요구되는 서비스, 고용자수, 관련된 과정(Involved Process), 사용될 원재료, 공장폐수(Factory Effluents), 고형 폐기물(Solid Waste to be disposed of)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 부지선정(Selection of Site)

관련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공장건설용 부지선정에 있어 다음의 측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공장건물, 창고(Warehouse), 작업장(Workshop)과 같은 보조건물들이 차지할 지역
- 내부도로(Internal Road), 주차지역(Parking Area), 통행로(Footpath), 적재 및 하역공간>Loading and Unloading Space), 정원(Garden Area)
- Fire Gap 및 화재 시 탈출로 (Fire Escape Route)
- Gas Cylinder, 변압기(Transformers), 물탱크, 지하 물펌프(Underground Water Pumps), Treatment Plant, 배수구 등이 공장부지 내에서 차지하는 공간 규모와 위치 또한 공장이 EPZ 이나 공단 이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수송, 식품조달 및 전력, 용수, 통신, 폐수 방출시설, 폐기물과 배수구 등 인프라 관련시설의 충분여부 등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추가로 건물의 위치와 운영에 영향을 주는 도로점유(Road Reservation), 간선도로(Street lines), 공장건설 및 쓰레기 처리 등에 관한 지방정부(Local Authority)의 관련 법령(Law/Regulations)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라. 공장건축(Building Requirements)

□ 일반

- 공장건물과 시설물 (Factory Buildings and Services)
 - 모든 빌딩 및 시설물은 관습법(Accepted Codes of Practices)에 조화되어야 하고 현재의 공장령의 관련규정을 충족시켜야 함
- 건물의 외형과 품질 (Architectural Appearance and Quality)
 - 공장건물과 여타 구조물은 BOI 에 의해 수용될 수 있을 만큼 미학적으로 만족스럽고 높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건물의 주요부분, 외벽 마무리와 같은 마무리 상태(Type of Finishes), 전기선풍기(Electric Fans), 추출기 (Extractors), 송풍기(Blowers), 문, 창문, 지붕창(Louvers), 조명의 위치 (Lighting Points), 필요 시 에어컨 등이 건설계획(Building Plan)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 바닥 면과 층 높이 (Final Ground and Floor Levels)
 - 공장의 바닥 면과 층 높이는 배수 및 하수 처리가 용이하도록 인접한 도로의 높이, 가장 가까운 맨홀의 위치 등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함

- 바닥공간 (Floor Space)
 - 어떠한 공장도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혼잡은 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용되는 기계 수와 크기, 테이블 및 작업용 의자, 상자나 작업장에 설치 되어야 하는 여타 장비, 통행로, 비상탈출구와 임시저장소 등이 고려되어야 함. 또한 포함되는 면적(The Covered Area)은 전 생산면적, 저장공간, 사무실, 매점(Canteen), 화장실, 수도. 가스 배관시설 공간 (Service Areas), 의무실(first aid Room), 화재 탈출로, 정상공간 (Maintenance Space), 공구실, 작업장, 보일러실, Treatment Plants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노동자 1 인당 작업공간은 최소 400 입방 피트 이상이어야 하며 바닥으로부터 14 피트를 넘는 높이는 상기 1인당 작업공간 계산시 미 포함됨
- 다층건물 (Storeyed Buildings)
 - 다층의 공장건물의 경우 작업장에 이르는 주계단(Main Stairway)외에 화재 시 탈출로로 사용될 수 있는 계단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함. 모든 계단에는 난간(Railings)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난간의 높이는 최소 90cm 이상이어야 함. 기둥(Anchor Post)과 난간의 완결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동 계단은 견고하게 건설되어 최고 난간(Top Rail)의 어느 지점에서든 어느 방향의 하중에서든 최소 9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함
 - 공장옆면 보호(Guarding of Wall Openings, Open-Side Floors, Platform and Catwalks)
 - 옆이 터져 있는 벽과 마루, 플랫폼이나 좁은 통로(Catwalks)는 모두 난간이나 벽으로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복도, 바닥 등 물체의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는 단단한 장벽이나 칸막이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 경계 벽 (Boundary Walls)
 - 부지의 경계선 및 정문을 따라 설치되는 경계 벽은 높이가 최소 6 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정문 건설 시 그 위치에 관해서는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함
- 주위 경관 (Landscaping)
 - 공장내부와 정면의 도로는 경관이 잘 갖추어져야 하며 공장건물이 차지하는 공간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 많은 수의 나무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
- 주차장 및 진입로 (Parking Area and Accesses)
 - 차량을 도로에 주차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한 주차공간과 진입로가 부지 내에 확보되어야 함
- 보안등 (Security Lights)
 - 공장영 내에는 보안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출구(Exit Doors)
 - 각 층이나 큰방에는 최소 2 개의 출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함
- 전기장치 (Electrical Installations)
 - 모든 전기장치는 스리랑카 전력청(Ceylon Electricity Board)의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함

○ 기타

- 계획수립단계에서 향후 사업규모의 확장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추후 고용인력이 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지 모르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

마. 위생 및 건강관련 사항 (Sanitation & Health Requirements)**1) 환기 및 온도관리 (Ventilation and Thermal Comfort)**

신선한 공기의 순환을 통한 각 작업장의 적절한 환기 유지를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함. 공기중의 불순물을 제거할 필요가 없는 장소에서의 환기는 시간당 최소 3번의 공기 환류가 이루어져야 함. 창문이나 여타 개방시설을 통해 환기를 하는 경우 그 환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기계적 환기(Mechanical Ventilation)나 Positive Ventilation, 또는 이들의 결합을 통한 환기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 또한 건물이 70평방 피트 이상인 경우 천장에 환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바람직한 온도와 습도는 단순한 환기만으로 유지될 수 없고 적절한 공기 조절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적정수의 환풍기에 의해 내, 외부의 공기가 순환되어야 함. 각 작업장의 적절한 온도 유지를 위해 다음의 수단이 사용될 수 있을 것임.

- 격리(Isolation): 용광로(Furnace)와 같은 열을 발생시키는 장비의 경우 소수의 작업자만이 뜨거운 환경에 배치되어야 하고 동 작업지역을 가능한 주변 지역으로부터 보호함은 물론 조절된 공기 가동 작업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차단(Insulation): 지붕과 천장의 격리는 열 차단에 매우 효과적임. 열반사(Heat Reflective)용 페인트를 지붕에 칠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임. 아울러 파이프나 용기의 뜨거운 표면을 분리시켜 열의 흡수 및 방출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임

2) 위생시설

남녀가 분리된 적정 수세식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남녀 종업원이 같이 근무하는 작업장의 각 화장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칸막이가 되어 있어야 함. 남녀를 불문하고 25명당 1개의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100인 이상의 남자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최소 50명당 1개의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화장실은 환기와 조명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 위생시설은 충분한 환기 및 조명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복도나 개방된 지역의 경우 창 및(또는) 환풍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 복도가 좁고 어두우며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는 안 됨

3) 용수공급

- 용수저장: 공장 내 사용은 물론 공정 등에 필요한 용수는 물웅덩(Swamp)나 고가 물탱크를 통해 제공되어야 하는데 동 저수용량은 최소 1 일 이상이어야 함. 물웅덩이는 화재 진압 시 이용 가능토록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하며 관련시설은 정화와 점검 (Cleaning and Inspection)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동 시설이 Fire Gap 위에 위치한 경우 웅덩이의 설계는 Fire Gap 위로 중장비의 통행이 가능토록 해야 함

- 세탁시설 (Washing Facilities): 남녀 종업원에 대해 격리된 세탁시설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최소 20 인당 1 개의 세면대(Wash Basin)가 제공되어야 하고, 수로(Trough)가 있는 경우 그 밑을 타일로 깔아야 하며, 20 인당 최소 2 피트의 수로가 제공되어야 함. 여성 근로자를 위한 세탁시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밀폐되거나 칸막이가 되어 있어야 함. 공장 운영 시 추가 고려 사항은 샤워시설의 제공인데 여성 샤워실은 분리되어 있어야 함

4) 조명

모든 전기시설은 스리랑카 전력청(Ceylon Electricity Board)의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함. 작업에 사용되는 공장 내 모든 공간은 인공 및 자연적인 조명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 작업 공간의 경우 조명도 (Intensity of Illumination)는 바닥으로부터 3피트 높이에서 최소 400 룩스 이상이어야 하며 공장 내 여타공간도 최소 50룩스 이상이어야 함. 다음은 분야별 조명도 최소 요구수준임

- 일반 작업장 : 400 룩스
- 재봉(Sewing) : 600 룩스
- 창고(Stores) : 50 룩스
- 조명은 눈부심(Glare)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함

바. 근로자 편의시설 (Facilities to Workers)

1) 식당 (Meal Room)

식당은 적절한 환기가 유지되어야 하며 상용 근로자 수의 30% 이상의 의자와 탁자를 구비하여야 함. 바닥면적은 설비, 기구와 편의시설, 식탁과 의자를 제외하고 최소 1인당 10평방 피트 이상이어야 하며 적절한 배수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야 함

2) 의무실 (First Aid Room)

모든 공장은 작업장의 어느 곳에서도 접근이 용이한 적절한 의무실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 출입문은 출입이 용이하도록 커야 하며 벽과 바닥은 부드럽고 무료세척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야 하며 환기 및 조명이 적절히 제공되어야 함. 또한 싱크대와 세면대와 함께 물이 흐르는 구조를 통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함.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작업장에서는 최소 2개의 침대가 확보됨은 물론 침대간 칸막이가 이루어져 있어야 함

3) 탈의실과 사물함 (Exchanging Rooms and Lockers)

공장 건물 내 작업 시 옷과 사물을 보관하기 위해 적당한 탈의실과 사물함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

4) 휴게실

서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용 휴게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

사. 공해방지 (Pollution Control)

1) 일반

보일러의 가동, 폐기물의 처리, 폐수 등 공장운영 과정상 발생하는 공해물질의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고체 및 액체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생산과 정상의 여러 단계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절차도(Flow Sheet)가 제출되어야 함

2) 폐수(Effluents)

B01 환경국(Environment Department)이 설정한 일반 하수구에 흘려 보낼 수 있는 허용 가능한 최고한도 기준을 준수해야 함. 폐수는 분리저장탱크(Leak proof Storage Tank)에 모아져야 하는데 동 용량은 최소 생산공정 중 발생하는 1일 폐수 량의 반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함

3) 소음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류를 설치한 경우 소음과 진동을 줄이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통해 외부와 차단이 되어야 함

4) 매연방출 (Smoke Emission)

도시공학적 관점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나 용광로를 가진 공장의 경우 공장의 위치 및 위치한 지역의 높이, 굴뚝의 예정높이 및 예정 화석 연료사용량에 관한 사항이 B01에 제출되어야 함

5) 고체폐기물 처리

B01가 수거할 때까지 고체폐기물을 담아 보관할 커다란 통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

6) 먼지, 독성가스, 수증기

먼지, 독성가스, 수증기 제거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

7) 기타

건물 안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곳은 시멘트로 덮고 배수와 유류 방취판 설비가 되어 있어야 함

아. 화재예방

1) 일반사항

공장건물 내, 외부에서의 화재발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2) 화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공간확보 (Fire Gap)

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공장 벽면으로부터 20피트 이내에 건물이나 기타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음

3) 소화기

공장건물 안에는 적정수의 소화기와 다른 화재 진압기구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점에 관해서는 콜롬보 자치위원회의 화재국 소방대장(the Chief Fire Officer of the Fire Department of the Colombo Municipal Council)이나 여타 전문 에이전트에 조언을 구해야 함

4) 화재 시 탈출로 (Fire Escape)

공장건물은 적정수의 화재탈출구와 비상구를 가져야 하며 공장의 모든 문은 안에서 열 수 있어야 함. 폭발성, 가연성의 먼지, 가스 또는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이의 저장과 취급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에 의한 적절한 주의가 있어야 함

5) 폭발물 취급 및 보관

폭발물 및 인화성 먼지, 가스 혹은 수증기 물질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이들의 취급 및 관련 요령을 숙지해야 함

자. 승인절차 (Approval Procedure)

1) 설계도면 승인 (Certified Drawings)

전체적인 설계 및 계획안이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Civil Engineering Drawings Chartered/Civil/Structural Engineer나 Chartered Architect의 서명이 있어야 함. Electrical and Mechanical Drawings 또한 Chartered Electrical Engineer/Chartered Mechanical Engineer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동 계획안 상에 상기 Engineer/Architect의 성명, 주소, 자격조건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 모든 건물은 건축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건물과 여타 편의시설, 기계적, 전기적 장치물에 관한 계획안과 세부표시도가 Engineering Service Department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함

- 배치계획 (Layout Plan) - 사본 5부 제출
 - 생산설비, 창고, 매점, 세탁과 세면을 위한 설비 등에 할당된 지역을 표시하고 있어야 함
- Service Plan - 사본 5부 제출
 - 하수도, 상수도, 배수로, 웅덩이와 고수위 물탱크, 수도꼭지, 소화기, 소화전의 위치와 주차공간, 보일러의 위치 등을 표시하고 있어야 하며 유해 방출물 처리를 위한 시설도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주의: 표면의 배수로(Surface Water Drains)는 하수구 체계와 연결되어 있어서는 안됨
- 구조도면 (Structural Drawings) - 사본 1부 제출
- 전기도면 (Electrical Drawings) - 사본 3부 제출
 - 건물 내 배선계획(Wiring) 및 전기회로(Electrical Circuits), 변압기(Switch Gear)의 위치와 등급, Conduits, Cables 및 Conductor의 크기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
- 기계도면 (Mechanical Drawings) - 사본 3부 제출

- 기계의 위치와 이름, 마력등급, 보일러 및 고압용기의 위치, 안전밸브 등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 기타 도면 - 사본 3부 제출

2) 작업개시 (Commencement of Work)

B01의 Senior Manager (Engineering)의 승인 없이는 부지에서의 작업이 개시 될 수 없으며 최소 3일 이전에 구역관리자(Zone Manager)에게 동 사실이 통보되어야 함. 또한 건물계획 (A Building Programme)이 Senior Manager (Engineering)나 구역관리자에게 제출되어야 함

3) 건축

모든 건물은 B01 Senior Manager(Engineering)의 사전승인 계획안에 따라 건설되어야 함. 상기 승인된 계획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작업을 할 경우 Senior Manager(Engineering)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이를 위해 작업변경을 나타내 계획서(Plans Indicating the Modifications)를 Senior Manager에게 제출해야 함. 공사가 진행중인 기간 동안에는 전기, 전화, 텔레кс, 용수공급 등과 같은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해 B01의 Investor Service Department와 필요한 상담을 할 수 있음. 공사가 끝날 무렵에는 건축 완공예상 시점을 나타내는 검사 요청서가 Senior Manager에게 제출되어야 함

39. 투자관련 정부기관

스리랑카 외국인 투자유치담당 최고 정부기관은 기업개발 투자진흥부(Ministry of Enterprise Development & Investment Promotion)이며 원스톱 투자유치기관은 투자청(B01: 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 //www.boi.lk)으로 기업개발 투자진흥부 산하기관이다. 수출전용공단을 관장하고 있으며 공단 내 통관업무도 겸하고 있다.

B01은 스리랑카 정부가 대 스리랑카 외국자본투자 유치 증대 및 성공적인 투자 정착을 위하여 1978년 개설된 기관으로서 외국자본투자 허가 및 관리를 총괄하는 정부산하기관이다. B01을 통한 외국자본투자는 B01 Law No.4 of 1978과 1980, 1983, 1992에 개정된 법률 및 조례 (ACT)에 근거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청과 투자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투자유치대상 지역별로 담당자가 있으며, 자체 변호사 등 전문가를 고용하여 투자가와 투자 계약을 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스리랑카에 투자를 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우선 B01의 투자촉진부(Promotion Department)를 접촉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동 부의 국 별 담당관이 투자분야와 우대조치에 대해 설명을 해주며 또한 담당관은 투자자가 투자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며 B01내의 타 부문에 동 신청의 조화를 대행하기도 한다.

투자자는 반드시 정식의 투자신청서를 B01에 제출해야 하며 투자신청은 투자승인과 투자 장소의 승인을 요청하는 2개로 되어 있으며 신청서는 투자촉진부에서 입수가능하며 B01 웹사이트(www.boi.lk)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필요사항을 기재한 투자신청서는 심사부(Appraisal Department)에서 심사하며 수수료는 US\$150(부가가치세 15% 별도)인데 은행 드래프트나 체크를 받으며 국내 신청 시에 이에 상당하는 스리랑카 루피화 체크나 현금을 받는다.

이후 심사부의 담당자가 각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향후의 제반 투자절차에 대한 도움을 주며 담당자는 관계관청으로부터 필요한 인허가도 취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B0I 연락처: 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
- Level 26, West Tower, World Trade Center, Colombo 01, Sri Lanka.
- Tel: (+94 11) 2434403-5, 2435027, 2447531, 2386953-4
- Fax: (+94 11) 2447994-5 / (+94 11) 2422407
- Website: www.boi.lk
- E-Mail: info@boi.lk

B0I는 기본적으로 아래 3가지 방식으로 외국자본 투자를 허가하고 있다.

1) Section 17 of the Act

이 규정은 B0I로 하여금 정부의 경제 발전 정책에 부합된 분야 및 특별히 고시된 조건들을 이행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허가는 물론 특혜를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권한에 의거 B0I는 국세청, 세관, 외환법 및 수입 규제의 면제 등을 허가 한다.

2) Section 16 of the Act

이 규정은 외국인 투자 희망 분야가 비록 정부의 경제 발전 정책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외국인 투자 가능 분야로 선정된 종목에 한하여, 일반법 (normal laws) 적용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투자를 허가하는 권한을 부여 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 투자는 국세청, 세관, 외환법 및 수입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3) 300 Enterprises Program

이 프로그램은 현 정부 정책 골격인 “Mahinda Chinthana Programme에 의한 것으로 이 표제의 의미는 “마힌다(현 대통령 이름)의 희망(hope) 혹은 꿈(Dream)” 라는 뜻이다. 도심지 (Colombo+Gampaha Districts)로 집중되어 있는 산업 발달을 지방으로 분산하자는 취지를 띤 본 정책은 기본적으로 B0I, Section 17의 형태를 따르되, 정치성을 많이 띤 정책인 만큼 기존의 Section 17 특혜보다 더 많은 특혜를 부여하고 B0I 수수료 또한 저렴하다.

B0I의 주된 외국자본투자 허가 및 관리 업무는

- 투자 절차 및 투자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 및 지침서를 제공하며 관계 기관, 관청으로부터 필요한 인.허가 취득을 도와 준다
- 투자신청서 검토, 타당한 특혜 적용, 투자를 허가 한다
- 부지의 선정 및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며, 건물 규정에 관한 조언, 용수공급, 전력공급, 하수처리, 전화 등 기본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이민국(Immigration Authorities)에 거주비자를 추천해 준다
- 고정자산 항목품 및 원자재의 수입 및 완성품 수출의 원활한 절차를 허용 한다
- 자연 환경에 관한 조언 및 관련 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제공 한다
- 원활한 고용주/고용인 관계 유지를 위해 조언과 협조를 제공한다

가. B01의 각 부서별 주요 업무

1) Promotion Dept. (투자 촉진부)

B01의 투자 촉진부(Promotion Department)를 접촉하면, 나라별 담당관이 투자분야와 우대 조치에 대해 설명을 해주며 또한 담당관은 투자자가 투자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며 B01내의 타 부문에 조회를 대행하기도 한다. 투자 신청서는 투자 촉진부에서 입수 가능하며 B01 웹사이트(www.boi.lk)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 Investment-Appraisal Dept. (투자 심사부)

심사부의 담당자가 각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향후의 제반 투자절차에 대한 도움을 주며 담당자는 관계관청으로부터 필요한 인허가도 취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심사부는 1) 투자신청을 승인하고 B01의 우대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2) 통상법의 우대조치 적용에 관해 조언을 하며, 3) 관계부처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또한 타 정부기관의 소관으로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B01이 투자자를 대신 해서 투자와 관련된 승인(approval)절차 업무를 행하고 있다.

심사부는 영업 중 발생하는 자본, 투자의 증액, 주식의 발행 및 명의 이전 등 B01의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제반 사항을 심사, 허가 하고 있다.

3) Technical Service Dept. (기술서비스부)

□ 입지 승인 (Site Approval)

B01의 기술서비스부(The Technical Service Department)은 사업체의 입지를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승인신청서는 투자촉진부에서 입수할 수 있다.

인프라 관계와 환경 기준에 관한 문제는 기술서비스국의 엔지니어링 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입지승인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권고, 입지허가증(Site Approval)을 발행한다. 투자자는 입지의 승인을 득하면 토지의 매매계약 혹은 임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환경보호 라이선스

B01의 환경부는 필요에 따라 국가 환경법에 기초하여 환경보호 라이선스(EPL)를 발행하며 이러한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는 산업은 조업 개시 전에 동 라이선스를 득 해야 한다. 검사와 환경보호 라이선스 발행에는 수수료가 붙으며 환경기준에 관한 가이드는 다른 정보와 같이 투자 신청 전에 입수할 수 있다.

□ 건물 도면의 승인 (Building Plan Approval)

스리랑카에서 건축되는 공장은 공장조례에 따라야 하며 특히 노동자의 건강, 위생, 복리, 안전에 관한 기준은 엄격히 준수하도록 되어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B01의 공장건설 가이드

라인은 투자촉진부에서 입수할 수 있으며 건설을 인가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부이므로 필요에 따라 이들 부서를 접촉,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건설인가를 취득하려면 건축사, 기술사의 증명을 받아 공장의 건축, 배치, 서비스 계획의 설계도를 제출해야 한다. B01법 제17조항에서 승인을 받은 기업은 공장설비의 건설을 위한 건축자재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엔지니어링 부의 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이를 발급 받아야 한다.

□ 자본재, 원료의 수입

각 기업은 운영에 필요하여 면세 혜택으로 구입하여야 할 공장 건축 자재, 기계, 설비 등 자본재, 그리고 부품, 원료 상세한 리스트를 심사부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부는 엔지니어링 부에 자문. 허가를 득한 후 동 면세품 리스트를 허가 한다.

4) Legal Dept.

Legal Dept. 에서는 심사부의 Letter of Approval, 기술서비스국의 Site Approval, 면세품 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투자자와 협정서(Agreement)를 체결 하며 기업의 정관(M&A)을 사전 확인하여 준다.

그 외, B01는 분야별로 **Project Implementation Dept, Monitoring Dept.** 등 이 있다.

B01를 통한 등록 외 **연락사무소와 브랜치 오피스**인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함.

- 등록기관(회사등기소)
 - Registrar of Companies, Department of Registrar of Companies
- 주소 및 연락처
 - Samagam Madura, No.400 D. R Wijewardana Mawatha Colombo 10, Sri Lanka
 - Tel: 94-11-2689208~9, Fax 94-11-2689211, Website: www.drc.gov.lk

40.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스리랑카는 시장조사전문기관이 아직은 발달되어 있지 않고 시장이 적어 부문별 산업 별 전문정보 입수가 매우 어렵다. 그나마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전체적인 경제 및 산업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스리랑카 중앙은행(Central Bank of Sri Lanka)이 매년 발행하는 연차 보고서(Annual Report)가 대표적이다.

스리랑카에 세법, 회계 등의 전문컨설팅을 받으려면 미국의 Price Water House Coopers (www.pwc.com), Ernst & Young등이 진출해 있다.

투자관련 전문 복합 서비스 기관은 별로 없으며 투자계약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을 접촉해야 한다. 이들은 외국인이나 스리랑카에 경험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현지인에 비해 훨씬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수수료를 명확하게 상호 확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법률 및 투자자문 >

- Koho Trading & Consultancy (Pvt) Ltd. (한국인 경영 회사)
 - 전화: 94-11-2581866~7, 94-11-2593815
 - 팩스: 94-11-2559589
 - E-mail: hongmo@eol.lk
- A.F.A. Corporate Services(Pvt)Ltd
 - 전화: 94-11-2342807
 - 팩스: 94-11-2335833
 - E-mail: shani1fd@itmin.com, worldexp@slt.lk
 - Web: <http://www.worldexpresscmb.com>
- Chambers Colombo
 - 전화: 94-11-2685107
 - 팩스: 94-11-5330228
 - E-mail: chambers@vinet.lk
 - Web: <http://www.chamberscolombo.com>
- ;
- Secretaries Colombo
 - 전화: 94-(0)11-268 5107, 533 0229, 536 7243
 - 팩스: 94-(0)11-533 0228
 - 이메일: secol@vinet.lk
- D.L&F.De Saram
 - 주소: 47, Alexandra Place Colombo7
 - 전화: 94-11-2695782
 - 팩스: 94-11-2695410
 - Email: desaram@desaram.com
 - Web: <http://www.desaram.com>
- Julius & Creasy
 - Attorneys-At-Law & Notaries Public
 - 전화: 94-11-2422601-5
 - 팩스: 94-11-2446663, 2435451
 - E-mail: juliuse@lankacom.net, jacey@sltnet.lk

< 국제 세법 회계 경영 컨설팅사 >

- PriceWaterhouseCoopers,
 - 전화: 94-(0)11-4719838
 - 팩스: 94-(0)11-2342389
 - 이메일: deva.rodrigo@lk.pwc.com

< 현지기업 정보 >

- Kompass 스리랑카지사
 - 전화: 94-(0)11-2597551
 - 팩스: 94-(0)11-2586135
 - 이메일: compass@sltnet.lk
 - 홈페이지: www.kompass.lk

< 시장 조사 서비스 기관 >

- Assignment Ltd
 - 전화: 94-(0)11-2589705
 - 팩스: 94-(0)11-2580616
 - 이메일: jingroup@sltnet.lk
- Key Research & Information Ltd
 - 전화: 94-(0)11-2506530
 - 팩스: 94-(0)11-2586220
 - 이메일: key.research@lanka.ccom.lk

41. 노무관리**가. 고용계약**

공단지역의 경우 Job Bank를 통하여 고용할 수도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며, 신문광고나 광고지 등을 통하여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다. 고용계약은 담당 업무, 노동시간, 임금, 교육기간(필요 시), 수습기간, 휴가, 공휴일, 사회 보장세 등 고용조건을 명시한 문서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스리랑카 노동법은 노동자 위주로 되어있는 조항들이 많아 노무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비교적 노동력이 풍부한 편이나 콜롬보에서 가까운 Katunayake EPZ, Biyagma EPZ 등 공장이 밀집한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자를 구하는데 애로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방은 노동력 수급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항구나 공항까지의 교통, 숙련 노동자 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봉제 산업과 관련 스리랑카의 여자 인구는 9백만 명이고 봉제산업에 종사하기 적합한 18-23세 연령층은 1백만 명 정도인데 실제 봉제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은 25만 명 정도이다. 그러나 봉제산업은 도시형 산업으로 잉여노동력을 필요로 하는데 농촌에서 콜롬보로 올 수 있는 인력공급이 줄어들어 임금이 상승하면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봉제산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의 경우 인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숙련 노동자 확보가 쉽지 않다. 많은 숙련공이나 젊은 인력들이 급여수준이 높은 해외근로자로 취업해 나가고 있어 봉제, 기타 어렵고 힘든 일자리는 구인난과 잦은 전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사무직근로자를 구인할 때 보통 일요 신문(Sunday News등)에 구인광고를 하거나 콜롬보 대학 등 관련대학에 졸업생이나 졸업예정자 중 구직 희망자 리스트를 보내주도록 의뢰하며, 스리랑카 정부가 노르웨이 정부의 무상원조를 받아 시작한 JobsNet에 구인회사들이 게시 하면, 구직 희망자가 신청하는 방식 등이 이용된다.

대부분의 풀 타임 정규직 근로자(permanent full time workers)는 최고 근로시간, 최저 임금, 휴가, 노조결성권, 안전 및 건강기준 등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 해고 관련 법(TEA: the Termination of Employment of Workmen Act)”은 6개월 이상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증거가 문서로 잘 되어 있는 경우의 근로기강 상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해고(fire, 또는 lay off)가 매우 어렵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고관련 노무분쟁은 법무부 산하 노동심판소(labour tribunal)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절차상의 여러 취약점으로 신속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미해결된 사건들로 크게 지체되고 있다. 기본권과 관련된 일부 노무분쟁(차별에 근거한 해고 및 전보)은 바로 대법원으로 갈 수 있다.

나. Fringe Benefit

노동자 보상법(Workman's Compensation Act)에 의거 고용주는 노동자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은 아니며 미 가입 시 사고 노동자에 대한 보상은 고용주의 책임이다. 스리랑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의료 보험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 급여기준

2005년 기준 권장임금은 최저임금이 월 3,400루피(36불)이며 미숙련공이 3,400-4,500루피, 숙련공은 4,000-6,000루피이다. 제조업체의 경우 시간외 근무와 휴일근무가 일상화되어 있어 사회보장세를 포함 근로자 1인당 인건비 부담액은 월 100불 정도이다. 매년 약 7-10%의 지속적인 현지화의 평가절하로 인해 현재 임금 수준은 달러화 환산 시 1990년 초와 동일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동남아 외환위기 이후 스리랑카 화폐의 상대적인 고평가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현지화의 평가절하를 요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무직이나 관리직의 월급은, 디렉터급은 주로 협상에 의해 결정되어 가격대가 의미가 없으며, 엔지니어, 회계(accountants), 시니어 매니저는 각각 20,000-50,000루피, 미들 매니저는 10,000-25,000루피, 주니어 매니저는 8,000-12,500루피, 마이너 스태프(사무실) 4,500-5,500루피이며, 공장의 수퍼 바이저는 5,200-7,000루피 정도이다.

초과근무수당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과 공장근로자의 경우 주당 45.5시간, 사무실 근로자는 주당 45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정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정상근무시간은 공장근로자의 경우 월-금요일 하루 8시간에다가 토요일 5.5시간, 사무실근로자는 월-금요일 하루 8시간에다가 토요일 5시간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의 2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보너스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현지력으로 신년(4월)이나 연말에 회사 형편에 따라 지급하나 통상100%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다.

고용주는 급여 외에 국민연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국민연금의 일종인 ETF (Employees Trust Fund)는 기본급의 3%를 고용자가 당월 연금을 다음달 말 안에 매월 해당 관청에 납부하여야 하고 또 다른 종류의 국민연금인 EPF (Employees Provident Fund)는 기본급의 20%인데 12%는 고용자가, 8%는 피고용자가 납부해야 한다.

□ 해고 보상금 제도

새로운 해고 보상금제도 하의 산정방식은 2005. 3.15일자 관보에 "Termination of Employment of Workmen(Special Provision Act No 45 of 1971)"제목으로 공표되었다. 이와 관련 스리랑카 노동부 장관 아타우다 세네비라트네는 3.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근로자 해고 보상금 도입배경과 산정방식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로서 스리랑카는 남아시아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후한 해고 보상제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새로 발효된 해고 보상금 제도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근속년수 1-5년까지는 근속년수에 대해 월 급여의 2.5 개월 분을 곱하여 산정하며, (월 급여의 12.5 개월 분이 최대한도)
- 근속년수 6-14년까지는 근속년수에 대해 월 급여의 2 개월 분을 곱하여 산정하며, (월 급여의 30.5 개월 분이 최대한도)
- 근속년수 15-19년 사이는 근속년수에 대해 월 급여의 1.5 개월 분을 곱하여 산정하며, (월 급여의 38 개월 분이 최대한도)
- 근속년수 20-24년 사이는 근속년수에 대해 월 급여의 1.0 개월 분을 곱하여 산정하며, (월 급여의 43 개월 분이 최대한도)
- 근속년수 25-34년 사이는 근속년수에 대해 월 급여의 0.5 개월 분을 곱하여 산정하며, (월 급여의 48 개월 분이 최대한도)

한편 주요 개념정의는 다음과 같다.

- 월 급여는 기본급, 기본급 이외의 생계수당, 이와 유사한 수당이 포함
- 근속년수 계산시 년은 만 12 개월을 의미하며 최초 고용연도에는 180 일을 초과해야 함
- 신제도가 보상하는 해고보상액의 최고한도는 근속년수 34년까지로 월 급여의 48 개월 분까지인 반면 구제도는 근속년수 37년까지로 근속년수는 길지만 보상액 산정액은 월 급여의 37 개월 분까지로 오히려 낮음.
- 신규 해고보상제도 비교(월 급여기준)
 - 근속년수 10년: 구제도 20 개월 분/ 신제도 22.5 개월 분/보상액차이 2.5 개월 분 증
 - 근속년수 15년: 구제도 25 개월 분/ 신제도 32 개월 분/보상액차이 7 개월 분 증
 - 근속년수 20년: 구제도 25 개월 분/ 신제도 39 개월 분/보상액차이 14 개월 분 증
 - 근속년수 30년: 구제도 30 개월 분/ 신제도 46 개월 분/보상액차이 16 개월 분 증
 - 근속년수 33년: 구제도 31.5 개월 분/신제도 47.55 개월 분/보상액차이 2.5 개월 분 증

라. 휴가제도

- 연가: 14 일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동일하며, 미 사용 시 휴가비 보상)
- 특별휴가(Casual Holidays): 연간 7 일 (근로자의 사스러운 경조사 등에 대해 휴가신청 시 허용하여야 하며, 미 사용 시 휴가비 미 보상)
- 병가: 연간 21 일 (연간 21 일 범위 내에서 병가 신청 시 유급휴가를 허용하여야 하며, 미 사용 시 휴가비 미 보상)

- 산전·산후휴가: 1-2 번째 유아 출생 시는 각 3 개월, 3 번째부터는 각 1.5 개월의 유급 휴가 제도가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음
- 제조업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규이나 일반 상점이나 지사 등에서는 제조업에 준하여 상호 협상에 의하여 정할 수 있음.

마. 해고절차와 조건

과거 사회주의 정권의 영향으로 징계 이외의 고용주에 의한 해고는 불가능하며, 절차도 매우 복잡하다. 예비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1차경고(Warning)→2차 경고(Show-Cause) →내부조사(Domestic Inquiry)→최종징계(Final Action)의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 근로자는 자신의 과실에 의한 해고 시에도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원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며 최종 판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노동자를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인력이 잉여 상태일 경우에 조차 해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 해고로 인한 파업초래, 해고 근로자와의 법정분쟁에 따른 업무부담, 위로금지급 판결 등의 우려로 많은 기업들이 신중한 노무관리를 하기 어렵다. 한국의 온정주의적 노무관리를 벗어나 징계사유(예로 비행, 사기, 준법질서 준수 거부)가 있을 경우 정당한 징계절차를 밟아 징계를 하고, 시말서나 경고서한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 향후 노무관계 발생에 대비해서도 필요하다.

바. 노조활동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가장 큰 골치거리가 노사분규이다. 과거 사회주의 전통을 배경으로 스리랑카 헌법은 노동조합 결성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7인 이상의 노동자가 모이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999년 개정된 산업 분쟁법(Industrial Disputes Act amended in 1999)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노조 구성 또는 지지를 금지할 수 없고 노조 구성원을 해고 또는 징계할 수 없으며 또한 근로자의 노조 가입 또는 탈퇴를 강제할 수 없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 40% 이상이 가입한 노조와 단체협상을 거부할 수 없다.

수출장려를 위해 조성된 수출공단(EPZ)의 경우는 법적인 노조대신 노사협의회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1999년 관계법규가 개정되어 공단 내외부에 관계없이 노조구성과 가입이 기본권으로 인정되었다. 스리랑카의 노조 결성율은 약 25% 정도이다.

공단이나 업종별 노조가 있으나 별다른 영향력이 없고 공산주의 성향의 JVP 정당이 기업의 노조활동에 깊숙이 개입해 노동쟁의, 파업 등의 분쟁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 사용자의 경우 공장폐쇄 등 대응조치가 쉽지 않아 파업 시 노조의 조건을 일정수준 수용하는 선에서 분쟁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다.

사. 노동생산성

스리랑카 노동생산성은 아시아 다른 나라에 비해 낮는데 이는 스리랑카의 경직된 노동법과 많은 공휴일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매달 만월일(full moon day; 불교에서 성스러운 날)은 공휴일이며 만약 만월일이 주말이면 유급 휴일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

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밖에 다른 공휴일이 8일이 있으며 공공부문과 은행분야는 추가로 이 분야의 공휴일이 있다. 따라서 법정휴일은 연가/캐주얼 휴가 합해 매년 약 21일, 병가 약 21일(병가일수 허락은 관리자 재량), 최초 2번째 임신에는 유급출산 유급휴가(산전 및 산후 휴가)를 84일 주도록 법제화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유급출산 휴가일수를 더욱 늘렸다. 또한 여성근로자는 한달 초과근로시간을 최고 60시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봉재 의류나 가방 텐트와 같이 미국 유럽의 시즌에 따라 성수기가 비수기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는 업종은 성수기에는 노동력 부족, 비수기에는 유희노동력이 많지만 이러한 경직되고 근로자를 과보호하고 있는 스리랑카 노동법규 때문에 대부분 고용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스리랑카는 문맹률이 6%로 낮고(특히 현지어) 훈련 가능하지만 일정 기술능력 및 영어에 취약하다. 컴퓨터 및 비즈니스 능력 교육 프로그램, 영어교육 프로그램들이 점차 이용 가능해지고 있지만 적격 자격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졸업해도 취업하기가 어려워 해외취업을 많이 하고 있다. 근로자 평균 수속연수는 8년 정도이며 근로자의 2/3가 남성이다. 서남아 다른 국가에 비해 임금은 높은 편이지만 근로자를 비교적 낮은 임금으로 구할 수가 있으며 어린이 노동은 법적으로 금하고 있는데 법정 최저 근로연령은 14세이다.

노동생산성은 중국, 베트남 등 섬유산업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생산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남아 지역 내에서는 비교적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평균 결근율은 5% 정도이며 임금수준은 중국의 약 70%,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이며 방글라데시 대비 약 2.7배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베트남이 미국시장에서 강력한 경쟁국으로 진입함에 따라 베트남과 중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력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지 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한국대비 생산성은 약 50%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된다. 베트남이나 중국에 비해 전체적인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현지 투자기업들은 평가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Doing Business in 2005」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시아 국가들은 지난 해에 규제장벽과 개선노력이 비교적 미흡하여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스리랑카, 인도 등 남아시아국가들은 기업들이 종업원을 해고 시 세계 타 지역대비 부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을 해고 시 평균 86주에 달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범칙금, 까다로운 해고요건 및 신고절차 등이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아시아 국가들은 파산 시 채권의 회수율이 아프리카 다음으로 낮으며 법원을 통해 계약의 효력을 확보하는 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이다.

42. 조세제도

가. 법인세

1) 법인소득세율

2005년 / 2006년 (2006년 / 2007년) 법인소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 비 전통제품 수출 (면세대상 이외) 관광촉진 건설사업에 종사하는 기업 및 외화로 대가를 지급받고 있는 해외영업관리에 종사하는 기업 →15%(15%)
- 농업사업은 2011년 3월말까지 5년간 Tax Holiday (과세유예조치) 부여

- 과세대상 순소득이 US \$ 500 만 이하 기업. 다만 유니트형 투자신탁(unit type investment trust) 벤처 캐피탈 회사를 제외 →20% (15%)
- 주택용자전문은행 →20% (20%)
- 세면제조치대상 이외 기존·신규 벤처 캐피탈 회사 →20% (20%)
 - 신규 벤처 캐피탈 회사는 세면제 (비과세)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2003년 4월 1일부터 5년간 Tax Holiday (과세유예조치) 를 받을 자격이 있음
- 유니트형 투자신탁 오픈형 투자신탁 (특정분야에 이익) →10%※3 (10%※3)
 - 증권거래법의 취지에 따라 특정분야 투자하는 유니트형 투자신탁 또는 뮤추얼 펀드오픈형 투자신탁 증권거래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관련된 규제·규칙에 준거하여 주식·증권·기타 유가증권 투자사업에 종사하는 유니트형 투자신탁, 뮤추얼 펀드 (오픈형 투자신탁) 임
- 유니트형 투자신탁 오픈형 투자신탁 (비 특정분야 이익) →20% (20%)
- 스리랑카 국외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외화로 지불)
- 외국화물 운임료는 Director of Merchant Shipping 가 인가하는 선박회사 →20% / 30% / 32.5% (15%)
- 기타회사
 - 주식공개회사 상장기업(300 명 이상 주주, 상장에서 5 년간 과세소득 RS 500 만 이상)→30%(33.1/3%)
 - 주식공개기업 상장기업(300 명 이상의 주주, 상장에서 5 년 후 과세소득 RS 500 만 이상)→30%(35%)
 - 과세소득이 RS 500 만 이상의 비 주식공개기업 →32.5% (35%)
 - 과일, 야채, 기타 특정농산물 수출에 종사하는 기업 →15% (면세)
 - 협동조합 →20% (5%)

2) 배당과세

스리랑카거주자인 기업은 주주에 분배하는 배당금합계액의10% 세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이 세금은 주주에 지불하는 배당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외 이익송금에 대한 과세 비거주자 기업이 해외에 이익 송금하는 경우10%의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 배당금→10% / 10%
- 이자→10% / 20%
 - 스리랑카와 이중과세방지 조약 체결국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1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
- 로열티 연금 (>RS 50,000 (매월) 또는 RS 500,000(매년) →10% / 20%
- 서비스료 또는 관리비용 →5% / 5%
- 비거주자 임차료 →10% / -
- 복권당첨금 (RS 50 만 초과) →10% / -
- 도박에서 얻은 상금 (RS 50 만 초과) →10% / -

- 2005 년 법률 제 7 호, 재정법(동 변경에 준거해 자동차 (단, 3 륜차, 트럭, 공공교통 버스를 제외) 등록에 대해, 2005 년 4 월 1 일부터,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가 과세
 - 초기등록 : US \$ 5,000
 - 2 회 차 이상 등록 : US \$ 1,000
- 원천징수세를 동 세의 납세대상자가 지불하는 소득세로 상쇄할 수 있음.

3) 양국간 조세조약

스리랑카는 다음과 같이 30개 이상의 국가·지역과 이중과세 방지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인도, 일본, 한국, 영국, UAE(한정합의),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한정합의), 싱가포르, 태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덴마크, 오만 (한정합의), 핀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이란, 스웨덴, 이태리, 스위스, 쿠웨이트, 러시아, 홍콩 (한정합의)

- 스리랑카와 한국간에도 이중과세방지조약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 조약에 의거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다. 이자 : 15%, 배당금 : 10%, 로얄티 : 7.5%
- 스리랑카정부에 공여하는 원조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은행 정부기관 또는 인가를 받는 한국기업이 받는 경우 관계이자는 비과세된다. (저작권 및 영화용 필름에 대해서는 로얄티 비과세)

4) 투자보장협정

스리랑카는 한국을 포함한 20 여 개국과 체결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영국, 호주, 일본, 미국,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 캐나다, 파키스탄, 태국, 프랑스, 독일 등

나. 기타 세제

1) 부가가치세(VAT)

발생지원칙에 따라 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유효하게 적용된다. 부가가치세에는 세 환급 제도가 적용된다. 상품 판매 시 수취 부가가치세에서 상품 매입시 지불부가세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2005년1월 1일 이후 4 종류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단 5%의 기본부가가치세는2004년11월19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 영세율

- 세율 : 0 %
- 과세대상품목: 제품 및 여객의 국제운송관련 제품·서비스 수출에 적용된다. 동산·부동산의 스리랑카 국외로의 국제운송에 관련되는 제품·서비스 수출에 적용된다. 스리랑카 국외의 개인·법인에 제공되는 서비스로 스리랑카 국외에서 소비되어 대가가 전액 외화로 스리랑카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서비스에 적용된다. 「섬유쿼터 위원회」에 등록된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은 무형수출」이 적용된다. 의료 바잉 오피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 지불부가가치세의 환급율

- 상품매입시의 지불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전액 환급된다. 단 20%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상품을 매입한 경우에는 15%까지 환급되지 않는다 (이 매입제품을 수출한 경우 15%까지 환급) .

□ 기본세율

- 세율 : 5 %
- 과세대상품목 : 기본식료품 (설탕, 콩, 당밀, 건어물, 감자, 쌀, 양파 (수입단계))
- 지불부가가치세 환급율 : 없음

□ 기준세율

- 세율 : 15%
- 과세대상품목 : 보석, 금, 기본세율 (5%) , 사치세율 (18%) 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서비스임. 단 영세율,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제외품목의 공급을 제외한다.
- 지불부가가치세 환급율 : 15%

□ 사치품 세율

- 세율 : 20%
- 과세대상품목 : 사치품으로 보이는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사치품에는 모든 알코올류 (주류), 공조장치, 냉장고, 세탁기, 오븐, 조리기, 라디오, TV, 비디오, 손목시계, 벽시계, 세탁기, TV, TV, 안테나, 카메라, 보석, 자동차 (3 른 자동차, 여객운송버스, 오토바이, 2 른차는 제외) 결혼식 혹은 동종의 피로연 개최 호텔, 레스토랑에 제공되는 서비스
- 지불부가가치세 환급율 : 15%
 - 한정된 범위의 제품·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면제조치가 적용된다.
 - 부가가치 세제 하에서는, 사업이 제품·서비스 판매,공급 시 수취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그리고 모든 전 수취 부가가치세에서 제품·서비스 수입, 매입시 지불 부가가치세를 차감한다. 이의 차액을 내국세입국장에 지불(납세) 한다.
 - 지불부가가치세가 수취부가가치세를 상회하는 경우 이의 차액이 환급된다. 그러나 5%의 수취 부가가치세 (판매 시) 가 부과되는 제품에 관해 부가가치세 (매입 시) 는 환급되지 않는다. 단 운수용 차량 및 생산용 기계 구입시 지불 부가가치세는 환급된다. 20% 수취 부가가치세 (판매 시) 가 부과되는 제품에 관한 지불 부가가치세 (매입) 는 15%를 한도로 환급된다.

수입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 수입제품 가격을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다.

- 관세의 7 %를 인상
- 항만, 공항 개발세의 전액 상당부분을 인상
- 관세 관세할증금, 세스 (CESS) 특별규정 소비세의 전액 상당부분을 인상

2003년 법률 제17호 부가가치세법 (동 변경) 에 의거 2003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금융 서비스의 제공자에게로 확대되었다.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2002년 법률 제 14호, 부가가치세법에 정의되어 있다. 경제적 감가 및 종업원에 지불하는 임금은 조정된 후에 납세전 당기 이익이 금융서비스의 부가가치인데 이에 대해 15% (2006년 1월부 20%) 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금융서비스 부가가치세를 지불 시에 금융서비스의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하나의 선택적 방법이 2004년 법률 제 13호 부가가치세법 (동 변경) 에 규정되어 있다.

2) 경제서비스세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인·법인·공동경영에 의해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래·사업·직업의 과세대상 매상고에 관해 관련 개인·법인·공동경영에 대해 매년 경제 서비스세가 부과된다. 단 당 세금 년도 (조세사정년도) 에 발생한 과세대상 매상고는 RS 5,000만 (2006 / 2007년부터 RS 4,000만) 이상인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 위에 당 과세 년도 개시일부터 3년 전부터 영업이 개시된 것을 조건으로 한다. 과세가능 한 경제 서비스세의 최고액은 각 과세 년도에는 RS 5,000만 (2006 / 2007년부터 RS 6,000만) 이다.

경제서비스세 세율은 아래와 같다.

- 면세이익 : 0.25%
- 투자청(B01)법률 제 17 장에 기초, 합의에 따라 면세가 계속되고 있는 B01 사업 : 0.25%
- 내국세법 제 6 차 계획에 규정되어 보다 낮은 세율로 법인소득세를 지불할 권리를 지닌 기업 : 0.50% 판매업자가 생산· 제조하지 않은 재화의 소매· 도매업 : 0.50% *
- 기타 : 1.00%

* 2005년 4월 1일 이후부터 유효하게 적용 : 경제서비스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으로 하나는 최저 3년의 사업기간이 적용된다. 경제서비스세는 당해 소득년도의 지불 소득세와 상쇄 가능하다. 경제서비스세의 상쇄되지 않은 잔여부분은 다음 2년간의 과세연도의 지불 소득세로 상쇄 가능하다. 경제서비스세는 전체, 부분으로 환급되지 않는다.

3) 수입관세

스리랑카에 수입되는 모든 재화의 CIF가격에 대해 관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관보에 공표된다. 2004년 11월 19일 이후 적용세율은 스리랑카에 수입되는 모든 재화의 CIF가격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었다. 2004년 11월 19일 이후 적용된 세율은 다음과 같다.

기본원재료 : 2.5% 반제품원재료 : 6% 중간재· 예비부품 : 15% 자동차 및 기타 완성품 : 28%. 제로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는 극히 적다. 또한 개별 세율이 쌀, 설탕, 냉동품, 감자, 양파, 신발, 기타 약간의 농산물, 주류, 담배 등에 적용된다. 관세에는 10%의 과징금도 유효하게 과세된다.

4) 수입세

1979년 법률 제 40호, 스리랑카 수출개발법에 기초하여 몇 개 품목에 수입세가 부과된다. 수입세율은 특정 증가세율 또는 단위세율 중 높은 세율이다. 각 세율은 스리랑카 관보에 명기되어 있다(세율을 명기하고 있는 최신 관보는 2005년 2월 28일부로 관보번호 1381/01) . 고무제품에 대해 CIF가격의 5%의 수입세가 부과된다.

5) 수출세

차, 코코넛, 원료고무, 기타 적지 않은 제품의 수출에 대해 수출세가 부과된다. FOB가격 또는 단위당 가격 (필요에 따라) 에 대해 수출세가 계산된다. 원료고무를 1Kg 수출하면 RS 4 수출세가 부과된다. 스크랩 또는 기타 형태의 철·비철금속에 대한 수출세는 런던 금속 거래소의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가격의 25%가 부과된다.

6) 주세

제조 알코올 음료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알코올음료에는 스피리트 포도주 맥주 알콜을 구성성분으로 하는 전 액체 알콜이 포함되어 있는 전 액체 기타 재무장관이 이 세의 목적에 비취 알콜 음료로 선언한 물질이다.

7) 소비세 (특별규정 소비세)

선택된 일정 범위의 재화(수입품 또는 현지생산품) 에 대해서 과세하는 특별세이다. 담배, 파이프연초, 디젤, 석유, 등유, 자동차, 탄산수, 생수, 공조기, 냉장고, 세탁기, TV, TV안테나, 전기제품, 경마공고에 대해 과세된다.

8) 항만·공항개발세

2006년 1월 이후 전 수입 화물의 신고 CIF가격의 2.5%가 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2006년 1월 이후 가공.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본 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9) 관광개발세

1968년 법률 제 14호, 관광개발법에 기초하여 인가된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2003년 9월1일 이후 매상고 (관광수입) 의 1%를 관광개발세로 부과된다.

10) 예금세

0.1%의 예금세가 아래 예금에 대해서 적용된다.a) 상업은행의 당좌예금구좌의 예금 b) 상업은행 혹은 전문은행의 저축예금구좌의 예금 c) (양도성) 예금증서 및 여행자 수표의 현금화

11) 휴대·이동전화가입자세

휴대·이동전화 가입자는 가입한 휴대 전화망의 각 회사에 대해 지불하는 전 요금 (전화대기타 수수료) 의 2.5%를 휴대·이동전화 가입자세로서 정부에 납세한다. 이 세금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유효하게 과세.

12) 노름·게임세

2005년 법률 제 9호, 도박·게임세법 (동 변경) 에 의거하여 노름성 복권업 및 게임사업에 대해 노름·게임세가 부과됨. 2005년 4월 1일 이후 노름·게임세의 과세금액은 다음과 같다.

- 카지노 등 노름업에 대한 과세액
 - 대리인을 통해 행한 노름 : RS 100 만
 - 실황방영시설을 이용한 노름 : RS 25 만 (2006년 3월까지) → RS 30 만 (2006년 4월)
 - 실황방영시설을 이용하지 아닌 노름 : RS25,000 (2006년 3월까지) → RS 5 만(2006년 4월)
 - 게임업 : RS 5,000 만

13) 비영리단체에 대한 추정과세

2005년 법률 제 8호, 내국세입법 (동 변경) 에 기초하여 비영리단체가해 수령한 기부·증여·현금의 3%를 비영리 단체의 수입으로 보지 않고 30%의 세금을 부과. 단 내국세입 국장은 스리랑카 북부·동부 및 지진해일 피해지역 복구활동, 재무장관이 승인한 기타 복구재건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는 이 세금을 면제할 수 있다.

14) 사회책임세

아래 제정법에 기초 2006년 1월 소득세에는 동년 4월) 이후 세금·과징금의 1%를 아동을 위한 국가활동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책임세가 징수된다.

- 1989년 법률 13호, 주세 (동 특별규정)
- 주세조령
- 관세조령
- 1979년 법률 제 28호 내국세입법
- 2000년 법률 제 38호 내국세입법 (단 원천 징수세 및 배당세를 제외)
- 세징수당국 : 통관소장 주세당국 내국세입국장

15) 주식거래세

2005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파는 자 및 사는 자 양방으로부터 주식거래고의 0.2%의 주식거래세를 징수한다. 세 징수 당국 : 내국세입국장

16) 건설산업보증금세

2005년 1월 1일 이후, 건설개발·훈련기관 또는 전국건설업연맹에 등록된 건설청부 업자로부터 2005년 1월 1일 또는 이후에 체결된 신규계약에 기초한 계약고에 대해 아래세율로 본세가 징수된다.

- 연관계약고(또는 매상고) 가 RS 15,000,000 이하의 경우 : 0
- 연관계약고(또는 매상고) 가 RS 50,000,000 이하의 경우 : 0.25%
- 연관계약고(또는 매상고)가 RS 50,000,000 를 초과, RS 150,000,000 이하의 경우 0.5%
- 연관계약고(또는 매상고)가 RS 150,000,000 를 초과하는 경우 : 1%
- 세 징수 당국 : 건설개발·훈련기관 이사장

17) 연초세

담배 또는 파이프 담배 생산 원료로 사용되는 스리랑카산 담배잎에 대해, 연초세(담배 당 중량세) 가 부과된다. 연초세 금액은 스리랑카산 담배 또는 파이프 담배 생산공장에 인도되어 여기서 수령된 연초입의 중량에 따라서 계산된다.

18) 매상세

지방자치단체는 도매·소매 매상고에 대해 1% 매상세를 부과.

19) 인지세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양도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2006년 예산안』 중에서 인지세 재도입을 발표.

20) 유흥세

지방당국의 관할지역내 주최되는 흥행 입장료 지불에 대해 지방당국은 유흥세를 부과, 세율은 지방당국이 결정한다.

21) 지방자치세, 기타 지방공공단체세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회수되는 적정한 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지방자치세, 도시세, 기타 지방공공단체세가 부과된다.

22) 인허가 비용

특정업종의 영업·사업은 지방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인허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업·사업에 대해 일정의 명목세가 부과된다.

한편, 2005년 11월 17일 대선 승리로 새로 출범한 마힌다 라자팍서 대통령 정부의 균형경제 철학 하에서 스리랑카 경제재건, 농촌 및 중소기업 육성, 빈곤계층 감소, 가진 자나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담은 2006년 예산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실행하기 위해 스리랑카 국세청 등 관련 부처에서는 세부입법 및 행정명령 등을 준비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스리랑카 정부살림 계획을 입안하고 이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총괄부서인 재정 기획부(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의 2006년 세입 법안시행 플랜(Implementation Plan of Revenue Legislation of 2006 Budget)은 다음과 같다.

- 내국세 법안: 2006년 2월 15일 세부 실무작업 완료, 3월 1일 의회 제출, 4월 1일부 발효
 - 법인세
 - Cooperative Societies(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세율을 20%에서 5%로 인하
 - 과세대상소득 Rs 500 만(5만 달러 상당)이하 중소기업은 세율을 20%에서 15%로 인하
 - 과세대상소득 Rs 500 만(5만 달러 상당) 초과기업은 세율을 35%로 인상
 - 게임, 복권사업 소득 및 이익에 대해서는 세율을 40%로 정함
 - 비전통농산물 수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
 - 콜롬보 및 감파지구 외곽에 설립된 기업은 법인세를 5~10년간 면제
- 개인소득세 소득구간을 세분화해 단계별 누진세율을 적용, 저소득자는 낮은 세율, 고소득자는 높은 세율적용

- 최초 RS 300,000(3000 달러 상당) - 5%
- 다음 RS 200,000(2000 달러 상당) - 10%
- 다음 RS 200,000(2000 달러 상당) - 15%
- 다음 RS 200,000(2000 달러 상당) - 20%
- 다음 RS 200,000(2000 달러 상당) - 25%
- 다음 RS 500,000(5000 달러 상당) - 30%
- 잔여소득(Balance) - 35%

- 농업분야 세금혜택
- 과일, 채소 등의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농산물 가공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 면제
- 15% 소득세 폐지
- 고등기술기반산업 인센티브
- 의료, 인쇄, 보석절삭가공, 포장, 정미산업용 플랜트 및 장비류에 대한 감가상각 공제허용 한도를 33.33%로 올림
- 이들 산업용 기계류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면제
- 외화표시 재무부채권 발행
- 만기 3~5년의 외화표시 중기 재무부 채권을 발행
- 이들 채권을 소유한 전문가, 해외거주 스리랑카인들에 대해서는 채권소득 면제
- 이전가격 및 과소 자본
- 이전가격- 세금납부 자격을 통합화, 법적 기준을 "arms length(제 3 자 거래, 독립기업간 거래)"원칙 적용을 법제화
- 과소자본 규제
- 제조업 부채비율(debt/equity ratio: 부채/자본) 2:1, 기타산업 부채비율 3:1
- 은행 및 금융기관 이자소득 과세
- 예금자의 이자 총 소득이 월 RS 9,000, 연간 RS 108,000 을 초과하지 않고 예금주가 신고한 경우에 한해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공제
- 세금공제 이자율은 10%가 적용되며 세금 공제된 이자소득을 최종소득으로 간주

□ 내국세법 개정안의 기타 주요 내용

- 노인층이 노후준비를 위해 구입한 연금상품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
- 스리랑카인 전문가의 외화전문 서비스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해 스리랑카 밖에서 개인 또는 파트너십으로 받는 전문서비스 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화(내국세법 77 조의 비거주자 개념 등)
- 기업발행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도 은행이자소득과 유사하게 처리
- 구호기관의 이자소득 면제
- 배기량 1500cc 미만 자동차수입시 수입부과금의 25%까지 면제

□ 국가재정법(Finance Act) 개정

- 2006년 1월 1일부 발효 주요 내용(2005년 12월 31일 세부 실무작업 완료, 2006년 1월 15일 의회제출)
- 사회책임세(SRL: Social Responsibility Levy)세율을 0.25%에서 1%로 인상
- 이 세금은 부가가치세, 공항항만 개발세, Debit 세, 이자와 배당세금을 제외한 모든 세금에 대해 과세

- 항만 공항 개발세(PAL: Port and Airport Development Levy): 수출용 원부자재로 사용되지 않은 기타 모든 수입품에 대해 2.5%로 인상
- 경제서비스 수수료(ESC: Economic Service Charge) 개정 : 2006년 4월 1일부 발효
 - 2005년 12월 31일 세부 실무작업 완료, 2006년 1월 15일 의회제출
 - 법인체(entity)에 대한 부과 최대한도액을 RS 5000 만에서 RS 6000 만으로 인상하고 ESC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연간 총 매출액 기준선을 RS 4000 만으로 하향조정
 - ESC 기준 년도를 변경하여 기준 년도 기준에서 당 해년도 발생책임 총 매출액으로 함.
 - 발생소득에 대한 공제 허용
 - 차, 고무, 코코넛 가공공장에 대한 ESC는 0.5% 적용
 - 내국세법 8(b)에 해당되는 기관은 면제

□ 세입보호행정명령(RPO: Revenue Protection Order)안: 2006년 1월 15일한 세부 실무작업 완료, 1월 30일한 의회 제출, 1월 1일부 발효

- 수입관세율 변경: 기 시행 중
- 포장 및 인쇄원재료 수입관세 면제
- 수입칸 6% 수입관세부과
- 삼륜차 타이어 15% 수입관세 부과
- 수입관세율 변경
- 우유가공기계 수입관세 면제
- 방직기계(Handloom Machinery)용 기계 수입관세면제
- 대형건설기계 및 장비[크러싱(파쇄)기계 포함] 수입관세 면제
- 의료, 프린팅 보석절삭 및 연마포장, 정미분야 기계 및 플랜트는 관계 부처의 감독 하에 수입관세 면제 - 4월 1일부 시행
- 콜롬보 및 감파하(Gampaha)밖에 소재 산업체가 새 기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 4월 1일부 시행

□ 부가가치세(VAT) 수정법안: 2006년 1월 15일한 세부 실무작업 완료, 2월 15일한 의회 제출, 1월 1일부 발효

- 부가가치세율 변경: 기 시행 중
- 우유가공기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 직물제조에 사용되는 안, 염료, 기계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크러싱 기계를 포함한 건설기계 및 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 약용 소프트 드링크(Ginger bear, Peyawa, Nelli 등): 15% 부가가치세율 적용 컴퓨터 및 약세사리 부가가치세 면제
 - 미 가공 목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방직산업용(Handloom Industry) 고급기술기계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 스리랑카 국적으로 등록된 선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율 변경
- Tower Hall Foundation 제공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스리랑카 내 경작된 국물로 제조된 농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금융서비스: 20% 부가가치세율 적용

- 장애인 보조장비 부가가치세 면제
- 기타 부가가치세율 변경
- bank guarantee/insurance bond 조건으로 수출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5 일 이내에 환급
- 국내에서 조달한 수출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유예
- 공항 내 부가가치세 환급시스템 도입
- 부가가치세 납부일을 앞당김
- 세관에서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율은 CIF 에 더하여(마크업)하여 7% 로 수정
- 콜롬보 및 감파하 밖에 소재한 새로운 산업용 신 플랜트 및 기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 기타 세법 개정안

- 주류 특소세율 인상: 기 시행 중
- 담배 특소세율 인상: 기 시행 중
- 주류 판매점에 대한 연례 라이선스 요금 인상: 2006년 1월 1일부 시행
- 인지세(Stamp Duty)도입: 2006년 2월 1일부 시행
-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 및 금융기관의 농업분야에 대한 의무대출비율 상향조정

43. 외환관리

가. 외환관리 개황

외환관리는 1953년에 제정된 외환관리법(Exchange Control Act)에 근거하여 중앙은행 외환관리국이 관할하고 있다. 모든 수출에 의한 수입과 기타의 외화수입은 중앙은행에 매각, 집중토록 되어있으며 모든 외환거래는 공인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수출가공지대에 입주하거나 인가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B01법에 의해 외환관리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역외금융(Offshore banking)이나 외국은행 및 지점을 이용할 수 있다.

스리랑카내외서는 은행 내 외화구좌 개설이 자유로우나 외화(달러화 등)출금이 되지 않으며 구좌이체, 해외송금은 자유로운 편이다. 예컨대 달러구좌에서 달러현금인출은 되지 않으며 다만 해외여행 시 여권 및 항공티켓을 제시하면 여행기간 등 및 신용도 등에 따라 최고 5,000불한도내에서 달러를 인출할 수 있는데 현금인출 최대한도는 500불이고 나머지는 여행자수표 4,500불이 최대 한도이다. 은행은 성명, 여권사본, 항공티켓사본 등 증빙 서류를 별도 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지속적인 외환제도의 자유화 정책 실시로 외환관리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상황이며 특히 93년 3월에 무역 및 서비스의 경상거래에 대한 외환규제를 대부분 철폐함에 따라 94년 3월 15일부터 IMF8조국의 의무를 지게 되어있어 IMF의 승인 없이 국제수지의 경상지급에 대한 외환통제를 가할 수 없게 되었으며 동시에 차별적 통화조치도 할 수 없으며 외국이 보유하는 자국통화잔액에 대한 교환성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해외송금의 경우, 전량 수출조건 외국인 투자의 경우 대부분의 외환관리 규정이 적용 면제되도록 되어있어 이 업체 근무 외국 임직원의 경우 월 급여액의 90%까지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다만, 일반 외국인의 부양가족을 위한 해외송금은 고용기간이 3년 이하의 경우 월간 총수입의 2/3까지, 고용기간이 3년 이상의 경우는 1/3까지 허용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중 비거주자의 이익배당금 송금은 전년도 이전의 미배당 이익금을 포함하지 않고 유보자산의 이전 및 고정자산 매각이익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며, 외환지급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도 필요서류의 은행 제출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관련 외환 통제현황을 보면, 자금 대부업, 전당포, 자본금 1백만 불 이하의 소매업, 연안어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허용되지 않으며, 통화법(the Monetary Law)이 수정되어 중앙은행이 회사기록을 심사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중앙은행의 규제기능을 강화하였다.

스리랑카의 외환관리 및 거래에 대한 가장 최근 자료는 스리랑카 중앙은행 외환관리부가 2005년에 발간한 자료인 “A Guide to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를 참조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관련웹사이트는 <http://www.centralbanklanka.org/publications.html>에 가서 Occasional Publications 항목에서 최근 발간자료 리스트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중 A Guide to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를 클릭하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이 자료의 주요 내용은 스리랑카의 현행 국제거래(재화서비스의 수출입 거래, 외환신고, 외환 판매와 구매, 해상/항공운송, 화물 주선업 등), 국제수지 자본계정 거래(외국인 직접 투자, 거주자의 해외투자/외환차입, 비거주자에 대한 보장규정, 비거주자의 고정자산취급 및 처분, 스리랑카 내 비거주자와 계약, 거주자의 해외계약, 특허권 구매, 생명보험, 역외 금융), 거주자에 허용되는 외환계좌와 비거주자에게 허용되는 루피화 계좌 등에 대한 상세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외환관리에 대한 스리랑카 중앙은행에 대한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 Exchange Control Department Central Bank of Sri Lanka
- P.O. Box 883, Colombo, Sri Lanka
- 전화: +(94)-11-2477244, 2477255
- 팩스: +(94)-11-2477716
- Email: ecd@cbsl.lk

나. 환율결정

환율결정은 관리 변동환율제(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에 의해 중앙은행의 환율변동 관리위원회(Managed Floating Committee)가 주요국 통화와 SDR을 감안하여 매일 결정하여 발표한다. 즉, 주요 교역상대국 6개국(미국, 영국, 일본, 서독, 프랑스, 인도)의 물가동향 및 화폐가치 변동과 자국의 물가동향 등을 감안, 상한 및 하한선을 결정한 후, 이 범위 내에서 외환시장의 주요 공급 동향에 따라 매일 환율을 결정 발표하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00년 4월부터 중앙은행의 일일 환율변동폭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독립적인 관리변동환율제도로 외환의 투기적인 요소가 감소되어 환율의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 과세와 이익금 반출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내국세법(Inland Revenue Act)67조에 의거, 비 거주기업으로 간주되어 스리랑카에서 발생하고 파생된 소득에 한정한다. 세법상 허용되는 경비는 내국세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익 창출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경비를 인정하지만, 접대비, 여행, 자본성 경비는 제한을 두고 있다.

이익금, 기타 수수료 반출은 스리랑카 중앙은행이 정한 특정 조건과 부합하면 허용되며, 사업목적상 스리랑카 내에 고정 자산이 필요할 경우 투자가 허용된다. (Section 58 of the Finance Act No.11 of 1963)

법인이나 지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고용인들은 스리랑카 근무 시작 후 3년간은 25%의 낮은 소득세율 적용을 받는다. 이 기간 중 스리랑카 밖에서 발생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글로벌 소득에 대한 과세는 상기 3년 만료 후부터 과세 대상이 되며,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국의 국민(한국포함)은 원천소득 발생국에서 1차 과세권한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제로 6개월 기간 주재하면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44. 이주정착 가이드

가. 집구하기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은 주로 콜롬보 시내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치안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상업의 중심지인데다 각종 문화시설도 이곳에 집중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주택은 가족 수나 위치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700불~1,000불/월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외곽지대는 월500불 이면 독채를 구할 수 있다. 독채를 구할 경우 독채에 따라서는 경비원이나 정원관리 등에 별도 고용인원이 필요하며 종종 외부와 연계하여 도난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보다 비싸며 한국인이 선호하는 아파트의 경우 1,000~1,600불/월 정도이며, 호텔 식 아파트의 경우 월 2,000불을 상회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대상 주택을 물색할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전액 지불한다. 계약조건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문서 계약 시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지인들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대하고 계약종도에 귀임할 경우 선금금 일부를 상식이상의 높은 가격의 하자보수 비용 명목으로 공제하고 되돌려 받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외국인들에게는 내국인들보다 높게 임대료, 장기 선금금을 요구하는 경향이다.

한국인을 비롯 외국인들이나 신흥 고소득층들은 비교적 치안이 양호한 고급주택지인 Colombo 7 지역 또는 Colombo 5 주택지역, 신행정수도로 의회가 입주하였고 아메리칸 스퀘어인 OSC가 있는 라자기리아, 스리 자야와르데네프라 주변지역(한국의 강남 분당지역에 해당)를 선호하고 있으며 동 지역이 값도 제일 비싼 편이다. 아울러 조금 신경 써야 할 것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모기, 파리 등이 많고 또 도마뱀이 많아 방충망 및 모기장이 필수이므로 이점을 참고해야 하며 정전이 잦아 소형 자가발전기나 UPS시스템이 설치되어있는 주택이 바람직하다.

또, 콜롬보 외곽지역인 바따라울라, 누게고다 지역이나 공항인근인 네곰보, 시두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콜롬보로 출퇴근 할 경우 주택임차 비용은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출퇴근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바따라울라, 누게고다 지역: 30분 내외, 네곰보 시두와 지역: 1시간 30분 내외)

스리랑카에도 2년여 전부터 고급 콘도미니엄(한국수준 서민층 또는 중급 정도 아파트) 건설 붐이 시작되고 있으나, 아직 수요층이 한정되어 있고 인기지역인 콜롬보는 부지확보가 어려워 고층이면서 1-2개 동이 전체인 형태로 주로 건설되고 있다. 조망권이 좋고 주거환경이나 도심인근 지역 콘도미니엄은 분양이 잘 되고 있으며 프리미엄도 형성되고 있다.

나. 행정절차

주택임차 후 공증을 받기도 하나 대부분 계약서 작성으로 충분하여, 한국처럼 확정일자 등의 제도는 없다.

다. 구좌개설

여권과 거주비자를 가지고 원하는 은행에 가서 기본예치금 200불(국내은행 HNB의 경우)을 내면 즉시 개설이 가능하다. 은행마다 운영방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전조사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영국은행 STANDARD CHARTERD 와 미국계 Citi Bank의 경우 기본구좌 유치금액이 있어 STANDARD CHARTERD 경우 500불, Citi Bank의 경우도 3,000불 이상을 항상 보유하지 않으면 매월 20불씩 감하기 때문에 운영의 어려움과 손해가 있다. 반면 HSBC는 일단 기본 개설비 500불로 개설을 하면 예금액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이자 또한 비교적 높은 편이고 송, 수신이 편리하다. 이외에도 기타 여러 종류의 자국, 외국은행들이 많다. 많은 한국인들이 HSBC를 이용하고 있다.

라. 비품구입

집을 구할 때 대부분 아무런 집기나 비품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리랑카의 고가 공산품을 감안하여 이삿짐으로 부칠 물건과 현지에서 구입할 물건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비싸며 가구는 마땅한 것이 별로 없거나 있으면 수입이태리제이기 때문에 장식장, 식탁 및 식탁의자, 소파 등은 가급적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기규격은 230-240V, 50hz 이며 잦은 정전에 가전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컴퓨터와 같은 정밀전자제품에는 UPS장착이 필수이다. 콜롬보 등 대부분 지역이 고온 다습하여 전자제품, 금속제품, 가죽제품이 쉽게 상하며 카메라에 건전지를 내장하여 보관하다가 건전지가 녹아 카메라 전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동차나 전자제품의 부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부품비용이 매우 비싸 수리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자동차 등 고가품의 경우 잔 수리가 필요할 때 가급적 빨리 수리해야 큰 비용 지출을 사전에 줄일 수 있다.

마. 생필품조달

1) 한국식품 조달 여건

스리랑카는 비교적 작은 국가이지만 사막부터 온대기후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데다가 한국인들의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중부내륙지역에 강원도 고냉지 같은 섬씨 15-20정도의 지

역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배추, 무우, 대파, 부추 등 야채가 재배되어 공급 되기 때문에 야채류 구입은 별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콜롬보의 골피티[골루피티야] 시장에 가면 배추, 무우는 물론이고 쪽파, 오이, 당근, 마늘, 고추, 상추 등 채소류와 달걀 등이 있어 매우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한국식품점이 2개 업소가 개설되었고 이중 1군데인 Kmart는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다. 수입품을 취급하고 있어 비교적 비싼 편이나 필요한 물건은 미리 한달 전에 주문하면 구입 할 수 있으며. 양념류는 가격이 비싸므로 휴대하는 편이 좋으며 보관 시에는 더운 나라이므로 대형 냉동고를 구입하여 저장하면 오래 간다. 이삿짐에 소주, 한국 전통술을 가져오면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며 더운 지방이므로 냉장고에 보관하면 신선도가 오래간다.

더운 편이기 때문에 맵고 짜게 먹는 편이며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과 조선간장, 왜간장 등은 가져 오는 게 생활상의 불편을 줄이는 방안이다.

이외에 라면, 과자류 등 인스턴트 식품도 반입되고 있어 구입가능하나 고율관세 등으로 인해 가격이 국내가격의 1.5 - 2배가 보통이어서 부담이 되고 있으나 과거와는 달리 구입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구입량도 많아지고 있다. 거주 교민의 감소로 한국식품을 취급하는 업체수가 실제로 거의 1개사(K Mart: 전화 250-2729)로 줄어들었고 이 업체도 한국식품에 대한 재고가 거의 없는 상태가 많다. 두부, 삼겹살, 떡 같은 경우 사전 주문하면 구입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먹는 것과 유사한 조기, 갈치류, 조개류도 파는 경우가 있다.

2) 생필품 구입 용이성

전체적으로 일부 양념류 등을 제외하고는 현지구입 가능한 품목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나 고율관세로 인해 국내 시판가격의 1.5 - 2배인 경우가 많아 부담이 많으며 기초생활비 비중이 아주 높은 편이다.

쌀은 미국 캘리포니아산, 호주산, 일본산, 중국산이 수입되고 있으며 가격은 한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구입 가능해 별 어려움이 없다.

참고로 수입 쌀 이외에 현지 쌀은 생산과정에서 일정한 발효과정을 거치는 관계로 약간 썩은 냄새가 나서 한국인이 이용하기에는 곤란하며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찰기가 없는 남방 쌀이 많다.

그 밖의 것들은 현지산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다소 비싸기는 하지만 수입품 활용이 가능한 경우도 많다.

식수는 현지는 물론 프랑스, 호주 및 인도네시아 등 외국제품이 수입 판매되고 있어 이용이 가능하며 점차 많은 가정이 정수기 혹은 현지 생수 조달 방법을 선호하고 있으며 정수기로 정수한 수돗물을 보리차등을 넣어 끓인 후 식혀 냉장고에 보관하여 이용하는 가정도 많다.

바. 레저여건

날씨도 일년 내내 30도 정도에 이르는 데다 문화관습 그리고 생활여건 낙후 등으로 인해 한국인이 즐기기엔 적합한 레저는 골프 외에는 별로 없다.

스리랑카에 3개의 골프장이 있으며, 콜롬보 내에서는 1개의 골프장(로얄 콜롬보 골프 클럽)이 있으며 이와 별도로 1개(워터웨이 골프클럽)는 9인홀만 완성되어 있으나 코스가 어렵고 그늘이 없어 필드가격은 저렴하지만 인기가 없다. 내륙 도시인 캔디 및 누와라 엘리아에 각각 1개의 골프장이 있으나 편도 4-5시간이 소요되어 연휴 때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이용하기가 거의 어렵다.

호텔 수영장, 호텔 테니스장 등도 이용할 수 있으며, 연중 고온인 관계로 서부 해안의 일부 호텔에서 스쿠버 다이빙, 윈드서핑 등 해양 스포츠도 즐길 수 있다.

휴일이나 주말을 이용, 서해안, 남해안에 집중되어 있는 해변 리조트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으며, 우리의 고랭지 지역과 유사한 중부지역의 누와라엘리아 지역에 갈수도 있으나 편도 5시간이상 소요되며 도로 사정이 매우 열악한 단점이 있다. 산간지방은 한국과 비슷한 봄, 가을 기후이기 때문에 피서를 겸하여 이들 지역을 찾는 경우가 많다.

사. 치안상태

콜롬보 중심지의 경우 치안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여 주간외출에 큰 문제는 없음. 지방의 경우에도 도심 혹은 관광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단독 외출은 삼가는 것이 좋으며 동북부지역은 내전관계로 아직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밤늦은 외출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신변 안전상 유리하며 외출 시 외출장소를 알리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현지인들은 외국인들에게 무조건 불리하게 행동하거나 현지인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차량은 그대로 두고 현장을 피해 신속히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리랑카 도로사정이 열악하고 노폭이 좁으며 대부분 편도 1차선으로 사람, 우마차, 소나 개, 자전거 및 오토바이, 삼륜차(현지명 바차지)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도로변 바로 옆에 인가와 접하고 있다. 중앙도로 분리대가 없는 도로가 대부분이며 중앙선이 흰색 실선이 아닌 흰색 점선 (추월가능)인 경우가 많아 추월이 일상화되어 있으므로 잘 모르는 시골지역이나 원거리 이동 시는 반드시 현지인 기사를 대동하는 것이 교통사고나 운전 중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바람직하다.

최근 북동쪽에서 정부군과 반군과의 산발전 전쟁으로 인해 분쟁지역을 여행하는 것은 몹시 위험하며 콜롬보 시내인 경우에도 정부고위관리나 군고위장성을 목표로 한 폭탄테러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아. 삶의 질

UN조사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인도 2배, 평균수명 73세로 선진국수준을 기록하였다. UNICEF(국제연합아동기금)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서남아국가중에서 문맹률과 영아사망률이 가장 낮은 반면 평균수명은 가장 높아 사회개발지표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

스리랑카인들의 평균수명은 73세로 인도의 64세보다 거의 10년을 오래 살고 영아사망률은 출생아1000명당 17명으로 인도의 67명, 방글라데시 51명보다 월등히 낮다. 참고로 서남아시아 7개국의 평균 평균수명은 63세, 영아사망률은 70명이다. 한편 스리랑카의 1인당 국민소득(GNI기준)은 840불로 가장 높은 반면 인도는 480불, 남아시아 평균은 461불을 기록하였다.

스리랑카인들의 평균수명이 높은 것은 열대기후로 국토 대부분이 녹음이 우거져 있고 인구가 밀집된 콜롬보 등 대부분이 바다에 인접해 있어 일교차가 심하지 않고 바닷바람으로 대

기오염이 심하지 않은 점, 세계적인 향료 및 차 산지이므로 국민들의 식생활이 채식 위주이고 불교영향으로 생존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있고 남을 배려하는 미풍양속을 갖고 있는 점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스리랑카는 최근에는 정부지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국립대학까지 무상교육, 국립 기본 의료시설, 쌀 등 주식에 대한 정부식량보조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영양실조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게 국가가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한 타인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세계 111개국 주요국가들을 대상으로 최근 발표한 2005년 삶의 질 지수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비록 경제수준은 후진국이지만 삶의 질은 중진국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삶의 질에서 1위는 아일랜드, 2위는 스위스 3위는 노르웨이이며 한국은 30위, 스리랑카는 43위를 기록하였다. 서남아 국가 중에서 방글라데시는 77위, 파키스탄 93위, 인도는 73위를 기록하였다. 특기할만한 것은 1인당 구매력기준으로 보면 스리랑카는 3,810불로 91위를 기록하였지만 국민들이 향유하는 삶의 질은 48단계가 높아 조사대상국 중 좋은 방향에서 가장 격차가 높은 나라를 나타내었다. 참고로 인도는 삶의 질이 73위, 1인당 구매력 기준으로는 96위로 삶의 질이나 구매력 기준에서 스리랑카보다 한 수 아래를 기록하였다.

자. 자녀교육여건

1) 자녀 교육환경

현지에는 영국과 미국계의 외국인 학교가 다수 운영되고 있으며 Overseas School of Children(OSC), Colombo International School(CIS)등이 인기가 있으며 이외에도 Elizabeth Moir School, British Colombo International School, International Children's School, Wicherry School, Asian International School 등이 있으며 연령에 따라 1-12학년(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 입학할 수 있다. 한국인 자녀들은 OSC, CIS 등에 많이 다니고 있으나 최근 국내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OSC로부터 CIS등 타 외국인 학교로의 전학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인 자녀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학교 중 OSC는 Pre School에서 12학년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 영국, 호주교육시스템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이다. 교육방식이 미국식의 토론과 사고력을 중시하며 학급당 학생수가 10-20명 선이고 주요과목 교사들은 대부분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인이다. 외국인 전용학교 성격이 강하며 학비가 CIS에 비해 많이 비싸 최근 입학학생이 줄어들고 있다. 1년은 2개 학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OSC는 고학년부터는 학생들간에 좋은 미국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점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한국대학 입학할 경우 기타 국제학교보다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고 현지 학부모들은 말하기도 한다. 또한 싱가포르나 자카르타 등의 외국인학교에 비해 학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명문대 반과 같은 별도 입시 준비 반이 운영되지 않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전문 유학학원이나 SAT학원 등이 없어, 일부는 개인과외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스리랑카 인 개인과외 교습 시 보통 시간당 RS 500내외를 받지만 전문과외 강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

OSC학비 구조(2005/2006학년도)

(US\$ 1= Rs 100정도)

OSC Fee Schedule 2005/2006	
	US\$
Registration Fee	2,875.00 (one time non-refundable charge)
School Fees (Per Annum)	
Pre-school	5, 635.00
Primary School (Kindergarten)	7, 831.50
(Gr. 1-5)	10,223.50
Middle School (Gr. 6-8)	11,327.50
High School (Gr. 9-10)	13,558.50
(Gr. 11-12)	14,099.00
Refundable Deposit	
(Pre-Gr. 5)	25,000.00
(Gr. 6-12)	50,000.00
The above tuition fees are inclusive of Value Added Tax at 15%	

반면 CIS는 대통령을 비롯한 스리랑카 고위층 자녀들이 위주로 되어 있으며 한국, 제 3세계 외국인 자녀들의 취학비율이 가장 높으며 영국계 학교로서 밀도 있는 교육을 강점으로 하고 있다. 학생은 물론 저학년 교사들은 스리랑카 현지인인 까닭에 언어형성기 에서 남아시아식 영어발음에 저절로 몸이 배어지며 학급당 학생수가 30-40명으로 많은 편이며 과도한 주입식 교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OSC보다는 규율이 엄해 한국인 부모들이 이러한 교육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으며 학비도 상대적으로 싸 최근 들어 입학학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OSC로부터의 전학도 많아지고 있다. 학생들은 3세 유아부터 19세까지 초, 중, 고교과정이 있으며 총 학생수는 1,300여명이며 1년은 3학기로 구성되어 있다. CIS 졸업생들의 주요 진학지는 영국으로 이에 맞춰 커리큘럼이 운영되기 때문에 미국학교로 유학 갈 경우 핸디캡을 안고 있다.

참고로 CIS의 학비는 다음과 같다. Term Fee의 경우 Play Group은 RS 39,600, Grade 1은 RS 49,500, Grade 2 -6은 RS 52,700, Grade 7 - 9는 RS 72,600 수준이다. RS 20,000 수준의 입학금이 있고, 학교 신축기금으로 4년에 RS 21,000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

대부분 외국인 학교의 경우 영국계통의 교육을 시키며 영어와 제2외국어가 필수이며, 졸업 후 영국이나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경우 학교성적을 그대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지에는 한국인 학교가 토요일과 주중 1회 운영되고 있어 국어, 수학 및 국사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현지 한국 교회에서 유치원도 운영하고 있어 보조수단으로 유익한 기능을 하고 있다. 교민사회가 크지 않고 학생수가 많지 않아 교사 대부분이 현지 교민 중에 자원 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학교 연락처

학교명	위치	전화번호	이메일 및 홈페이지
The Overseas School of Colombo	Pelawatte, P.O. Box 9, Battaramulla, Sri Lanka	94-11-2784920/2	admin@osc.lk www.osc.lk
Colombo Interantional School	28, Gregorys Road, Colombo 7, Sri Lanka	94-11-2697587, 2691644	principal@cis.lk www.cis.lk
Elizabeth Moir School	4/20, Thalakotuwa Gardens, Colombo 5, Sri Lanka	94-11-512275 (Senior School) 94-11-2585682 (Junior School)	moir@eureka.lk moirjnr@eureka.lk www.eureka.lk/moir

2) 한인학교

현재 매주 토요일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현지 투자 진출 업체 등의 자녀이며 한국인이 총 500여명 진출해 있어 자녀들의 만남의 장소 역할도 하는 등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인식 및 한국에 대한 교육기회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학교 명칭도 재 스리랑카 한국인 주말학교에서 재 스리랑카 한인학교로 개칭한 바 있으며 교사들은 주로 한국의 현직교사가 많고 기타 가정주부 등 여성들이 맡는 경우가 많다.

교장은 한인사회에서의 신뢰도가 높고 책임감이 강한 한인 연합교회 강기종 목사가 맡아 한인 사회 발전과 자녀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뉘어 수업 중이며 학생수는 100여명이고 교사 수 1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